



1987.07  
1989.12  
1990.04  
1993.12  
1995.01  
1997.07  
1999.05  
2001.01  
2006.02  
2007.07  
2008.02  
2011.10  
2013.03  
2013.12  
2015.01  
2017.07

무역위원회 30년사

#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

KTC 30<sup>th</sup>  
ANNIVERSARY  
HIGHLIGHTS  
OF THE  
THREE DECADES

## 발간사



무역위원회 위원장 신 희 택

1987년 7월 1일 설립된 무역위원회가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무역구제 조사 및 판정 기관인 무역위원회는 그간 WTO 국제규범 및 국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30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모아 '무역위원회 30년사(史)'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책자는 제1편 무역위원회 및 무역구제제도 개요, 제2편 주요 판정사례 및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편에서는 무역위원회의 조직, 법적 성격 및 주요업무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자유무역제도의 발전과정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 등 우리나라의 무역구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설명을 담았습니다.

제2편에서는 지난 30년간 무역위원회가 조사·판정 하였던 대표적인 무역구제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긍정판정으로 최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던 미국,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 사건을 비롯하여 20건 반덤핑 사례의 주요내용과 쟁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PDP 디스플레이장치 특허권 침해 등 지난 30년 동안 무역위원회가 조사, 판정 및 구제하였던 지재권 침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총 10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저희 무역위원회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지난 6개월간 정성을 들여 마련한 동 책자가 앞으로 불공정한 무역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대학, 연구소 등 무역구제제도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계의 전문가 분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 희 택

## 축 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무역위원회 출범 30주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발자취를 간추린 ‘무역위원회 30년사(史)’를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외무역을 통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역위원회가 덤핑, 수출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공정무역의 지킴이’로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987년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립된 무역위원회는 1995년 덤핑 및 보조금 제도 운용을 관세청에서 이관 받고, 2001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30년간 반덤핑 159건, 세이프가드 34건, 지재권침해 및 원산지위반행위 354건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WTO와 미국 ITC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완화와 자유무역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과잉,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역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공정한 무역 성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역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자 공정무역을 선도하는 세계적 무역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백운규

## ◎ 태동기

Early Period (1987-1994)

### 무역위원회 설립

Foundation of KTC

#### 경제 · 무역환경

- 고성장 기초, 무역 1,500억 불, 자유화 진전, 수입제한 잔존

#### 주요 연혁

-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에 설립 근거 마련  
\* 위원장 1명, 위원 4명, 직원 8명
- 1989년 상공부 자문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로 승격
- 1989년 특허권 등 지재권 침해유형 확대
- 1990년 무역위원회 위원 증원 및 무역조사실 신설  
\* 위원 : 9명, 조사실 : 4개과
- 1993년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이관

#### 조사 대표사례

- 가방 및 핸드백 원산지 위반·상표권 침해 (1987.7.31. 최초 사건)
- 볼베어링 반덤핑 조사 (1992.7.6. 태국산)
- 소다회 반덤핑 조사 (1993.1.29. 중국산)
- 유리장섬유 반덤핑 조사 (1993.8.9. 미국·일본·대만산)
- 신발·의류·가방·장신구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상표권 침해 조사

#### 대외협력 활동

- 1989~1999년 무역구제 세미나 매년 개최  
\* 2001년부터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로 발전



1987.7. 무역위원회 설립 현판식



1990.6. 창립 3주년 현판식



1990.7. 창립 3주년 기념 세미나



1990.7. 창립 3주년 기념 세미나



1992.7.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 ◊ 형성기

Formulative Period (1995-2000)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일원화

Integrat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 경제 · 무역환경

- 외환위기, 무역 3,000억 불, WTO 출범(1995), OECD 가입(1996)

#### 주요 연혁

- 1995년 12월 반덤핑 및 보조금 제도 운용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  
\* 덤핑·보조금 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
- 1997년 가격조사과 신설
- 2000년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 신설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 총원

#### 조사 대표사례

- 전기면도기 반덤핑 조사 (1996.6.14. 네덜란드·독일·일본·중국산)
-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반덤핑 조사 (1997.2.4. 중국산)
- 알칼리 망간 건전지 반덤핑 조사 (1999.9.13. 싱가포르·중국·일본·미국산)
- 공구·일회용 라이터·직물원단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상표권 침해·특허권 침해 조사

#### 대외협력 활동

- 1999년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MOU 체결  
\* 2000~2016년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 산업피해구제제도 지역별·업종별 설명회 개최
- 2000년부터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 발표대회 매년 개최



1997.7. 창립 10주년기념 세미나



1998.7. 창립 11주년 기념 세미나



1997.8. 일회용 포켓라이터 공청회



1997.11. 푸르푸릴알콜 공청회





## 도약기

Breakthrough Period (2001-2007)

### 독자적 법적 근거 마련

Established legal basis for independent operation

#### 경제·무역환경

- 저성장 기조, 무역 5,000억 불, DDA 협상, FTA 가속화(2004~)

#### 주요 연혁

- 2001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사절차를 동법에 규정
- 2002년 對중국 특별 SG, 2004년 FTA 양자 SG
- 2002년부터 산업경쟁력 조사 실시 \* 매년 4~5개 품목의 산업경쟁력 분석
- 2004년 10월 불공정무역조사법 1차 개정 \* 지재권 침해 과징금 상향
- 2004년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2006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조사 대표사례

-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조사 (2003.5.12. 일본·인도·스페인산)
- 산업용로봇 반덤핑 조사 (2004.8.19. 일본산)
- PDP방식 디스플레이 특허권 침해 조사 (2004.11.2.)
- 에스보드 특허권 침해 조사 (2006.7.6.)
- 플로트판유리 반덤핑 조사 (2007.3.7. 중국산)

#### 대외협력 활동

- 2001년 무역구제 소식지 '무역구제' 창간
- 2003·2004·2005·2007년 한·EU 무역구제협의회 개최
- 2007년 9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소



2003.2.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서명



2006.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06.11. 한·중무역구제 협력회의



2006.12. 제238차 무역위원회 회의



2007.5. 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



2006.12. 무역구제 모의재판



2007.9.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소식



2007.12. 제8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세미나



2007.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07.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07.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07.11. 한·EU무역구제 협력회의



2007.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성장기

Growth Period (2008-2017)

### 반덤핑 및 지적권 조사 활성화

Vitalized investigations for anti-dump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경제 · 무역환경

-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 1조 불,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 확대

#### 주요 연혁

- 2008년 12월 불공정무역조사법 3차 개정
  - \* 대외무역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무역행위 금지규정을 불공정무역조사법으로 일원화
- 2010년 3월 관세법령 개정
  - \*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등 DDA 개선사항을 반영
- 2010년 4월 불공정무역조사법 4차 개정
  - \* 지적권 침해물품의 해외공급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추가
- 2008~2016년 6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피해 조사 실시

#### 조사 대표사례

- 낚시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조사 (2008.6.3.)
-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조사 (2010.5.17.)
- 알루미늄 보틀 캔 반덤핑 조사 (2011.12.19. 일본산)
- OPP 필름 반덤핑 조사 (2012.11.22.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 H형강 반덤핑 조사 (2014.5.30. 중국산)
- 동박(전지박) 특허권 침해 조사 (2015.3.9.)

#### 대외협력 활동

- 2014·2015·2016년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기술협의회 개최
- 2014년 3월 무역위원회-WTO 협력 양해각서 체결
  - \*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WTO 공식 후원
- 2014년 8월 무역위-관세청 업무협력 MOU 체결

2008.8.  
무역구제 지원센터 헌판식



2010.11.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2011.12.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201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13.3. 무역구제 전남지역 간담회 및 업체 방문



2012.11. 제8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2013.1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 개최



2013.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13.11. 제14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2014.1. 한·미 무역구제 협력회의



2014.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14.8. 무역위·관세청 MOU 체결



2015.2.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현지실사)



2015.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16.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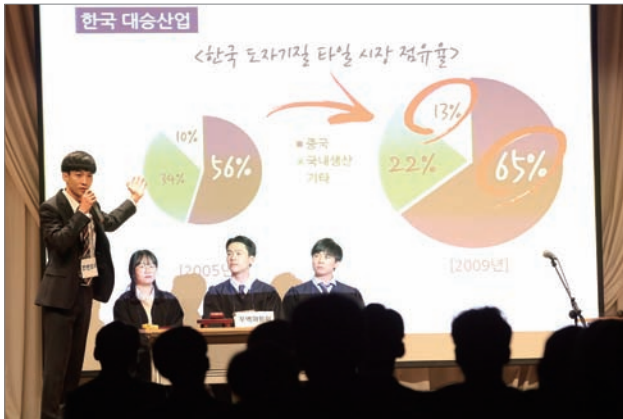
2016.12.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6차 한·EU 무역위원회 참석



2016.12. 제1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무역구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



2016.10.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2016.11.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2016.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2017.5.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장 수여식(제5기 자문단)



2017.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무역위원회 30주년 히스토리월)



2017.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축사)



2017.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017.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무역위 30주년 기념 부채 퍼포먼스)



2017.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기관장 간담회)



2017.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조사관 기술협의회)



2017.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조사관 기술협의회)



2017.9.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워크숍



2017.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1편 무역위원회 30년의 발자취

2편 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부록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1987년~2017년 6월)

## CONTENTS

발간사 (신희택 위원장)	
축 사 (백운규 장관)	
사진으로 보는 30년 .....	04
무역위원회 30년 연혁 .....	36

### 1편

## 무역위원회 30년의 발자취

1장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40
1절 무역위원회 .....	40
1. 연혁 .....	40
2. 법적 성격 .....	41
3. 조직과 인력 .....	42
2절 주요 기능 .....	47
1. 무역구제제도 운용 .....	47
2. 반덤핑 조사 .....	49
3. 세이프가드 조사 .....	57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60
3절 기타 기능 .....	65
1. 산업경쟁력 조사 .....	65
2. 무역구제 국제협력 .....	67
3. 무역구제 진흥사업 .....	82
4.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피해판정 .....	86
4절 무역위원회 발전 방향 및 전략 .....	90
1. 대내외 환경과 전망 .....	90
2. 무역위원회의 비전 .....	94
3. 무역위원회의 발전방향 및 전략 .....	95
2장 자유무역과 무역구제제도 .....	101
1절 GATT체제하의 무역구제제도 .....	101
1. 덤핑방지관세제도의 도입과정 .....	102

2. 상계관세제도의 도입과정 .....	104
3. 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과정 .....	105
<b>2절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무역구제제도 .....</b>	<b>107</b>
1.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출범 .....	107
2. WTO체제하의 무역구제제도 .....	108
3. DDA협상 .....	108
<b>3절 지역무역협정과 무역구제제도 .....</b>	<b>112</b>
1. 다자체제의 예외로서의 지역무역협정 .....	112
2. 지역무역협정에서의 무역구제제도 .....	113
3. 메가 FTA .....	115
<b>3장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b>	<b>119</b>
<b>1절 개요 .....</b>	<b>119</b>
<b>2절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정 .....</b>	<b>120</b>
1. 덤핑방지관세제도 .....	121
2. 상계관세제도 .....	123
3. 세이프가드제도 .....	125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127
5.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	129
<b>3절 덤핑방지관세제도 .....</b>	<b>131</b>
1. 개요 .....	131
2. 실체적 요건 .....	131
3. 절차적 규정 .....	134
<b>4절 상계관세제도 .....</b>	<b>138</b>
1. 개요 .....	138
2. 실체적 요건 .....	138
3. 절차적 규정 .....	140
<b>5절 세이프가드 .....</b>	<b>143</b>
1. 개요 .....	143
2. 실체적 요건 .....	143
3. 조사절차 .....	144
4. FTA 세이프가드 .....	146
5. 섬유 세이프가드 .....	148
6. 대(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	150

6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152
1. 의의 .....	152
2. 조사절차 .....	152
3. 잠정조치 .....	154
4. 지식재산권 침해 기(既)판정물품 확인제도 .....	154
7절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	156
1. 개요 .....	156
2. 조사요건 .....	156
3. 조사절차 .....	157



## 무역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1장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20선) .....	162
1절 미국·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 반덤핑 조사 .....	162
최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긍정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162
2. WTO패널의 주요쟁점 및 판정 .....	163
3. 시사점 .....	165
2절 유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	166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WTO분쟁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166
2. WTO패널의 주요쟁점 및 판정 .....	168
3. 시사점 .....	170
3절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반덤핑 조사 .....	171
우회덤핑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171
2. 주요쟁점 .....	172
3. 시사점 .....	173

4절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	174
풍선효과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174
2. 주요쟁점 .....	174
3. 시사점 .....	177
5절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조사 .....	178
세이프가드 조사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178
2. 주요쟁점 .....	178
3. 중국의 보복조치와 한중 통상협상 .....	180
4. 조사 재검토 및 조치 종료 .....	181
5. 시사점 .....	181
6절 일본산 자동가이드휠편칭기 반덤핑 조사 .....	183
국내 생산자 매출규모 최소사례(매출 30억원)	
1. 조사 및 조치개요 .....	183
2. 주요쟁점 .....	184
3. 시사점 .....	185
7절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 반덤핑 조사 .....	187
덤핑방기관세 최장기간 부과사례(2004.7.30~2020.6.1)	
1. 조사 및 조치개요 .....	187
2. 주요쟁점 .....	189
3. 시사점 .....	191
8절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반덤핑 조사 .....	192
산업피해 부정판정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192
2. 주요쟁점 .....	192
3. 시사점 .....	194
9절 태국·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반덤핑 조사 .....	195
신청인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이 증가한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195
2. 주요쟁점 .....	196
3. 시사점 .....	196

10절 일본산 스테인레스 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 .....	197
시장점유율 산정 시 보세구역 반입물량 일부를 포함한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197
2. 주요쟁점 .....	198
3. 시사점 .....	199
11절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반덤핑 조사 .....	200
WTO 분쟁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00
2. WTO분쟁 경과 및 판정 .....	200
3. WTO 패널의 주요쟁점 .....	201
4. 시사점 .....	203
12절 중국산 읍셋인쇄판 반덤핑 조사 .....	205
조사대상물품 범위 변경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05
2. 주요쟁점 .....	206
3. 시사점 .....	207
13절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 .....	208
분기별 덤핑마진 산정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08
2. 주요쟁점 .....	209
3. 시사점 .....	210
14절 일본산 산업용 로봇 반덤핑 조사 .....	212
덤핑가격으로 구성수출가격을 적용한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12
2. 주요쟁점 .....	213
3. 시사점 .....	214
15절 중국산 활엽수 합판 반덤핑 조사 .....	215
해외공급자 현지실사 시 오류 등의 발견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15
2. 주요쟁점 .....	216
3. 시사점 .....	219
16절 중국산 백시멘트 반덤핑 조사 .....	221
예비판정 시 미소마진이 산정된 공급자에 대해 본조사 종결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21

2. 주요쟁점 .....	222
3. 시사점 .....	222
<b>17절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 조사</b> .....	224
가격약속 불수락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24
2. 주요쟁점 .....	225
3. 시사점 .....	225
<b>18절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반덤핑 조사</b> .....	227
가격약속 수락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27
2. 주요쟁점 .....	228
3. 시사점 .....	228
<b>19절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b> .....	230
가격약속 및 이행점검 실시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30
2. 주요쟁점 .....	231
3. 시사점 .....	231
<b>20절 중국,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b> .....	233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특정 물품 제외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33
2. 주요쟁점 .....	234
3. 시사점 .....	236
<b>2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10선)</b> .....	239
<b>1절 가방 상표권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b> .....	239
무역위원회 최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39
2. 주요쟁점 .....	240
3. 시사점 .....	240
<b>2절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표권침해 조사</b> .....	242
병행수입 허용기준 제시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42
2. 주요쟁점 .....	243
3. 시사점 .....	244

3절 PDP방식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권침해 조사 .....	245
최초 잠정조치 시행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45
2. 주요쟁점 .....	247
3. 시사점 .....	247
4절 염산 젬시타빈 특허권침해 조사 .....	249
잠정조치 시행 및 사법부의 무역위원회 재량범위 인정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49
2. 주요쟁점 .....	251
3. 시사점 .....	251
5절 에스보드 특허권침해 조사 .....	253
특허심판 계류 중 독자적인 판정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53
2. 주요쟁점 .....	254
3. 시사점 .....	255
6절 가구류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 .....	256
원산지표시 위반 직권조사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56
2. 주요쟁점 .....	257
3. 시사점 .....	258
7절 낚시대 케이스 디자인권침해 조사 .....	259
기(既)판정물품확인제도 도입 후 최초 적용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59
2. 주요쟁점 .....	260
3. 시사점 .....	260
8절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상표권침해·품질 등의 거짓표시조사 .....	262
영업비밀침해·상표권침해·품질 등의 거짓표시의 복합사건 조사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62
2. 주요쟁점 .....	263
3. 시사점 .....	264
9절 동박 특허권침해 조사 .....	265
당사자간 특허권 실시 계약체결로 최종판정 이전에 조사종결된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65



2. 주요쟁점 .....	266
3. 시사점 .....	267
<b>10절 자석완구 디자인권침해 조사 .....</b>	<b>268</b>
해외공급자에 대한 조사·판정 사례	
1. 조사 및 조치개요 .....	268
2. 주요쟁점 .....	269
3. 시사점 .....	269



## 부록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1987년~2017년 6월)

<b>1. 무역구제제도 운용 총괄 .....</b>	<b>277</b>
1-1. 연도별 조사신청 현황 .....	277
1-2. 조사신청 건에 대한 조치 현황 .....	277
1-3. 국가별 조사신청 현황 .....	278
1-4. 업종별 조사신청 현황 .....	280
1-5. 기업별 조사신청 현황 .....	282
<b>2.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 .....</b>	<b>291</b>
2-1. 운용실적 총괄 .....	291
2-2. 연도별 신청 및 조치 현황 .....	293
2-3.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품목 .....	294
2-4.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품목 .....	295
2-5. 조사건별 조치내역 .....	298
<b>3. 세이프가드제도 운용 .....</b>	<b>313</b>
3-1. 운용내역 총괄 .....	313
3-2. 연도별 조사 신청 및 조치 현황 .....	314
3-3. 조치종료 내역 .....	315
3-4. 조사건별 조치내역 .....	316
<b>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운용 .....</b>	<b>323</b>
4-1. 운용실적 총괄 .....	323
4-2. 연도별 신청 및 조치현황 .....	323
4-3. 불공정무역행위 처리내용 .....	324

5. 무역피해조사제도(무역조정지원) 운용 .....	341
5-1. 운용실적 총괄 .....	341
5-2. 연도별 신청 및 조치현황 .....	341
5-3. 국가별 신청 및 조치현황 .....	342
5-4. 무역피해조사 처리내용 .....	342
6. 무역위원회 운용현황 .....	351
6-1. 연도별 개최 현황 .....	351
6-2. 2016년도 무역위원회 개최 현황 .....	351
6-3. 2016년도 공청회 개최 현황 .....	351
6-4. 무역위원회 회의안건 내역 .....	352
6-5. 공청회 내역 .....	431
7. 무역위원회 주관 행사 .....	439
7-1. 무역구제 세미나 .....	439
7-2. 서울국제포럼 .....	446
7-3.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	460
7-4.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	465
7-5. 무역구제 지원센터 워크숍 .....	468
8. 무역위원회 발간 간행물 목록 .....	473
8-1. 조사보고서 목록 .....	473
8-2. 발간 보고서 목록 .....	478
8-3. 무역구제제도 연구보고서 목록 .....	488
9. 무역위원회 위원 .....	501
9-1. 현임 위원 현황 .....	501
9-2. 역대 무역위원 현황 .....	502

그림목차 1편

장·절·번호	내 용	페이지
[그림 1-1-①]	조직 및 업무 개관	45
[그림 1-2-①]	연도별 무역구제 조사 추이	49
[그림 1-2-②]	연도별 반덤핑 조사 추이	49
[그림 1-2-③]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내역	50
[그림 1-2-④]	국가별 반덤핑 조사신청	52
[그림 1-2-⑤]	국가별 반덤핑 조치	52
[그림 1-2-⑥]	품목별 반덤핑 신청	54
[그림 1-2-⑦]	품목별 반덤핑 조치	54
[그림 1-2-⑧]	유형별 반덤핑 조사(국가별 기준)	56
[그림 1-2-⑨]	세이프가드 판정내역	57
[그림 1-2-⑩]	품목별 세이프가드 신청	59
[그림 1-2-⑪]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치	59
[그림 1-2-⑫]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추이	60
[그림 1-2-⑬]	유형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61
[그림 1-2-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처리내역	61
[그림 1-2-⑮]	유형별·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추이	63
[그림 1-3-①]	무역조정기업 지원 절차	87
[그림 1-3-②]	무역피해조사 절차	88
[그림 1-4-①]	전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추이	93
[그림 1-4-②]	WTO 연도별 무역구제 분쟁 추이	93
[그림 3-3-①]	반덤핑 조사절차	135
[그림 3-3-②]	재심절차	137
[그림 3-4-①]	상계관세 조사 절차	141
[그림 3-5-①]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	145
[그림 3-6-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155
[그림 3-7-①]	WTO 규범위반사건 조사 절차	158

표목차 1편

장·절·번호	내 용	페이지
[표 1-1-①]	역대 무역위원회 위원장	43
[표 1-1-②]	무역위원회 조직 변천사	45
[표 1-2-①]	연도별 반덤핑 조사 신청 및 조치현황	51
[표 1-2-②]	연도별·국가별 반덤핑 조사 신청추이	53
[표 1-2-③]	품목별 반덤핑 조사 신청 추이	55
[표 1-2-④]	원심·재심 신청현황	56
[표 1-2-⑤]	연도별 세이프가드 신청 및 판정 추이	58
[표 1-2-⑥]	품목별 세이프가드 신청 및 조치현황	59
[표 1-2-⑦]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처리내역	61
[표 1-2-⑧]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조치 추이	62
[표 1-3-①]	연도별 무역구제 연구용역 현황	65
[표 1-3-②]	역대 포럼 주제	68
[표 1-3-③]	양자협력회의 추진경과	71
[표 1-3-④]	무역구제분야 FTA 협정별 비교	73
[표 1-3-⑤]	한미FTA 무역구제협상 경과	77
[표 1-3-⑥]	한중FTA 무역구제협상 경과	80
[표 1-3-⑦]	무역구제지원센터 현황	82
[표 1-3-⑧]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현황	83
[표 1-3-⑨]	무역피해조사 신청 및 조치 현황	89
[표 2-1-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	102
[표 2-2-①]	DDA 반덤핑협상에서의 주요국 입장	110
[표 3-1-①]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120
[표 3-2-①]	FTA 체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규정 개정 연혁	126
[표 3-3-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132
[표 3-4-①]	보조금 종류 및 의무사항	140
[표 3-5-①]	FTA SG와 일반 SG 비교	147
[표 3-5-②]	일반 SG와 섬유 SG 비교	149
[표 3-5-③]	대중국 특별 SG, 섬유 SG 제도, 일반 SG의 비교	151
[표 3-7-①]	각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비교	157

**표목차 2편**

장·절·번호	내 용	페이지
[표 1-4-①]	국내 시장 물량 현황	175
[표 1-4-②]	국내 시장 가격 현황	176
[표 1-5-①]	연도별 수입량 및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179
[표 1-5-②]	연도별 국산품 가격, 농가수익 및 국산품총판매액	179
[표 1-5-③]	긴급관세율	180
[표 1-5-④]	연도별 MMA 및 쿼터 물량	181
[표 1-8-①]	연도별 국내산업 추이	193
[표 1-17-①]	이해관계자별 가격약속의 효과]	226
[표 2-6-①]	위반물품 현황	257

## 무역위원회 30년 연혁

# 1987.07

### 무역위원회 설립

대외무역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설립(상공부 소속)  
위원장 1명, 위원4명, 직원 8명의 조직으로 구성

### 1986.12

- 12월 대외무역법에 설립 근거 마련  
위원장 1명, 위원 4명, 직원 8명

### 1989

- 상공부 자문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로 승격
- 특허권 등 지재권 침해유형 확대

### 1990

- 무역위원회 위원 증원 및  
무역조사실 신설  
위원 : 9명, 조사실 : 4개과

### 1989~1999

- 무역구제 세미나 매년 개최  
2001년부터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로 발전

무역위원회 설립  
20주년

# 2007.07

### 2001

- 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사절차를  
동법에 규정
- 무역구제 소식지 '무역구제' 창간

### 2002

- 대(對)중국 특별 SG,  
2004년 FTA 양자 SG
- 산업경쟁력 조사 최초 실시

### 2004

- 10월 불공정무역조사법 1차 개정  
지재권 침해 과징금 상향
-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2003·2004·2005·2007

- 한·EU 무역구제협의회 개최

### 2006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무역위원회 설립  
10주년

1997.07

1993

-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이관

1995

- 12월 반덤핑 및 보조금 제도 운용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  
\* 위원장 1명, 위원 4명, 직원 8명

2000

-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 신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 총원

1999

-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MOU 체결  
2000~2016년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2000

- 2000년 부터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 발표대회 매년 개최

무역위원회 설립  
30주년

2017.07

2008

- 3월 전국 무역구제지원센터 운영
- 12월 불공정무역조사법 3차 개정  
대외무역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무역행위 금지규정을 불공정무역 조사법으로 일원화

2008~2016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피해 조사 실시

2010

- 3월 관세법령 개정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등 DDA 개선사항을 반영
- 4월 불공정무역조사법 4차 개정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공급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추가

2014~ 2016

-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기술협의회 개최
- 무역위원회 - WTO 협력 양해각서 체결
- 무역위원회 - 관세청 업무협력 MOU체결



# 1편 무역위원회 30년의 발자취

“특정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 1986년 대외무역법 제37조 -

KOREA TRADE  
COMMISSION  
30-YEAR HISTORY





1장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40
2장 자유무역과 무역구제제도 .....	101
3장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	119

# 1장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특정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따른 조치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1986년 대외무역법 제37조)

## 1절 무역위원회

### 1. 연혁

무역위원회는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 제37조에 의거하여 1987년 7월에 출범하였다. 당시 상공부 산하에 비상임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해야 할 경우 장관의 처분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상공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일방적 수입제한 방식을 국제기준에 따른 조사·판정결과에 따르도록 한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무역위원회의 설립은 우리나라 무역정책을 국제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업무는 상공부 차관 소속의 무역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설립 초기에는 무역위원회가 무역구제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수행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10월 우리나라가 GATT 제18조 B항을 졸업<sup>1)</sup>함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산업영향 조사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세이프가드제도인 긴급수입제한제도로 변경되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결정,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구제조치 결정 및 건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모,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업무수행범위 또한 세이프가드제도 외에 반덤핑·상계관세제도와 관련된 산업피해의 조사 업무, 불공정수출입 조사업무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4월 무역위원회 위원 정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50명 정원의 무역

1)  
한국은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가입하였으며 GATT 체제 내에서 개도국 예외 조항인 GATT 18조 B항을 원용하는 국가에서, 1990년 1월 GATT 11조를 준수하는 국가로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조사실을 설치하였으며, 1996년 1월에는 덤핑률 조사업무가 관세청에서 이관되어옴에 따라 마침내 무역구제기관으로서의 균형적인 업무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밖에도 산업피해 조사, 덤핑률 산정 등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5급 5인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 직제를 개편하였다.

2001년 2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의 제정으로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위원회 관련 사항들이 동법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결과 독립법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동 법률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셰이프가드제도의 운용 및 관련업무,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업무,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시정조치, 기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다.<sup>2)</sup>

또한 2004년 1월 불공정무역조사법 개정으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셰이프가드 및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나 관행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나아가 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 확산과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개방형직위 확대 움직임에 맞추어 가격조사과장(현 덤핑 조사과장)은 2002년 4월, 무역조사실장은 2006년 8월에 각각 개방형직위로 변경하였다.

## 2. 법적 성격

2)

이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미국 통상무역법 제201조에 의한 셰이프가드제도, 1930년 관세법 제 701조 및 제731조에 의한 상계관세 및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 그리고 관세법 제332조에 의한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 조사 및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요청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 심의·판정 및 구제조치의 건의 등 불공정무역조사법령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9인의 무역위원회 위원들의 심리와 합의를 통해 의결하고, 이를 위원회 자체 명의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절차에 따라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고 판정하며,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판정한다는 의미에서 준사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이프가드제도와 반덤핑제도 및 상계관세제도에 있어서 무역위원회의 심의·판정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8조에 부여된 법적 기능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행정부 내에서는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다룰 수 없는 종국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역위원회의 판정을 바탕으로 관계 행정기관<sup>3)</sup>이 취한 긴급관세,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의 부과 조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되 위원회의 각종 조사와 업무처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로서 무역조사실을 둬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무역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과 인사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휘·통솔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독립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겠다.

### 3. 조직과 인력

#### 1) 무역위원회의 구성

1990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위원 8명을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무역위원회의 위원은 산업·무역·통상·회계 또는 지재권분야,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3) 현행 관세법령은 이러한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부여하고 있다.

4) 무역위원회 직제(제4조)는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그리고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등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질병, 기피·제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역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당시 한승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역임하였으며, 현재 13대 신희택 위원장이 재임 중이다. 또한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둬으로써 산업피해 조사·판정, 불공정수출입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제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단계에서부터 판정에 이르기까지 무역구제 전 과정을 숙지하고,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국제무역 관행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였다.<sup>4)</sup>

[표 1-1-①] 역대 무역위원회 위원장

임 기	성 명	(당시) 소속 및 경력
초대 1987.7.1~1988.5.24	한 승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응용경제학과 부교수</li> <li>•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li> <li>•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li> <li>• 현 김&amp;장 법률사무소 고문</li> </ul>
2대 1988.5.25~1989.11.17	박 우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li> <li>• 주홍콩 총영사관 부영사</li> <li>•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교수</li> <li>• 서울대 경제연구소장</li> <li>• 현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명예회장</li> </ul>
3~5대 1989.11.18~1998.11.17	김 완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 Economist</li> <li>• 아시아개발은행 조사부 Senior Economist</li> <li>• 국제무역경영학원 원장</li> <li>• 현 세계경제연구원 상임고문</li> </ul>
6대 1998.11.18~2001.11.17	정 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하대 무역학과 교수</li> <li>• 아시아개발은행 Senior Counsel</li> <li>• 보사부 연금기획국 과장</li> <li>•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li> </ul>
7대 2001.11.18~2002.8.1	전 성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 부총장</li> <li>• 세종대 경영대학원장</li> <li>• 경제관련 컬럼리스트</li> <li>• 현 세계경제연구원 대표이사회장</li> </ul>
8대 2002.8.27~2005.8.26	이 영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명여대 법학부교수</li> <li>•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위원</li> <li>• 규제개혁위원회 위원</li> <li>• 현 숙대 법대 명예교수</li> </ul>
9대 2005.12.8~2007.6.22	송 상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법대교수</li> <li>• 국제거래법학회 회장</li> <li>•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li> <li>• 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li> </ul>
10대 2007.6.22~2010.6.21	박 태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국제대학원장</li> <li>•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li> <li>•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li> <li>• 현 공정무역학회 회장</li> </ul>
11대 2010.6.22~2013.6.21	현 정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li> <li>• 한국개발연구원장</li> <li>•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li> </ul>
12대 2013.6.22~2016.6.21	홍 순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삼성SDI부사장</li> <li>• 前 전주비전대 총장</li> <li>• 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li> </ul>
13대 2016.8.12~2019.8.11	신 희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 현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li> <li>• 현 무역위원회 위원장</li> </ul>

## 2) 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7조 제2항은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피해 조사,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불공정수출입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조사실 업무를 총괄·관장하는 직위로서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개방형 공무원으로 보하며, 3~4급 과장급 4명과 4~5급 2명, 5급 18명, 6급 10명, 7급 6명 등 총 45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1월 개편된 무역조사실에는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 조사과와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과를 두고 있다. 무역구제정책과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무역구제분야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무역위원회의 운영,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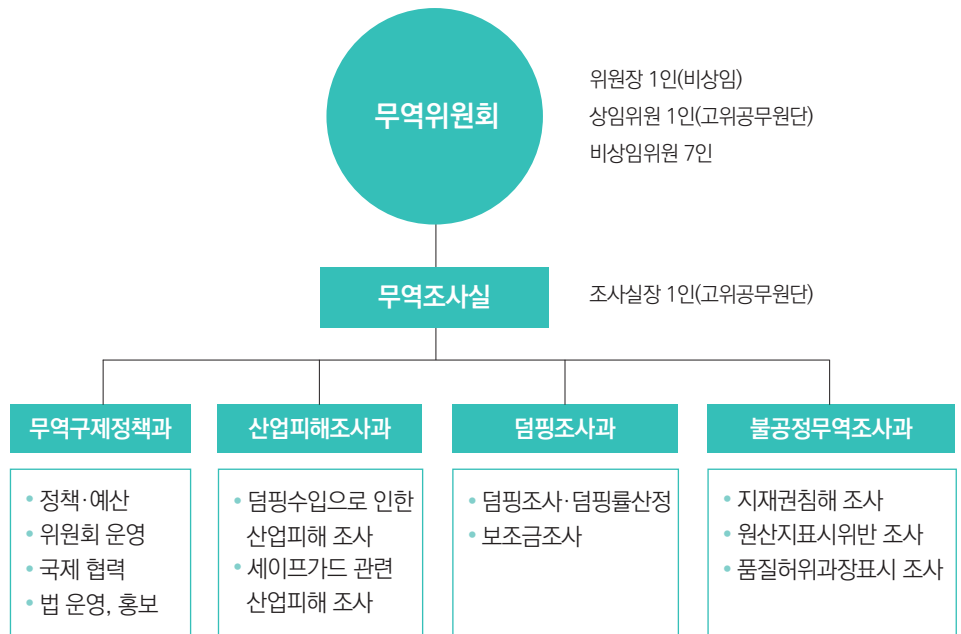
산업피해조사과는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덤핑방기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된 대외협력업무 등을 수행한다.

덤핑조사과는 덤핑방기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수입사실 및 보조금지급사실에 대한 조사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업무,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외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불공정무역조사과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그 밖의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무역위원회와 무역조사실의 조직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①] 조직 및 업무 개관



[표 1-1-②] 무역위원회 조직 변천사

근 거	조 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6.12.31 대외무역법 근거마련</li> <li>1987.5.23 무역위원회 직제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1명, 위원 4명</li> </ul> </li> <li>정원 4명 (별정직 1명, 5급 1명, 고용직 2명)</li> <li>무역조사관 정원 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공부장관 자문기관 (차관소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9.5.31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명 증원(정원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고 2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0.4.9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위원회 위원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1명, 위원 8명</li> </ul> </li> <li>무역조사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과 신설 : 조사총괄과, 산업피해조사 1과·2과, 불공정수출입조사과 신설</li> <li>- 39명 증원(정원 50명)</li> </ul> </li> <li>무역조사관 폐지 및 산업조사관(2~3급)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무역법 개정 (1989.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영향조사제도 폐지 및 세이프가드 대체</li> <li>- 합의제 행정기관 (산업피해유무 결정 및 구제조치 건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4.3.14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조사실장 직급하향조정(1급→2급)</li> <li>산업조사관 폐지</li> <li>7명 감축</li> </ul>	

근 거	조 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7.4.11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격조사과 신설</li> <li>9명 증원(정원 52명) -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R협상타결 및 WTO 출범(1995.1.1)</li> <li>관세청의 덤핑 및 보조금 업무 이관(1995.12. 관세법시행령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9.5.24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피해조사과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조직감축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9.6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 신설 (5급 5인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 총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8.21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격조사과장 직위 개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8.24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조사실장 직위 개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사회 경쟁분위기 확산과 정부경쟁력 향상 목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3.9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제 도입 및 팀명 변경 - 무역구제정책팀,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11.30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명 증원(정원 54명)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피해 판정업무 수요에 따른 인력충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1.6.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을 과로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구제정책과, 산업 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5.8. 무역위원회 직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직공무원 정원배정 및 통합 정원으로 전환 -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li> </ul>	



## 2절 주요 기능

### 1. 무역구제제도 운용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등 무역구제제도의 운용을 그 주요기능으로 한다.

관세법상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의 접수, 덤핑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잠정 또는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가격약속(Price-undertaking)을 접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이 시행 중에 있는 사건이나 기간이 만료되는 사건에 대하여 재심사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의 접수, 산업피해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여부의 판정, 그리고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긍정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용어풀이

#####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 등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관세법 제51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제재와 관련하여 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거나 수입 및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또는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 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 ③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④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무역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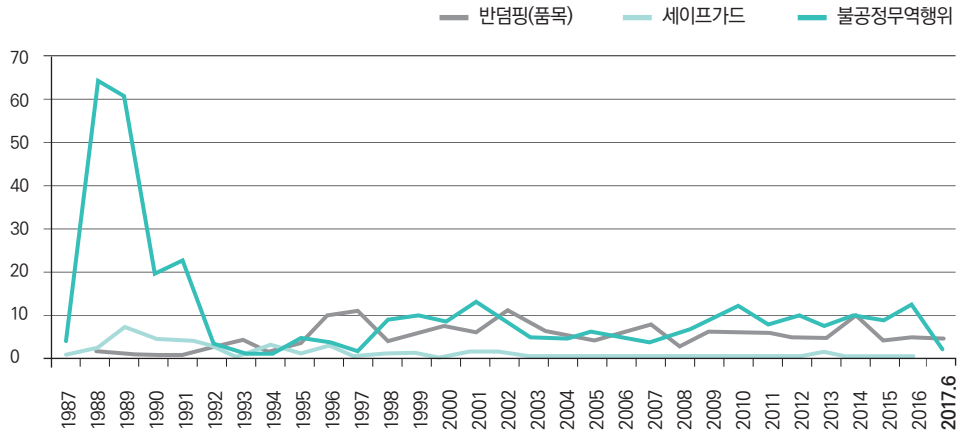
이밖에도 무역위원회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법인 불공정무역조사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무역위원회가 행하는 넓은 의미의 무역구제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역상대국가와의 교류협력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30년간, 반덤핑 조사신청은 국가별 기준으로 289건, 품목별 기준으로 157건이 이루어졌으며,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은 34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은 351건이 이루어졌다. 반면, 상계관세에 관한 조사신청은 한건도 없었으며,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도 2006년에 조사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아직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1995년까지 반덤핑 조사는 국가별 기준으로 연평균 4건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 이후 증가하여 연평균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1995년 세이프가드협정 제정 이후 거의 사라졌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초기에는 매년 20여 건에 달하였으나, 199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10여 건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무역위원회의 조사는 반덤핑 조사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2-①] 연도별 무역구제 조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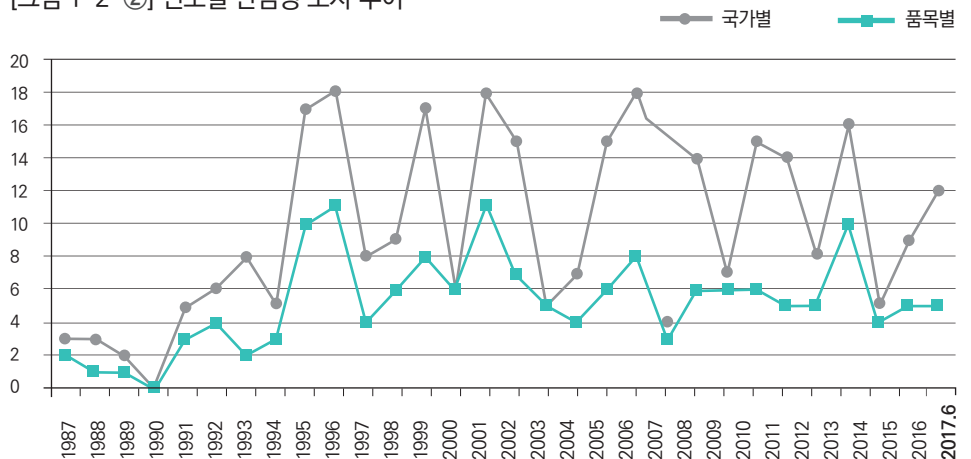
아래에서는 반덤핑 조사, 세이프가드 조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중심으로 30년 간의 운용성과를 살펴 보기로 한다.

## 2. 반덤핑 조사

### 1) 연도별 반덤핑 조사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30년간 반덤핑 제소는 재심을 포함하여 품목별 기준 157건, 국가별 기준 289건에 대하여 조사신청이 이루어졌으며, 4건을 제외한 조사신청 건에 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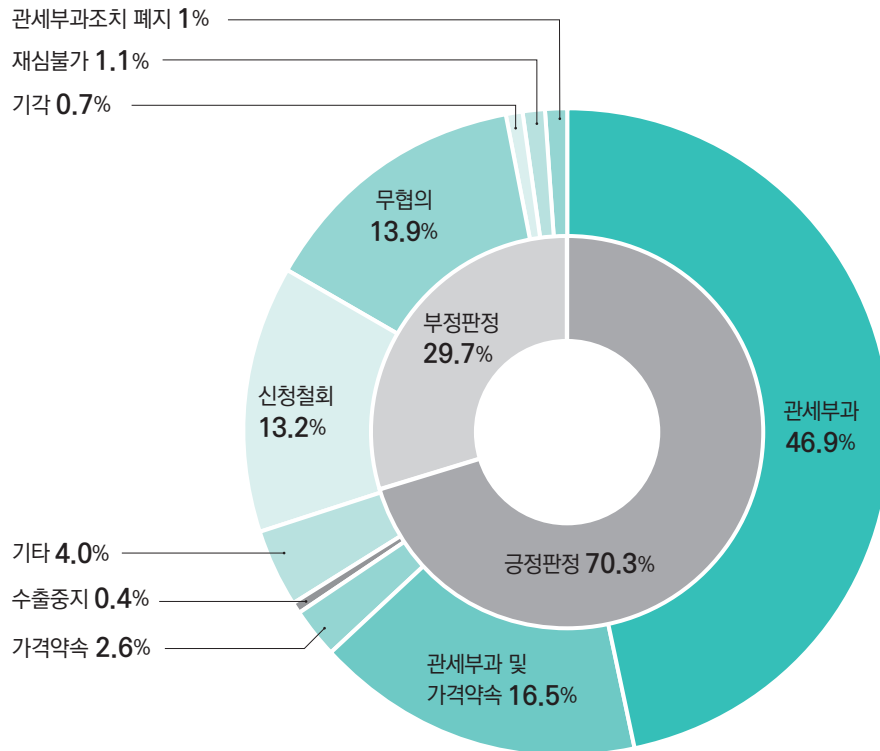
[그림 1-2-②] 연도별 반덤핑 조사 추이



GATT체제하에서 연평균 1.9건(품목별 기준)에 불과하던 반덤핑 조사 신청건수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약 20년간 연평균 6.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덤핑방지관세제도에 관한 국내법적 절차 마련과 기업들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별 기준 전체 273건 중(조사 중인 16건 제외) 70.3%(192건)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가격인상약속 등의 반덤핑 조치가 이루어졌고, 63.4%(173건)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다. 부정판정비율은 전체의 29.7%(81건)로, 조사를 거쳐 무혐의로 부정판정이 내려진 경우는 13.9%(38건), 피신청인의 철회로 종료된 경우는 13.2%(36건), 기타 미소마진 또는 제소자격 미비로 조사가 미개시된 경우는 전체의 2.6%(7건)이었다.

[그림 1-2-③]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내역



[표 1-2-①] 연도별 반덤핑 조사 신청 및 조치현황

구분	신청		긍정판정					부정판정				조사종	
	품목	국가	소계	관세 부과	가격 인상 약속	관세/ 가격 약속	기타	소계	무혐의	신청 철회	기타		
GATT	1988	2	3	3	-	3	-	-	-	-	-	-	-
	1989	1	3	-	-	-	-	-	3	3	-	-	-
	1990	1	2	2	2	-	-	-	-	-	-	-	-
	1991	-	-	-	-	-	-	-	-	-	-	-	-
	1992	3	5	2	2	-	-	-	3	-	3	-	-
	1993	4	6	5	1	-	4	-	1	1	-	-	-
	1994	2	8	-	-	-	-	-	8	8	-	-	-
	소계	13	27	12	5	3	4	0	15	12	3	0	0
WTO	1995	3	5	4	1	-	-	3 <sup>①</sup>	1	-	-	-	-
	1996	10	17	16	8	-	7	1 <sup>①</sup>	1	-	1	-	-
	1997	11	18	12	7	1	3	1 <sup>②</sup>	6	2	4	-	-
	1998	4	8	4	1	-	3	-	4	-	3	1 <sup>③</sup>	-
	1999	6	9	8	1	2	5	-	1	1	-	-	-
	2000	8	17	2	-	-	1	1 <sup>①</sup>	15	3	11	1 <sup>④</sup>	-
	2001	6	6	5	4	-	-	1 <sup>①</sup>	1	1	-	-	-
	2002	11	18	14	10	1	2	1 <sup>①</sup>	4	4	-	-	-
	2003	7	15	10	7	-	3	-	5	-	4	1 <sup>④</sup>	-
	2004	5	5	3	2	-	1	-	2	2	-	-	-
	2005	4	7	5	5	-	-	-	2	-	-	2 <sup>⑤</sup>	-
	2006	6	15	6	4	-	2	-	9	3	6	-	-
	2007	8	18	18	13	-	2	3	-	-	-	-	-
	2008	3	4	3	2	-	-	1 <sup>①</sup>	1	1	-	-	-
	2009	6	14	11	5	-	6	-	3	3	-	-	-
	2010	6	7	4	3	-	1	-	3	1	-	2 <sup>②</sup>	-
	2011	6	15	13	13	-	-	-	2	-	2	-	-
	2012	5	14	14	14	-	-	-	-	-	-	-	-
	2013	5	8	8	7	-	1	-	-	-	-	-	-
	2014	10	16	11	10	-	1	-	5	5	-	-	-
2015	4	5	4	4	-	-	-	1	-	1	-	-	
2016	5	9	5	5	-	-	-	-	-	-	-	4	
2017.6	5	12										12	
소계	144	262	180	126	4	38	12	66	26	33	7	16	
총계	157	289	192	131	7	42	12	81	38	36	7	16	

주 1) 판정내용은 국가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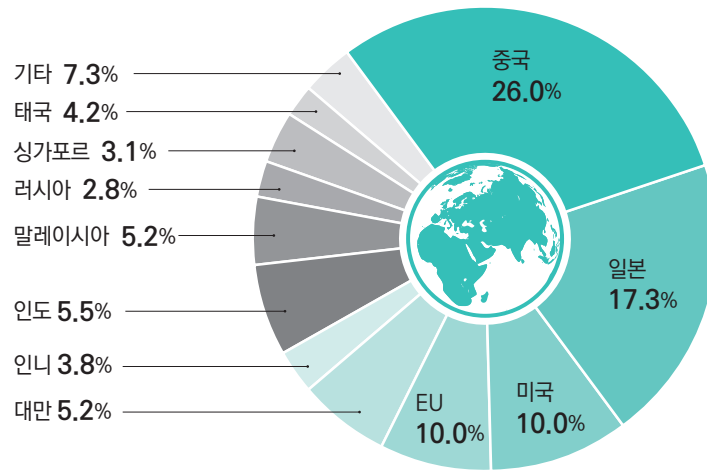
2) ① 일부부과제외, ② 수출중지약속, ③ 재심불가, ④ 기간, ⑤ 관세부과조치폐지

## 2) 국가별 반덤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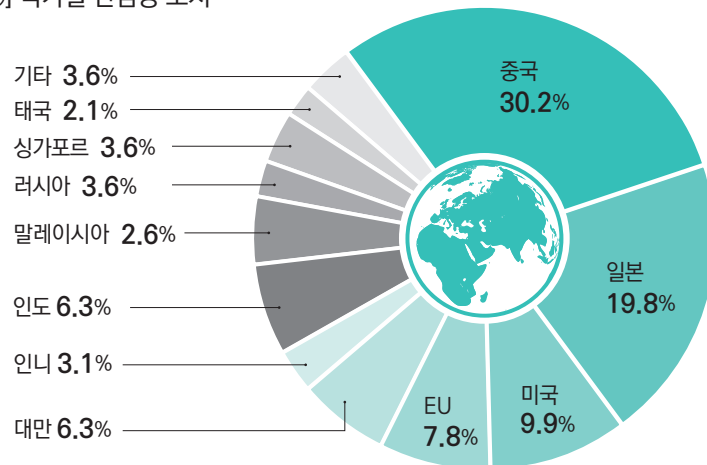
국가별 반덤핑 제소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이 75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289건 중 2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본 50건, 미국 29건, EU 28건을 차지하는바, 한국과의 교역비중이 큰 4개국이 전체의 63.0%를 차지하여 반덤핑 제소가 이들 국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별 반덤핑 조치는 중국 58건, 일본 38건, 미국 19건, EU 15건, 대만 12건, 인도 12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EU는 28개 품목에 대하여 제소되었으나 실제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15건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조치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1-2-④] 국가별 반덤핑 조사신청



[그림 1-2-⑤] 국가별 반덤핑 조치



국가별 반덤핑 제소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연평균 1~2건으로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최대 8건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연도별 변동폭이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2-②] 연도별·국가별 반덤핑 조사 신청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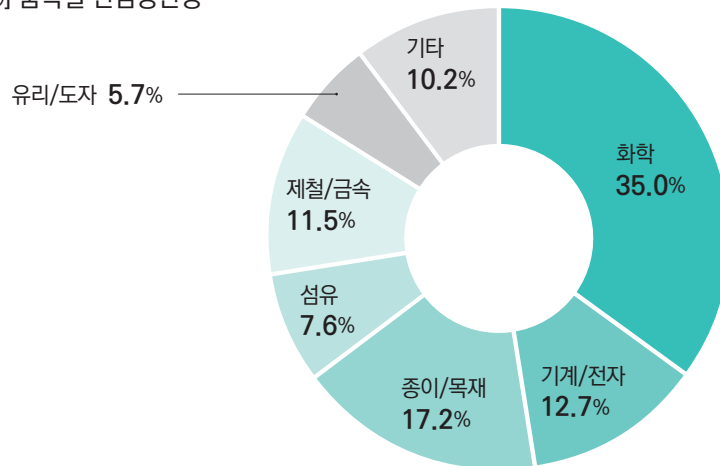
연도 국가	'88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6	계
중국	13		3	3	2	6	3	1	2	4	7	1	4	3	4	4	1	8	2	2	2	75
일본	12	3	2	2	2	3	3	3	2	1	2		2	1	2	1	3	1	1	1	3	50
EU	13		1	2		3	4				1	1				1			1	1		28
프랑스	4			1	1														1			7
독일	4			1	1																	6
스페인	0						2				1	1			1					1		6
네덜란드	1		1																			2
벨기에	1						1															2
영국	2																					2
불가리아	1																					1
이탈리아	0						1															1
폴란드						1																1
미국	11	1	1	1		1	2		1	3	1	1	1		1	1	1		1		1	29
대만	4	1	1		1	1			1		1	1	1	1	1		1				1	15
인도네시아		1		3		2				1	1	1	1	1	1							11
러시아	4				1			1			1				1							8
싱가폴	1		1	1	1					2	1				1			1				9
인도	1			1			2				2	2	2	1	2		3			2		16
말레이시아	1	1		1					1			1	1	2	1	1	2	1		1	1	15
태국	1	1		2								1		1	1	1	1	1			2	12
캐나다							1			1	1	1	1	1	1	1						6
브라질	1									1												2
아르헨티나	1									1												2
스위스	1																					1
뉴질랜드										1												1
베트남						1														1		2
파키스탄				1																		1
카자흐스탄	1																					1
리히텐슈타인	1																					1
우즈베키스탄	1																					1
우크라이나																				1		1
아랍에미리트																					1	1
핀란드																					1	1
계	67	8	9	17	6	18	15	5	7	15	18	4	14	7	15	14	8	16	5	9	12	289

### 3) 품목별 반덤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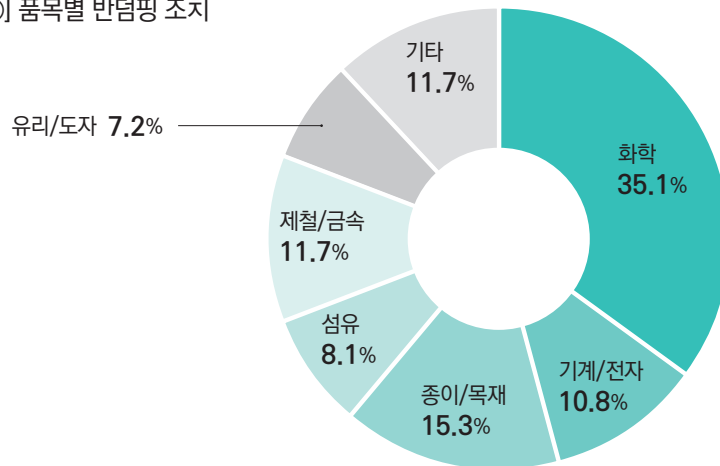
품목별 반덤핑 제소추이를 보면, 전체 157건 중에서 화학제품이 55건으로 35.0%, 종이·목재제품이 27건으로 17.2%, 기계·전자제품이 20건으로 12.7%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철·금속류가 18건, 섬유류가 12건, 유리·도자류가 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조치가 이루어진 품목은 111개 품목으로, 화학제품 39건, 종이·목재제품 17건, 제철·금속제품 13건, 기계·전자제품 12건, 섬유제품 9건, 유리·도자제품이 8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⑥] 품목별 반덤핑신청



[그림 1-2-⑦] 품목별 반덤핑 조치





[표 1-2-③] 품목별 반덤핑 조사 신청 추이

연도	품목	화학	기계/전자	종이/목재	섬유	제철/금속	유리/도자	기타	계
GATT	1988	1							-
	1989	1					1		-
	1990	1							-
	1991								-
	1992	2	1			1			-
	1993	2				1		1	-
	1994	1							-
	소계	8	1	0		1	1	1	13
WTO	1995	1			1	1			3
	1996	4	3		1	1		1	10
	1997	4	2	2		1		2	11
	1998		1	1	1			1	4
	1999	2	1			1		2	6
	2000		2	4	1			1	8
	2001					1	1	4	6
	2002	5	2	1		1		2	11
	2003	3	2	1		1			7
	2004	2	1			1		1	5
	2005		2			1	1		4
	2006	2	1	2				1	6
	2007	4		1	1	1	1		8
	2008	1		1			1		3
	2009	3		1	1	1			6
	2010	1		2			1	2	6
	2011	2		2	1	1			6
	2012	2		1	1	1			5
	2013	2	1	1			1		5
	2014	3		3	2	1	1		10
2015	2		1			1		4	
2016		1	2			2		5	
2017.6	4		1					5	
소계	47	19	27	11	17	8	15	144	
총합계		55	20	27	12	18	9	16	157

#### 4) 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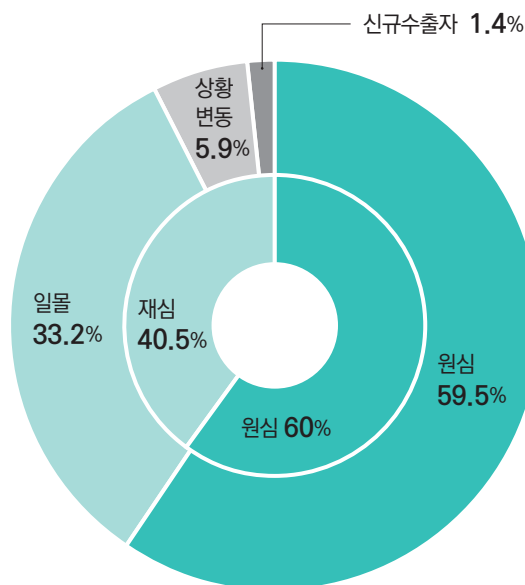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건수 중 재심은 전체 289건(국가별 기준) 중 117건으로 40.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몰재심이 96건으로 재심 중 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황변동재심 17건, 신규수출자재심은 4건으로 나타났다.

[표 1-2-④] 원심·재심 신청현황

구분	원심	재심				계
		소계	종료	상황변동	신규수출자	
품목별(%)	90 (57.3)	67(42.7)	52(33.1)	11(7.0)	4(2.6)	157(100)
국가별(%)	172(59.5)	117(40.5)	96(33.2)	17(5.9)	4(1.4)	289(100)

상황변동재심 11개 품목 중 7개 품목(11개국)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의 조치가 종료되었고, 1개 품목(2개국)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부 종료되었으며, 2개 품목(모두 일회용 포켓라이터)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1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림 1-2-⑥] 유형별 반덤핑 조사(국가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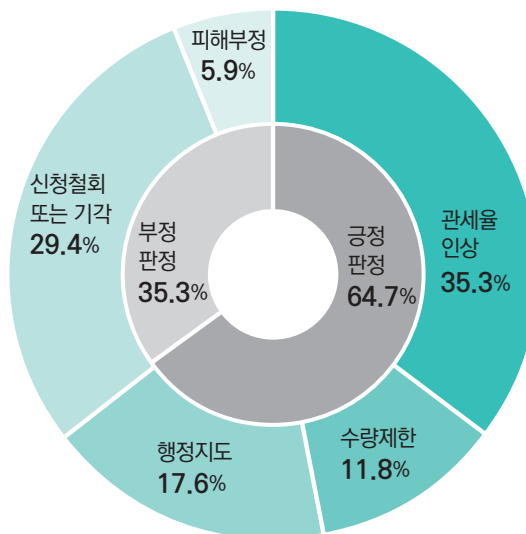


### 3. 세이프가드 조사

#### 1)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

1987년 이후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은 총 34건(유제품 재심, 마늘 재심과 연장재심 포함)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22건에 대해 긍정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세율인상, 수량제한, 행정지도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림 1-2-⑨] 세이프가드 판정내역



#### 용어풀이

**세이프가드 (Safeguards)**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 조정, 수입물품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

1편 무역위원회 30년의 발자취

[표 1-2-⑥] 연도별 세이프가드 신청 및 판정 추이

구분	신청 건수	긍정판정				부정판정			
		소계	관세율 인상	수량 제한	행정 지도	소계	신청철회 기각	피해 부정	
GATT	1987	1				1	1		
	1988	2	2		1	1			
	1989	7	6	2	1	3	1	1	
	1990	5	3	3		2	2		
	1991	4	4	3		1			
	1992	3				3	3		
	1993								
	1994	3	1			1	2	1	1
	소계	25	16	8	2	6	9	8	1
WTO	1995	1	1	1					
	1996	3	2	1	1	1		1	
	1997								
	1998	1	1		1				
	1999	1	1	1					
	2000								
	2001	1	1	1					
	2002	1				1	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1	1	
	2014								
2015									
2016									
2017.6									
소계	9	6	4	2	0	3	2	1	
총계	34	22	12	4	6	12	10	2	

주 : 신청건수에는 재심포함(대두박('96), 유제품('98), 마늘('01), 마늘연장재심('02))

구체적으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총 25건, 연평균 3.1건의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6건에 대해 긍정판정을 하였다. 협정체결 이후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조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평균 0.4건으로 조사신청이 급감하였으며, 2003년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기간연장재심에서 부정판정이 내려진 이후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은 2013년 단 1건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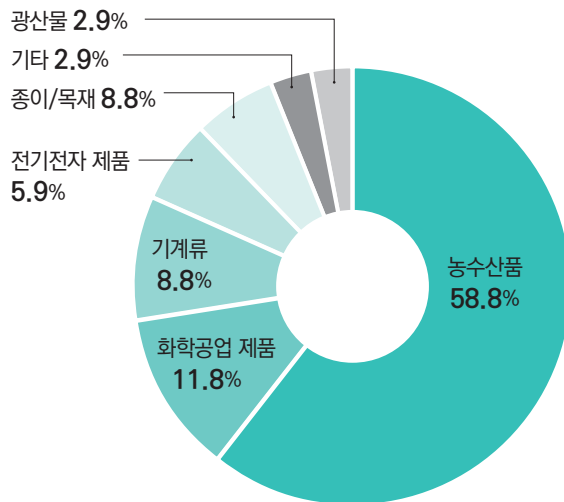
## 2)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사

세이프가드 신청이 이루어진 품목은 농수산품이 20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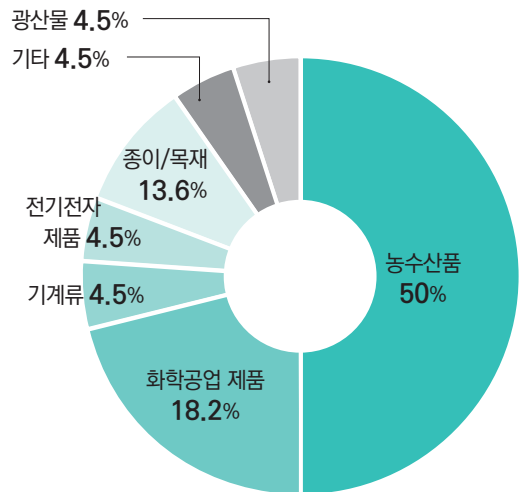
[표 1-2-⑥] 품목별 세이프가드 신청 및 조치현황

구분	광산물	농수산품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종이/목재류	기타	계
신청	1	20	4	3	2	3	1	34
조치	1	11	4	1	1	3	1	22

[그림 1-2-⑩] 품목별 세이프가드 신청



[그림 1-2-⑪]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치



용어풀이

**불공정무역행위**

(Unfair Trade Practices)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허위·과장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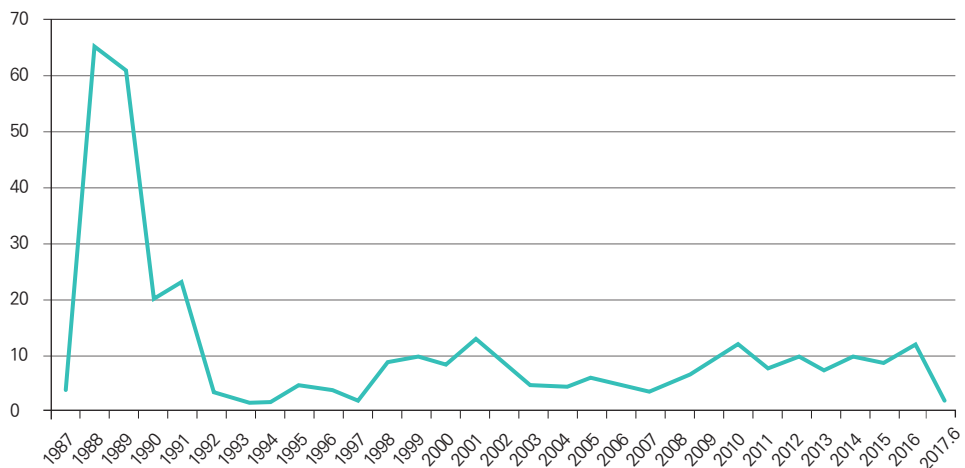
### 1)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30년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351건의 조사신청이 이루어졌다. 1991년 이전까지 총 173건, 연평균 34.6건의 조사가 이루어진 반면, 199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178건, 연평균 6.8건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1년까지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하려던 물품이 해당국 세관에서 지재권 침해로 적발되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조치 요구를 해온 사례가 대부분으로 조사건수가 연간 30~40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993년부터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재권뿐만 아니라 ‘국내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재권도 무역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2001년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재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조사하였던 무역위원회 설립 초기의 조사관행은 사라졌다.

2001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 이후에는 연평균 8.1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건수에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2-⑫]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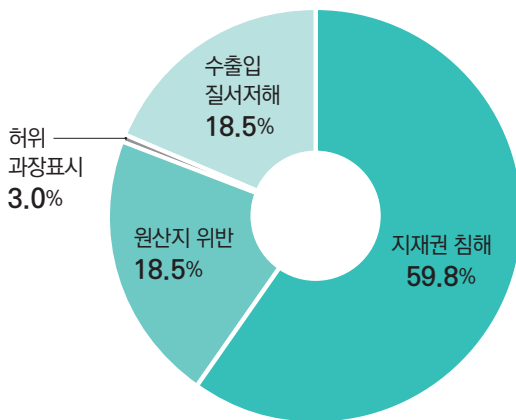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351건 중 32.8%(11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고, 28.8%(101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으며, 26.2%(92건)에 대하여는 신청철회 등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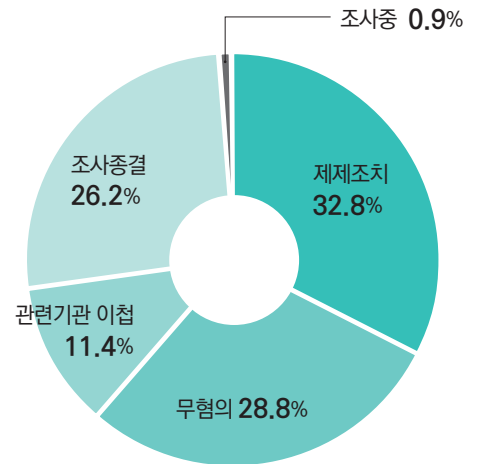
[표 1-2-⑦]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처리내역

구 분	시정조치				관련 기관 이첩	무혐의 처 리	조사 종결 등 기타	조사중	계
	무역업 정지	시정 조치	과징금	시정조치 +과징금					
처리건수	7	80	8	20	40	101	92	3	351

[그림 1-2-⑬] 유형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그림 1-2-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처리내역



[표 1-2-⑥]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조치 추이

(신청건수)

구분 연도	총 계	시정조치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입 질서 저해	허위 과장 표시
		소 계	상표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영업 비밀			
1987	4	3	2			1			1		
1988	65	50	36	2		2	10		10	5	
1989	61	25	23			2			9	27	
1990	20	14	12				2		5	1	
1991	23	8	8						10	5	
1992	4	1	1							3	
1993	2	2	2								
1994	1	1	1								
1995	5	1				1			4		
1996	4	2	1	1					2		
1997	2									2	
1998	9								1	8	
1999	10	3	1					2	3	4	
2000	9	3	1	1				1	3	3	
2001	13	2		1		1			6	5	
2002	9	4	1	2				1	4	1	
2003	5	5		4				1			
2004	5	4		3		1			1		
2005	6	6	4	1		1					
2006	5	4		4						1	
2007	4	3	1	1		1			1		
2008	6	3		1	1	1			2		1
2009	9	6	1	2	1	2			3		
2010	12	10	3	5	1	1			2		
2011	8	5	1	3	1				3		
2012	9	8	3	5					1		
2013	8	7	4	1				2			1
2014	10	7	1	4		2			3		
2015	9	9		9							
2016	12	12	2	8		1		1			
2017.6	2	2	1	1							
계	351	210	110	59	4	17	12	8	74	6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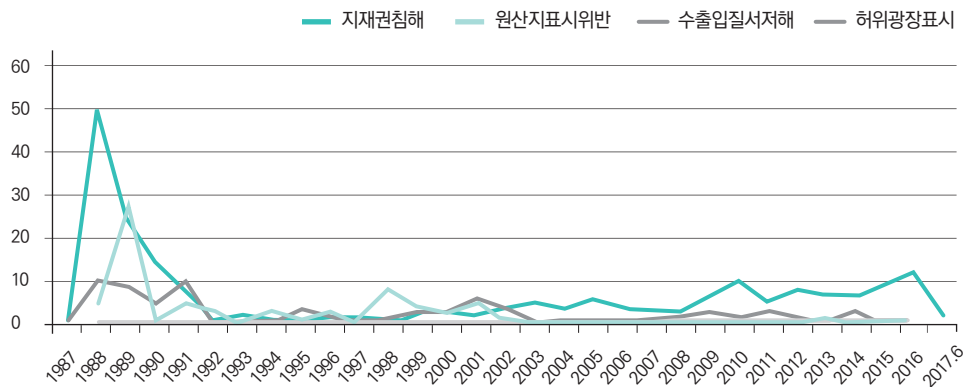


## 2) 유형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유형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추이를 보면, 지식재산권침해가 가장 많아 210건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원산지표시위반 74건, 수출입질서저해 65건, 허위·과장표시 2건을 차지하는바, 주로 지식재산권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입질서 저해에 관한 조사는 2003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지재권침해 조사가 2000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1-2-⑯] 유형별·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추이



## 3) 기타

최근 10년간 조사사례는 약 65%가 수입품에 관한 것이고, 수입품이 국내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이후에는 매년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가 증가추세에 있어 점차 첨예해지는 국가간 특허분쟁의 양상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신청에 의한 특허권 침해 조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2004년에는 LG전자의 신청으로 파나소닉코리아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PDP)에 대한 조사가, 2005~2006년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의 신청으로 유한양행, 신풍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의 항암제(염산 켈시타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동 조사에서 2001년 신설된 잠정조치 제도가 활용되어 상대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LG전자(LG이노텍과 공동)와 독일 오스람사가 쌍방간에 발광다이오드(LED)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5년 LS엠트론의 신청으로 개시된 해외 제조사와 국내 판매기업의 동박에 대한 조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기술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허권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조사신청이 철회된 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기업간 조속한 합의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지재권자인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 3절 기타 기능

### 1.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산업 경쟁력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5조<sup>5)</sup>에 근거를 둔 산업경쟁력 조사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수입증가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 또는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개별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조사·분석하여 산업피해 사전 예방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해당산업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증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경쟁력 조사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관세법 332조에 따라 자국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품이 자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독자예산을 확보(3억 원)하여 자동차변속기 산업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 조사를 수행한 이래 2017년까지 41.4억 원의 예산으로 총 99개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표1-3-①] 연도별 무역구제 연구용역 현황

구분(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소계(건)	4	15	14	13	11	16	16	20	19	22	21	15	20	14	9	10	239
경쟁력 조사	4	5	7	8	6	9	10	9	5	10	7	1	6	4	5	3	99
과제연구	0	10	7	5	5	7	6	11	14	12	14	14	14	10	4	7	140
예산(억원)	3	5	5	5	5	4.7	4.7	6	5.7	6.7	5.3	5.7	5	4	3	3	76.8

#### 1) 산업별 경쟁력 조사

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25조(산업 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의 수입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그동안의 산업경쟁력 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수입증가 등으로 산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변속기, 연삭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를 시작으로 연평균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4~6개 품목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선재·강관·봉강·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2016년 기초화장품·의약품·가구·의류·가공식품 등 5개 품목 등 2002~2016년간 총 96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를 수행하였고, 보도자료 배포·무역위 홈페이지 자료등록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업계 등 수요자에게 조사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는 조사대상 품목선정 방식을 이원화하여 업계 수요조사와 함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하향식(Top-down)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품목을 선정하였다. 2012년에는 조사수행기관을 업종별 협단체 이외에 전문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2003년~2014년에는 주요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 전반의 산업별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FTA별 무역피해 예상 품목을 도출하고, 이 중 열교환기, 에어컨, 계측기기, NC컨트롤러, 조명기기, 남성정장 등 6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

개별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사 이외에 세계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 전략을 수립하고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법령, 조사사례,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미국, EU 및 캐나다의 반덤핑 조사사례 분석 등 10개 무역제도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래 2003~2017년간 총 140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2008년에는 한·중FTA 무역구제협상전략 등 6개 과제, 2009년 보조금 상계관세 사례분석 및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등 11개 과제, 2010년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등 14개 과제, 2011년 주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 위반 연구 등 12개 과제, 2012년 반덤핑 조사 시스템의 선진화 및 표준화 연구 등 14개 과제, 2013년 지재권침해 조사 전문성 확보방안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14개 과제, 2014년 WTO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연구 등 14개 과제, 2015년 산업피해 조사기법 관련 주요국 및 WTO 쟁점사례 분석 연구 등 10개 과제, 2016년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등에 관한 연구 등 4개 과제, 2017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구제 조사 절차 등 7개 무역구제제도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2. 무역구제 국제협력

### 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무역위원회는 선진 외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연구해서 우리 무역구제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매년 무역구제 선진국의 조사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이는 2001년부터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무역구제 동향과 최근 무역구제 분야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이 포럼은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조사관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WTO로부터 엠블럼 사용 등의 지원을 받아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WTO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동 행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무역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2017년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는 총 14개국에서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과 10여 명의 조사관들이 참여하였다. 해당 포럼에서는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 조사 절차 : 이행 및 도전’, ‘2017~2020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참석자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주요 참석기관은 미국 상무부(DOC)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EU 통상총국, 중국 상무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인도 상공부,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등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활발히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기관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WTO에서도 매년 포럼에 참석하여 해외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장들과 세계 무역구제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의 무역구제 기관뿐만 아니라 무역구제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원)생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논의와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②] 역대 포럼 주제

년도	주 제
2003년	무역구제의 동향과 전망
2004년	무역구제, 각국의 경험과 향후 방향의 모색
2005년	일몰재심
2006년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2007년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 ①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② 무역구제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현황 ③ 향후 무역구제제도의 방향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와 무역구제 ① 세계금융 위기와 무역구제 ② 반덤핑 동향 ③ 상계관세 대응
2010년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① 미국·EU·중국·한국의 무역구제제도 ② 캐나다·인도·베트남의 무역구제제도 ③ 무역구제제도의 미래
2011년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 ①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② 재심관련 이슈들
2012년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① 세이프가드제도의 현황 및 재설계 ② 무역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2013년	세계 무역구제의 발전과 전망 ① FTA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전망 ② 상계관세 제도 운영동향과 향후방향
2014년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 ① 거대 경제권 FTA와 무역구제 제도 ② 각 국의 무역구제 제도 운용 경험
2015년	WTO 20주년, 무역구제체제의 성과와 도전 ① WTO 무역구제시스템의 평가와 발전과제 ② 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영 경험 ③ 세이프가드 조치
2016년	①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② 반덤핑 리뷰
2017년	①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 조사 절차 : 이행 및 도전 ② 2017~2020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

## 2) 양자협력

무역규모 증대와 무역마찰 확대 우려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주요교역국(중국, EU, 베트남 등)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양국의 무역구제제도 정책동향 및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아울러, 해외 무역구제기관과 공동으로 무역구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는 조사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무역구제제도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1) 한·중 무역구제 정례협력회의 및 FTA 이행위원회

가장 먼저 협력채널을 마련한 중국과는 1998년 11월 한·중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 중국 경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과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1999년 8월에 체결하면서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수출입공평무역국 및 산업피해조사국과 각각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는 이원적 구조로 협력채널이 구축되었다. 이후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경무부와 경무위가 상무부로 신설·통합됨에 따라 협의회를 일원화하여 2003년 12월부터 제4차 협력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국의 상무부장관이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회의 산하에 과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운영기로 합의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과는 2000년부터 매년 정례협력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현재까지 16회의 협력회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내용에 따라 무역구제 이행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부터는 FTA 이행위원회와 정례협력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 (2)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

EU와는 2002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의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방문을 계기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EU집행위 무역구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EU 무역구제협력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부터 매년 협력회의를 개최해 오

고 있다. EU와의 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7차례 개최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2012년부터 이전의 협력회의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하고 있다. 2012년 11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당 작업반 회의는 총 4차례 개최되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EU와의 협력채널을 통해 선진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습득하는 한편 해외 최신 무역구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 (3)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베트남과의 협력회의는 2009년 10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간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 데서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1차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진행했으며, 2011년 9월 2차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한·베 공동위원회, 베트남경쟁청 공무원 대상 무역구제 교육연수 등의 계기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2009년 체결한 MOU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7월 한국무역위원회와 베트남경쟁청 간의 새로운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한국과 베트남 간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에 따른 무역구제 분야 이행위원회를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협력채널을 통해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대한 양자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주재 한국기업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양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3-③] 양자협력회의 추진경과

국가	회의내용	일시	장소	비고
중 국	제1차 한·중 무역구제 협의회	2000. 3.	서울	
	제2차 한·중 무역구제 협의회 제1차 한중 산업피해조사 협의회	2001.10.	북경	MOU체결(1999.8.)
	제3차 한·중 무역구제 협의회 제2차 한중 산업피해조사 협의회	2002. 6. 2002.11.	서울 서귀포	MOU체결(2001.10.)
	제4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3.12.	북경	1차 공동세미나
	제5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5. 1.	서울	MOU체결 (2005.11.16.)
	제6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3.12.	북경	
	제1차 한중 무역구제 실무협의회	2006. 3.	북경	
	제7차 한중·무역구제 협력회의 제2차 실무협의회	2006.11.	제주	
	제8차 한중·무역구제 협력회의 제3차 실무협의회	2007.11.	북경	3차 공동세미나
	제9차 한중·무역구제 협력회의 제4차 실무협의회	2008.11..	제주	
	제10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9.11.	난닝	
	제11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10.11.	제주	
	제12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11.11.	광저우	
	제13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12.12.	제주	
	제14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14.3.	북경	
	제15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15.4.	서울	
제16차 한중·무역구제 협력회의 제1차 한중 FTA 이행위원회	2016.6.	북경		
EU	제1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3.11.	서울	
	제2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4.11.	브뤼셀	
	제3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5.12.	제주	기업간담회
	제4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7.11.	브뤼셀	
	제5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8.11.	경주	
	제6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09.12.	브뤼셀	
	제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2010.6.	서울	
	제1차 한EU FTA 협력작업반	2012.11.	브뤼셀	
	제2차 한EU FTA 협력작업반	2014.12.	서울	
	제3차 한EU FTA 협력작업반	2016.11.	브뤼셀	
제4차 한EU FTA 협력작업반	2017.7.	서울		
베트남	제1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의회	2010.4.	하노이	MOU체결(2009.10.)
	제2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의회	2011.9.	서울	
	제1차 한베트남 FTA 이행위원회	2016.7.	서울	MOU체결(2016.7.)
	제2차 한베트남 FTA 이행위원회	2017.9.	하노이	

### 3) 다자·양자 무역구제협상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WTO 정례위원회, DDA규범협상 등의 다자협상과 FTA 양자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 (1) 다자협상

무역위원회는 WTO 회원국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WTO 무역구제 분야 정례회의 등의 다자회의체에 참여하여 반덤핑제도 관련 각국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조사기법 및 관행을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정례회의에서는 ‘동종물품의 정의’, ‘신청인 자격’, ‘국내산업의 범위’, ‘재심시 덤핑 조사대상기업’ 등 무역구제 제도를 시행할 때 생겨나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무역규범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DDA규범협상에 참여하여 왔다. 반덤핑 조사의 실무경험이 있는 조사관이 반덤핑규범협상과 Technical Group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를 알림과 동시에 각 국가의 조사관행과 법령 및 규범협상 개정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무역구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우리 수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WTO와 같은 다자협력체를 통하여 무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 (2) FTA 무역구제협상

1999년 한·칠레 FTA 협상개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던 FTA협상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FTA 세이프가드(또는 양자세이프가드), 다자세이프가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효과의 극대화와 우리 제도의 선진화라는 FTA 취지에 맞추어 WTO 반덤핑협정과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보다 강화된 WTO plus조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를 통해 무역구제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각국의 자의적인 무역구제 조치 발동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 용어풀이

##### 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기존의 GATT를 흡수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1995년 발족되었으며, 2년마다 회원국 전체 각료회의를 열어 통상문제를 협의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다.

산업피해를 구제하고자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하였다. 특히 한미 FTA 외 다수의 양자 FTA 협상에서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적용배제를 협정문에 반영함으로써 FTA상 무역구제의 범위를 다자세이프가드로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하였다.

[표 1-3-④] 무역구제분야 FTA 협정별 비교

구분	한-칠레 (2004.4. 발효)	한-싱가폴 (2006.3. 발효)	한-EFTA (2006.9. 발효)	한-아세안 (2009.9. 발효)	
반덤핑/상계관세	WTO 준용	① 제로잉 금지 ② 최소부과원칙	① 최소부과원칙 ②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WTO 준용	
다자 세이프가드	WTO 준용	WTO 준용	-	WTO 준용	
양자 세이프 가드	대상	-	상 품	상 품	상 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수단	-	2+2	1+2	3+1
	조사 기간	-	1년	-	-
	재발동	-	-	최소 3년 동안 재발동 금지	WTO준용
	보상/ 보복	2008.11.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잠정 조치	2009.12.	200일 이내	200일 이내	WTO준용 (200일 이내)
	존속기 간	-	-	-	-
특별 SG	농산물	2012.11.	2012.11.	2012.11.	
무역구제 위원회	-	-	-	-	

1편 무역위원회 30년의 발자취

구분	한-인도 (2010.1. 발효)	한-EU (2011.7. 발효)	한-페루 (2011.8. 발효)	
반덤핑/상계관세	<조건부*> ① 조사개시 전 통보 ② 제로잉금지 ③ 최소부과원칙 ④ 조치종료 후 재발동 금지(1년간)	① 조사개시 전 통보/협의 ② 공익고려 ③ 재심시 미소마진 적용 ④ 최소부과원칙 ⑤ 누적평가시 주의 의무	① 최소부과원칙 ② 상계관세 조사개시전 통보 및 협의 ③ 조사개시 후 조사협력조항 (상대국에게 질의서 및 수출자/생산자 리스트 통보 등)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적용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세이프가드	대상	상 품	상 품	상 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심각한 피해·우려/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심각한 피해·우려/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심각한 피해·우려/실질적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수단	2+2	2+2	2+2
	조사 기간	1년	1년	1년
	재발동	1년	재발동 가능	최소 1년, 조치기간 만큼 재발동 금지
	보상/보복	절대적 수입증가의 경우 2+1년간 보복금지	발동 시 보상협의 *30일 이내 미합의 시 24개월간 보복면제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 보상·보복 전 서면통보
	잠정 조치	200일 이내	200일 이내	180일 이내
존속 기간	관세철폐 종료후 10년간	관세철폐 종료후 10년간	협정발효 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후 5년간	
특별 SG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무역구제 위원회	-	Working Group 형태로 운영	협력 메카니즘 설립·운영 가능	

구분	한-미국 (2012.3. 발효)	한-터키 (2013.5. 발효)	한-호주 (2014.12 발효)	한-캐나다 (2015.1. 발효)	
반덤핑/상계관세	①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② 가격인상약속/ 사전물량합의	① 조사개시 전 통보 ② 제로잉금지 ③ 최소부과원칙 ④ 재심시 미소마진 적용 ⑤ 누적평가시 주의 의무 ⑥ 재심종료후 반덤 핑조사요건강화	① 조사개시 전 통보 ② 제로잉금지 ③ 최소부과 원칙 ④ 가격약속	①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② 최소부과원칙 ③ 가격약속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적용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 과 관련 정보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세이프 가드	대상	-	상 품	상 품	상 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수단	2+1	2+1	2+1	2+2
	조사 기간	1년	1년	1년	1년
	재발동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
	보상/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30일 이내 미합의시 24개월간 보복면제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30일 이내 미합의시 24개월간 보복면제
	잠정 조치	200일 이내 조사개시 45일 후.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존속 기간	협정발효 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 동안	협정발효 후 10년	관세철폐 종료 후 5년, 관세철폐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 동안	관세철폐 종료 후 10 년, 협정 발효 후 15 년	
특별 SG	농산물,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농산물	-	
무역구제 위원회	설립·운영	-	-	설립·운영	

1편 무역위원회 30년의 발자취

구분	한-중 (2015.12. 발효)	한-뉴질랜드 (2015.12. 발효)	한-베트남 (2015.12. 발효)	한-콜롬비아 (2016.7. 발효)	
반덤핑/상계관세	① 조사개시 전 통보 ② 가격약속 ③ 현지실사 전 통보 ④ 재심종료 후 반덤핑 조사요건 강화 ⑤ 누적평가 시 주의의무 ⑥ 신규수출자 재심 시 미소마진 적용 ⑦ 이해관계자 신청 시 공청회 개최고려	① 조사개시 전 통보 ② 제로잉금지 ③ 가격약속	① 조사개시 전 통보 ② 제로잉금지 ③ 최소부과원칙 ④ 가격약속 ⑤ 누적평가 시 주의의무 ⑥ 재심종료후 반덤핑 조사 요건강화	①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② 제로잉금지 ③ 최소부과원칙	
다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 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세이프가드	대상	상 품	상 품	상 품	상 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 우려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 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 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수단	2+2	2+1	2+1	2+1
	조사 기간	1년	1년	1년	
	재발동	조치 상응기간 미경과시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보상/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30일 이내 미합의시 24개월간 보복면제
	잠정 조치	200일 이내	200일내	200일 이내 조사개시 45일 후	200일 이내
	존속 기간	협정발효 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 동안	협정발효 후 5년, 관세철폐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 동안	협정발효 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 동안 타방등의 시 존속 가능	협정발효 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 동안
특별 SG				농산물	
무역구제 위원회	설립·운영	-	설립·운영	-	

### (3) 한미 FTA 무역구제

2006년 6월에 개시된 한미FTA는 교역규모면뿐만 아니라 무역구제협상에 있어서도 다른 협상과는 다른 측면이 많았다. 다른 FTA에서는 상품분과에서 무역구제가 다루어진 반면, 한미FTA에서는 무역구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자 무역구제분과를 별도로 개설하고 외교부와 공동분과장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미국이 FTA에서 무역구제 쟁점을 반영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어 내었다.

#### 가. 협상 경과

사실 한미FTA는 협상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미수출기업이 첫 번째 수출애로사항으로 꼽는 반덤핑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쟁점을 협정문에 반영하려 했던 반면, 미국측(미국무역대표부, USTR)은 제1차협상부터 자국의 반덤핑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sup>6)</sup>

[표 1-3-⑤] 한미FTA 무역구제협상 경과

구분	일시	장소	협상내용
제1차	2006.6.5~9	美워싱턴	수석대표가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우리측 입장 표명
제2차	2006.7.10~14	서울	무역구제협상 미개최
제3차	2006.9.6~9	美시애틀	우리측 반덤핑제안, 통합협정문에 반영
제4차	2006.10.23~27	제주	우리측 반덤핑 제안사항 설명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배제 및 양자세이프가드 핵심쟁점을 제외한 분야에 대하여 부분적 합의
제5차	2006.12.4~8	美몬태나	반덤핑 5개 쟁점 반영 요구 및 협상중단 -무역구제위원회, 비합산조치, 가격약속 활성화, 사전통지 및 사전협의, 이용가능한 자료 남용방지
제6차	2007.1.15~19	서울	무역구제협상 미개최
제7차	2007.2.11~14	美워싱턴	비합산조치를 제외한 잔여쟁점에 대한 수정안 제시 양자세이프가드의 4대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안 (package deal) 제안
제8차	2007.3.8~12	서울	양자세이프가드의 존속기간/잠정조치 합의방안 모색 다자세이프가드 재량적 적용배제 합의 반덤핑분야는 수석대표간 협의
-	2007.3.19~22	美워싱턴	고위급 협상
-	2007.3.26~4.2	서울	통상장관 회의 및 협상타결
-	2007.6.30.	美워싱턴	한미 FTA 서명

6) 한미FTA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 총칙의 분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여러 차례 협상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자국의 반덤핑법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쟁점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협상단은 제5차 몬태나 빅스카이협상에서 전략상 무역구제협상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후 양자세이프가드의 핵심쟁점과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적용배제를 차례대로 협정문에 반영하는 한편, 수석대표간 협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양자세이프가드 존속기간과 잠정조치 및 반덤핑·상계관세의 사전협의조항과 가격약속 활성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를 협정문에 반영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이전 미국이 체결했던 FTA 협정에서 덤핑방지관세 관련 사항을 거의 규정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주요 체결내용

한미FTA 무역구제분야의 주요 내용은 반덤핑·상계관세의 사전통보와 사전협의조항 및 가격인상약속과 수출물량합의의 활성화,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적용배제 및 양자세이프가드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반덤핑·상계관세의 사전통보 및 사전협의를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동시에 협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조사개시 전(前)단계에서 제소요건의 적합성과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반덤핑 조사 신청과 조사개시를 견제하여 제소자의 반덤핑 제소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이 수출자가 가격인상 또는 물량합의<sup>7)</sup>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하였으나 미국의 거부로 도입이 좌절되었던 무역구제위원회가 한미FTA를 계기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① 양국 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②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 감독, ③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④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⑤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예: WTO 반덤핑 협상),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 특히, 이용가능한 사실<sup>8)</sup>과 실사절차,<sup>9)</sup> 산업보조금 관행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반덤핑 조사개시전 단계에서부터 최종판정 단계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 걸쳐 우리 수출기

7)

가격인상 또는 물량합의란 덤핑행위가 있었다는 예비공정판정이 이루어진 이후 수출자가 조사기관에게 가격인상 또는 수출물량을 제시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8)

조사기관은 피제소 수출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이 미진할 경우 입수가능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9)

실사 절차(verification procedure)는 조사기관이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접수한 이후,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검증하는 조사절차를 말한다.



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자세이프가드 발동 시,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수입점유율이 크지 않고 산업피해의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피해의 증대한 원인이 아닌 경우 미국이 발동한 다자세이프가드에서 재량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다시 인상할 수 있는 FTA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다.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로부터 45일 이후, 예비판정 전 최소 2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잠정조치를 200일 동안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에만 발동하되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은 관세철폐 종료시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치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일상품에 대한 재발동은 금지하였다.

#### (4) 한중 FTA 무역구제

우리나라의 최대수출 시장이면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그 민감도와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한국과 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에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한중 FTA 협상은 총 14차례 진행되었고, 2014년 10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15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 가. 협상 경과

한중 FTA는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단계는 각 분야별로 전체적인 협상지침을 먼저 협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2단계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협상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형식이었다.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는 1차 및 2차 협상에서 합의된 협의지침을 바탕으로 3차 협상 때부터 무역구제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중국 측은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WTO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

하려고 했으나, 우리 측은 WTO 플러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이를 최종 타결문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표 1-3-⑥] 한중FTA 무역구제협상 경과

구분	일시	장소	협상내용
제1차	2012.5.14.	중베이징	킵오프회의(Kick-off meeting) 개최
제2차	2012.7.3.~5.	제주	협상범위 및 협상지침 논의
제3차	2012.8.22.~24.	중웨이하이	무역구제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제4차	2012.10.30.~11.1.	경주	양국의 무역구제 관행 소개 추후 논의 과제 합의(WTO 플러스 요소 등)
제5차	2013.4.26.~28.	중하얼빈	우리 측이 제시한 협상지침 설명 양국의 무역구제제도 질의 및 답변
제6차	2013.7.2.~4.	부산	WTO 플러스 수준의 규정 도입에 대한 협상
제7차	2013.9.3.~5.	중웨이팡	협정문 구성, 협정 원칙, 주요요소 등에 대한 협의
제8차	2013.11.18.~22.	인천	양국 텍스트 초안에 대한 상호 견해 교환
제9차	2014.1.6.~10.	중서안	각 조항별 국내법령 및 관행에 대한 정보교환
제10차	2014.3.17.~21.	일산	우리 측과 중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문안 초안 작성
제11차	2014.5.26.~30.	중쓰촨성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논의 진행
제12차	2014.7.14.~18.	대구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상계관세 분야에 협정문에 대한 세부논의
제13차	2014.9.22.~26.	베이징	일부 사항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합의에 도달
제14차	2014.11.6.	베이징	상호간 의견조율을 통해 최종문안에 합의
-	2014.11.10.	베이징	협상타결 선언
-	2015.6.1.	서울	한중 FTA 정식서명초안 작성

나. 주요 체결내용

한중FTA 무역구제협상의 주요 내용은 제로잉<sup>10)</sup> 금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전 사전통보 및 협의기회 제공, 가격인상약속,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 신규수출자 재심시 미소마진 적용 등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10)

제로잉이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을 뜻한다.

미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 방법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함으로써 수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제로잉의 적용은 WTO 협정에 위반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로잉 관행의 방지를 위해 한중 FTA에서는 양의 값과 음의 값 모두를 개별 마진의 평균 계산에 포함한다는 문구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간 자의적인 무역구제 조치 발생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의 사전통보 및 사전협의는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 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동시에 협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조사개시 전 단계에서 제소요건의 적합성과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반덤핑 조사 신청과 조사개시를 견제하여 제소자의 반덤핑 제소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이 수출자가 가격인상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없이 조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관세납부비용을 수출자의 이윤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 5.8조에는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 이하이거나, 덤핑수입량이 일정 물량 이하일 때는 그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WTO 규정상 이러한 미소마진 규정이 어느 절차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국가에서는 미소마진 규정을 원심 절차에서만 적용할 뿐 재심 절차에서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역구제조치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중 FTA에서는 신규수출자 재심시 미소마진 적용에 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재심 과정에서도 미소마진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절차 진행을 금지하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다시 인상할 수 있는 FTA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고, 잠정조치는 예비판정을 마친 후 200일 동안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FTA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에만 발동하되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은 관세철폐 종료시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치기간은 2년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세이프가드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대한 재발동은 이전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만큼의 동일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세이프가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11) 구체적으로 덤핑마진이 수출가격 대비 2% 이하일 때, 덤핑수입량이 하나의 국가 내의 동종 상품 수입량의 3% 이하일 때 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을 금지하고 있다.

### 3. 무역구제 진흥사업

#### 1) 무역구제지원센터 및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저변을 확산하고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는 전국에 64개 무역구제지원센터(중앙 : 29개소, 지방 3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33개 무역구제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무역구제지원센터를 통해 무역구제 홍보물을 배포하여 기업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고, 무역구제지원센터에서 무역구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문강사와 강의를료를 지원함으로써 무역구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표 1-3-⑦] 무역구제지원센터 현황

구분	현황
경제단체(21개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20개소)
업종단체(11개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제지공업협회, 한국화섬협회
유관기관(1개소)	대한변리사회
계	33개소

또한, 무역구제지원센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무역위원회 설립 20년이 되는 2007년 무역구제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구제 발전에 기여한 32명에 대하여 훈장 1개, 포장 2개, 대통령표창 2개, 국무총리표창 3개, 산자부장관표창 24개 등을 수여한 바 있다.

2007년 9월에는 급증하는 위조상품 교역 및 유통행위를 최일선 산업현장에서 밀착 감시·적발하기 위해 전자산업진흥회, 의류산업협회, 시계공업협동조합 등 3곳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산업 분야별 16개 민간(공공)단체를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지적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침해혐의가 포착되면 거래기록,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거나 조사신청하며, 조사가

[표 1-3-⑥]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식재산보호원</li> <li>● 한국의류산업협회</li> <li>● 한국기계산업협동조합</li> <li>●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li> <li>● 한국기계산업진흥회</li> <li>● 대한안경사협회</li> <li>● 한국산업용재협회</li> <li>● 한국온라인쇼핑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판유리산업협회</li> <li>● 한국안구공업협동조합</li> <li>●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li> <li>● 한국베어링공업협회</li> <li>●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li> <li>● 한국무역협회</li> <li>● 한국철강협회</li> <li>●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li> </ul>
--	---

개시된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 회원기업 대상 간담회 및 조사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2) 무역구제 종합정보DB 구축·운영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포털사이트(www.ktc.go.kr)를 통해 1987년 설립 이후 수행해 온 반덤핑 157건, 세이프카드 34건, 불공정무역행위 351건, 무역피해조정 107건 등 총 649건의 무역구제 관련 조사업무와 학술정보, 수입시장동향 등 무역구제제도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관련업계 등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구제신청, 조사, 판정 등 일련의 무역구제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온라인화 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국내산업 피해예방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기능 종합형 ‘portal system’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무역구제포털사이트는 2006년 기존의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006년 2월 오픈하였고, 2007년에는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무역구제 종합정보DB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무역구제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정책용역보고서, 산업경쟁력 조사보고서, 계간 무역구제지, USITC 조사사례 등 해외자료, WTO 조문해석 등 관련 법령 등을 온라인으로 DB화하고 무역구제 운용DB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무역구제와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2015년에는 그간의 조사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공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2단계에 걸쳐 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다. 먼저 1단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사자료 126건, 575개

파일을 DB로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였고, 2단계로 1987년 설립 이후의 전체 조사자료를 DB로 구축하였다.

무역구제 종합정보DB 시스템을 포함한 무역구제 포털시스템은 대내외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무역구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관계 전문가의 학술적 연구성과 증대와 조사관들의 업무효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신청 접수부터 최종판정까지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무역구제 분야의 유일한 종합전문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3) 무역구제지 발간

무역위원회는 2001년부터 무역위원회 동향과 국내외 무역구제 관련 정보 및 학술 논문 등을 실은 무역구제지(Trade Remedy Review)를 계간으로 발간하여 대학도서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그룹과 무역구제제도 관련 기업 등에 배포함으로써 무역구제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학술적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2월 (사)국제공정무역학회가 설립되면서 무역구제지 발행업무를 학회로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무역위원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무역구제 보호(통권 제58호), 여류호(통권 제59호)를 전현직 무역위원회 위원장들의 좌담회, 기고문 등을 실은 30주년 특집호로 제작·발간하였다.

### 4)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및 모의재판 경연대회

무역위원회는 대학(원)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부터는 무역구제 전문기관인 국제공정무역학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2017년 18회째를 맞은 무역구제제도 논문대회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무역구제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21개 팀(대학원부 6팀, 대학생부 15팀)이 참가하여 예선심사를 거친 6개의 우수논

문을 선정하고 팀별 논문발표와 토론내용을 평가하여 우수논문을 선정, 산업자원부장관상 등을 수여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 가상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등 대회는 2017년 1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 중 하나의 사례를 발굴하여 실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현실성 있고 생동감 있게 연출한 우수한 팀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국 8개 대학에서 8개 팀(164명)이 참가하였고, 영남대가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5) 다각적 홍보·교육활동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시책설명회, CEO 등에 대한 특강,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타겟 홍보활동을 직접 전개하였고, 간접적으로는 브로슈어, 리플렛, 홍보만화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무역구제지원센터, 전시장에 배포하는 한편 지하철 역내 또는 산업단지 주변 옥외에 무역구제제도 홍보 전광판 설치 및 버스광고, 라디오 및 공중파 방송을 통한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는 등 기업 및 국민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영상물 제공, 영문포털 개설, 정책고객에게 무역구제정책 동향 등을 담은 뉴스레터 발송, 웹툰 제작 등을 통해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조사결과 제도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피해판정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4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무역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청기업의 피해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7월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동 피해심의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 1) 무역조정지원제도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 혹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2007년 4월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의하여 무역조정기업 지정 시 기업의 피해여부 및 인과관계를 무역위원회가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6일 동법이 개정되어 무역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동 개정 법률안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6년 7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무역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7개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의 피해심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기업 중 87개 기업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 2) 기업 지원

기업 지원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인력·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설비투자자금 등의 융자지원, 회계·법률·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상담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원요건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야 하며,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하여야 한다.



[그림 1-3-①] 무역조정기업 지원 절차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와 이에 대한 첨부서류(무역피해 입증서류 및 무역조정계획 관련서류)를 산자부 장관, 구체적으로는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사전적인 진단을 통해 타당성 있는 무역조정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

무역위원회가 FTA로 인한 수입급증 등 피해사실과 피해 인과관계를 심의·판정하고, 피해사실이 입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평가위원회가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모두 긍정판정 시, 산업자원부에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게 된다.

### 3)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

무역위원회는 체계적인 무역피해 조사와 심의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 조사과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2007년 무역위 고시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및 무역위원회 예규인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 실무지침'을 제정하였으나,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심의업무가 폐지됨으로써 2017년 7월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전부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 지원 내용, 무역피해 조사의 실시 근거 및 방식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였다.

#### (1) 심의기준

무역위원회가 심의한 피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업의 6개월 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 이상<sup>12)</sup> 감소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12)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제정 당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경우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12.6.29.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10%를 피해기준으로 완화하였다.

② FTA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이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피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2) 무역피해 조사 절차

가. 조사개시여부 결정 및 계획 수립

기업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무역조사실장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 구비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검토 후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조사관은 조사단 구성·운영계획 및 조사활동 예정사항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기업의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 관계회사 등 조사관련 사항이 복잡하거나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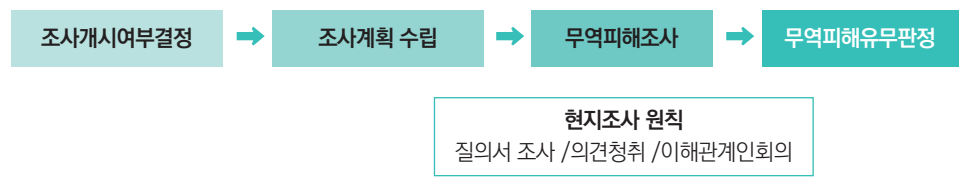
나. 무역피해 조사

무역피해의 조사는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의서 조사(자료제출 요청 포함)·의견청취·이해관계인 회의 개최를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심의할 수 있다.

다. 무역피해심의

무역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기 힘든 경우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무역피해 유무를 심의하면 조사결과 의 요지, 심의내용 및 그 이유 등을 포함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체 소요 기간은 2개월이며, 이 중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이다.

[그림 1-3-②] 무역피해 조사 절차



## 4) 신청 및 조치현황

2007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무역위원회는 총 107개 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신청에 대해 무역피해 심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87개 업체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표 1-3-⑨] 무역피해 조사 신청 및 조치 현황

구분	계				일반제조업				농수산물가공업				서비스업			
	신청	판정			신청	판정			신청	판정			신청	판정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2007	-	-	-	-	-	-	-	-	-	-	-	-	-	-	-	-
2008	3	2	1	-	1	-	1	-	2	2	-	-	-	-	-	-
2009	3	3	-	-	1	1	-	-	2	2	-	-	-	-	-	-
2010	2	2	-	-	1	1	-	-	1	1	-	-	-	-	-	-
2011	-	-	-	-	-	-	-	-	-	-	-	-	-	-	-	-
2012	13	8	2	3	8	5	1	2	5	3	1	1	-	-	-	-
2013	31	24	4	3	18	11	4	3	13	13	-	-	-	-	-	-
2014	28	26	1	1	25	22	1	2	3	3	-	-	-	-	-	-
2015	22	17	1	4	20	16	1	3	2	1		1				
2016.6	5	5	-	-	5	5										
계	107	87	9	11	79	61	8	10	28	25	1	2	0	0	0	0

## 4절 무역위원회 발전 방향 및 전략

대외무역법의 제정에 따라 1987년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는바,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개방화·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설립 30주년을 맞은 무역위원회가 그간의 결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가 처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비전을 정립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대내외 환경과 전망

1947년 GATT 체제의 정신을 이어받은 WTO체제가 1995년 출범함으로써 세계 자유무역의 정신과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WTO체제의 출범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고 이를 감시하는 강력한 국제기구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WTO에서는 상품교역 분야에서 관세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는 한편, 섬유교역규제, 농산물교역의 예외적용, 수출자유규제 등 GATT체제 하에서 용인되어 온 보호무역조치들을 일체 금지하였으며,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는 등 이전의 GATT 체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국제교역에 관한 UN’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WTO는 이러한 자유무역 움직임의 확산과 함께 무역의 공정한 경쟁 룰을 도입하기 위해 선언적인 수준의 GATT의 덤핑 및 보조금,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규정들을 보다 체계화된 규범의 틀로 발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1987년 무역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WTO의 규정과 틀에 맞춰 무역구제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 왔다.

이후 15년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무역은 크게 확대되었고 세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고무된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세계 교역의 흐름을 보다 증가시키고 서비스, 지재권, 환경, 노동, 경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의 료를 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1년 도하 각료회의 선언을 계기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여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싱가포르 이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무역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한 DDA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이후 2015년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주요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역구제분야에 있어서도 2007년 WTO 규범협정 개정 초안 및 2008년 의장의 수정안이 회람된 이후 전체 DDA 협상이 정체됨에 따라 규범협상 논의도 정체된 상태이다.

## 용어풀이

### 신보호무역주의

(New Protectionism)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위기,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오일 쇼크 등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무역과 외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화하는 경향을 일컬음. 특히 1988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종합무역법안은 대표적인 사례. 주로 선진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진국의 보호무역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별

최근 트럼프 정부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 브렉시트 등 **신보호무역주의**가 목소리를 얻으면서 WTO DDA 협상의 타결과 비준은 당분간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WTO가 표방하는 ‘시장개방의 확대’ 및 ‘다자체제의 강화’라는 목표의 진전에도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WTO를 기초로 하는 다자간 체제는 전 세계 150개국을 넘는 회원국들(2017년 7월 현재 164개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상의 타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무역이나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 혹은 교역상대국 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다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개의 국가나 혹은 역내 복수의 국가들 간에 별도의 경제무역협정을 맺어서 무역이나 투자 등의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왔는데, 이러한 양자주의 내지 지역주의의 추세는 EU로 대표되는 유럽이나 NAFTA로 대표되는 미주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남미나 동아시아 등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EU·미국·중국 등 52개 국가와 16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최근 한-중미 FTA를 타결한 데 이어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중-일 FTA,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복수국가 간 FTA 협상에 참여 중이다. 이와 같은 FTA는 자유무역의 이념을 전제로 이를 당사국 간에 상품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자국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게는 회복

## 용어풀이

### 역내 포괄적 경제

### 동반자 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 한중일 3개국 +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가국이며, 16개 회원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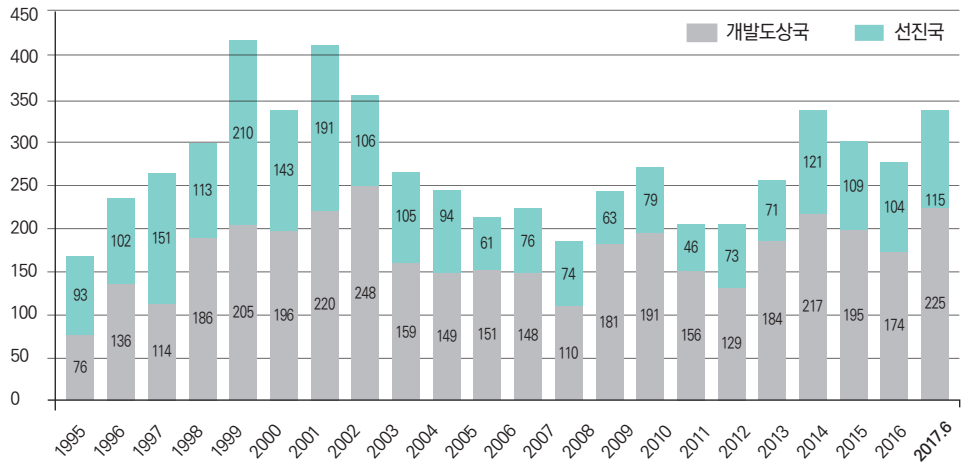
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지금까지 GATT, WTO 체제에의 편입과 주요국과의 주도적인 FTA 체결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혀 온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8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수입 규모도 5천억 불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수입 확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또한 불공정한 수입 확대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무역구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한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구제하고, FTA 체결로 인한 개방 확대로 타격을 받는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들이 구조조정을 거쳐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의 파고 속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WTO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국내산업 보호수단인 무역구제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강·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기초에 있는 업종에서 해외 경쟁기업의 덤핑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의 경우 동 분야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반덤핑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덤핑 조사개시 및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수의 우리 수출제품도 해당 반덤핑 조치의 규제를 받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 분야에서 해외 저가 물품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수입 관련 산업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약탈적’ 덤핑은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의 회복이 지연되고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 무역구제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총 340건으로 2015년 대비 62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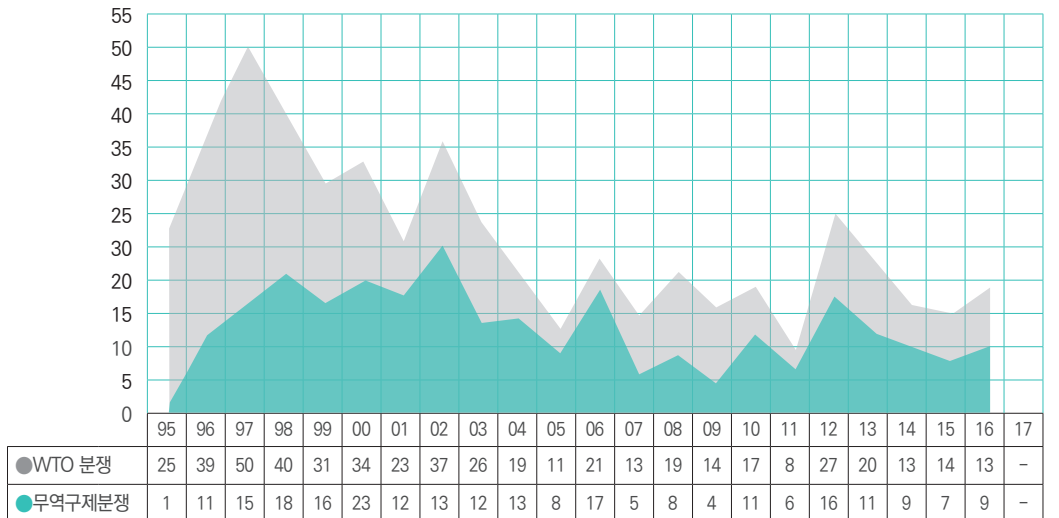
[그림 1-4-①] 전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추이



\* 출처: WTO 비관세장벽 I-TIP Goods 사이트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면서 무역구제조치 관련 WTO 분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한 전체 분쟁 중 무역구제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4-②] WTO 연도별 무역구제 분쟁 추이



\* 출처: WTO 웹사이트 기준으로 작성

또한,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의 영향으로 향후 이른바 ‘신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들어 지식재산권 침해 등 혐의로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철강 등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및 규제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해외 수출시장에서 수입규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국내 수입시장에서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무역위원회가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과 소명을 다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용어풀이

**브렉시트 (Brexit)**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되었으며,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 영국 국민의 51.9%가 탈퇴를 찬성하여 현재 탈퇴 절차가 진행 중임

용어풀이

**슈퍼 301조 (Super 301)**

불공정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서 일반 301조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인정된 절차.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개방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88년 중합통상법에 의해 도입

2. 무역위원회의 비전

무역위원회는 지금까지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조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통상환경 아래에서도 무역위원회의 역할 및 중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T 및 WTO체제에 편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확대와 함께 우리의 국내 수입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 주요 업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각국 기업과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덤핑 등 불공정무역이 확대될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후발 개발국으로부터는 물론, 국내산업의 성장 및 진입을 견제하려는 선진국으로부터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역위원회가 추구할 목표 및 비전은 우선, WTO 등 국제 법·규범에 일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무역구제의 국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역 1조 불을 달성한 무역 강국의 무역구제기관으로서 새로운 통상 및 산업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무역구제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무역구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무역구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WTO체제가 인정하는 시장개방에 대한 유일한 안전판이자 최후의 보루로 무역위원회가 위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개방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경제가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향후 무역위원회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무역위원회의 발전 방향 및 전략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위원회는 급변하는 무역 및 통상 환경 속에서 WTO 협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한 조사 및 판정으로 무역구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진 무역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산업을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한 유일한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업무추진 역량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1)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시스템 구축

먼저 무역위원회가 무역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무역위원회가 내리는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역구제절차에 참여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구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모든 사건에 대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무역구제 조사 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조사기관의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도 기울이는데, 이는 판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복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무역구제 신청과 접수, 처리 과정과 함께 무역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판정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도 무역위원회 업무흐름의 투명성과 최종판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무역구제 운영과 관련하여 WTO 협정의 기본틀 하에서 최근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격약속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안에 대한 절차적인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덤핑 조사 세부운영규정 개정과 현지실사 관련 운영매뉴얼 마련과 공개를 통한 피조사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술 발달 및 다양한 신제품의 등장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제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러한 기업의 잠재적인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산되어 있는 관련 법령 체계의 통합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령 체계는 불공정무역조사법과 관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미 덤핑과 보조금 조사업무가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관련 법령 체계가 불공정무역조사법령으로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또, 덤핑 및 보조금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 및 운영 기준 등을 여전히 관세법령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구제의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저해하여 무역구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신청을 꺼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담당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법령의 개정 등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의 요건과 절차는 불공정무역조사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한 최종 판정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무역위원회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감안하여 순수한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 면에서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2) 업무의 전문성 강화

앞으로 무역위원회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된 통상 및 산업 환경에 맞춰 확대하는 한편, 무역조사실의 인적 구성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무역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역조사실의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신산업 및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순환보직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복무 유도를 통해 조사관들의 전문성이 배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입시장 규모 확대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기업의 무역구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현재의 비상임위원체제에서 상임위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주심제도와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비상임위원 체제가 갖는 한계를 일정 정도 보완·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과 교역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무역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EU 등 선진국 정부는 매년 해외 주요국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 및 법·제도와 함께 이의 WTO 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수입 규모에 있어 2016년 기준 세계 10위 수준인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보조금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 다양하게 변모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의 방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 무역위원회의 조사업무가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분야에서 덤핑이라는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통해,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외국기업의 교역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반덤핑 조사’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새로운 산업 유형의 등장과 교역 패턴의 변화는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내에 보조금 조사를 위한 소관 부서를 신설하고 지재권 침해 관련 부서를 확대·보강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산업경쟁력 조사’ 기능도 무역위원회가 앞으로 그 역량을 보강해야 할 분야이다. 무역구제기관의 산업피해 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밀한 산업경쟁력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전환기에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산업분석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역위원회 내에 산업경쟁력 조사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보강이 요청된다.

수출을 통해 성장한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해온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조사의 적극적인 운영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입물품의 유형도 단순한 생활물품과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품 등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도 WTO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한다.

### 3)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접근성 제고

무역구제는 일반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다. 무역위원회가 그 위상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무역구제 조사 신청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현재 경제·업종단체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역구제지원센터’ 및 ‘불공정무역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해외기업과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구제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잠재적인 무역구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무역구제 조사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무역구제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무역구제를 신청할 때 법률적, 회계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참고 : 국가별 비교현황

## 1. 국가별 조직 현황

구분	미국	캐나다	EU	중국	한국
기구	국제무역위원회 (USITC)	국제무역재판소 (CITT)	집행위 통상총국 (H국)	상무부 무역구제 조사국	무역위원회 (KTC)
성격	독립기구	독립기구	행정조직	행정조직	행정조직
위원	6명(전원상임)	7명(전원상임)	28명(전원상임)	-	9명(상임1)
조사 인력	400여명 *상무부 덤핑 조사 인력 130명 별도	90명 *관세청 덤핑 조사 인력 50명 별도	120명	105명	45명
기능	AD, CVD, SG 조사 불공정무역 조사	AD, CVD, SG 조사	AD, CVD, SG 조사	AD, CVD, SG 조사	AD, CVD, SG 조사 불공정무역조사
조사개시	813건	270건	575건	288건	139건
무역규모 (2016년)	3.7조\$	0.8조\$	3.68조\$	3.68조\$	0.9조\$

\* 조사개시 : WTO통계 1995년~2016년(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2. 지재권 조사 비교현황

구분	미국	한국
대상	침해물품의 수입 또는 수입판매행위	침해물품의 수출입 또는 수출목적 제조행위
절차 및 근거	조사개시, 잠정·최종결정, 대통령검토 등 (관세법 제337조)	조사개시, 잠정·최종판정, 시정조치 등 (불공정무역조사법)
구제조치	동종물품의 수입금지 등 강력한 대물적 조치 포함	해당물품 등의 수출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
조직 및 운용	2개과(22명)에서 전담 외국생산자까지 조사	1개과(10명) 주로 생산자, 수출입자 등 국내업체 조사

## 3. 산업경쟁력 조사 비교현황

구분	미국	한국
연구주체	ITC 자체직원	외부 용역기관
연구과제 선정	대통령·의회에서 선정(요청조사의 경우)	무역위원회가 선정
주요 조사방법	공청회, 서베이, 국내외 현지조사 등	서베이, 국내외 현지조사 등
연구담당인력	ITC 인력의 45%(170명) 수준	별도의 전담인력 없음



## 2장 자유무역과 무역구제제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과거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 및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존속가능하며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

(마라케쉬협정 서문)

### 1절 GATT체제 하의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Trade Remedy)제도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국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등이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불공정무역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고 치유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자유무역을 전제로 도입되고 발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47년 제정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 GATT)은 1995년 WTO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해 온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특히,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동협정은 제6조, 16조와 23조, 19조에 각각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역구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GATT의 무역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협정이 마련되었으며,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즉, ‘반덤핑협정(Agreement on Antidumping)’과 ‘GATT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XVI and XXIII of the GATT)’ 즉,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Agreement on Subsidy and Countervailing Duty)’ 및 세이프가드를 규정한 ‘세이프가드협정(Agreement on Safeguard)’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구체적 협정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중요한 국제법상의 법원(法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

회차	연도	명칭	농수산물가공업	비고
6차	1964~1967	케네디라운드 (Kennedy Round)	반덤핑협정 제정	-
7차	1973~1979	도쿄라운드 (Tokyo Round)	반덤핑협정 1차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정	
8차	1986~1994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반덤핑협정 2차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개정 세이프가드협정 제정	세계무역기구 (WTO)설립

13)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질서를 규율하고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ITO 설립시까지 임시로 운영되어오 GATT체제가 지속하게 되었다.

14) GATT 제6조 제①항 계약당사자들은 덤핑, 즉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이 계약당사자 영토내의 기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이러한 덤핑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하 생략)  
②항 계약당사자는 덤핑을 상쇄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된 상품에 대하여 동 상품의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만큼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덤핑마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이다.

## 1. 덤핑방지관세제도의 도입과정

덤핑방지관세는 산업혁명의 결과로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과잉생산된 자국상품의 처리를 위한 덤핑이 만연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1900년대 초에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이 국내법으로 도입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33년 세계경제회의(World Economic Conference)에서이며, 이 회의에서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상대국 시장에 저가로 덤핑수출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1946년 국제무역기구(ITO)<sup>13)</sup> 설립 및 GATT 체결과정에 참고가 되었는데, 미국은 국내 반덤핑법의 입법내용을 ITO현장(하바나현장) 초안에 상당히 반영하였으며, 협상에 참여한 대다수 국가들은 덤핑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므로 비록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에는 실패하였으나 마침내 GATT 제6조의 덤핑방지관세 규정으로 도입되었다.<sup>14)</sup>



그러나 GATT 제6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대한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자국의 반덤핑법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GATT 제6조의 규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덤핑 조치가 보호무역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협정을 제정하려는 협상이 1964년 케네디 라운드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67년에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즉, 반덤핑협정이 제정되어 1968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로써 덤핑방지관세부과와 관련된 실제적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집행규범이 비로소 마련되었다.

그러나 1967년 반덤핑협정은 덤핑행위와 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함으로써 적지 않은 현실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협정의 기준이 자국의 반덤핑법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이를 국내법화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부터 시작된 도쿄라운드에서는 EU 등의 주도로 반덤핑협정의 개정이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었으며 1979년에 반덤핑협정이 개정되었다.

도쿄라운드에서의 주된 개정사항은 인과관계와 피해판정에 관한 것이었다. '덤핑이 명백하고 중요한 원인이어야 한다'는 종전의 협정규정을 '다른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피해를 덤핑수입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다. 나아가 피해판정과 관련해서는 덤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명시하고, 가격약속의 수락에 관한 규칙을 확대하였으며, 조사절차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종결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1979년 반덤핑협정은 1980년 1월부터 발효되어 1994년 말까지 적용되었다.

1979년 반덤핑협정은 1967년 반덤핑협정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조사개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 조사절차 등에서 용어의 모호성과 재량의 여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각국의 반덤핑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관행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를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운영함에 따라 우루과이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는 다시 한번 주된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 2. 상계관세제도의 도입과정

상계관세제도는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1894년 Wilson법에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도 자국의 국내법에 이를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상계관세제도는 주로 미국이 사용하였을 뿐, 다른 국가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발동을 꺼려왔다.

상계관세제도에 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1945년 미국이 제안한 ITO헌장 초안에서 수출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들과 1차 생산품 생산국(호주 등)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조금의 정의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단순히 보조금 통보의무만을 GATT 제16조에 규정하고 상계관세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을 GATT 제6조 제3항에 도입하는 데 그쳤다.<sup>15)</sup>

이처럼 상계관세제도도 덤핑방지관세제도와 마찬가지로 GATT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지만, 도쿄라운드 결과 1979년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각국의 상계관세법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미국의 상계관세제도로서 미국은 1979년 통상관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상계관세 부과시 피해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있었다. ‘GATT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의 규정에 의해 ‘현존하는 법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는 GATT상의 의무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와 같은 미국의 제도는 사실상 GATT 제6조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므로 피조치국으로부터 큰 불만을 야기시켰다.

15) GATT 제6조 제3항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는, 특정상품의 운송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포함하여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동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결정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추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여 어떠한 상계관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상계관세’라는 용어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보조금(subsidy)’의 정의에 대하여도 전문가그룹 등을 중심으로 GATT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다만, 케네디라운드에서 반덤핑협정과 유사한 국제협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합의에 따라 1967년 12월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상계관세협정의 마련에 적극적인 EU와 보조금 및 상계관세를 일괄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진 못하였다.

도쿄라운드에서도 상계관세협상은 미국의 상계관세법에 피해요건을 도입하는 데에 중점을 둔 일본·EU 등과 보조금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 및 미국과 EU간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취급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교섭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1978년 4월 이후 주요 선진국에 의한 비공식협약이 빈번히 행하여지고 개도국을 포함한 미국, EU 등 주요국간 비공식협약을 통해 의견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12월에는 새로운 협정안이 작성되었으며, 그 후 1979년 3월 마침내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이 제정되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협정은 반덤핑협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상계관세 발동요건인 보조금, 피해 및 인과관계의 존재, 신청요건, 조사개시요건, 조사방법 및 절차, 잠정조치 및 관세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79년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GATT 제6조 상계관세와 제16조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보조금 지급대상의 특정성(specificity), 보조금의 산정 및 피해조사 등에 있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재량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국가와 피조치국가간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반덤핑협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개정논의도 1979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협상의제가 되었다.

16)

GATT 제19조는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동요건, 조치내용, 협의 절차, 보상협의 및 보복조치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①항 (a)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결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동 체결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체결당사자는 동 상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동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이하생략)

### 3. 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과정

미국은 1942년에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협정에 따른 양허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회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면책조항(escape clause)을 도입하였다. 이후 미국은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947년 2월 GATT예비회담 중에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에 면책조항을 두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세이프가드는 바로 미국의 면책조항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GATT에 있어서 면책조항은 1946년 미국이 제안한 ITO현장 초안에서부터 미국의 양자협정과 비슷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특히, 1946년 런던회의에서 면책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47년 초 뉴욕회의에서 면책조항을 두기로 결정하고, ITO현장 초안의 면책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GATT 제19조에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를 규정함으로써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sup>16)</sup>

그러나 GATT 제19조가 규정하는 긴급조치의 발동요건과 구제조치는 추상적이었으며, 단지 1개의 조문형식으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회원국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내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동국가와 피발동국 간에 이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리하여 도쿄라운드에서는 면책조항의 신속한 발동과 남용방지라는 모순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반덤핑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제정하고자 협상을 전개하였다. 특정국가에 대한 선별적 적용문제,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 회색지대 철폐, 조사개시절차 및 피해 등 발동요건, 조치기간 및 범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미국, EC, 호주 등 선진국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수출국 및 개도국 입장이 맞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향후 협상에서 계속하기로 하는 정도에서 그침에 따라 세이프가드협정의 제정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2절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무역구제제도

### 1.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출범

GATT체제 하에서의 8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당초 예정된 시한을 넘기면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듭하였으며 마침내 1994년 모로코의 항구도시 마라케쉬에서 체결된 협정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이름그대로 출범(出帆)하였다.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 달리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농산물 및 섬유류에 대한 교역은 물론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 만들어진 WTO체제는 GATT체제가 지향하였던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확대시키고 이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서 양적인 차원을 넘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의미하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ATT는 다자간협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초를 가지지 못하였던 반면, WTO는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존재하면서 업무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과 직원을 갖고 있으며, WTO협정과 협정에 부속된 관련 업무를 집행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의무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GATT규정은 상품교역에 한정되었으나 WTO규정은 상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수량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화를 추구하여 잔존 수량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폐함과 동시에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셋째,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고, 패널보고서가 총의에 따라 거부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함과 동시에,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결정에 대한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다.

## 2. WTO체제 하의 무역구제제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그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사항과 새로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세이프가드협정 또한 새로이 제정되었거니와, GATT와 GATT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들 협정들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부속됨으로써 WTO협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먼저 반덤핑협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덤핑마진 산정 시 구성가격 산정기준과 비교기준을 명료화하고 피해판정시 누적적 평가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사신청요건과 조사개시절차를 구체화하고 그밖에 관세환급규정과 일몰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료화하고, 보조금의 특징으로 특정성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왜곡효과가 없는 국내보조금에 대한 수입국의 자의적인 규제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지보조금의 대상으로 수출보조금 외 수입대체 국내보조금을 포함하고 수출보조금도 1차 생산품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허용보조금으로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을 규정하여 이를 구체화 하였다. 나아가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개념을 도입하여 상계관세법으로 다루기 힘든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기준을 정립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WTO출범과 동시에 제정된 세이프가드협정은 종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GATT 제19조의 적용에 있어서의 선별적 적용 가능성 여부, 회색지대 조치의 철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의 개념, 조사개시 통보 및 협의,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조치기간 장기화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동 협정은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 3. DDA협상

UR협상타결 당시의 합의에 따라 2000년부터 기설정 의제인 농업과 서비스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일부

## 용어풀이

## DDA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UR라운드 이후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무역 자유화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협상만 이루어질 경우 잃기만 하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자유화 추진시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2001년 11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진 포괄적 협상을 출범시키는 각료선언문<sup>17)</sup>을 채택함으로써 DDA협상(Doha Development Agenda)이 개시되었다.

DDA협상의 의제로 무역구제가 포함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미국은 반덤핑협정 개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관계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때까지도 반덤핑을 협상의제로 채택하는 데에 반대해 왔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협상을 각료선언문에 별도로 언급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결국, 도하각료선언문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협정 등 3개 분야를 협상의제로 포함하여 현행 WTO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되, 초기에는 현행 협정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후속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명료화 및 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셰이프가드협정이 협상의제로 거론되지도 않고 DDA출범 과정에서도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미국이 셰이프가드와 관련한 WTO분쟁에서 연이어 패소함에 따라 셰이프가드가 미국 내에서 민감한 문제가 되었고 수출국들도 미국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이슈화하는 것을 자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제된 것으로 추측된다.

17)

DDA협상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mandate)을 정한 도하각료선언문은 각 협상의 목표와 협상일정, 협상진행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일괄타결의 원칙(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하고, DDA협상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 아래 8개의 협상그룹(무역구제분야는 규범협상그룹에서 다룸)이 설치되었으며, 전체협상은 2004년 말 제5차 칸쿤 각료회의까지로 시한을 정하였다.

18)

프렌즈그룹(Friends group on Anti-dumping Negotiation)은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터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에서 그 구성원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DDA에서의 반덤핑협상 논의의 흐름은 크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으로 구성된 프렌즈그룹<sup>18)</sup>, 미국, EU·호주·캐나다, 인도·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의 4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렌즈그룹은 반덤핑 조치의 확산은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효과를 반감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반덤핑 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반덤핑 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협정의 실질적 개정에 소극적이고 주로 절차적 문제의 개선(조사 절차의 공개, 적법 절차, 절차의 투명성 등)과 우회덤핑방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EU나 캐나다 등은 프렌즈그룹과 미국의 중간적 입장으로서 프렌즈그룹이 제시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에 다소 긍정적이며 이와 유사한 방향의 제안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제안하는 무역왜곡 관행에 대한 규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보며 기본적으로 반덤핑제도의 약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인도,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표 2-2-①] DDA 반덤핑협상에서의 주요국 입장

국가	농수산물가공업	비고
프렌즈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덤핑 조치의 오남용방지</li> <li>피제소자의 과도한 부담경감</li> <li>절차적 투명성 개선과 예측가능성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로잉 금지</li> <li>최소부과원칙 의무화</li> <li>공익고려절차 의무화</li> <li>조사개시요건 강화</li> <li>일몰재심 기준강화, 5년일몰강화</li> <li>재심시 원심기준 적용</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효과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정추진</li> <li>절차적 투명성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차적 사항 개선(조사절차공개)</li> <li>우회덤핑방지</li> </ul>
EU, 호주,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렌즈그룹 제안 중 일부에는 찬성하나</li> <li>원칙적으로 반덤핑제도 약화에 반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로잉 금지</li> <li>공익고려절차 의무화</li> </ul>
이집트, 인도,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제도의 손상에 반대</li> <li>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설립의 실질적 지연</li> </ul>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야는 반덤핑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나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 보조금 등 현행 협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과 관련한 제안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1조는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명시된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치국가가 부정적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WTO협정의 발효후 5년간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로 그 효력이 종료되었다

예컨대 미국은 무역왜곡적 관행으로서의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지 보조금의 확대, 간접보조금에 대한 규제, 정부의 투자규제 등을 제안하였으며, EU는 보조금협정 전반, 특히 위장보조금(disguised subsidies), 국가통제기관(state-controlled entities) 등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개도국 중 브라질은 수출 신용과 관련한 개도국 특별대우와 상계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준 강화를, 인도와 이집트는 특혜조항의 개정과 강화를 제의한바 있으며, 베네수엘라, 필리핀 등은 경제개발 목적의 허용보조금의 재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이에 부정적이며 심각한 손상(serious injury)의 추정<sup>19)</sup> 재도입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으로 개도국의 보조금 관행을 견제할 필요성에 따라 개발 목적의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에는 선진국과 함께 유보적인 한편, 상계관세조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반덤핑협정과 비슷한 방향으로 관련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DDA는 개발도상국 내지 저개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그 명칭에 ‘Development’를 포함하였음은 물론, 대립적 의미가 있는 roun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명명자의 이 같은 배려 내지 희망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협상은 중단과 개시를 반복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회전’하여 왔다.

협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이후 2004년 8월 DDA 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12월 제6차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시한을 2006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각료선언문 부속서에서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개정은 “2006년 중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른 시기에 다른 협상의 진전을 고려하여 의장이 협상의 기초가 될 종합적인 협정 개정 초안을 작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협상 중단이 선언되기도 하였다. 이후 2007년 11월 30일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에 대한 의장통합초안(Consolidated Chair Texts of AD and SCM Agreements)’<sup>20)</sup>, 2008년 5월 28일 ‘의장 작업문서’<sup>21)</sup>, 2008년 12월 19일 ‘의장통합초안’, 2011년 4월 21일 협상상황을 반영한 ‘통합초안’<sup>22)</sup> 등이 회람된 바 있다. 그러나 DDA 협상 12년만의 성과를 담은 ‘발리패키지(Bali Package)’에 무역구제분야의 성과는 포함되지 못하였고, 2015년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도 두 개의 협상안의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노력이 있었으나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 WTO, TN/RL/W/213.

21) WTO, TN/RL/W/236.

22) WTO, TN/RL/W/254.

### 3절 지역무역협정과 무역구제제도

#### 1. 다자체제의 예외로서의 지역무역협정

국제무역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은 지속 확산되고 있으며, 더 복잡해지고 있다. 2017년 6월 20일 현재 164개 WTO 회원국 간 279개 지역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이 중 약 90%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 7월 현재 15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1건이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협정 등 4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WTO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 WTO 회원국 간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국 간 무역특혜가 허용된다. GATT 제24조 제8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은 해당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는 회원국 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상규정(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폐되어야 하는 제한적인 상규정으로는 GATT 제11조(수량적 제한 금지), 제20조(일반적 예외)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시된 상규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학자들 간 논쟁이 있어 왔다. 특히, 반덤핑 조치와 상계조치에 관한 GATT 제6조와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제19조가 제한적인 상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구제 규정이 철폐되어야 하는 제한적인 상규정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즉, 명시된 목록이 단지 예시적인 것이므로 GATT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규정도 FTA 체결국 간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반면, 만약 무역구제조치를 철폐하고자 하였다면 협상가들은 명시적으로 이를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FTA가 체결국 간 무역구제 조치를 철폐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GATT 제24조에 합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FTA는 체결국 간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조치의 적용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FTA 체결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2. 지역무역협정에서의 무역구제제도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은 무역구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단순히 WTO 협정상의 무역구제에 대한 권리를 반복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 간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철폐하거나 WTO 협정의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추가하기도 한다.

###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경우 지역무역협정 체결국 간 그 자체를 철폐하기로 규정하거나 일부 지역무역협정은 반덤핑 조치의 부과를 철폐하는데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기도 한다. 또한, 경쟁 및 공공지원과 관련한 법이 폐지될 때까지 상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한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동위원회에서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30~45일) 동안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체결국은 동 조치를 지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위원회의 대부분은 체결국 출신의 동수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으나, 공동위원회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회부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관련 분쟁의 경우 상계관세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무역협정은 반덤핑 조사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전 협의하는 요건을 규정하기도 한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상계조치를 적용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WTO 규정을 수정하는 경우는 없으나 일부 협정에서는 반덤핑 규정을 수정하기도 한다. 반덤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정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소위 WTO plus 추가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서 2%의 무시할만한 수입량의 기준을 5%로 확대
- 최소허용(de minimis) 덤핑마진 기준을 2%에서 5%로 증가
-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음수의 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관행(제로잉)을 금지
- 덤핑마진보다 낮은 마진으로도 피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 경우 더 낮은 마진을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의 사용
- 반덤핑협정 제14조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제3국 덤핑규정의 적용을 금지
- 덤핑결정 시 공익을 고려

일부 지역무역협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협정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서 제19장은 각 체결국의 정상적인 사법절차와 다른 각 국가의 조사당국이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결정에 대한 검토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제19장의 검토절차는 NAFTA 패널의 결정이 국내 사법 법원의 결정처럼 행정당국에 대하여 집행가능하다. 캐나다와 칠레의 FTA는 WTO 분쟁절차와 유사하지만 간소하고 신속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의 검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칠레로 한정된 반덤핑 및 상계조치 분쟁의 경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FT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패널이 행정당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위반결정 시 행정당국은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세이프가드 제도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세이프가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역무역협정 체결국 간 적용되는 양자 또는 지역 간 세이프가드이고 다른 하나는 WTO 세이프가드를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간 면제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다자 세이프가드(global safeguard)이다. 다자 세이프가드 제도의 경우 대체로 WTO 세이프가드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양자/지역 간 세이프가드 제도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자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권리 의무를 체결국들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몇몇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기도 한다. 다른 무역구제분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자간 세이프가드 절차는 조치를 채택하기 이전에 공동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이 실질적 이익(substantial interests)이 있는 수출국가인 경우 추가적인 협의 기회를 허용하기도 한다.

유일하게 GATT 규정과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은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세이프가드 절차과정에서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간 서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면제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NAFTA를 비롯한 미국의 몇몇 협정의 경우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위협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와 한-인도 FTA에서 WTO 세이프가드 면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면제를 규정한 NAFTA와 달리 우리나라

가 체결한 FTA에서의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면제는 재량적인 면제로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닐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는 거의 모든 지역무역협정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로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국 간 무역에만 적용된다. 즉,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로 인한 관세 철폐로 인해 당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WTO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달리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인상만이 가능하며, 관세인상의 상한선도 최혜국관세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FTA 발효 직전 시점의 최혜국관세 수준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시점의 최혜국 관세 중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일반적인 양자 세이프가드와 품목특정 세이프가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 양자 세이프가드는 전 품목에 적용되는 반면, 품목 특정 세이프가드는 섬유나, 농업, 자동차의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발동기준, 발동기간, 회수 등은 협정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FTA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절차는 대부분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절차를 원용하고 있다. 조사개시 후 1년 내에 조사를 종결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의 검토 요건 등에 대하여도 WTO 협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되는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200일간 부과된다.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내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 이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회원국 간 합의가 없는 한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 3. 메가 FTA

DDA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WTO가 국제통상체제의 중심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현상이 무역에 관한 거버넌스를 파편화하고 거래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갖는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지만,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세계 무역을 촉진하고 다자적 거버넌스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지역주의의 다자화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어 왔다. 즉,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각 블록(bloc)이 달성하는 자유화의 수준과 규범의 조화가 다자간 통상체제의 협상으로 수렴되거나 그러한 협상을 원활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메가-FTA의 협상으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메가 FTA는 거대경제권 또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2010년 3월 협상 개시, 2015년 10월 타결],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Investment Partnership: TTIP)’ [2013년 7월 협상 개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2013년 5월 협상 개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등이 그 예이다. TPP(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총 12개국), RCEP(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하는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및 TTIP(미국, EU 등 총 29개국)는 각각 세계 GDP의 38%, 29%, 46%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의 협정으로서, 이들이 달성하는 자유화 수준과 규범의 내용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용어풀이

스파게티 볼 효과  
(spaghetti bowl)

또는, ‘누들 볼 효과’라고 부른다.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스파게티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부른다.

용어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협상이 타결되었고, 실무 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으나,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2017년 1월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특히, TPP와 TTIP의 경우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WTO-plus적 성격을 띤 규범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TTIP를 협상 중인 미국과 EU는 동 협정이 향후 타결되면 미래 통상협상의 모델안(template)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비록 현재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TPP도 협상 당시 “글로벌 무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신 통상이슈를 포섭하여 기념비적인 21세기 무역협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된 바 있으며, 실제 기존 협정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탈퇴로 TPP의 무산가능성이 높아지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TTIP 논의도 지연되고 있어, 향후 진전방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장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

### 1절 개요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처음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다.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니와, 우리나라는 나아가 이들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이를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 또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WTO협정과 같이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는 교역상대국의 법령·관행·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3-1-①]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구분	농수산물가공업		비고
	국내법	국제규범	
반덤핑제도	관세법	GATT 제6조 ①항, ②항 WTO 반덤핑협정	협 의
상계관세제도	관세법	GATT 제6조 ③항,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제도	관세법 불공정무역조사법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TRIPs 협정	광 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없음	최광의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 무역구제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절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정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한다. 자유무역제도가 정착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발전하였고, 개도국에서는 유치산업의 보호와 국제수지 방어 등을 목적으로 한 사전적 수입관리제도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무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수입자유화를 추진 중에 있었다. 관세의 양허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수입허가 및 추천제, 수입할당제, 수입감시,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수량제한을 하고 있었으며, 관세측면에서는 조정관세, 긴급관세를 부과하여 관세를 인상하는 등 사전적 수입관리제도를 운영하였다.

특히, GATT체제하에서 개도국은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수입수량이나 관세인상과 같은 사전적인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생산업계는 물론 산업 담당 관련부처에서도 사후적 보호제도보다는 보다 간편한 사전적 수입관리 제도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1987년 전까지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공정한 무역거래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 1. 덤핑방지관세제도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5일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부터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염매수입에 대한 관세부과는 부당염매와 국내산업보호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GATT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덤핑의 결정,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조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가 틀을 갖춘 것은 1983년 12월 관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부터이며, 이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GATT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인,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기간 등 1979년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절차들을 도입하였다.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는 관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그 아래에 가격조사반과 산업피해조사반을 두었다. 단, 가격조사는 관세청 직원이, 산업피해조사는 관련부처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무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신청의 기각 및 조사종결, 잠정조치, 약속수락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1986년 2월 우리나라가 GATT 반덤핑협정에 가입하고 동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법

화함으로써 반덤핑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위하여 1986년 4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발동요건인 덤핑수입, 국내산업피해, 인과관계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조사신청, 조사절차, 잠정조치, 가격약속 제외 및 수락, 조사개시 기각 및 종결과 같은 절차적 요건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특히, 관세심의위원회가 행하는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개시 여부는 3개월, 덤핑과 산업피해조사는 6개월, 덤핑방지관세부와 검토기간은 3개월로 각각 규정하여 총 12개월 이내에 조사가 종결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반덤핑제도를 운용해본 결과 조사기간이 보통 18개월 소요되고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 12월에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였다. 그 결과 조사개시 여부는 재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하고,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기간은 각 3개월로, 덤핑방지관세부와 검토기간은 1개월로 규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덤핑 조사는 관세청장이, 산업피해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무역구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덤핑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관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낮추는 한편, 조사신청서의 접수와 조사개시여부 결정 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또한 종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운영규정’(재무부고시)을 폐지하고 동 고시에서 규정하였던 덤핑과 피해요건 및 조사절차를 시행령에 대부분 반영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및 WTO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WTO반덤핑협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1994년 12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결정, 덤핑률 산출, 산업피해, 약속, 재심사 등 적용기준과 반덤핑 조사절차를 협정의 내용과 일치시켰다. 특히 변화된 무역환경 하에서 반덤핑 조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5년 12월에 관세법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고 덤핑 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조사기관으로의 무역위원회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가격약속 제외도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996년 5월에는 재정경제원이 조사개시결정을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무역위원회가 공고하도록 수정하고, 조사기간 연장여부 또한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간소화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덤핑률 산정 시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외에 거래단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구성가격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WTO반덤핑협정을 구체화시켰다.

2000년 12월에는 덤핑률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 시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조사기간 중 발생한 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공청회 개최의 일시·장소를 30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그 이행을 위하여 2001년 6월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조사질의서 발송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회의, 영업비밀자료의 취급, 재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2010년 3월에는 덤핑방지관세가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관세법령에 도입하였다.

2014년 3월 관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 기한을 종전에는 무역위원회의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20일 연장가능)’에서 ‘조사개시 관보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로 조정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용어풀이

###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GATT 제 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 2. 상계관세제도

**상계관세** 제도는 1967년 11월 관세법 개정 시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그 물품을 지정하여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장려금 또는 보조금과 동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만을 규정하였을 뿐 보조금 정의, 국내산업 피해조사, 부과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상계관세제도가 본격적으로 관세법에 규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1980년 6월 10일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가입한 이후의 일이며, GATT 도쿄라운드협상의 결과 제정된 1979년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1년 12월 관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상계관세부과신청, 보조금 지급사실, 조사기간, 약속제의 및 수락과 조사종결, 잠정조치 등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1992년에는 국내산업의 피해요건 중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저해’를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며, 조사신청, 조사개시, 조사절차, 조사기간, 약속제의 및 수락과 조사종결, 잠정조치 등 상계관세 부과절차는 덤핑방지관세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1993년 12월 관세법 개정 시에 상계관세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상계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무부장관도 약속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조금조사는 관세청장이, 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로 조사담당기관을 정하였으며, 조사절차, 기간, 방법 등 모든 절차에 있어서 반덤핑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1994년 12월 31일 관세법시행령 개정 시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제정된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을 반영하여 ‘보조금’과 ‘특정성’에 대한 정의조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그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1995년 12월 관세법 개정 및 1996년 5월 관세법시행령 개정 시 보조금에 관한 조사업무도 덤핑 조사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상계관세 조사기간 중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30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이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계관세율 산정 시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두되 보조금이 과세가격의 1% 미만인 수출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3. 세이프가드제도

1987년 이전에 관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던 긴급관세제도는 부과요건으로 ①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산업구조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므로 1987년 이전에는 사실상 관세 부과를 통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현행 세이프가드제도와 내용상 차이는 있으나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제도'가 바로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제도 도입의 전단계로 대외무역법 제정시 도입된 위 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을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그 발동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GATT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인 '국내산업을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와는 상당히 다른 표현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이는 이 제도 도입 당시 우리나라가 사전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GATT 제18조B항의 적용을 받는 개도국이면서도 동시에 수입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GATT 제18조의 개도국 조항을 원용할 필요성과 수입자유화 이후를 대비한 사후적 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발동요건 면에서는 GATT 제18조B항을 원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을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였으며, 조사절차 및 구제조치 면에서는 세이프가드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①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② 무역조사관이 이를 조사하고, ③ 무역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④ 상공부장관이 수입수량제한 등 한시적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절차는 세이프가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구제조치가 수출국과의 협의 없이 시행됨으로써 사실상 사전적 구제와 다른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 협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GATT 제18조B항의 원용이 중단됨에 따라 '산업영향조사제도'는 1989년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긴급수입제한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GATT 제19조에 부합하는 세이프가드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1년 2월에는 종래의 대외무역법과 별도로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동법 제17조 및 제19조에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법시행령에 산업피해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 미개시나 부정판정이 내려진 경우 1년 이내 동종물품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조항, 수량제한시의 기준,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완화 신청절차, 조사제출자료의 영업비밀자료 취급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한시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 제67조의 2에 신설하고 대중국 긴급관세 부과절차를 동법시행령에 신설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시행절차를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2조의 2에 마련하였고,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적용기간이 201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2015년 10월 관련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증으로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양자세이프가드 제도의 근거규정을 동법 제22조의3에 신설(2012년 12월 14일, 제24조로 변경)하였다. 이후 한·칠레 FTA, 한·EFTA, 한·싱가폴 FTA 등 연쇄적인 FTA 체결·비준·발효에 따라 협정문에 도입된 세이프가드의 신청요건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공정무역조사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표 3-2-①] FTA 체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규정(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연혁

개정일	관련 FTA	개정내용
2008.9.30.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싱가폴 FTA, 한·아세안 FTA	기 발효중인 FTA 관련, 양자 FTA 세이프가드 관련조문 정비
2009.12.30.	한·인도 FTA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 및 세이프가드조치 재시행 금지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FTA협정문에 도입된 세이프가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조문 개정
2011.6.27.	한·EU FTA	
2011.7.28.	한·페루 FTA	
2011.12.2.	한·미 FTA	
2012.12.14.	한·터키 FTA	
2014.6.25.	한·콜롬비아 FTA	
2014.12.11.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2015.10.13.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1987년 7월 대외무역법 제정법령의 시행과 함께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업무가 시작되었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수출·수입계약을 현저하게 위반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특히, 국내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 아닌 교역상대국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위조상품을 수출함으로써 통상압력을 받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게 상공부장관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무역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었으며, 무역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은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1989년 12월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교역상대국에서 보호되는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이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도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무역위원회에 조사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이듬해인 1990년 4월 무역위원회 직제 개정으로 무역조사실의 조직 및 인원이 확충되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 무역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었고, 과징금의 한도는 1천만 원이었다.

1993년 7월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교역상대국의 법령’뿐만 아니라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타국의 지재권에 대해서만 보호해 오던 기존 제도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국내의 지재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뀐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에 따라 실무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 또한 크게 바뀌었다. 또한 ‘수출·수입계약 위반 또는 공정한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 대신 ‘수출입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되었으며, 과징금은 3천만 원 한도로 증액되었다.

2년 후인 1995년 7월 WTO/TRIPs의 출범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 포함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7년 3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원산지 허위표시’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고, 기존의 조치내용에서 '시정권고' 및 '무역업 정지'가 삭제되는 대신 '시정조치'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는 않았다.

2001년 3월 개정법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먼저 불공정무역행위의 주체가 '무역거래자'에서 '누구든지'로 바뀌었으며, 보호의 대상인 지식재산권에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타국 법령에 의한 지재산 침해가 국내에서 제재해 오던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수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및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도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유형에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되었다.

2001년 5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 이르러 대외무역법의 관련내용이 이에 이관되었으며,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먼저, 조사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잠정조치' 제도가 마련되어 임시적 지위에 근거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거래금액의 2% 선으로 규정되는 대신 기존 3천만 원이었던 상한선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수출입 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하였다.

2004년 10월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거래금액의 2%에서 30%로 조정되어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며, 과징금 부과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2008년 9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신청 후 조사개시 결정까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조사개시 결정 후 최종판정까지 처리기간 제한이 없던 것을 6개월로 한정하였다. 잠정조치에 있어서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은 담보를 50%만 제공해도 잠정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제공액 적정성 검토 시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 차이가 매우 커서 잠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잠정조치 시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재권 침해 기(既)판정물품 확인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조사대상물품이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침해로 이미 판정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조사 없이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신속히 제재를 가하여 우회수입 차단 등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침해사례 발굴 촉진을 위해 조사신청자나 중요 정보 제공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2008년 12월 개정을 통해 2009년 6월 부터는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7월 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반입배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내로 수출하는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수입업자가 다르더라도 무역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및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서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명시하던 것을 삭제하고 해당 법조항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나아가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 이행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정명령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 5.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는 덤핑방지관세제도 등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다. 2004년 1월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5조의 2를, 10월에는 시행령 제22조의 4를 신설하여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다. 같은 해 11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04-2호)'을 제정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이후 보다 산업피해 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신청자격과 신청서 내용, 조사방식, 조사개시절차 및 판정과 건의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권한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301조상의 USTR 조사 및 EU의 무역장벽규정(Trade Barrier Regulation)에 따른 권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는 기본적으로 WTO협정상 규범의 위반에 따른 민간의 산업피해와 실제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하는데 요구되는 정부의 제소 결정 간에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민간에서 발생하는 무역피해가 적절하게 정부 부문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제도는 미국과 EU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유사한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 3절 덤핑방지관세제도

### 1. 개요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GATT 제6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덤핑협정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청, 조사절차, 덤핑판정의 요건, 증거, 부과방법 등 실체적·절차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국내법적으로는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2. 실체적 요건

덤핑방지관세는 3가지 요건 즉,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고,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며, 덤핑행위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 1) 덤핑의 존재

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덤핑여부 결정을 위해 수출가격과 비교되는 기준가격으로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즉,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생산비 + 합리적 관리비, 판매비 등 비용 + 정상이윤)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한다.

수출가격은 수출국의 공장도가격 기준 수출가격(조정된 수출가격)을 사용한다. 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 등으로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입자가 최초로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구성수출가격을 대신 사용한다.

[표 3-3-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정상가격	덤핑가격	
	수출가격(EP)	구성수출가격(CEP)
수출국 통상거래가격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한국내 재판매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li> <li>-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창고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li> <li>-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창고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li> <li>-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창고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조건의 차이(-)</li> <li>-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광고비, 신용비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조건의 차이(-)</li> <li>-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광고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조건의 차이(-)</li> <li>-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품질보증비, 광고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의 관련비용(-)</li> <li>- 현지법인 할인, 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판매관리비, 관세·통관·운송부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상의 차이</li> <li>- 관세환급(-)</li> <li>• 거래단계 차이(±)</li> <li>• 물리적 특성차이(±)</li> </ul>		
조정된 정상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조정된 수출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조정된 수출가격 (순 공장도가격 기준)

한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정비교의 원칙이라 한다.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덤핑판정 시 통상적으로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에서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A-A방식)하여 덤핑을 판정하나,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거래비교단계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기도 한다(transaction to transaction, T-T방식). 나아가 예외적으로 가중평균에 의한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에

의한 수출가격의 비교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구매자, 지역, 시기별로 수출가격의 양태가 다양하고 조사당국이 A-A방식 또는 T-T방식에 의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되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덤핑차액이 매우 작거나(미소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 덤핑수입량이 소량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미소물량, negligible imports volume) 즉, 최소허용기준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시행규칙에서는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또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출물량이 3% 미만이고 수출물량이 3% 미만인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의 합계가 7%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을 덤핑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2) 실질적 피해 발생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발생하거나, 실질적 피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국내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실질적 피해는 수입제품 가격이 동종제품의 가격보다 낮으며, 이와 같은 가격 차이로 국내산 제품 가격의 인하 또는 상승억제를 초래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재고 등의 주요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실질적 피해의 우려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해야 한다. 즉, 덤핑수입의 현저한 증가, 수출자의 공급능력 증가, 국내가격의 현저한 하락, 수출국내 재고상황 등을 종합하여 그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은 국내산업의 투자, 가동률, 손익, 시장점유율 등에서의 정상기대치 및 실제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 3) 인과관계의 존재

인과관계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유발되어야 하며, 조사당국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 조사당국은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이들 요소를 덤핑수입의 원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① 덤핑가격으로 팔리지 아니한 수입 상품의 물량 및 가격, ② 국내의 수요감소나 소비행태의 변화, ③ 외국생산자와 국내생

산자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④ 기술개발과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이 있다

### 3. 절차적 규정

#### 1) 조사개시

반덤핑 조사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때, 신청에 찬성한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조사를 개시하게 되나, 명시적으로 신청에 찬성한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의 총생산량 합계가 국내산업에서 생산하는 동종물품의 총생산량의 25%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가 불가능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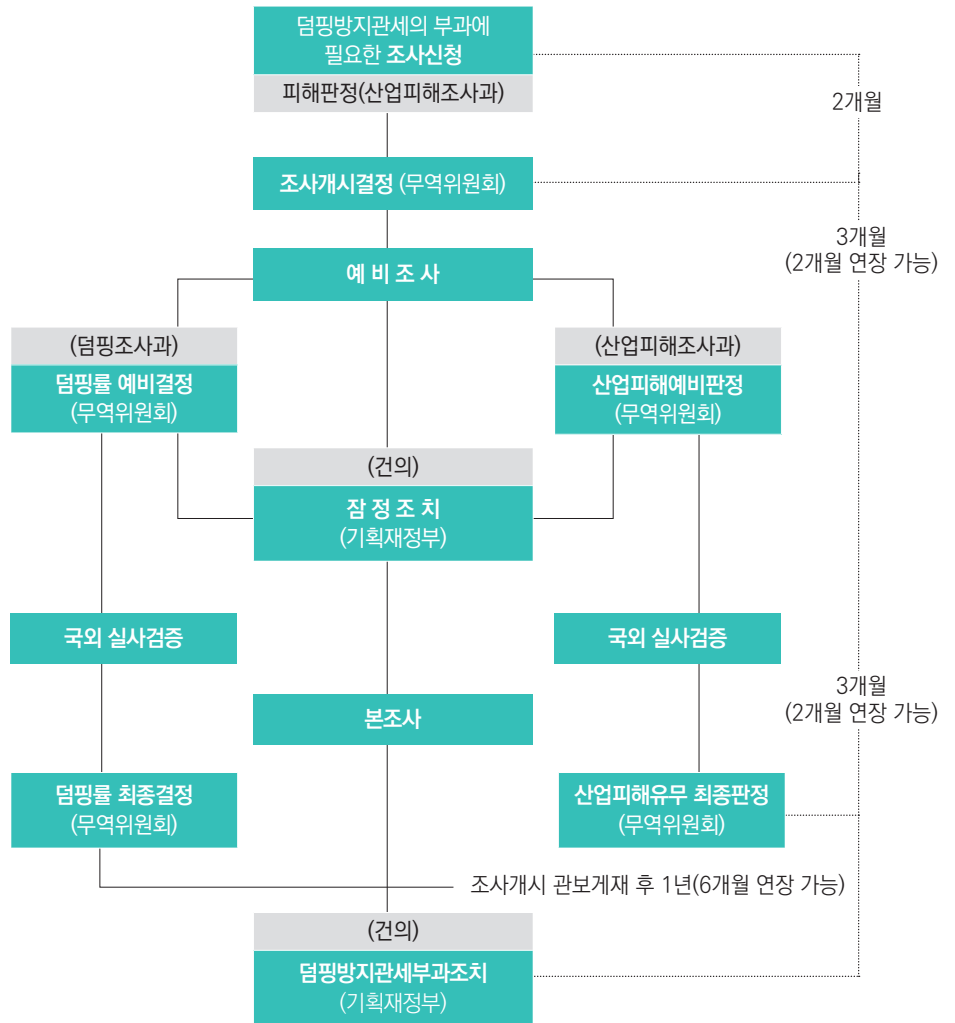
#### 2) 조사진행

반덤핑 조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예비조사는 3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2개월 연장가능한데,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잠정조치를 취한다. 본조사에서는 답변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조사를 실시하며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본조사 역시 3개월간 이루어지며 2개월 연장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판정을 내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기간을 건의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1개월 이내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 조사개시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이르는 전 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개시 후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조사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지를 받고 일체의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해당사자의 범위로는 ①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업자, 외국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및 이들을 주된 회원으로 하는



[그림 3-3-①] 반덤핑 조사절차



무역협회나 생산자협회, ② 수출국 정부, ③ 수입국내의 동종물품의 생산자 또는 이들을 주된 회원으로 하는 무역협회나 생산자협회, ④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기타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된다.

수출업자나 외국생산자의 경우 질의서에 대한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기 위하여 최소한 37일의 기간을 부여받으며, 조사의 전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반대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기회를 포함)를 가진다. 아울러, 조사기관은 최종판정전에 반덤핑 조치 부과결정의 판단기준이 된 사실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하여야 한다.

### 3) 반덤핑 조치

#### (1)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률에 상당하는 잠정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조사개시가 이해당사자들에게 통지되고, 이해당사자들이 정보를 제출하고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② 덤핑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고, ③ 관계당국이 조사기간 중에 야기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가격인상약속

가격인상 약속은 수출업자가 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말하며, 현행 관세법상 예비판정이전에는 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가격인상약속이 수락되는 경우 조사는 종료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격인상 약속이 수락되었다 할지라도 조사는 계속될 수도 있으며, 최종판정 결과 부정으로 판정될 경우 가격인상약속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 (3)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3가지 실체적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덤핑률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과 부과기간(통상적으로 3~5년)을 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가 통상환경, 물가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수준을 결정할 때 이른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적용하여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값으로 부과수준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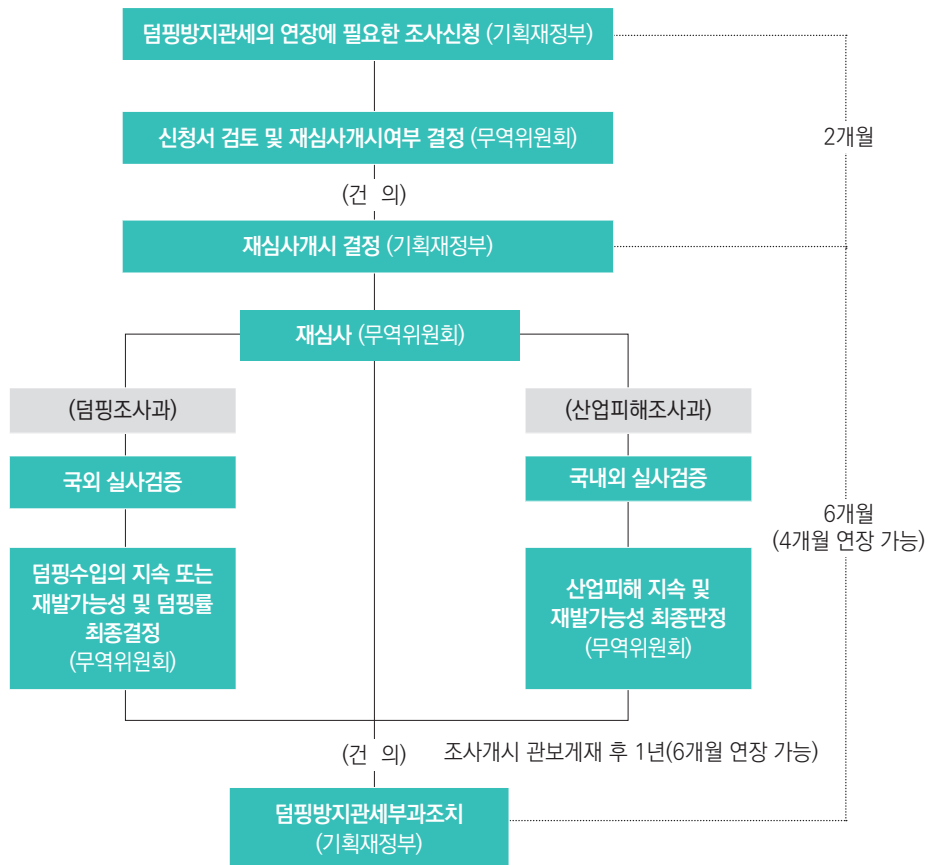
#### (4) 재심(review)

현행 관세법상 4가지 유형의 재심이 있는데, 관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료재심(expiry review) 또는 일몰재심(sunset review), 상황변동재심, 환급재심과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수출자재심(new-shipper review)이 그것이다.

덤핑방지관세부과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되나,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종료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급재심사를 통해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상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상황변동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상황변동재심사에서 부정판정이 내려지면 덤핑방지관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조사당시 수입물량이 없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이루어진 이후 수입되는 물품의 공급자에 대하여 신규수출자재심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재심사는 원심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비판정과 잠정조치가 없으며, 통상 12개월 가량 소요된다.

[그림 3-3-②] 재심절차



## 4절. 상계관세제도

### 1. 개요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계관세제도는 GATT 1994 제6조, 제1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국제법적 근거를 두며, 이와 함께 국내법인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의 규정을 기초로 운용된다.

### 2. 실체적 요건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하고, ②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어야 하며, ③ 보조금 지급행위와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덤핑방지관세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1) 보조금 정의

GATT 제16조는 보조금의 개념을 모든 형태의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이를 구체화하여 ① 자국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고, ② 재정적 기여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며, ③ 특정성이 존재할 경우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제1조는 재정적 기여를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적 자금이전(무상이전, 대출, 지분참여 등) 또는 잠재적 자금이전(대출보증 등), 둘째, 정부세입 포기(세액공제 등), 셋째, 정부에 의한 SOC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구매, 넷째, 정부가 위와 같은 지원을 민간기관을 통해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런 관행이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혜택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제14조에서 보조금 유형별 혜택과 보조금액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분출자가 국내민간투자자의 통상적 투자관행과 불일치하는 경우, 둘째, 정부대출이 기업의 상업적 차입과 차이가 있을 경우, 셋째, 정부의 대출보증이 정부보증이 없을 경우의 상업적 차입과 차이가 있을 경우, 넷째, 정부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또는 재화구매가 적절한 수준 이하의 보상을 받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혜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정성(specificity)은 보조금이 특정기업,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게 지원되는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금지보조금은 무조건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보조금 종류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금지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수입물품 대신 국산물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내산업 피해의 입증 없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상계가능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타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 즉, 산업피해, 관세양허의 무효화 또는 침해, 타회원국의 심각한 손상 등을 초래하므로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없어 상계조치를 취할 수 없는 허용보조금이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더라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잠정적용 규정(WTO 보조금협정 제31조)의 적용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모두 상계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었다.

[표 3-4-①] 보조금 종류 및 의무사항

구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내용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의무	원칙적 사용금지 - 유예기간내 철폐 <sup>주)</sup>	사용가능	
규제	- WTO DSB 제소 및 대응조치 - 피해를 입은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 가능	상대방 국가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 -DSB 제소 및 대응조치 -상계관세부과 가능	사용가능
WTO 통보	WTO협정 발효후 3월이내 통보	매년 6월 정기통보	

주) 유예기간내 철폐  
 - 수출보조금 : 3년(개발도상국 8년, 최빈개도국 적용예외)  
 - 수입대체보조금: 3년(개발도상국 5년, 최빈개도국 8년)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시장경제로의 전환국에 대하여 금지보조금 철폐기간에 대한 우대제도를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보조금의 철폐기간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 수입대체보조금의 철폐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과정에 있는 회원국은 금지보조금 지급계획을 WTO협정발효일로부터 7년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규정하였다.

### 3. 절차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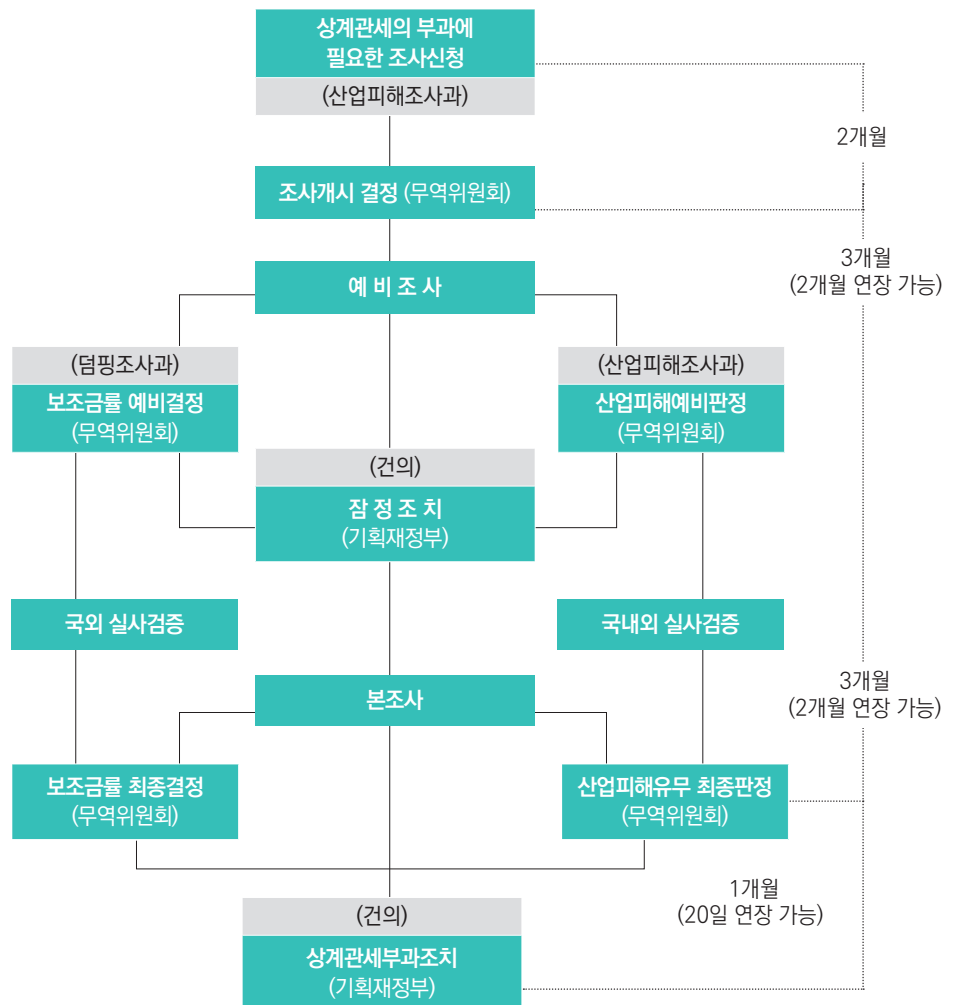
#### 1) 조사개시

상계관세조사 역시 반덤핑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이 때, 신청에 찬성한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조사를 개시하나, 명시적으로 신청에 찬성한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의 총생산량 합계가 국내산업에서 생산하는 동종물품의 총생산량의 25%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가 불가능하다. 조사기관은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조사진행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13.1조는 상계관세의 경우 반덤핑 조사와는 달리 상계관세조사에서 조사개시 이전에 이해당사국간의 상호합의가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간의 전과정을 통해 이해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기회가 보장된다. 조사개시부터 상계관세부과에 이르는 전 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개시 후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반덤핑 조사절차와 동일하다.

[그림 3-4-①] 상계관세조사 절차



### 3) 상계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사기간 중 피해방지를 위해 보조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채권담보 형태로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전에는 취할 수 없으며 잠정조치는 4개월을 넘길 수 없다.

상계관세조사의 잠정판정에서 예비긍정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비록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조사는 계속될 수 있다.

한편, 상계관세액은 보조금액을 초과하여 산정될 수 없으며, 부과기간은 최대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62조, 시행령 제84조 및 제7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재심사, 상황변동재심사, 환급재심사, 신규수출자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절차는 반덤핑재심절차와 동일하다.



## 5절. 세이프가드

### 1. 개요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특징이 있다.

WTO체제하에서 회원국의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GATT 제19조와 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 제정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다. GATT 제19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GATT협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일컫는다. 이 도피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종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선별적 적용 가능성 여부, 세이프가드조치와 유사한 회색지대 철폐, 심각한 피해의 판정기준, 조사절차의 투명성 등에 관하여 UR협상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세이프가드 협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그밖에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및 세이프가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 2. 실체적 요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 ②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 ③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사실이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 관세양허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서, 양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하였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말한다.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수입증가는 수입수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뿐 아니라,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포함한다. 즉, 수입수량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할지라도 국내생산이 그 이상으로 감소폭을 보일 경우, 상대적 수입증가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여기서 ‘심각한 피해’는 국내산업에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며, ‘심각한 피해 우려’는 그러한 피해의 발생이 명백히 급박한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은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관련요인을 바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특히, 관련물품의 절대적·상대적 수입증가량,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고용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증가가 피해발생의 중대한 원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증가 추세와 피해지표의 악화추세 간의 상호연관성이 존재하거나, 수입품 가격에 의해 국산품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증가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러한 피해를 수입증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 3.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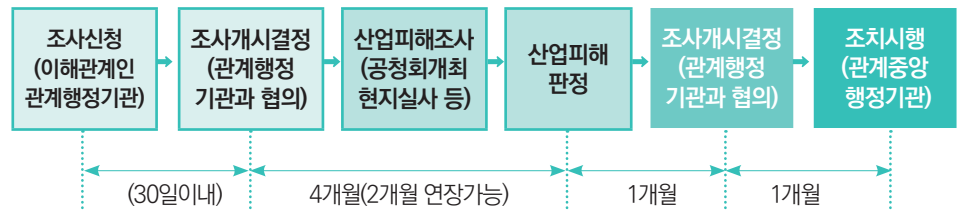
#### 1) 조사신청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 수의 비중이 20% 이상인 생산자나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여기의 이해관계자에 속한다.

## 2) 조사진행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하여, 긍정판정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해야 한다.

[그림 3-5-①] 세이프가드조사 절차



## 3) 세이프가드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 건의 후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조치시행여부 결정 시 국제통상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WTO 회원국과 사전협의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실제적 요건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 이 요건이 성립할 때 비로소 조치의 발동이 가능하게 되나, 그 외에도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1) 조치의 유형

GATT 제19조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는 2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수량제한의 부과 등 수입국이 부담하는 관련의무를 정지하거나, 관세인상 등 해당 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수입국은 이들 2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나, 잠정조치의 경우는 반드시 관세인상 방식을 취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수입제한조치와 동시에, 수입국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인상, 수량제한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등도 가능하나, WTO협정 상 산업구조조정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원국의 자의적인 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

## (2) 조치의 제한

WTO 협정은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시 대상국가, 내용, 조치기간, 재발동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먼저 최혜국대우원칙을 채택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인 모든 국가에 조치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량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쿼터할당을 통해 원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치의 내용과 기간은 심각한 산업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거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과 기간에 그쳐야 한다. 수량제한의 경우는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총 적용기간의 합계는 어떠한 경우도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한 번 조치가 적용되었던 물품의 경우, 그 조치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조치를 다시 시행할 수 없다.

## 4) 그 외의 규정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상과 보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국은 해당 조치의 적용을 받는 수출국과 보상방법 등에 관한 협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협이가 실패할 경우 수출국은 보복조치가 가능하다. 단, 절대적 수입증가에 의한 조치일 경우 3년 내에는 보복조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우대가 존재한다. 특정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이 수입국 시장점유율의 3% 이하이고, 3% 미만인 수입점유율을 가진 개도국 전체의 총 시장점유율이 9% 이하일 경우 동 개도국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 4. FTA 세이프가드

### 1) 도입배경

FTA상의 관세철폐 계획의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관세율 인상 등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FTA 세이프가드라 한다. 이는 FTA 회원국 간에만 적용되는 조치로서 양자 세이프가드라 일컫기도 한다.

WTO 규범에서 벗어나 FTA 체결 당사국 간에 존속기간, 발동요건, 사전협의 등에 대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바, FTA별로 그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며, 대외적으로는 각 FTA 협정문에 국내법적으로는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가 각각 발효되었으며, 그 외에도 한-중미 FTA가 타결된 상태로서, 각 FTA별 세이프가드의 내용은 제1장 3절 2. 무역구제 국제협력의 [표 1-3-④] 무역구제분야 FTA 협정별 비교 에 나와 있다.

## 2) 일반 세이프가드와의 비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상국을 FTA 협정체결국으로 제한한 FTA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더 용이하다. 그러나 조치수준면에서는 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동안만 활용 가능하며, 제한된 수준의 관세조치만 활용할 수 있는 등 FTA 세이프가드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FTA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는 상태이다.

[표 3-5-①] FTA SG와 일반 SG 비교

구분	금지보조금	허용보조금
대상국	FTA를 체결한 상대국	WTO 회원국
존속기간	FTA별로 다르나, '발효 후 [ ]년 또는 관세철폐 종료 후 [ ]년'의 형태로 존속기간 도입 * 한-칠레, 한-싱FTA는 도입하지 않음	-
조치수단	관세조치만 가능 관세인하의 중지 또는 MFN세율 범위 내에서의 관세인상	관세율인상 또는 수량제한조치
발동기간	FTA별로 다르나, 대부분 일반SG보다 짧음(2+1년, 1+2년, 2+2년, 3년 등)	4년 기한, 최대 8년까지 연장가능
재발동 금지	WTO 준용 또는 동일 품목에 대한 재발동 금지	이전에 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 만큼 재발동 금지(최소 2년)
잠정조치	WTO 준용 또는 잠정조치 기간 축소	예비판정에 따라 200일 기간내 잠정조치
협약 및 보상	상대국과 사전협의 및 보상의무 세부적 통보시기 및 협의기간 규정	WTO 통보 수출국과 사전협의, 보상의무

## 5. 섬유 세이프가드

GATT 시절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제6조에 의해 섬유 세이프가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95년 WTO가 출범하면서 10년간 (1995.1.1~2004.12.31) 운영되다가 2005.1.1.부터 폐지되었다.

### 1) 도입배경

섬유류의 교역은 GATT 체계 초기에는 여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GATT 체제하에서 규율하였으나, 1950년대 말부터 일본과 홍콩산 면직물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자 GATT와 별도로 섬유교역만을 규율하는 다자간 섬유협정인 단기면직물협정(STA, the Short 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과 장기면직물협정(the Long 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이 각각 1961년과 1962년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들은 섬유협정의 효시로서 GATT체제와 별도로 섬유교역만을 11년간 규율하였다.

이후 1974년에 섬유수입국들은 인조직물을 비롯한 각종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다자간섬유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을 체결하여 1995년 WTO 섬유협정 발효 전까지 대부분의 섬유 및 의류제품의 교역을 통제하였다. 정식명칭은 Agre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로, 동 협정은 GATT의 무차별원칙 및 수량제한 금지원칙에서 벗어나서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양국간 쿼터협정을 통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별로 차별적인 수입 수량을 설정하고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UR협상 당시 수량제한에 강력한 반발을 제기해 온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섬유분야도 GATT체제로 복귀시키도록 하고, 섬유수입국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섬유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법상으로도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31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 1월 폐지되었다.

### 2) 일반 세이프가드와의 비교

섬유세이프가드 (Transitional Safeguard)는 2004년말까지 10년의 이행기간 동

안 GATT로의 통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내산업의 급격한 붕괴를 방지하고 산업에 구조조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섬유협정 부속서상의 795개 품목 중 GATT 1994로 통합된 품목을 제외하여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한정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동요건은 일반 세이프가드와 같으나, 무차별 원칙에서 벗어나 국가별 발동이 가능하였다. 조치기간은 연장 없이 3년이나 해당품목의 GATT 복귀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조치가 가능하였으며, 보상이나 보복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잠정조치의 경우, 활용이 가능한 국가에 제한을 두어, 기존 섬유협정 규제국이었던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와 섬유협정상의 잠정세이프가드 권리 보유국만이 잠정조치 발동이 가능하였다.

[표 3-5-②] 일반 SG와 섬유 SG 비교

구분	WTO SG협정상 SG	WTO 섬유협정상 SG
대상품목	•제한없음	•섬유류중 GATT 미복귀품목
존속기간	•제한없음	•2004.12.31일
발동요건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 •무차별 발동	관세율인상 또는 수량제한조치
조치수단 및 기간	•수량제한 또는 관세율 조정 •4년 이내(8년까지 연장가능)	•수량제한 •연장없이 3년 또는 해당품목의 GATT복귀시점중 먼저 도래한 것
수출국대응	•보상과 보복을 명문화	•규정 없음

### 3)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교역 자유화

섬유협정은 교역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유예기간동안 3단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통합품목은 사, 직물, 의류, 제품류 각각에서 1990년도 총수입량을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단계별 쿼터폐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1단계(1995.1.1~1997.12.31) : 1990년 총수입량 기준 16% 쿼터폐지
- ② 2단계(1998.1.1~2001.12.31) : 1990년 총수입량 기준 17% 쿼터폐지
- ③ 3단계(2002.1.1~2004.12.31) : 1990년 총수입량 기준 18% 쿼터폐지
- ④ 4단계(2005.1.1) : 1990년 총수입량 기준 나머지 49% 쿼터폐지

이와 같은 4단계의 자유화를 통하여 섬유교역상의 쿼터를 완전히 폐지하고 WTO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

## 6. 대(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중국이 2001.12.11. WTO에 가입한 이후 12년 동안(2001.12.12.~2013.12.11.) 운영된 제도로써 2013.12.12. 폐지되었다.

### 1) 도입배경

대(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는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다자간 합의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제16조와 중국가입 작업반 보고서(para241,242,245~250)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WTO는 원칙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무역규모와 산업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1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예외적인 방어수단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4년말 폐지를 예정하고 있던 섬유 세이프가드를 중국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중국의 WTO가입은 2001년 11월 10일 도하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12월 11일 발효되었는바, 무역위원회는 발효일에 맞추어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 2) 일반 세이프가드와의 비교

대(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시장교란이나 무역전환,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발동할 수 있으며, 섬유세이프가드의 경우는 시장교란의 야기로 교역발전이 저해될 시에 발동할 수 있다. 이 때, 시장교란이란 반덤핑·상계관세의 경우와 같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로 해석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라는 일반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보다는 완화된 요건이다.

발동요건 외에도 대(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하여 완화된 절차를 규정한다. 즉, 시장교란에 의한 세이프가드의 경우, 수출국이 대응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세이프가드와 동일하게 절대적 수입증가를 원인으로 한 경우 3년간 보복조치 금지 뿐 아니라, 상대적 수입증가를 원인으로 할 때에도 2년간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해 놓은 조치 적용기간은 대략 2, 3년 단위로 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외에도 조치발동 이전에 중국 또는 관련 WTO 회원국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는 등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니며, 자세한 비교는 표에 명시하였다.

[표 3-5-③] 대중국 특별 SG, 섬유 SG 제도, 일반 SG의 비교

구분	대중국 특별SG	대중국 섬유SG	일반 SG
근거조항	가입의정서 제16조	작업반보고서 para 241, 242	GATT 제19조 WTO세이프가드협정
대상국	중국	중국	WTO회원국
대상품목	전 품목	섬유 및 섬유제품	전 품목
존속기간	12년간(2013.12월까지)	2008년말까지	-
발동요건	수입급증에 따른 시장교란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시장교란이 있거나, 정연한 교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수단	합의에 의해 중국측의 방지·구제조치 가능·합의 불가시 관세율인상 또는 수량제한조치	수량제한조치(대중국 협의 요청14개월전부터 12개월간 물량의 107.5%이하 수준으로 제한)	관세율인상 또는 수량제한조치
발동기간	시장교란 구제에 필요한 기간·연장가능	협약요청연도 12.31 까지·상기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	4년, 연장가능 (최대8년)
수출국의 대항조치	절대적 수입증가에 의한 경우, 3년간 보복금지·상대적 수입증가에 의한 경우, 2년간 보복금지		절대적 수입증가에 의한 경우, 3년간 보복금지
절차관련 의무	WTO 통보의무·조치발동 이전에 중국측에 협의요청	중국측에 협의요청·30일내 협의시작 및 90일내 협의완료	WTO 통보의무 보상협의
무역전환에 대한 조치	중국 또는 제3국 조치에 의해 자국시장에 현저한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양자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특별SG 발동가능		

## 6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1. 의의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이 포함된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도덕한 행위 그 자체로서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내의 관련산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유발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등 대외교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동법 제5조 내지 제14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1조의 3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2. 조사절차

#### 1) 조사신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신청이 없더라도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개별 법령에서 대부분 지식재산권 침해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과 일면 배치되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에 공익적 고발의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조사개시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지식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사건조사

조사가 개시되면 본격적인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6개월 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게 된다. 다만, 해당 조사와 관련된 소송이나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당 2개월 이내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단 구성, 질의서 송부, 외부전문가 감정, 자료제출 명령, 기술설명회 및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등도 가능하다.

## 4) 최종판정 및 처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이를 무역위원회에 상정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수입·제조·판매 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정정광고, 처분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조사대상 기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3억 원의 범위에서 조사대상 기간 5년간 수출입신고금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5) 이의신청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무역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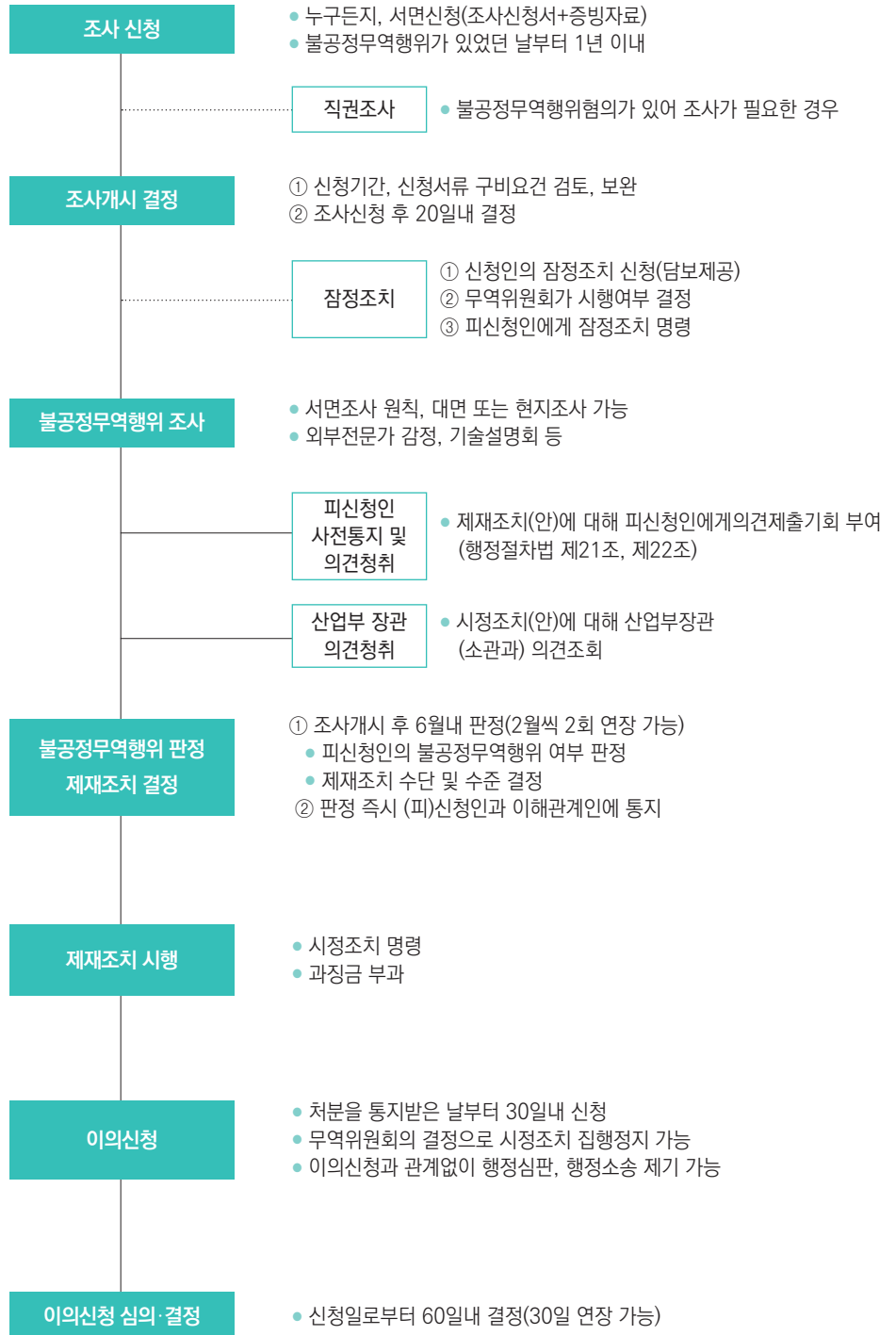
### 3. 잠정조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최종판정 이전에 신청인 일방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이므로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의 거래 금액을 담보로 제공받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 신청을 받으면 그 시행 여부를 위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① 잠정조치 대상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 ② 잠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가능성, ③ 잠정조치의 시행이 국민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④ 잠정조치 신청인이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에서 중소기업인 피신청인보다 현저히 우월하여 잠정조치 실익이 없으면서도 잠정조치로 오히려 피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 4. 지식재산권 침해 기(既)판정물품 확인제도

무역위원회가 이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판정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제3자가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는 경우 재조사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개시 여부 결정 및 확인 절차는 조사개시 결정 및 사건조사 절차를 준용한다.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정당권원 여부 및 확인대상물품에 대해 이미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물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림 3-6-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 7절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 1. 개요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는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불공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자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동 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5조의 2,<sup>23)</sup> 대외무역법 제5조에서 2004년 1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2006년 2월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를 위한 절차규정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신설하였다.

제도의 시행역사가 짧고 피해조사 신청이 없어 현재까지 국제규범위반 조사 사례는 없다.

### 2. 조사요건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는 ①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교역상대국의 법·정책·조치 등 포함)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고, ② 당해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국내외의 부정적 무역효과 포함)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며, ③ 국제무역규범위반사실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국제무역규범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그 부속서 포함)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교역상대국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3) 제25조의 2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3-7-① ] 각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비교

구분	미국	EU	중국	한국
도입	1974	1995.1	2002.11	2004
소관	무역대표부(USTR)	EU집행위 통상총국 DG	상무부	무역위원회
근거	통상법 제301조	Council Regulation no.3286/94 (1994.12.31)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5조의 2
조사 대상	교역상대국의 부당, 불합리 또는 차별적 법·제도·관행	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불공정관행(정책, 조치, 법·제도)	- 다자·양자 무역 협정위반 - 중국산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조치	- 교역상대국의 부당, 불합리 또는 차별적 법·제도· 관행
제소 권자	업계청원, 직권	회원국, 기업, 산업대표	기업, 산업대표, 직권	기업, 산업대표, 직권
조사 절차	약 20개월	약 7개월	8개월 (3개월 연장)	약 14개월 (6개월 연장)
조치	- 대상국가와 합의 결렬시 보복조치 (통상 보복관세)	- 양자협의 - WTO분쟁해결절차 - 기타(양허정지/철회, 관세인상, 과징금, 수량제한 등)	- 양자협의 - WTO분쟁해결절차 - 기타	- 양자협의 - WTO분쟁해결 절차 - 기타
사례	121건('02.8기준)	17건(2001.1) 對한국 : 화장품('98.5), 의약품(1999.7), 조선(2000.12)	일본 김양식 수입쿼터	없음

### 3. 조사절차

#### 1) 조사개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관련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협회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앞서 서술한 조사 개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①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역상대국의 위반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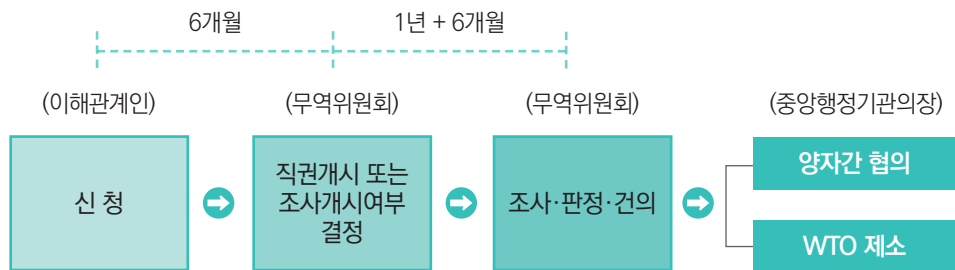
### 2) 조사진행

피해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의견청취할 수 있고 피해조사 시 교역상대국 정부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판정은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최종조치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즉, 교역상대국과 양자 간 협의를 실시하거나 규범위반행위를 WTO에 제소할 수 있다. WTO패널에서 WTO규범위반으로 판정할 경우 교역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규범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으며, 협상결렬 시 우리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림 3-7-① ] WTO 규범위반사건조사 절차









## 2편 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우리 무역위원회 조사관은 공정무역의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업무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며 한국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 무역위원회 조사관 혁신선언 전문 -

KOREA TRADE  
COMMISSION  
30-YEAR HISTORY

1장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20선) .....	162
2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10선) .....	239

# 1장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20선)

## 1절 미국,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 반덤핑 조사 최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긍정사례

2편

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 1. 조사 및 조치개요

1990년 5월 8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는 미국 E. I. Du pont사, Hoechst Celanese사 및 일본의 Asahi Chemical사를 상대로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을 하고 1990년 8월 25일 재무부에서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피해를, 관세청에서는 덤핑률을 각각 조사하여 1991년 2월 20일 관세청에서는 덤핑사실이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1991년 4월 24일 무역위원회에서는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여 1991년 7월23일 재무부장관은 4%의 확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1991년 6월 21일 반덤핑협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같은 해 7월 14일, 9월 30일, 10월 2일 3차례에 걸쳐 양자간 협의가 개최되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미국정부는 1992년 1월 21일 반덤핑협정 제15조 제5항에 근거하여 패널설치를 요구하고 같은 해 2월 17일 반덤핑위원회에서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 1993년 4월 27일 패널보고서가 반덤핑위원회에 회부되어 채택되었다. 동 패널보고서는 무역위원회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산업피해판정의 의결서가 판정의 근거와 이유를 반덤핑협정에 일치되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분석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덤핑방지관세 처분을 반덤핑협정에 일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2. WTO 패널의 주요쟁점 및 판정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한국의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이해관계국들의 주된 관심은 덤핑률이나 그 산정방식이 아니라 국내산업피해 여부, 즉 피해판정의 기준 및 근거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 1) 패널의 검토범위

한국측에서는 무역위원회가 반덤핑협정에 입각해서 적극적 증거(Positive evidence)를 근거로 피해여부를 정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측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시키려는 정책적 의도 하에 산업피해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 GATT패널은 무역위원회가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판정을 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2) 피해판정의 근거

미국측에서는 모든 산업피해판정은 현존피해, 피해우려 및 확립지연의 3개 기준에 따른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GATT 반덤핑협정상의 확고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각각의 위원이 판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측에서는 무역위원회의 각각의 위원이 동일한 기준에 근거할 필요는 없으며 4명의 긍정판정 의견을 낸 위원 중 1명은 현존피해, 2명은 피해우려, 1명은 확립지연으로 판정하였고 각각의 판정은 반덤핑협정에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GATT패널은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 피해우려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지연 등 피해판정의 각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을 뿐 아니라, 각 기준에 의한 분석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제3조 및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1) 실질적 피해 (인과관계)

미국측에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측에서는 국내업체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이윤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과관계 문제에 관하여 미국측은 국내업체의 피해는 환차손 및 이자지급증대에 의한 것으로 덤핑수입 이외의 원인에 의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전가시켰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측은 덤핑수입이

국내가격을 인하시켜 판매수입이 감소된 것이 분명하며 덤핑수입이 피해의 한 원인이라면 충분하고 주된 원인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GATT패널은 당시 한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은 국내가격 하락과 판매수입의 상당한 손실간의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1989년 당해산업의 순이윤이 적정수준 이하였다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평가한 근거가 결여되어 반덤핑협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해물품의 수입이 재고량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협정 제3조 제4항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2) 실질적 피해우려

미국측은 피해우려 판정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서의 예측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나, 산업피해우려판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 무역위원회 위원(2명)의 판정근거는 의결서에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우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무역위원회 회의록에 피해우려를 판정한 2명의 위원이 분명히 사실에 입각하여 판정하였고 이들 피해가 명백하고 급박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들 위원이 고려한 요소로는 수입업체의 공급능력, 유희생산능력 및 국내가격의 인하 압박요인 등이라고 반박하였다. GATT패널은 무역위원회가 자재가격 및 이윤 등의 하락과 같이 국내산업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을 고려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3조 제3항에 위배되며, 당해 수입품의 수입량 및 가격효과의 전망분석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동 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3) 국내산업의 확립지연

미국측은 국내업체가 1989년에 이미 회계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고 국내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한국측은 국내업체가 안정적인 영업 상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반덤핑협정상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GATT패널은 무역위원회에서 고려한 이윤 및 재고량의 기간과 수입량, 가격효과 등을 고려한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반덤핑협정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3) 패널의 판정결론

패널은 반덤핑위원회가 한국의 반덤핑법령을 반덤핑협정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미국

의 요청에 대하여는 당해사안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사실상 거부하고, 한국정부가 취한 특정조치 즉 미국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조치에 대하여 반덤핑협정상의 의무에 일치시키도록 권고하였다.

미국측은 패널에서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반덤핑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한국이 반덤핑관련법을 동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GATT 패널은 미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3. 시사점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무역위원회 최초의 긍정판결이며, 개도국의 반덤핑관세부과조치가 GATT에 제소된 최초의 조사사례이다. GATT 패널에서의 패소는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하였으며, GATT패널에서의 지적사항은 비록 절차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향후 피해 판정시 의결서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폴리아세탈수지 분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역상대국의 GATT규범 위배사례에 대해 GATT분쟁해결 절차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폴리아세탈수지



## 2절 유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WTO분쟁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3년 1월부터 실시된 유제품의 수입자유화 이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으로부터 동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낙농업 및 분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동 품목의 관세품목 재분류, 4년간의 관세인상 또는 1만 톤 이내의 수입물량제한을 요청하는 내용의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1996년 5월 2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신청인의 신청자격, 수입의 증가여부,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분유 및 우유 생산업자를 회원조합 및 조합원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이며, 동 중앙회의 회원조합 및 조합원이 국내 우유의 43.7%, 국내분유의 23.8%를 생산하므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한 신청인의 자격을 갖추었고,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은 1993년부터 1996년 2월까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제품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1996년 5월 28일 동 조사개시결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였다.

#### 2) 조사결과 및 판정

##### (1)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무역위원회는 수입유제품과 국산원유 및 분유는 가공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에 원료로 투입할 수 있고, 수요자가 국산 원유 및 분유를 대체하여 수입유제품의 구매를 늘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유제품과 국산원유 및 분유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였다.



## (2) 국내산업의 범위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산업을 수입유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원유와 분유를 생산하는 원유생산산업과 분유생산산업으로 보았다. 한편 분유생산자의 경우 분유 이외의 유제품도 생산하고, 유제품수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분유 이외의 유제품 생산부분과 수입부분을 제외한 분유생산부분만이 국내산업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수입수량의 증가여부

무역위원회는 수입수량의 증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및 국산품 생산과 비교한 상대적 증가여부를 모두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유제품 수입(전년대비, %) : (1994) 384.0, (1995) 80.0, (1996.상) 16.9

\* 국내원유생산량(전년대비, %) : (1994) 3.2, (1995) 4.2, (1996.상) 4.4

## (4)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및 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검토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입품의 국내시장점 유율, 생산, 재고, 판매, 가격, 투자, 고용, 손익 등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유제품의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구제조치의 검토 및 건의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이 수입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한바 있고, 이러한 국내산업의 피해는 주무부처 및 신청인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시행에 의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적절한 구제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4년 동안 수입 유제품에 대해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이를 실시하여 줄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 4) 구제조치의 시행 및 WTO 통보

무역위원회는 1996년 12월 수입유제품에 대한 피해구제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농림부장관은 구제조치를 시행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산업

자원부와 협의하여 구제조치를 실시하였다.

## 5) WTO 통보

한국 정부는 세이프가드협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피해조사 단계별로 그 내용을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2. WTO 패널의 주요 쟁점 및 판정

### 1)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입증의 적정성

주 수출국인 EC는 한국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의 피해판정관련 모든 요소를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표(생산성, 가동률)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입증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은 국내 원유 및 분유산업의 생산성, 가동률은 산업의 특성상 검토의미가 없어 생략한 것으로 피해발생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피해검토에 있어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의 검토지표는 모두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당한 설명이 있는 경우 일부지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한국은 패널회의에서 검토 생략 이슈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으나 산업피해조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패널은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에 나열된 개별 지표를 조사함에 있어 국내산업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선택된 일부만이 국내산업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손익 등의 지표를 조사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국내산업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

EC는 한국의 우유품질 논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분유재고 증가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입이외의 요소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은 우유품질논쟁 이후에도 분유재고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조치 시행 이후 재고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급증이 재고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심각한 피해의 입증이 불완전하다고 하며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였다.

### 3)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의 적정성

EC는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피해구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적용 및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선택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쿼터물량 설정을 위한 과거 대표적인 3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접기간의 수입통계자료(1997년 7월~12월)를 사용하지 않아 쿼터수준을 낮추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세이프가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쿼터 물량을 설정함에 있어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준을 보장하였고, 산업피해구제신청(1996년 5월)이후의 기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행을 예상하여 수입물량이 증가한 기간으로 판단하였으며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고려가 조치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양측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구제조치수단으로 쿼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설정된 쿼터수준이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의 수준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4) 패널의 검토결론 및 권고의견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① 심각한 피해의 입증에 있어 세이프가드협정 제4.2(a)조의 규정과 불일치, ② 적절한 구제조치의 결정에 있어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의 규정과 불일치, ③ WTO에 대한 통보의 적시성이 미흡하여 세이프가드협정 제12조의 규정과 불일치한다고 지적하고, EC의 ① 한국은 GATT 제19.1조의 '예측치못한 사태의 발생'을 검토하지 않았음, ② 한국은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의 'under such conditions'를 별도요건으로 검토하지 않았음, ③ 한국의 WTO에 대한 통보는 그 내용의 수준이 세이프가드협정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음, ④ 한국은 EC에 대한 적절한 양자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등 3가지 제소사항은 기각하였다. 즉 한국은 세이프가드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시행한 범위안에서 EC의 이익을 무효화 내지 침해하였다고 패널은 판정하고 DSB(분쟁해결기구)가 한국에게 본 구제조치를 WTO협정상의 의무에 일치시키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 3. 시사점

#### 1) 산업피해조사보고서의 중요성

패널은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보고서를 주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일부 불완전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제출된 산업피해 중간보고서, WTO 통보문 및 추가적인 보완 자료 등은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산업피해조사시 협정에 명시된 형식적 요건의 철저한 이행 필요

패널은 현실적으로 피해조사의 실질내용을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형식적 요건 구비여부를 중점 검토하는 입장을 보였다.

#### 3) 자료의 증거능력

패널에 제출하는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만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 : 유제품 세이프가드조치의 효과 분석]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동 조치는 유효하게 시행되었고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의 추세\*를 살펴볼 때, 한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관련 산업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국산품의 시장점유율 : (1996) 85% → (1999) 90%, 경상이익 : (1996) 4,068 → (1999) 3,815  
국산품 재고 : (1996) 15,000톤 → (1999) 4,000톤  
국산분유 판매가격 : (1996) 4,083원/kg → (1999) 4,658원/kg

#### 유제품



## 3절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반덤핑 조사

### 우회덤핑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3년 10월 18일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중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침엽수 합판의 덤핑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합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013년 8월 21일 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린 이후 2013년 10월 18일부터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수입되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 비중이 전체 합판의 3~4%에 불과했으나 2014년 말에는 60%까지 수직상승하였다.

이처럼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규제를 피해가게 된 배경은 2012년 10월 신청당시 침엽수 합판의 수입물량이 미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국내 합판 생산자들이 침엽수 합판의 관세품목분류를 누락하였고, 피신청인은 국내법에 우회덤핑에 대한 구제 제도가 없는 점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2014년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덤핑물품의 가격 또한 급격히 하락하여 적정가격에 못 미치는 동종물품의 가격인상을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인하를 초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크게 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4년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합판의 외판만을 침엽수로 대체한 덤핑물품의 저가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은 기대하였던 덤핑방지조치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여 그간의 실질적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업이익은 2012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가동률회복 지연, 재고 증가,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 감소 등 경영지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조사대상인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수입급증이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 취해진 덤핑방지조치를 물품의 사소한 변경을 통해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엽수 합판의 덤핑 수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4.22%~7.15%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4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2. 주요쟁점

### 1) 중국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범위에 침엽수 합판 포함 여부

국내 합판 생산자들은 HS Code 4412.31, 4412.32 합판 중 6mm 이상의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침엽수 합판 또한 합판의 범주에 속하고, 조사 당시 조사대상범위에도 포함되므로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번호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등에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조사대상물품의 정의와 관련 관세품목분류(HSK) 중 범위가 협소한 관세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한 활엽수 합판만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내 합판 생산자들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 2) 덤핑물품의 물량 증가 여부

수입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전에는 관세율이 동일하여 활엽수합판과 동일한 HSK로 신고하였으며, 덤핑방지 관세 부과후에는 침엽수합판의 HSK로 신고하여 수입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적인 물량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관세청 통관자료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이후 중국산 침엽수 합판 수입은 10배 이상 급증하였을 뿐만아니라 조사대상 공급자의 對한국 수출 물량 중 침엽수 합판의 비중은 8.8%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85.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당시 다수의 국내수입자가 중국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침엽수 합판을 대체 수입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합판의 외판만을 침엽수로 대체한 덤핑물품의 저가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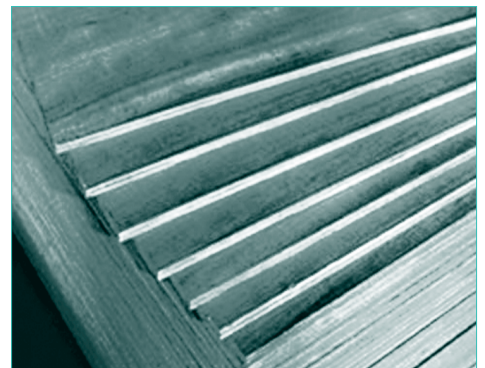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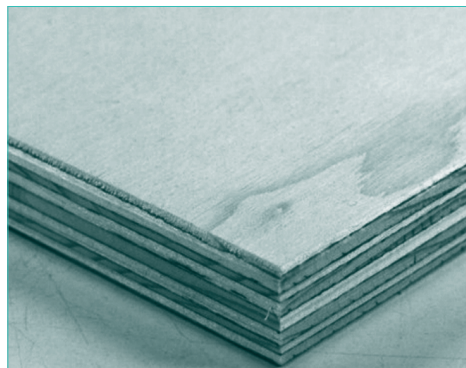
### 3. 시사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반덤핑 조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물품의 사소한 변경으로 인한 덤핑수입 증가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첫 사례이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새로운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에 있어서 우회덤핑 제재와 같은 반덤핑제도 강화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부과대상물품 결정(Scope ruling)에 대한 미국, EU 등의 제도 연구와 함께 국내법상 우회덤핑 관련 규정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침엽수 합판



## 4절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풍선효과 사례

2편

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 1. 조사 및 조치개요

동 조사는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 2008년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원심 : 2008.8월~2011.8월, 재심 : 2012.3월~2015.3월) 되어 오던 중, 원심 및 재심의 신청인이었던 한국알콜산업(주)이 2014년 9월 26일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알콜산업(주)은 국내 유일한 초산에틸 생산자이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11월 20일 조사를 개시하였고, 조사 결과 인도산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2015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sup>1)</sup> 하였다.

### 2. 주요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분석 시 덤핑수입 이외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WTO 반덤핑 협정 제3.5조(비전가규정: non-attribution)에 따라 인과관계 분석 시 덤핑물품 이외의 영향, 특히 기타국 물품(사실상 대부분 중국산임)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었다.

#### 1) 덤핑물품, 동종물품 및 기타국 물품의 물량 및 가격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2012년에 201.7%, 2013년에 167.8% 증가하는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

1) 한국알콜산업(주)은 2014년 9월 25일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연장을 요구하는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본 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본 조치를 연장하여 2015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은 계속 상승하였다.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전년 대비 2012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하는 등 등락하였고,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2012년에는 하락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는 상승하면서 2012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중국산으로 대표되는 기타 국가 물품의 수입물량은 전년 대비 2012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 감소하였고,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2012년에는 상승하였으나 2013년 이후 하락하였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012년과 2013년에 전년 대비 각각 2.1%, 9.5% 하락하는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하락하였고,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12년과 2013년에 전년 대비 각각 5.3%, 12.1% 하락하였으며, 기타국 물품의 판매가격도 2012년과 2013년에 전년 대비 각각 9.7%, 9.3% 하락하였다. 기타국 물품의 판매가격은 2011년에는 동종물품 가격보다 높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동종물품 가격보다 낮았으며, 덤핑물품의 가격보다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높았다.

[표 1-4-①] 국내 시장 물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3.2%	19.3%		△0.9%
총수입			19.3%	5.6%		△2.3%
물량	덤핑물품		201.7%	167.8%		43.4%
	기타국물품		13.3%	△8.5%		△11.2%
	동종물품		△21.6%	51.4%		1.3%
시장 점유율	덤핑물품	-	상승	상승		상승
	기타국물품	-	상승	하락		하락
	동종물품	-	하락	상승		상승

[표 1-4-②] 국내 시장 가격 현황

(단위 : 천원/톤)

구 분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		△2.1%	△9.5%		△1.8%
	기타국산 판매가격		△9.7%	△9.3%		△2.9%
국내 산업	동종물품 판매가격		△5.3%	△12.1%		△0.5%
	동종물품 제조원가		1.9%	△7.0%		4.2%
	영업이익		적자 전환	적자 증가		적자 지속

## 2)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및 인과관계

무역위원회는 덤프물품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판매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가인 덤프물품의 판매가격이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2012년 급감하였다가 2013년 이후 회복되었으나, 이는 2012년 중국산에 대한 덤프방지조치 연장 이후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sup>2)</sup>하고, 인도산 덤프물품의 수입까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크게 인하함으로써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가격 인하로 2013년 이후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인하로 국내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제조원가 하락폭보다 판매가격 하락폭이 더 컸으며,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제조원가에 비해 판매가격 하락이 월등히 커,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2012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다.

2)

1차 재심조치로 원심보다 덤프방지 관세율이 낮아진 중국 일부 업체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산 물품 수입이 증가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동종물품뿐만 아니라 중국산에 비해서도 저가인 덤프물품의 판매가격이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동종물품의 급격한 가격하락을 유발하

2편 무역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였기 때문이며, 동종물품에 비해 월등히 저가인 덤핑물품의 수입 증가 및 판매가격 하락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판매가격을 하락시키고, 영업적자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2년의 국내산업 피해는 2012년 3월 덤핑방지조치 연장 시 관세율이 낮아진 중국의 주요 공급자들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3년 이후의 국내산업의 피해는 기타국 물품의 영향뿐만 아니라 덤핑 물품의 영향이 가세한 결과이며, 덤핑물품 가격이 기타국 물품 가격보다 크게 낮다는 점에서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기타국 물품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기 판단을 근거로 인도산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 3. 시사점

동 조사건은 동일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별건(원심, 재심)으로 신청되어, 2개 이상 국가의 수입 물품을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 수입 물품의 영향을 기타 원인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입국 물품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국내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 5절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조사

### 세이프가드 조사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9년 9월 30일 중국 등으로부터의 마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신청하였다. 수입물량 제한 또는 4년간의 관세인상(신선냉장마늘 중 깬마늘 : 376% → 500%,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 : 30% → 380%) 등의 구제조치와 본 조치 이전의 잠정조치 요청을 포함한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11일 제144차 무역위원회를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같은 달 27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이익과의 관계 및 국제 통상차원의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잠정조치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하였다. 이 조치는 200일 동안 수입품 중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기본관세에 285%의 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같은 해 11월 18일 재정경제부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잠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2. 주요 쟁점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요건은 ①수입증가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②심각한 피해, ③인과관계이다. 무역위원회는 이 3가지 요건의 충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 1) 수입의 증가

마늘의 수입량 및 국내시장점유율은 1997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4년 UR관세양허협상 시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늘의 대부분은 통마늘로 그 외의 마늘에 의한 대체와 그로 인한 수입급증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5-①] 연도별 수입량 및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구분	연도	1997년		1998년		1999.1~9.	
		1996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입량(톤)	9,497	18,389	93.6%	35,996	95.7%	28,330	28.2%
시장점유율(%)	3.3	6.2		11.0		12.2	

## 2) 심각한 피해의 발생

1999년 국산마늘의 판매가격, 농가의 순수익 및 총판매액이 크게 하락하는 등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표 1-5-②] 연도별 국산품 가격, 농가수익 및 국산품총판매액

구분	연도	1997년		1998년		1999.1~9.	
		1996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산품 가격 (원/kg)	1,638	2,001	22.2%	2,719	35.9%	1,560	△42.4%
농가수익 (천원/10a)	749	1,214	62.1%	1,479	21.8%	636	△57.0%
국산품총판매액(억원)	5,801	6,081	4.8%	8,771	44.2%	3,599	△38.3%

## 3) 수입증가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 성립

1997년 이후 수입마늘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8년 하반기 이후 수입의 급증으로 1999년 국산마늘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입증가가 국내산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위원회는 2000년 2월 2일 산업피해여부를 긍정으로 판정하였으며, 3월 15일 재정경제부에 3년의 기간 동안 깎마늘, 냉동마늘 및 초산 제조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구제조치를 건의하였다.(표 1-5-③참조) 또한 마늘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 5월 31일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를 무역위원회의 건의원안대로 최종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표 1-5-③] 긴급관세율

품 명	긴 급 관 세 (무역위원회건의)	실 행 세 율	
		부 과 전	부 과 후
냉동마늘	285%(1,707원/kg)	30%	315%(1,707원/kg)
초산조제마늘	285%(1,707원/kg)	30%	315%(1,707원/kg)
간 마 늘	60%(300원/kg)	376%(1,880원/kg)	436%(2,180원/kg)

\* 긴급관세를 매년 4/100씩 인하

### 3. 중국의 보복조치와 한·중 통상협상

2000년 6월 7일 중국은 마늘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휴대전화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시행하였다.<sup>3)</sup> 양국은 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한·중 통상협상을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 측이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 측은 구제조치의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5개월 단축하였으며, 3년간 매년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 2만톤 가량에 대하여 30% 저율의 기본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50% 저율의 기본관세로 수입 가능한 MMA물량을 중국산 마늘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물량이란 UR협상 시 관세화의 유예가 인정되는 품목 중 기준년도(1986~1988)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화유예기간 동안 낮은 관세율로 시장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물량을 말한다. MMA 대상품목에는 신선·냉장마늘(간마늘 포함),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이 포함되었다. 8월 2일 재정경제부는 협상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부과 조치내용을 변경하였다.

3) 중국의 WTO가입은 2001년 11월 10일, 제4차 도하각료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늘세이프가드 발동당시 중국은 WTO협정의 이행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양국간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협약이 없었으며 중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3조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닌 일방적 보복조치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하였다.

[표 1-5-④] 연도별 MMA 및 쿼터 물량

품명	구분	기간			2001년 기본관세 또는 WTO양허관세
		2000.6.1~ 2000.12.31	2001.1.1~ 2001.12.31	2002.1.1~ 2002.12.31	
간마늘	MMA (MMA내관세)	11,895톤 (50%)	12,538톤 (50%)	13,181톤 (50%)	50%
	긴급관세	60% 또는 300원/kg	58% 또는 288원/kg	56% 또는 276원/kg	372% 또는 1,860원/kg
냉동·초산 조제마늘	쿼터 (쿼터내관세)	20,105톤 (30%)	21,190톤 (30%)	22,267톤 (30%)	냉동마늘 : 29.6%
	긴급관세	285% 또는 1,707원/kg	274% 또는 1,639원/kg	263% 또는 1,571원/kg	초산조제마늘 : 30%

#### 4. 조사 재검토 및 조치 종료

2002년 6월 28일 농협중앙회가 현행수준의 긴급관세부과의 조치기간을 4년간(2003~2006) 연장하기 위한 재검토 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7월 29일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7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마늘산업 종합대책'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취하여져 불공정무역조사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sup>4)</sup>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 5. 시사점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의 요건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사유)  
3.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의 충족 ① 수입증가 ② 심각한 피해 ③ 인과관계
- 공정·투명한 절차이행 : 모든 절차·자료공개, 의견수렴, WTO통보
-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보상협약 : 무역손실액 상당의 보상방안

무역위원회의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였다. 판정관련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등 절차와 자료의 공개를 수행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등 중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조사개시, 잠정조치, 피해긍정판정, 조치시행의 각 조사 단계별로 관련된 정보를 WTO 및 중국 측에 즉각 통보하였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발동요건 및 절차적 규정을 준수한 정상적인 무역에 대해서도 발동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가격차별화나 보조금지급(illegal price discrimination or subsidization)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와 달리 조치내용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시행되었던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보상·보복조치가 가능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시행 시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 중국산 마늘





## 6절 일본 자동가이드홀펀칭기 반덤핑 조사

### 국내 생산자 매출규모 최소사례(매출 30억원)

#### 1. 조사 및 조치개요

2005년 12월 29일 자동가이드홀펀칭기(Automated Guide Hole Puncher)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생산자인 세호로보트산업(주)가 조사를 신청하였다. 2002년도까지는 수동펀칭기가 사용되다가, 2003년에 피신청인이 자동펀칭기를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2004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국내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무렵, 기존 한국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일본산 제조업체는 신청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신청인의 납품가격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제시하는 등 덤핑가격제시를 하는 행위로 인하여, 경쟁관계에 있던 국내생산품의 가격인하 압력을 촉발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급격한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는 2006년 2월 10일 조사를 개시하였고, 본 건 조사의 핵심 쟁점사항은 동 산업이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무역위원회는 ① 국내산업이 발전과정에 있는지 여부, ② 국내산업 발전의 실질적 지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2006년 10월 23일 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최종판정하여 4.92%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해 2006년 11월 23일부터 3년간 4.92%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다.

## 2. 주요 쟁점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지연 여부 판단은 개별 사건의 경제적 요인과 산업적 특성을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하되, 먼저 국내산업이 발전된 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 국내산업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 1) 국내산업이 발전과정에 있는지 여부

우선, 국내산업이 발전과정에 있는 산업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 ① 생산개시일자, ② 생산의 안정적 가동여부, ③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④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은 2003년 12월 시제품 x대를 생산하였으며, 2004년 4월에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였다. 연도별 가동률은 2004년 37.5%, 2005년 39.6%를 유지하였고, 실제 판매수량은 손익분기점 매출수량에 비해 2004년 12.4%, 2005년 31.6% 각각 미달한 상태였다. 또한 실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보다 2004년 XX,XXX천원, 2005년 XX,XXX천원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손익은 2004년 XX백만원 손실, 2005년 XXX백만원 손실로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국내소비점유율은 2004년도 53.1%에서 2005년도 51.4%로 감소하여 안정적인 경영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이 발전과정에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후 첫째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확립)되지 않은 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피신청인측의 주장이 주요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도 확립여부의 판단기준에 포함하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와 달리 우리 법령이나 지침상에는 언급이 없는 점, 미국·일본산 폴리에스탈 수지 패널에서 시장점유율이 높다 해서 확립된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점 등을 들어,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설립지연이 어느 특정한 한가지 요인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생산개시 시점, 가동률, 손익분기점 도달현황, 경영상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동 조사건의 국내산업은 발전된 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 국내산업 발전의 실질적 지연여부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러한 피해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이 지연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진 2년 동안의 국내산업의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① 신청인은 국내시장 수요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고, ②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③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도 감소하는 한편, ④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경상이익 또한 적자상태로 전환하였으며, ⑤ 1인당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현금수지가 악화될 뿐 아니라 ⑥ 자본조달능력도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며, ⑦ 고용인원과 임금이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관련 지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어느 정도 지연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질적 지연의 정도는 ① 국내생산품이 덤핑수입물품에 비교하여 품질·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와 ② 국내산업의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와의 비교를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기대경영성과에 대한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64.5%, 가동률은 76.0%, 판매가격은 85.0% 수준이며, 영업손익은 적자상태가 확대되었고 현금수지가 악화되었으며, 부가가치율은 동종업종의 25.3%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발전과정 중에 있는 국내산업의 실제경영성과가 기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영성과보다 현저히 미달된 수준에 머무르는 등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국내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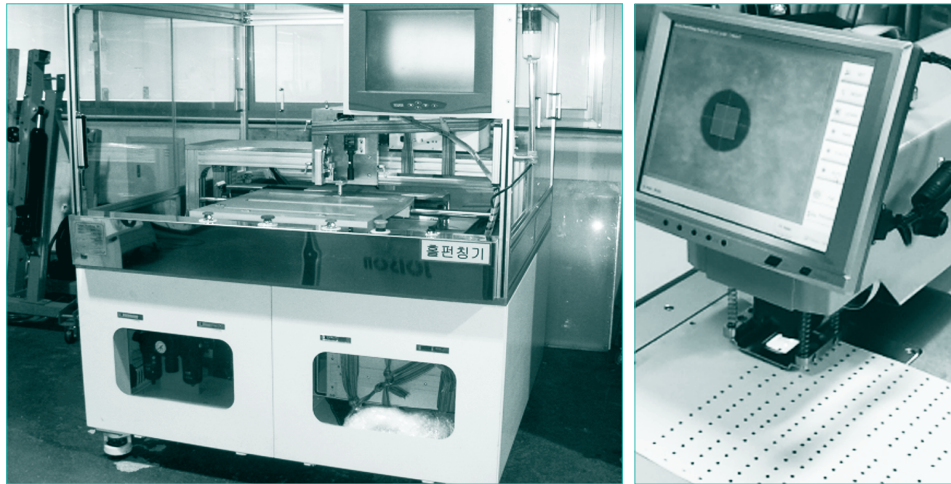
## 3. 시사점

동 조사건은 중소벤처기업이 회사규모나 자금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는

일본 생산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1993년 이후 처음으로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 발전을 지연시켰다는 사유로 승소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건은 향후 국내 벤처기업들이 기술력과 자금력에서 월등한 일본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할 경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발전 중인 산업에 속하는 많은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자금력도 풍부하지 않은 일반적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수입품의 덤핑공세가 시작되면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발전 중인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갖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인식한다면, 충분한 조사절차를 취하되 가급적 조사진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반덤핑 제소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동가이드홀펀칭기



## 7절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조사

덤핑방지관세 최장기간 부과사례(2004.7.30~2020.6.1)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 개요

2016년 3월 29일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세아창원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등 3개사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016년 9월 30일 종료되면,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2003년 5월 12일, 당시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바를 생산하고 있던 금강공업(주), 동방산업(주), (주)배명금속, (주)세아특수강, 창원특수강(주) 등 5개사의 요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에 따라 2004년 7월 30일부터 5년간 최초 부과되었으며, 2010년 2월 24일 3년간 1차 부과기간 연장, 2013년 10월 1일 3년간 2차 부과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계속 부과되어 왔다.

재심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각강(square bar)·육각강(hexagonal bar)·평강(flat bar)인 제품이며,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주방용품, 기타의 산업설비에 사용된다.

2015년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바 시장은 89,622톤, 약 3,650억 원 규모로 이중 국내산이 물량 기준으로 56.3%, 일본·인도·스페인산이 9.6%, 기타국산이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아창원특수강(주)는 2015년 3월 포스코특수강(주)에서 (주)세아베스틸로 매각된 회사로 2015년말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 5개사는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세계 경제 환경의 악화 및 철강 산업의 초과공급에 따른 경쟁의 영향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바 일반강종의 수입량이 급증할 것이며, 특히 일본산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덤핑방지조치 종료로 일반강종까지 물량 유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3차 종료재심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 2) 조치 내용

조사실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아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6월 3일 재심사개시를 공고하였다. 동 공고에 따라 조사대상업체로 일본의 산요 등 3개사, 인도의 비라즈 등 4개사, 스페인의 아세로스 등 2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일본의 3개사와 인도의 비라즈사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덤핑률 조사 : 2015년)까지를 재심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공급자에 대한 질문서 조사, 현지실사, 공청회 등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공청회 후 수정된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 확인절차를 새로이 추가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였다.

2017년 3월 17일 제364차 무역위원회에서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인도 비라즈사에 대하여는 3.56%,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년 6월 2일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연장(2017.6.2.~2020.6.1)을 기획재정부령(제624호)으로 공고하였다.

## 2. 주요 쟁점

### 1) 재심사대상물품의 누적적 평가

무역위원회는 일본 조사대상업체가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을 누적적 평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 조사대상업체는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은 고품질 특수강(304강, 316강을 제외한 제품)의 비중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범용제품(304강, 316강)의 비중이 높고 가격이 낮은 인도산 재심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결과 1차 및 2차 종료재심사에서 최초 조사 시의 누적적 평가를 유지하였으며,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물리적 특성, 제조공정, 유통시장, 용도 및 소비자 평가 등이 동일하거나 최초 조사 시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또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일본산 범용제품의 수입비중, 인도산 특수강의 수입비중 및 국내산업의 특수강 생산비중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이 2015년 총수입량의 XX%를 차지하여 2013년(XX%)과 유사하므로 2차 종료재심사 시의 시장경쟁 환경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는 3차 종료재심사에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수입물량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조사결과 일본의 2015년 스테인리스 스틸바 생산능력은 XX천 톤으로 추정되며, 국내산업의 생산능력 XX천 톤의 2.3배 수준이었고, 일본의 2015년 생산량은 XX천 톤으로 63.2%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스테인리스 스틸바 추가 생산능력은 xx천 톤으로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의 1.6배 수준이었다.

일본 조사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스테인리스 스틸바 생산능력은 XX천 톤이며, 2015년 생산량은 XX천 톤으로 90.4%의 가동률을 보였다. 이 경우 스

테인리스 스틸바 추가 생산능력은 XX천 톤으로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의 20% 수준이었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조사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ISSF(International Stainless Steel Forum) 회원사 간에 공유된 자료와 차이가 크며, 생산능력 산정방식이 각 사별로 다르게 제출되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ISSF의 생산능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ISSF의 생산능력 자료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판재, Long Product 제강능력, 봉재(bars and sections), 선재, 반제품 등으로 생산품을 구분하여 작성되었으며, 조사실은 이 중 봉재의 생산능력을 이용하였다.

일본 조사대상업체는 각 사의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조공정이 동일하지 않아 생산능력 산정방식이 각 사별로 다르며, ISSF의 자료가 스테인리스 스틸 바 생산능력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강 전체에 대한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조공정은 표준공정으로 생산능력 산정방식이 각 사별로 다를 수 없고, ISSF의 자료에 스테인리스 스틸바 압연 생산능력(bar mill)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일본 조사대상업체 중 다이도와 아이치가 ISSF의 정회원사인 점, 일본 조사대상업체가 내수가격자료 및 생산원가자료 제출 등 덤핑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실에서 현지실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그 외에 달리 일본 조사대상업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일본 조사대상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일본 조사대상업체는 각 사가 생산한 범용제품의 대(對)한국 수출량 자료로 2012년 XX톤, 2013년 XX톤, 2014년 XX톤, 2015년 XX톤을 제시하며, 동종물품과 경쟁하지 않는 특수강의 수출 비중이 범용제품보다 높아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재발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분석하여 2012년 XX톤, 2013년 XX톤, 2014년 XX톤, 2015년 XX톤의 일본산 범용제품이 수입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산업이 2012년 XX톤, 2013년 XX톤, 2014년 XX톤, 2015년 X톤의 특수강을 생산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무역위원회는 ISSF의 자료가 일반적으로 덤핑 조사에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ISSF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스테인리스 스틸바 산업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일본의 스테인리스 스틸바 산업에 추가 생산능력과 수출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동 조사건은 3차 종료재심사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긍정 판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조치가 취해진 최초의 사례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보다는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긍정 판정하였다.

또한, 본 건의 긍정 판정으로 인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품목들의 국내 생산자들이 향후 적극적으로 종료재심사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 8절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반덤핑 조사 산업피해 부정판정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동 조사건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Anatase-type titanium oxide, HSK : 2823호)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원심 : 2005.3월~2008.3월, 재심 : 2008.8월~2011.3월)되어 오던 중, 원심 및 재심의 신청인인 코스모화학(주)이 2010년 8월 31일에 본 부과 조치를 연장하여 줄 것을 재심사 요청한 건이다. 신청인인 코스모화학(주)은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생산자이다.

무역위원회는 2010년 10월 29일 재심사를 개시하였고, 재심사 결과 본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본 반덤핑 조치는 2011년 3월에 종료되었다.

### 2. 주요 쟁점

동 조사의 주요 쟁점은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 국내산업의 피해 지속 여부, 반덤핑 조치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 재발 가능성이었다.

#### 1)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

신청인은 일부 수입자가 HSK 3206호로 수입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2823호로 수입된 물품과 HSK 3206호로 수입된 물품을 동일한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것은 두 물품의 용도가 동일하며 상호 대체가능성이 있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으로서 모두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무역위원회는 재심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동 재심사대상물품은 기획재

정부령에 의하여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으로서 관세번호 2823호에 한정하고 있는 바, 아나타제 조제품은 당해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재심사건의 재심사대상물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2) 국내산업의 피해 지속 여부

국내수요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차 종료재심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이후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이 국내소비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크지 않았고, 국내산업피해 관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8년 8월 덤핑방지관세부과 이후 국내산업의 생산량, 국내출하량 및 가동률이 2009년에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소비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시장점유율의 하락폭도 크지 않았으며,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2009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고, 제조원가는 계속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지표가 호전된 점에 비추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표 1-8-①] 연도별 국내산업 추이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6.2%		12.2%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				25.4%		74.8%
국내 생산품	출하량			△8.1%		8.6%
	매출액			9.4%		23.8%
	생산량			△13.7%		26.9%
	영업이익	적자		흑자전환		흑자증가

### 3) 반덤핑 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 재발 가능성

무역위원회는 세계시장의 공급부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산화티타늄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중국내 기업은 경영환경 악화로 2009년 3분기 이후 70여 개 이상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동 조사건은 원심 및 재심에 따른 조치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서 덤핑물품의 수입이 감소하여 국내기업의 판매,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가 개선된 상황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덤핑물품 공급국의 생산기업이 감소하는 등 공급국의 공급상황이 호전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덤핑 조치를 종료한 전형적인 사례로 사료된다.

###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 9절 태국,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반덤핑 조사 신청인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이 증가한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08년 3월 11일 한국합판보드협회가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률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2007년 수입량은 2004년 수입량의 2배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시장 점유율도 2004년 19.6%에서 2007년 39.9%로 상승하였다. 저가의 조사대상물품으로 인해 국내생산자는 원가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영업이익률이 2004년 21.4%에서 2007년  $\Delta$ 1.3%로 급락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신청을 하게 되었다.

#### 2) 조치내용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년 4월 23일 제254차 무역위원회에서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수출실적이 있는 태국의 13개, 말레이시아의 7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태국의 6개, 말레이시아에 3개업체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008년 9월 24일 예비판정에서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않았다. 무역위원회는 2009년 2월 25일 최종판정에서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7.67%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 2.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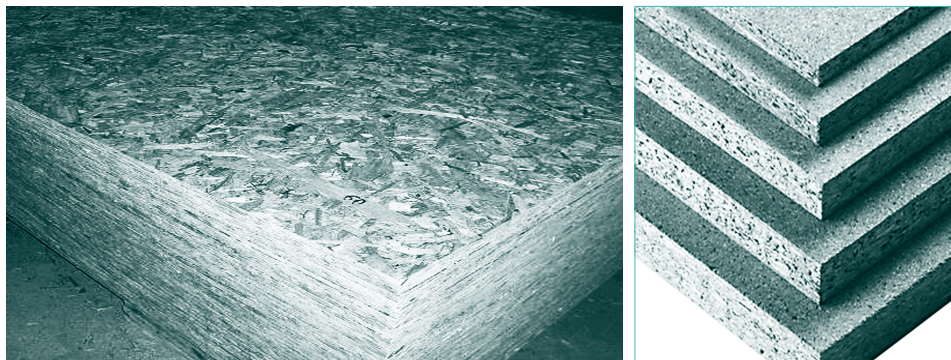
### 국내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입증가의 산업피해 인정 여부

2007년 기준 국내시장 공급비율은 물량기준으로 국내생산품이 약 58%,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이 40%, 기타국산이 2% 수준이었다. 국내생산자는 성장기업(주), 동화기업(주), 대성목재공업(주)로 3개 업체가 100% 생산하였고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수요자측에서는 독과점인 시장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하여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신청자측에서는 국내수요의 4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시장은 소수 국내생산자에 의해 통제되는 독과점 시장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 3. 시사점

국내공급능력이 50~60% 정도이므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자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물량측면에서 특정 국가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그 물량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판매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업이익 감소 또는 적자로 국내산업 기반이 무너지다면 소수의 국내생산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가 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상승이 예견되나, 이는 국내생산자의 공급부족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저가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반덤핑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파티클보드



# 10절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

## 시장점유율 산정 시 보세구역 반입물량 일부를 포함한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15년 10월 6일 주식회사 디케이씨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고, 관세법시행령 재70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심사 필요여부에 대해서 무역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신청인은 199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매출액은 2,639억 원, 종업원수는 170명 수준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 재심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두께가 8mm 이상 80mm 이하이고 너비가 1,000mm 이상 3,270mm 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을 거친 완제품으로 일정 규격 내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2011년 4월 21일부터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일부 특수 강종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2) 조치내용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료재심사 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으며, 201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공고를 하였다.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원심과 동일하게 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이하 'NSSC'), JFE Steel Corporation(이하 'JFE'), Nippon Yakin Kogyo Co., Ltd(이하 'YAKIN')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NSSC와 JFE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후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크게 감소한 점과 보세공장<sup>5)</sup> 내·외국산 원자재를 국내

5)

내·외국산 원자재를 국내에 위치한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과세보류 상태에서 완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를 부담하지 않음

에 위치한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과세보류 상태에서 완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를 부담하지 않음 반입물량 및 허용공차<sup>6)</sup> 범위내 제품 수입이 증가한 점 및 재심사대상기간(2010년~2014년) 동안 보세공장 반입물량의 가격과 허용공차 범위 내 제품의 수입가격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2016년 6월 24일, 제 355차 무역위원회에서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 2. 주요 쟁점

### 1) 국내산업 피해 분석 시 보세공장 반입물량 포함 여부

원심 조사개시 전인 2009년까지는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물량이 전혀 없었으나, 2010년 4월 원심 조사개시 이후 주요 수입·수요자들이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재심사대상물품 시장점유율 산정시에 보세공장 반입물량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도 원료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될 경우 관세 유보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 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세공장으로 반입된 물량 중 수출품에 사용된 물량은 국내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수입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국내시장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 산정 시 수입통관을 거친 내수용 수입과 보세공장 반입물량 중 내수용 수입물량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보세공장 반입 물량의 일반 수입 전환 가능성

원심 조사개시 이후 주요 수입·수요자들이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조사대상기간(2010~2014년) 동안 국내 수입 통관되는 물량은 연평균 34.0% 감소한데 반해 보세공장 반입 물량은 연평균 14.8% 증가하였다. 피신청인인 일본 생산자들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의 대한국 수출량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세공장으로 반입된 후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어 해외로 반출되고 있어, 재심사대상물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이후 국내 반입 물량의 대부분이 보세공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보세공장 유지 시 각종 비용 발생 및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보세공장 특혜를 유지하지 않고 일반 수입으로 전환하여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던 물량이 내수시장으

6) 허용공차(Tolerance) : 기계부품 등을 제작할 때 설계상 정해진 치수에 대해 실용상 허용되는 범위의 오차를 말하며,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기준에 의하면 두께는 (-) 0.3mm, 너비는 (+) 25mm 까지임

☞ 재심사대상물품은 두께(8~80mm)와 너비(1.00~3,270mm)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허용공차를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피할 수 있음



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허용공차 범위 내 제품 수입 물량의 재심사대상물품 전환 가능성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은 연평균 34.0% 감소한데 반해 허용공차 범위 내 제품 수입량은 연평균 65.4% 증가하였다. 피신청인은 허용공차 범위 내 제품은 원재료비 절감 등을 사유로 위한 업계의 요구사항으로 덤핑 조치와 상관없이 발주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원심 조사개시 이전에는 허용공차 범위 내 제품 수입량이 미미한 점과 허용공차 범위 내 제품은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며 약간의 규격 차이만 있으므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허용공차 범위 내 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의 수요가 재심사대상물품 범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재심사대상물품의 용도가 산업용 원자재로 주로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고, 두께 및 너비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덤핑방지조치 이후 주요 수입·수요자들은 덤핑방기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으로 전환하거나, 허용공차 범위내 제품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였다.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각종 부품류)



# 11절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반덤핑 조사

## WTO 분쟁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2002년 9월 30일 국내생산자인 신호제지 등 5개사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백상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원심과 1차 재심사에서 긍정 판정되어 덤핑방지 조치로 이어졌다. 원심 조치로서 2003년 11월 7일부터 3년간 2.80~8.99%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었고, 1차 재심 조치로서 2007년 6월 1일부터 3년간 2.80~7.72%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었다. 1차 재심 조치 시에는 조사에 대응한 인도네시아의 인다키아드 등과 중국의 유포엠에 대해서는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신 가격약속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20일 2차 재심사 최종판정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치가 종료되었다.

### 2. WTO 분쟁 경과 및 판정

원심 덤핑방지 조치가 시행 중이던 2004년 6월 4일 인도네시아는 백상지에 대한 원심 반덤핑 조사가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양해(DSU) 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여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04년 8월 16일 한국의 백상지 반덤핑 조사 건을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였고,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됨으로써 분쟁 절차가 공식화되었다.

협의를 요청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후인 2005년 11월 28일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주장한 26개 사항 중 6개 절차적 사안에 대해 반덤핑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2006년 6월 26일 제233차 무역위원회에서 동 6개 사안을 정정한 이행보고서를 의결하여 2006년 7.27.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패널의 협정 불합치 판정사항을 이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원회의 패널보고서 이행이 여전히 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6년 12월 22일 이행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1월 23일 이행패널이 설치되었다. 2007년 10월 22일 이행패널은 무역위원회의 6개 이행 중 2개 사안에 대하여 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2008년 6월 25일 이행패널의 판정 내역을 반영한 이행보고서를 제256차 무역위원회에서 재의결하여 관보 게재함으로써 패널의 판정을 재이행하였다.

이후 국내산업의 요청에 의해 개시된 2차 재심사에서 무역위원회가 2010년 10월 20일 최종판정 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내리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WTO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 3. WTO 패널의 주요 쟁점

#### 1) 원심 패널

##### (1) 이용가능한 자료 적용 시 특별한 신중 및 신뢰성 검증 의무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수출자의 정상가격으로서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출처로부터의 정보, 즉 판매회사의 판매비와 제조회사의 금융비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적용한 이유를 조사보고서 등에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패널은 수행활동이 상이한 회사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자료로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제6.8조와 동협정 부속서II 제7항의 특별한 신중(special circumspection)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조사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사대상 공급자의 정상가격 산정 시 조사신청서 상의 정보를 이용 가능한 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제6.8조와 동협정 부속서II 제7항의 신뢰성 검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판정하였다.

### (2) 이해관계인의 정보열람 권한 보장

무역위원회는 구성가격 산정에 사용한 판관비 비율과 이윤율을 당해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공개하였으나, 제조원가, 판관비, 이윤의 수치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해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구성가격 산정에 대한 상세 수치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안에 대해 패널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 대해서까지 정보 접근을 거부한 것은, 비밀이 아닌 한 조사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협정 제6.4조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판정하였다.

### (3) 산업피해판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 제공 의무

패널은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의결서 등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제3.4조(덤핑물품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와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함)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조사당국이 피해요소(특히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 요소들)에 대한 평가와 이들이 실질적 피해 판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2) 이행 패널

### (1) 상이한 출처의 이용 가능한 자료 적용 시 특별한 신중 의무

무역위원회는 원심 패널 판정 이후 이행보고서(2006.6.26.)를 통해 ①제조회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매회사의 금융비용 비율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②동 금융비용 비율의 타당성을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특별한 신중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행 패널은 이행보고서를 통해 검토된 사항이 여전히 이용 가능한 자료 적용 시 이중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 (2)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피해 판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무역위원회는 ①피해지표에 대한 평가와 피해지표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무역위원회 의결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하고 ②무역위원회 의결서를 수정하여 관보에 게재(2006.7.27,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05호)함으로써 원심 패널의 판정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측은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재결정시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조사대상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재평가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다시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행 패널은 무역위원회가 패널보고서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이익방어를 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협정 제6.2조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판정하였다.

## 4. 시사점

### 1) 절차적 규정 준수의 중요성

WTO 반덤핑협정에는 덤핑마진을 산정하거나 산업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어야 할 각종 실체적 규정 외에,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각종 절차적 의무 사항이 다수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 관련 분쟁에서 절차적인 결함은 협정 불합치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덤핑마진 산정이나 산업피해 여부 판단과 같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당국이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와 판단의 근거 등을 조사보고서 등에 명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면 협정 불합치 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인도네시아의 백상지 분쟁에서도 원심 패널과 이행 패널이 반덤핑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사항들은 모두 절차적인 사안이었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적용은 절차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적용은 조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어서 모든 이해관계인이 가장 주시하는 사항들 중 하나이기도 하고, 반덤핑협정 제6.8조뿐 아니라, 협정 부속서II에 그 적용과 관련된 각종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이용 가능한 자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차 출처로부터의 정보가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사실인지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특별한 신중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검토 결과는 조사보고서 등에 명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분쟁해결 절차의 긍정적 측면

WTO 분쟁해결 절차는 높은 시간적, 금전적, 인적 비용을 수반한다. 상소 등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기도 하고, 법률대리인 고용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며, 여러 명의 인력이 분쟁 대응에 관여하게 된다. 게다가 조사당국의 조사와

2편 무역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판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루어지는 일종의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당국이 분쟁에 회부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쟁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역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와 개선 노력은 분쟁을 통해 구체화·가속화 될 수 있다. 한국-인도네시아의 백상지 분쟁에서 다루어진 26개 쟁점사항은, 한국이 결과적으로 승소한 사안이든 패소한 사안이든 상대국 정부에 의해 협정 합치성 여부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패널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규정에 대한 적법성이 확보되기도 하고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관행 개선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반덤핑협정은 WTO협정 중 가장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정으로서 모든 WTO회원국이 반덤핑제도를 운용하는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각국의 제도와 관행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 간 제도 운용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을 조사의 결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제도의 적극적인 운용에 수반되는 결과라고 인식을 전환해 대응한다면, 반덤핑제도가 외국 수출자의 불공정한 저가 판매행위로 인한 우리 피해 기업을 정당하게 구제하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백상지



# 12절 중국산 오프셋인쇄판 반덤핑 조사

## 조사대상물품 범위 변경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 개요

2016년 8월 5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 이하 ‘오프셋인쇄판’)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인 제일씨앤피(주)는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률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프셋인쇄판은 고순도 알루미늄코일을 전해연마와 양극산화 처리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서,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오프셋인쇄판에 노광시켜 인쇄판을 제작한 후 출력장비를 통해 인쇄물을 출력하는 오프셋인쇄에 사용되는 평면 모양의 판이다. 신청인은 1996년도에 설립된 오프셋인쇄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5년도 매출액은 150억 원 수준이고 종업원이 40명도 안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2) 조치 내용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6년 8월 30일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 수출실적의 크기에 따라 중국의 코닥, 보시카, 화광이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동사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여 5.73~10.00%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2017년 5월 19일 제366차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

를 향후 5년간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 2. 주요 쟁점

### 1) 조사대상물품 범위 변경시 판단기준

오프셋인쇄판 조사건은 조사대상물품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물품 조사범위는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이며,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과 재생판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과 수입자는 당초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된 물품 중 국내생산자가 생산할 수 없고 물품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네거티브판(negative Plate),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 프로세스프리판(Process-free Plate)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더블레이어판

오프셋인쇄판은 표면코팅 횟수에 따라 싱글레이어판(Single-layer Plate)과 더블레이어판으로 구분된다. 더블레이어판의 조사대상물품 제외로 싱글레이어판 수입이 더블레이어판 수입으로 일부 전환될 수도 있으나, 더블레이어판이 싱글레이어판에 비해 내쇄력과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이 높고, UV잉크인쇄, 신문인쇄 등에 강점이 있으며, 신청인이 더블레이어판을 생산한 실적이 없고, 생산을 위해서는 2차 코팅 및 건조설비가 필요하여, 설비의 제작·설치 및 안정적인 제품 생산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2) 네거티브판

오프셋인쇄판은 이미지면의 처리방식에 따라 네거티브판과 포지티브판으로 구분되고, 네거티브판은 내쇄력, 인쇄속도에 장점이 있는 반면 포지티브판은 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과거 네거티브판을 생산·판매한 실적이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3) 프로세스프리판

오프셋인쇄판은 노광이후 현상처리 필요여부에 따라 프로세스프리판과 논프로세스프리판으로 구분되며, 프로세스프리판은 현상처리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현상기가 불필



요하고, 현상액, 전기 등 비용이 절감되고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으며, 코팅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선도업체만 생산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세스프리판 수입의 대부분이 더블레이어판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프로세스프리판을 시험생산한 바 있으며, 다른 국내 기업이 생산준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프로세스프리판을 조사대상물품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3. 시사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는 덤핑률, 국내산업의 범위, 관세부과대상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WTO 협정문 및 관세법 등에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조사대상물품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불가능한 물품에 대한 조사대상물품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대체가능성, 국내시장현황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피신청인 및 수입자가 조사대상물품 범위에서 제외를 요청한 더블레이어판과 프로세스프리판은 신청인의 생산불가능한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제외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상이하였다. 더블레이어판은 내쇄력과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 UV잉크인쇄, 신문인쇄 등에 강점, 추가 설비의 제작·설치 및 안정적인 제품 생산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에서 제외한 반면, 프로세스프리판의 경우에는 프로세스프리판 수입의 대부분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서 제외된 더블레이어판에 해당하고, 국내기업이 생산준비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다.

#### 오텍인쇄판



# 13절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

## 분기별 덤핑마진 산정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11년 12월 19일 알루미늄 보틀캔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주)테크팩 솔루션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으로 인하여 자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초 알루미늄 보틀캔의 국내 공급은 전량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에 의해 국산화가 시도된다. 신청인은 2010년 6월부터 생산설비 투자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였고, 2011년 3월부터 판매를 개시하였다. 2011년 기준 국내수요는 207억 원 규모였고, 이 중 3% 미만인 6억 원 정도가 국내생산자에 의해 공급되었다. 당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던 롯데알미늄(주)이 설비투자를 하여 2012년 4월부터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조사 신청 당시에는 국내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까지 상당물량을 수입하였으므로 롯데알미늄(주)는 조사 시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신청인이 알루미늄 보틀캔 설비를 갖추어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한 이후, 당시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 공급자들은 대상물품을 저가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동종물품의 상업적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확립 및 발전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1월 18일 제298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이와켄, 유니버설켄, 치요다, 롯데물산, CSI 등 5개사가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이 중 치요다와 롯데물산은 조사대상 물품을 다이와 캔 또는 유니버설 캔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에 재판매하는 종합상사로서 생산자가 아니므로 개별 덤핑마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CSI는 각종 용기의 뚜껑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알루미늄 보틀캔을 생산하거나 한국에 수출한 실적이 없으나 수입자의 착오로 뚜껑을 알루미늄 보틀캔의 관세분류 번호(HS 세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조치 내용

2012년 6월 20일 제304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으나, 대상물품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의 사실 규명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잠정조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일본 조사대상 공급자와 국내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12년 10월 31일 제308차 무역위원회에서 최종판정을 내려, 다이와캔 및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4.59%의 덤핑방지 관세를 3년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 결과 미소 덤핑마진이 산출된 유니버설캔은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주요 쟁점

### 가격비교 기준에 판매시기를 추가하여 분기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비교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해 조사대상 공급자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조사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을 특정 가격비교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CCN(Control Code Number)이라고 부르고, 동일한 CCN의 내수 판매와 대(對)한국 수출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가격비교 기준인 CCN을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 4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가중평균 가격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가격비교 기준인 CCN은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등 세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사에서는 판매시기를 비교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판매시기를 비교 기준으로 추가한 첫 번째 이유는, 조사대상 공급자들이 제출한 답변

서 등을 분석한 결과, 분기별로 원가와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반덤핑협정 제2.4조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주로 조사대상기간 1년 동안의 품목(CCN)별 가중평균 가격을 비교하곤 한다. 즉 알루미늄 보틀캔 중 A타입 제품이 조사대상 기간 1년 동안 공급국(일본)에서 판매된 가중평균 가격과 동일한 제품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가중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격비교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원가의 등락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의 연간 판매가격을 가중 평균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동일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 및 수출 건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비교 기준에 판매시기를 추가한 원가 변동 요인 이외의 이유는, 한국 생산자가 국산화를 시도 및 현실화함에 따라 일본 공급자가 차츰 수출가격을 낮춘 현상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급과 경쟁 측면에서 일본 공급자들이 시기에 따라 가격 결정에 변화를 주었으므로, 조사실은 연간 가중 평균 가격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기간인 분기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CCN뿐 아니라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에 추가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이다.

### 3. 시사점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기준은 덤핑마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덤핑마진 산정 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따라서 반덤핑협정 제2.4조는 공정한 가격 비교 원칙을 언급하며, 동일한 거래 단계(일반적으로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제반 판매 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차이점을 고려(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명시된 각종 차이점은 CCN 또는 조정요소의 형태로 가격 비교 시 고려되나,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한 가격 비교는 덤핑사실 조사대상 기간인 1년간의 가중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 조사건과 같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원가 변동으로 인해 또는 기타 영업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 수출자가 시기별로 판가에 변화를 준 경우에는, 연간 가중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덤핑마진 수준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단위보다 세분화된 기간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반덤핑협정 제2.4조의 동일시기 비교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 기간 내의 월별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과 기존 관행을 존중하여 일관적인 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서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방법을 추가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14절 일본산 산업용 로봇 반덤핑 조사

### 덤핑가격으로 구성수출가격을 적용한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04년 8월 19일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인 현대중공업(주)는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률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1985년 일본 Nachi Fujikoshi Corp.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나찌 로봇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고객에게 동 제품을 공급해 왔으며, 1995년 국산 로봇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고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 3,000대 이상의 국산 로봇을 수출했다.

일본의 로봇생산업체는 신청인이 국내 로봇을 개발하여 해외수출에 성공하자, 일본산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한국시장을 공략하였으며, 1999년부터 서서히 덤핑행위를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이를 더욱 본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9년부터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고 산업용 로봇사업의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하게 되었다.

#### 2) 조치내용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4년 9월 22일 제208차 무역위원회에서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대(對)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가와사키'), 주식회

사 나찌후지코시(이하 '나찌'), 주식회사 야스카와전기(이하 '야스카와'), 화낙 주식회사(이하 '화낙')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005년 2월 22일 예비판정에서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형 로봇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여 8.76~19.4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20일, 제224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형 로봇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최종판정하여 가와사키 9.43%, 나찌 10.00%, 야스카와 9.40%, 화낙 4.5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4월 18일부터 5년간 4.51~10.0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 2. 주요 쟁점

동 조사건의 핵심 쟁점사항은 덤핑가격으로 실제수출가격(Export Price)을 적용할 것인지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을 적용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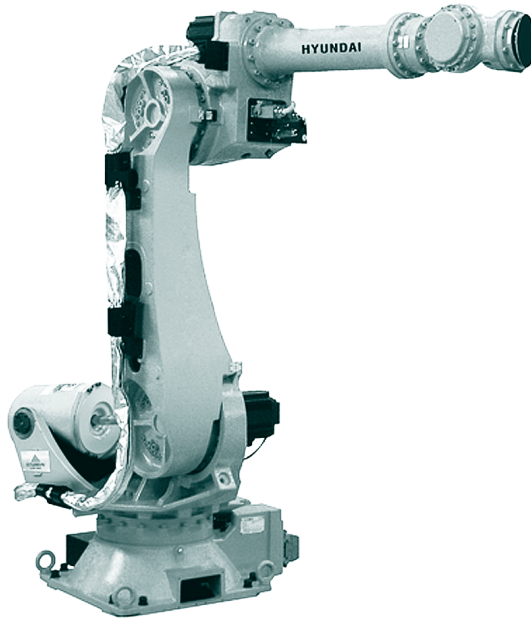
가와사키는 특수관계가 있는 한국현지법인에 수출하고 동 사가 한국내 판매를 하고 있음에 따라 구성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하였고, 나찌는 피신청인과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한 한국의 수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수출하므로 실제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하였다.

야스카와는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 내 독립거래자에게 판매한 XX%의 판매와 조사대상물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것을 알고 있는 공급국내의 독립무역상을 통한 XX%의 대해서는 실제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하였고, 특수관계가 있는 한국현지법인을 통하여 한국내 판매를 하는 XX%에 대해서는 구성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하였다. 그리고, 화낙은 대한국 수출판매 중 XX%는 공급국에 있는 시스템메이커에 판매하고 동 시스템메이커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하였고, 대한국 수출의 XX%는 특수관계가 있는 한국현지법인을 통하여 한국내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구성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하였다.

### 3. 시사점

동 조사건은 구성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한국현지법인이 수출하고 동 법인이 한국 내 판매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조사대상 물품이 한국에서 독립된 거래처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구성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덤핑가격의 조정을 위한 조정사항에는 일본 수출항에서 조사대상물품을 선적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관련비용, 해상운반비 및 보험료, 한국 수입항에서 발생한 수입통관제비용과 관세, 신용비용, 품질보증비, 한국 내 육운반비, 한국현지법인의 판매간접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있었다.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형 로봇



2편  
 무역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 15절 중국산 활엽수 합판 반덤핑 조사

## 해외공급자 현지실사 시 오류 등의 발견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16년 3월 3일 합판 국내 생산자 대표단체인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다.

1936년 시작된 우리나라 합판산업은 1970년 단일품목으로는 국내 최초로 수출액 1억 불을 달성한 이래 12년 연속으로 합판 수출량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그 위상을 자랑하였으나, 1980년대 초 시작된 남양재 원목(합판의 원재료) 보유국의 수출억제정책으로 인해 합판 제조업체 100여 개 회사가 도산하고 선창산업(주), 이견산업(주), 성창기업(주) 등 5개 업체만 남아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후 합판 국내 생산자는 해외 조립지 확보, 공장 자동화 등의 노력을 통해 합판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였으나, 저가 수입산 합판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재고 증가, 영업이익 적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반덤핑 조사결과 수출국의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어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2011년 2월에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2013년 10월부터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다.

합판에 대한 가장 최근의 반덤핑 조치였던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국내 합판 생산자는 합판 수입물량 감소나 수입단가 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 수출자가 국내법에 우회덤핑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겉면을 얇은 침엽수 면피로 대체한 합판(침엽수 합판)을 대량 수출함에 따라 여전히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고 (동 반덤핑 조사내용은 3절. 중국산 침엽수합판 반덤핑 조사 참조),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종료재심사 또한 요청하게 되었다.

## 2) 조치내용

무역위원회는 종료재심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 건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5월 10일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재심사 대상 공급자는 원심 당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받은 8개사(합판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특수 관계자 포함 시 총 17개사)이나, 산둥 신강, 창해와 그 관계사, 리안윤강안타이는 본 재심사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난닝 진룬 등 5개사(특수 관계자 포함 시 12개사)만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2017년 2월 17일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여 향후 3년간 4.57~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 2. 주요 쟁점

### 1) 특정 용도 또는 두께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 검토

국내 합판 수입자 대표단체인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이하 '수입자 협회'라 한다)는 국내 생산자가 콘크리트 타설·양생을 위한 거푸집용 합판 위주로 생산하므로 타 용도 합판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합판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수입자 협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가 11.5mm로 특정된다며 포장용이나 마루판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6~8mm의 얇은 합판은 필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실은 부과제외 요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자와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자료를 검토하고, 공급국 현지실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국내 생산자 자료를 통해 국내 생산 합판의 두께가 6mm에서 15mm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과 마루판용 합판의 국내 공급량이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설비 증설이나 변경 없이도 추가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심사 대상 공급자 자료 검토 및 공급국 현지실사를 통해 재심사 대상 공급자가 한국에 수출한 물량 중 두께 6~8mm의 얇은 합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하므로 두께가 얇은 합판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 합판 수요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재심사 대상 공급자가 합판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여부 결정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실의 검토의견과 산림청, 기획재정부 등 합판의 생산·유통 및 관세부과에 관한 주무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정 용도 또는 특정 두께의 합판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생산자 명의 위조 공급자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조사실은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답변서와 관세청이 제공하는 통관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재심사 대상 공급자(이하 ‘공급자 A’라 한다)가 재심사 대상 기간 동안 한국에 수출하였다고 보고한 물량이 같은 기간 관세청이 수리한 물량의 47%에 불과함을 확인하였다.

선적에서 수입신고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모든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두 자료 간 물량차이가 최대 10%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공급자 A의 물량차이는 과중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조사실은 공급자 A의 합판을 수입한 국내 수입자 10개사에 대하여 합판 수입과 관련된 문서 일체(주문서, 생산자 증명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를 요청하였다.

국내 수입자가 제공한 문서와 공급자 A의 답변서를 교차 검증한 결과, 주문에서 출고·선적, 수출신고까지 일련의 수출 판매활동이 모두 재심사 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졌

음이 명백한 거래 건 상당수가 공급자 A의 답변서에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조 사실은 한국 수출 건의 절반 이상이 보고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였고, 공급자 A는 타 공급자가 제조한 합판이 자사의 덤핑방지관세율(원심 시 공급자 A가 부과 받은 덤핑방지관세율은 조사에 대응한 모든 공급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을 적용받아 통관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공급자 A가 실제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을 특정하기 위하여 생산자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공급자 A는 해당 문서는 생산자(공급자 A)가 아닌 무역상이 발급받는 관계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무역위원회는 이후 공급자 A의 중국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 간부와 면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공급자 A의 한국 수출을 주도했던 중국 내 무역상 B가 A의 낮은 관세율을 이용하여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타사(기타 공급자로 분류된 2개사) 제조 합판에 대하여 공급자 A의 허위 생산자 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사실, ② 공급자 A가 타사 제조 합판에 대하여 수출검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생산자 증명서 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 ③ 공급자 A가 실제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한 물량과 타 공급자가 제조·수출한 물량을 구분하기 위한 여타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실 이외에도 공급자 A는 내수판매 시 다양한 종류(모델)의 합판을 단일 거래 건으로 묶음 판매하여 모델별 판매단가 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동일 공급자 A의 내수판매 가격을 이용해서는 동종모델 간 비교라는 반덤핑 조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조사실은 공급자 A가 한국 수출거래 건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내수 판매단가의 정확성 검증이 불가능한 점, 공급자 A가 타 공급자에게 허위로 생산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원심의 조치를 무력화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 A에 대해 원심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된 가장 높은 덤핑률인 27.21%를 적용하였다.

최종판정 시 무역위원회는 조사실이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기에 앞서 공급자 A에 대하여 자료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는지 여부, 현지실사 결과 및 최종덤핑률 산정내역에 관한 의견제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였는지 여부, 제3국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충분한 예고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중국산 합판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사소한 변경을 가한 침엽수 합판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 국내 생산자가 반덤핑 조치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품목이다. 이는 우회덤핑 관련 규정이 없는 현행 국내법 상 문제와 함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실질적인 관세행정 업무가 물품의 특성 및 제조공정 등이 상세히 기술된 ‘조사 대상 물품(재심사 대상 물품)의 범위’가 아닌 관세품목분류(HSK)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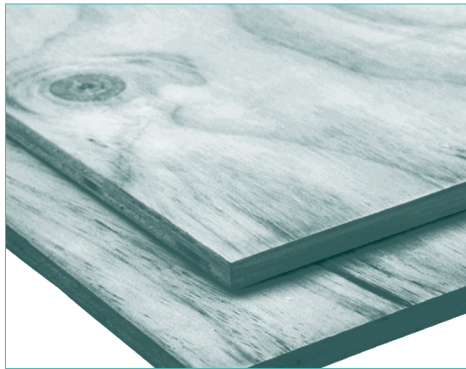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합판에 대한 관세품목분류 설정 시 반영조치 되지 않은 용도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부과제외를 결정할 경우 관세행정 상의 혼란과 함께 또 다른 우회덤핑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합판의 관세품목분류는 합판을 구성하는 원목의 수종, 합판 및 합판을 구성하는 단판의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조사 범위의 변경이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물품의 결정은 국내 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우회덤핑 가능성, 일선 세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기간산업의 공급과잉, 각 국의 무역적자 및 일자리 감소 문제로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이 이슈가 된 바 있다. 한국 수출자가 답변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수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및 상계관세율을 산정한 건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긴 공방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AFA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WTO 반덤핑협정을 준수하여 특별한 신증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WTO 반덤핑협정 제6조제8항 및 같은 협정 부속서 II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하려는 자료를 신중히 검토할 것 등의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동 재심사 과정에서 공급자 A의 반덤핑 조치 기만행위가 여실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반덤핑협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충분한 소명과 자료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AFA를 사용하기에 앞서 활용 가능한 제3의 대안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최종판정 전에 AFA 사용에 관한 사실 일체를 공표하고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였다.

### 활엽수 합판



## 16절 중국산 백시멘트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시 미소마진이 산정된 공급자에 대해  
본조사 종결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01년 12월 6일, 백시멘트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인 (주)유니온은 중국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덤핑률에 상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국내시장에서 백시멘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1999년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와 낮은 수입가격으로 인하여, 경쟁관계에 있던 국내생산품의 판매단가 하락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하게 되었다.

#### 2) 조치내용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2년 1월 23일 제168차 무역위원회에서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수출실적이 있는 중국의 민샹(Shandong Penglai Minxiang Cement Co.Ltd.), 진후아(Shandong Zhaoyuan Jinhua Special Type Cement Co. Ltd.), 티안시(Hebi Tianshi Special Cement Co. Ltd.)가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위 업체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002년 6월 27일 예비판정에서 민샹 및 진후아 2개 업체에 대해서 중국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티안시에 대해서는 예비판정 결과 덤핑률이 미소마진(2% 미만)에 해당되어 2002년 8월 22일

제177차 무역위에서 본조사 종결 판정을 하였다. 민상 및 진후아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02년 10월 24일 제180차 무역위원회에서 2개 업체 모두 최종 덤핑률이 미소마진으로 결정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2. 주요 쟁점

###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덤핑률을 받은 업체에 대한 본조사 종결여부

피신청인 중 티안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판정에서 덤핑률이 미소마진으로 결정되어 현지실사 등 본조사 지속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관세법시행령 제61조 등 관련규정의 유권해석 의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티안시에 대해서는 본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3. 시사점

무역위원회의 위 예비판정에 대해 미소마진의 덤핑률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즉시 조사를 종결해야하는지 또는 본조사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본다.

WTO협정문에는 ‘덤핑률이 미소마진인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종결한다’로 되어 있어 정확한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관세법(CFR)에는 덤핑률에 관한 예비판정이 긍정 또는 부정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는 계속되며, EU는 전체업체의 덤핑률이 2% 미만인 경우에 조사가 종결되나 현지실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률이 미소마진인 경우에는 본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나라는 WTO협정문을 근거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세부규정은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즉시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현지실사 없이 조사가 종결되므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오류나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향후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소마진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덤핑 조사에 있어 큰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 덤핑 조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미소마진 덤핑률을 받은 업체의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세법 개정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 백시멘트



## 17절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 조사 가격약속 불수락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05년 4월 29일 도자기질 타일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으로 인하여 자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도자기질 타일은 점토, 고령토 및 장식 등의 비금속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및 소성 공정을 거쳐 제조한 사각판 형태의 제품으로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내외장재로 사용되고 있다.

#### 2) 조치내용

2005년 11월 23일 제226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내리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함에 따라 2005년 12월 30일부터 7.25%~ 37.4%의 잠정덤핑방기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중국 조사대상 공급자와 국내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06년 4월 17일 제231차 무역위원회에서 최종판정을 내려, 중국 상원 7.49%, 신중원 및 관계사 4.64%, 허메이 7.21%, 샹시 4.21%, 신중웨이 7.21%, 하오홍 2.76%, 광둥홍토우 3.97%, 시완이글 3.51%, 상해 ASA 29.41%, 달리안 29.41%, 광둥난하이 29.41%, 메디컬이큘먼트 29.41%,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3.33%의 덤핑방기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2. 주요 쟁점

### 가격약속 수락여부 검토 시 고려사항

본 건의 경우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반덤핑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해 ASA와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산동 바로코 외 5개사(이하 ‘산동 바로코 등’) 등 7개 업체가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 이전에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하였다. 당시 상해 ASA는 2006.3.30.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자기질타일, 폴리싱타일, 도/자기질타일, 컷팅타일 등 품명으로 구분하여 최저가격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해 ASA는 실제수출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약속을 제의하여 “수출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약속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대응하지 않았다. 산동 바로코 등은 2006.4.7.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품명, 규격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최저가격수준을 제시하였다. 산동 바로코 등의 수출가격인상약속수준은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한 가격의 7.7% 인상한 수준이었다.

산동 바로코 등은 무역위원회 최종판정 10일 전에 가격약속제의를 하였고 가격확인 자료를 제출되지 않아 수입가격 확인조사, 신청인 의견수렴 등 가격약속 수락여부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조사대상공급자가 아니므로 답변서 분석 및 현지실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격약속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하였다. 또한, 2004년 동안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대한민국 수출실적이 있는 중국의 수출자는 486개이며 생산업체는 3,000개 이상이어서 수출 가능 업체의 수가 너무 많아 가격약속의 현실성이 없으며, 도자기질 타일의 특성상 디자인, 규격이 다양하여 가격약속이행여부의 감시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한국 무역위원회는 상해 ASA 및 산동 바로코 등이 제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3. 시사점

가격약속제도는 조사당국 입장에서 조사의 조기종결과 통상마찰의 감소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으면 제도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는 제도이다.

[표 1-17-①] 이해관계자별 가격약속의 효과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국내산업	① 조사의 조기종결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② 향후 국제가격인하 추세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효과 ③ 수출자들의 가격흡수 <sup>7)</sup> 를 통한 조치 무력화 위험에 대비	① 향후 국제가격인상시 조치의 효과 없음 ② 수출자들의 수입자에 대한 가격보전 <sup>8)</sup> , 우회 <sup>9)</sup> 를 통한 조치의 무력화 위험
수출자	① 수량감소에 대한 손실을 가격인상을 통해 보전 ② 조사대응 노력의 절감	① 가격의 탄력적 운영에의 어려움 ② 분기별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부담
수입국	① 통상마찰 감소 ② 조사시간 및 인력의 절감	① 관세수입 감소 ② 모니터링의 어려움
수출국	① 통상마찰 감소	

한국 무역위원회는 2000년 이후 11건의 가격약속 제의에 대하여 7건<sup>10)</sup>에 대하여 가격약속을 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가격약속 수준이 적정하고 가격약속 이행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사대응 여부, 최저가격수준의 적정성, 실제적·잠재적 수출자의 수, 가격약속 이행여부 모니터링의 용이성, 국제가격의 향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약속 수락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7) 관세 인상분 만큼 수출가격을 낮추어 줌

8) 수출자가 받은 이익의 일부를 수입자에게 음성적으로 보전하는 방법 등

9) 수출자(A)가 자국 또는 타국의 다른 수출자(B)에게 1차 매도하여 가격을 인상한 후 최종 수출

10)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본산 스테인리스틸바, 일본산 PVC플레이트,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중국산 과산화벤조일, 중국산 판유리, 중국산 H형강

### 도자기질 타일



# 18절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반덤핑 조사

## 가격약속 수락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07년 3월 7일 플로트 판유리의 국내생산자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수입(신청인 주장 덤핑률 : 36.62%)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덤핑률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중국의 플로트 판유리 공급자인 차이나글라스그룹<sup>11)</sup> 및 진징그룹<sup>12)</sup> 등이며, 조사대상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이다. 플로트 판유리는 주거용 유리, 상업빌딩의 외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가전제품용 유리 등으로도 사용된다.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2006.1.1~2006.12.31이었다.

#### 2) 조치 내용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물품의 덤핑수입 사실 및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하고,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차이나글라스그룹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부과건의수준(12.73% ~ 39.05%)만큼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1)

Jiangsu SHD New Materials Co., 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Co., Ltd., 등 11개사

12)

Shandong Jinjing Science & Technology Stock Co., Ltd., Zibo Zhongqi Building Materials Co., Ltd., 등 7개사

## 2. 주요 쟁점

무역위원회는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수출가격 인상약속이 시기적 요건(예비 긍정판정 이후 최종판정 이전) 및 WTO반덤핑협정 제8.1조상 덤핑마진을 제거할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며, 조사 전 과정을 통해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격약속을 수락하였다.

본 건은 덤핑률 산정 및 가격약속 수준과 관련해서 큰 이슈는 없었으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한국에 수출한 조사대상 물품이 모든 조사대상 공급자가 한국에 수출한 총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를 차지하며, 가격약속이 예비긍정판정(2007.9.17) 이후 최종판정일(2008.2.27)을 약 1주일 남겨두고 제의(2008.2.19)되었다.

가격약속은 덤핑관세 부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수출업자와 수입국 정부간 합의로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통상마찰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종결)할 수 있으므로 조사당국의 업무가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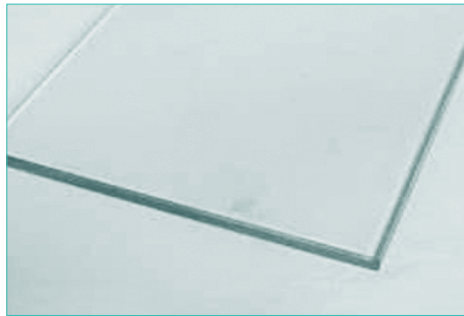
## 3. 시사점

우선 관세법 제54조 제1항은 가격약속의 주체를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격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시기적 요건도 우리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4항은 예비긍정판정 이후,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가격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약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조사당국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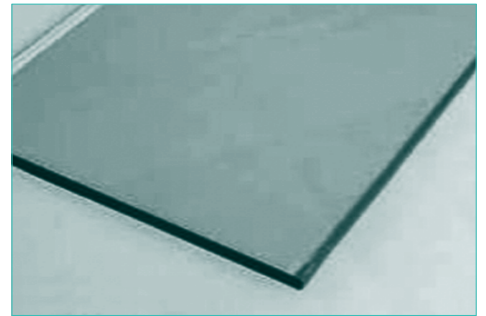
예를 들면 미국 상무부는 가격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수출자를 해당 물품 수출의 실질적인 전부(85% 이상)를 차지하는 수출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기적 요건도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의, 50일 이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60일 이내 수락 여부 결정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타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격약속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격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 및 시기적 요건 제정 등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2006.1.1~2006.12.31이었다.

### 플로트판유리



맑은유리



그린유리

## 19절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 가격약속 및 이행점검 실시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 개요

2014년 5월 30일 H형강 국내생산자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는 중국산 H형강의 덤핑(신청인 주장 덤핑률 : 21.6%)으로 인하여 자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조사범위는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합금강의 구조용 형강(Structural Steel Sections) 중 상하 및 좌우대칭 단면이 H형상을 한 물품 중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주로 고층빌딩, 공장,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으로 사용된다.

#### 2) 조치 내용

2014년 12월 23일 제337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으나, 잠정조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5년 2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중국의 강철협회,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동 조사 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였으며 2015년 1월 31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국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루어졌다. 최종 판정을 앞둔 2015년 3월 31일 중국의 조사대상공급자인 허베이 진시스틸, 라이우 스틸, 신타이 스틸, 바오토우 스틸 등 7개사가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5년 5월 15일 제342차 무역위원회에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수락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2015년 5월 28일 제343차 무역위원회에서 최종판정을 내려 가격약속을 수락하기로 한 허베이 진시스틸 등 7개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흥룬스틸 32.72%,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28.23%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2. 주요 쟁점

### 가격약속 및 이행점검 절차 마련

반덤핑 조사가 수출자와 수입자 등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인력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절차이므로 수출자의 가격약속이 있는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여 모든 당사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WTO반덤핑협정 제8조에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인상약속에서의 가격인상폭은 덤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하다면 덤핑마진보다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당국은 덤핑과 이로 인해 초래된 피해가 존재한다는 예비판정이 있어야 수출자로부터 가격인상 제안이나 수락을 받을 수 있다.

동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공급자 8개사 중 흥륜스틸을 제외한 7개사가 예비긍정판정 이후 최종판정이 있기 전 서면으로 가격약속을 제의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가격인상약속과 물량제한이 약속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약속이행 시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속내용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무역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약속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중국 수출자와 중국강철협회에 대하여 가격약속이행보고서 현지실사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시사점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가격약속제도 운영은 조사대상공급자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제의 여부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가격약속 수락 이후에 이행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재심조사 시 약속준수여부에 대한 검토가 유일하다. 무역위원회는 2007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이전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가격약속제도를 빈번히 운용하였으나, 가격약속의 실효성과 이행점검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이후에는 활용하지 않았었다.

동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공급자인 허베이 진시스틸 등 8개사 중 조사에 대응한 7개사가 공동으로 가격약속을 제의하여 수락하였으며, 약속 내용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이행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현지실사검증을 실시하였다. 가격약속제도를 잘 활용하여 수출자 대부분이 가격약속을 공동으로 제의하고 이행 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조사당국의 조사 부담 경감, 가격인상으로 국내기업은 피해 회복, 수출자는 이익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 조사는 중국을 상대로 한 철강품목 최초의 반덤핑 제소였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sup>13)</sup>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의 지대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5년 5월 제342차 무역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KBS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여부 결정에 대해 다수의 외국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가격인상 약속을 통해 덤핑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첫 사례로 기사화 되었다.

2편 무역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 중국산 H형강



13) 2014.11.10.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 선언(베이징)

## 20절 중국,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특정 물품 제외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14년 11월 24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4개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로 중국 및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등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조치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PET필름의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제품의 생산 설비를 대량 증설하고 있으며, 인도는 한국-인도 CEPA협정 체결로 인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재심사요청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던 6.5%의 일관세(관세)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산 톤당 평균 재판매 가격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여전히 국내생산품 평균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거나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큰 규모로 재발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참고로, PET필름은 광학용(LCD 및 PDP의 소재 등), 포장용(스넵포장용, 용기 뚜껑용 등), 산업용(스탬핑호일, 선팅필름, 점착테이프 등) 및 그래픽용(잉크젯·레이저프린터용, 인쇄제판용 등)으로 사용된다.

## 2) 조치내용

조사실은 종료재심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 건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년 1월 15일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재심사 대상 공급자는 원심 당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중국 8개사와 인도 2개사이나, 본 재심사에는 중국의 천진완화와 푸웨이, 인도의 가웨어와 진달 등 4개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대응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015년 9월 23일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여 향후 3년간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 2. 주요 쟁점

###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대상 제외 여부

재심사개시 당시 조사대상물품 조사범위는 ‘PET필름으로 증착 여부를 불문함’으로 하였으며, ① 두께가 9 $\mu$ m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PET 필름, ② 비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緣用)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 $\mu$ m 이상인 흰색의 PET 필름, ③ 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 $\mu$ m 이상인 흰색의 PET 필름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수입·수요자는 당초 재심사대상범위에 포함된 물품 중 홀로그래프 PET필름, 종강용 PET필름, Black PET필름, Red 및 Blue PET 필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홀로그래프 PET필름

수입·수요자는 홀로그래프 PET필름은 순정품 인증라벨, 음반 신용카드 위조방지용 라벨 등에 사용되며 PET 산업과 홀로그래프 산업은 별개의 산업으로 PET필름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토 결과 홀로그래프 PET 필름은 베이스 PET 필름을 원재료로 식각공정을 거친 후 알루미늄 등으로 증착되어, 증착된 PET필름으로 재심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증착필름에 비해 식각공정 등이 추가되는 점, 베이스 PET 필름 생산업체로서 홀로그래프 PET 필름 생산실적이 있는 국내생산자가 2015년 1월 설비를 매각하고 생산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홀로그래프 PET 필름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종강용 PET필름

수입·수요자는 생산 시 안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두께 300 ~ 400 $\mu$ m의 Blue, Dark blue, Green, Purple 등 컬러 PET필름을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물품의 용도는 제직기의 종강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흰색 PET필름에 염색을 하여 사용 중이나, 염색된 PET 종강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색상이 열리는 단점이 있어 부과제외를 요청하였다. 검토결과, 제외요청물품 생산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국내생산자의 제외요청물품 생산실적이 없고, 국내수요가 미미하여 향후에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안료를 다른 원재료에 배합하여 생산한 유채색(有彩色)의 PET 필름으로서 두께 300 $\mu$ m 이상인 것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 Black PET필름

수입·수요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Black PET 필름은 대부분 차광필름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Black PET필름은 투광필름으로 상이하고, 국내생산량도 극소량이라고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생산실적, 투광필름 생산의 용이성, 부과제외신청인의 비협조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범위에서 제외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Red 및 Blue PET 필름

수입·수요자는 특정회사로부터 수입하는 Red 및 Blue PET 필름을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물품의 용도는 휴대폰 BLU(Back Light Unit) 액정 보호이다. 수입·수요자는 국내산은 투명필름 생산 후 잉크를 도포하여 제조하는 반면, 중국 수입품은 PET원료에 안료를 배합하여 제조하며 해외고객사가 중국의 특정회사 제품 사용을 지정하고 있고, 전량 수출되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도 다른 원재료에 안료를 배합하여 생산한 Blue PET필름을 제조하고 있고 Red PET필름도 생산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사적 계약에 따른 특정회사 제품사용의 지정이나 재수출여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사적 계약에 따라 특정회사 제품의 사용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향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 3. 시사점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은 재심사 대상물품이고, 재심사 대상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부과대상물품이다. 따라서, 재심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종료 시 덤핑 및 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반덤핑 조치가 연장된 경우는 기존 부과대상물품에 변동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황의 변동이나 수입·수요자가 원심조사시에 주장하지 않았던 물품에 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즉 생산여부 생산가능여부 국내생산품으로 대체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동 조사에서는 홀로그래프 PET필름은 국내산업이 생산을 중단한 상황 변동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범위에서 제외하였고, Black과 Blue PET필름은 국내산업이 생산 실적이 있으므로 부과대상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그리고 Red PET필름은 국내산업의 생산실적이 없으나, 어렵지 않게 생산가능한 물품이고, 주문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이 공급할 의사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중강용 PET필름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생산실적이 없으나, 어렵지 않게 생산가능한 물품이라는 점에서는 Red PET필름과 동일한 상황이나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국내산업이 향후에도 공급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 중국, 인도산 PET 필름









## 2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10선)

### 1절 가방 상표권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 무역위원회 최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례

#### 1. 조사 및 조치 개요

##### 1) 조사개요

피신청인 (주)클래식은 섬유직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체(무역업 허가번호 970848)로서 1987년 5월 2일 미국 수입업자(ED's Imports)의 국내 대리인 김○○으로부터 PVC 가방 500세트(US\$19,500)의 수출대행을 의뢰받아 1987년 5월 27일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에서 수출추천 및 특례수출승인을 얻어 1987년 5월 28일 미국으로 선적하였고, 동 수출건과 관련하여 1987년 7월 28일 South Carolina 소재 Charleston 세관에서 위조상품(상표도용 및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되었다.

당해 위조상품 적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주미대사관이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 2) 조치 개요

###### (1) 판단

무역위원회는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의 추천 내용에 의거하여 피신청인 (주)클래식이 당해 위조상품을 수출한 것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의 진술내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피신청인은 무역업허가업체로서 무역관계법규의 위반사항에 최종적인 책임이 귀속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에 의해 위조상품을 수출한 결과를 초래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조치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 품목의 무역에 대해 6개월간 무역업을 정지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등 기타 국내 관련자들의 다른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특허청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조사·처리토록 함과 더불어 위조상품 수출에 관한 실질적 행위자로 추정되는 미국 수입업자(ED's Imports)에 대하여는 해당 수출조합에서 Black List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토록 하였다.

2. 주요 쟁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대외무역법 제44조제3항<sup>14)</sup> 단서 조항은 무역업자 등이 당해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무역업 등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혐의는 둘 수 있으나 피신청인 및 관계자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달리 고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한편 피신청인의 그간의 영업내용을 볼 때 본 조사건에서 고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무역업자로서 특례수출을 영위하므로 동 조사건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수입업자나 위탁자에 대한 신용상태에 대한 확인 등 무역업자로서 기울여야 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출대행을 하여 위조상품이 수출된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동 조사건은 1987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이 시행된 후 무역위원회에 최초로 신청되어 판정된 건으로, 1987년 7월 31일 주미대사관이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를 신청

14) 대외무역법 제44조제3항(법률 제3895호, 1986.12.3. 제정)  
③ 상공부장관은 무역업자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신용을 손상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물품 또는 교역상대국을 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무역업자 등이 당해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조사가 개시되었다.

당시 대외무역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가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 또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세관에서 불공정 수입행위가 적발되어 주미대사관에 통보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7년 무역위원회가 설립되던 당시, 세계경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태동하고 있었고, 국내 경제도 국제개방경쟁체제로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도전에 당면해 있었다. 대외무역법 시행 후 10년간 127건의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91%에 해당하는 116건이 주미대사관, 상공부, 관세청(세관), 특허청 등 우리 국가기관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보아 무역위원회 설립 초기 불공정 수출입행위 금지 등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절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표권침해 조사 병행수입 허용기준 제시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신청인 (주)한빛소프트사는 미국 블리자드사로부터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II)에 대한 국내 상표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게임사업자로서 블리자드사부터 제공받은 마스터 CD를 이용하여 LG LCD에 국내 판매용 CD를 제작의뢰하고, 이를 다시 포장업체에 의뢰하여 완성품을 제작한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신청인은 2002년 2월 19일 (주)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사를 피신청인으로 특정하여 당시 청소년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기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병행수입을 금지해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주)비엔티는 2001년 12월 이후 스타크래프트 2,500개, 디아블로II 6,300개를 미국의 유통업자로부터 직수입하여 판매하였고, 피신청인 뉴잉튼 인터랙티브사는 무역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 과정 전반에 불응하였으나 관세청 통관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이 2002년 1월부터 2월 사이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II 12,000여 개를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조치 개요

##### (1)판단

무역위원회는 국내의 제도 및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구체적인 병행수입 허용요건을 제시하고, 동 요건에의 충족 혹은 합치여부를 바탕으로 본 조사건 게임물에 대한 병행수입이 신청인의 상표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 병행수입의 허용 요건 〉

- ① 국내 상표권자 등에 의한 해당 권리의 등록 여부
- ②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등과의 동일성 여부
- ③ 국내 상표권자 등에 의한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여부
- ④ 국내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간 품질의 동일성 여부
- ⑤ 기존 상표권자 등의 독자적인 신용(Goodwill) 형성 여부

상기 허용 요건에 따르면, 첫째, 신청인은 본 조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역을 설정지역으로 하고 2002년 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설정기간으로 하는 상표전용사용권을 2002년 1월 22일자로 특허청에 등록하였다.

둘째, 신청인과 블리자드사 간에는 동일인 관계(동일회사, 계열회사, 수입대리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신청인은 블리자드사로부터 제공받은 마스터 CD를 이용하여 LG LCD 청주공장에서 OEM방식으로 국내 공급용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었다.

넷째, 한글용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이용 가능한 '틴버전'으로 제작·판매되는 신청인의 제품은 피신청인의 병행수입품과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섯째, 98년 4월 이후에 신청인은 본 조사건 게임물의 인지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전용 웹사이트 개설·운영, 전용 서버 증설,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독자적인 신용(Good will)을 형성하는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동 조사건 게임물에 대한 병행수입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조치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향후 동 조사건 게임물에 대한 수입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 2. 주요 쟁점

###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 허용 여부

복수 국가(예컨대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일국(미국)에서

정당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제3자(국내 수입업자)가 이와 같은 정당한 상품, 즉 진정상품을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내에 수입한 경우, 국내 상표권자는 국내 등록된 자기의 상표권에 기하여 그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병행수입의 허용문제는 속지주의 원칙, 권리소진이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당시 국제적인 통일규범이 없고 각국의 명확한 실체법적 판단기준도 없는 가운데, 국가별로 관련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하고 있었다.

무역위원회는 병행수입의 규제문제를 상표권 또는 상표전용사용권을 취득하고 독자적인 신용(Good will)의 확립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기업의 보호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 대중에게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제품이 피신청인의 병행수입품과 품질의 차이가 있고,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전용 웹사이트 개설 및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독자적인 신용(Good will)을 형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동 조사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상기 판단기준 및 논리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나, 국내외적으로 실체법적 판단기준이 없고 학설도 대립되는 상황에서 무역위원회가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록상표 (제492769호)	조사대상물품	등록상표 (제476880호)	조사대상물품
STARCRAFT		DIABLO	

## 3절 PDP방식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권침해 조사 최초 잠정조치 시행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조사신청이 있었던 2004년 당시 세계 PDP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SDI (24%), LG전자(23%) 등 한국 업체가 47%, 마쓰시타(17%), NEC(10%) 등 일본 업체가 4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급증하는 세계 PDP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 업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던 시기였다.

한편, 신청인 LG전자의 경쟁사였던 일본 마쓰시타전기는 2003년 8월 이후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유(Cross-License)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나 수차례의 협상과정에서 진전이 없자, 2004년 11월 1일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동경세관에 LG전자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인 PDP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다.

마쓰시타전기가 동경세관에 LG전자 PDP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바로 다음 날인 11월 2일 LG전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쓰시타전기의 한국 현지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 주식회사의 PDP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신청 이틀 후인 11월 4일 제211차 무역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동 신청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

#### 2) 조치 개요

##### (1) 잠정조치 판단

##### 〈 형식적 요건 〉

무역위원회는 관세청 통관자료 검토 결과 2004년 11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일본 마쓰시타전기로부터 잠정조치 대상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잠정조치 시행기간(6개월) 동안의 예상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신청인의 담보(보증보험증권) 제공에 대하여 피신청인 및 신청인의 예상 판매수량을 검토한 결과 담보 제공액이 적정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실체적 요건 〉

#### 가. 특허권 침해 개연성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특허 제0217133호)의 핵심기술은 화면분할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전극을 2분할시키는 구성이고, 잠정조치 대상물품도 데이터 전극을 2분할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특허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특허 제0381270호)의 핵심기술은 낮은 계조 표현시 리셋펄스, 스캔펄스, 서스테인펄스 중 적어도 하나의 구동펄스의 수 또는 폭을 조절하여 소정 계조값 미만의 영상을 표현하는 단계를 갖는 것이고, 잠정조치 대상물품에 대한 조사신청서의 자료에 각 구동펄스의 수 또는 폭이 다르게 나타나 있어, 신청인 및 잠정조치 대상물품 모두 구동펄스의 수와 폭을 달리하는 구동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무역위원회는 본 조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의한 신청인 특허권 침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 대상물품 수입이 200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PDP 장치 매출액 및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 잠정조치 대상물품의 제조회사인 일본 마쓰시타전기가 2004년도부터 PDP 장치 사업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생산능력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신청인의 PDP 장치 대중화 마케팅 전략으로 향후 잠정조치 대상물품의 국내수요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조치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 대상물품의 수입행위 중지 및 현재 피신청인 보유 잠정조치 대상물품에 대해 국내판매행위 중지의 조치를 명령하였고, 그 시행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여부 최종판정에 따른 조치 시까지로 하였다. 이후 2005년 4월 LG전자와 마쓰시타전기는 특허 공유(Cross-License) 계약을 맺고 양사 관련 특허침해 소송 및 무역위원회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사간의 특허권 공방은 일단락 되었다.



## 2. 주요 쟁점

###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동 조사건은 잠정조치의 시행 요건 중 하나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신청인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 및 관계 행정기관 자료 등을 근거로 잠정조치 시행요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특허침해혐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조사개시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매출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및 영업이익률의 저하 등 PDP 사업부문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PDP 장치 분야는 기술진보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투자의 최적 시기를 놓칠 수 있고, 피신청인의 매출 및 국내시장투자액 회수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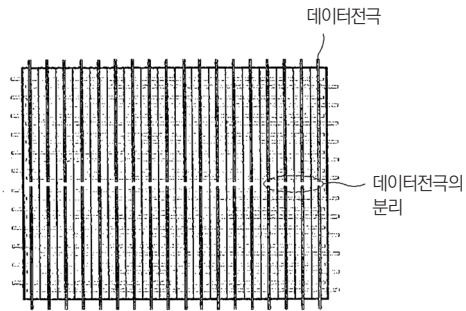
셋째,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연구개발 의욕이 좌절되고 향후 신기술 개발을 발판으로 한 PDP 장치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넷째,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 제품과의 제품차별화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신청인 기업 이미지 및 제품 브랜드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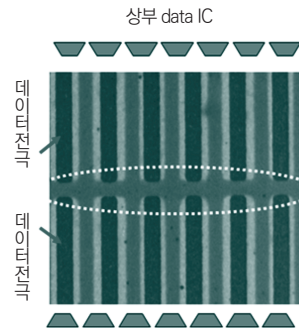
## 3. 시사점

동 조사건은 무역위원회에서 최초로 잠정조치의 시행을 의결한 사건으로서 국가 간 치열한 특허경쟁의 상황에서 잠정조치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가 타국 세관의 통관보류제도에 맞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도이자 특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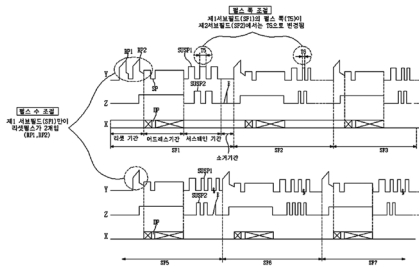
등록특허 (제2171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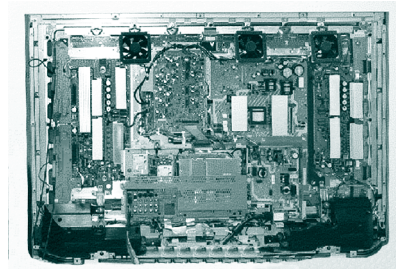
조사대상물품



등록특허 (제0381270호)



조사대상물품



## 4절 염산 젬시타빈(항암제) 특허권침해 조사

잠정조치 시행사례

법원의 무역위원회 재량범위 인정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신청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이하 ‘릴리사’라 함)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140여 개국에서 4만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로서, 염산 젬시타빈의 제조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염산 젬시타빈은 릴리사의 2006년도 매출액의 9%, 약 14억 불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었다.

신청인은 2005년 10월 17일 무역위원회에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함)의 염산 젬시타빈(항암제)에 관하여 특허권(특허1<sup>15)</sup>, 특허2<sup>16)</sup> 침해를 사유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했다.

신청인인 릴리사는 피신청인 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염산 젬시타빈을 인도의 닥터레디스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동 신청건에 대하여 11월 4일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

15) ‘뉴클레오사이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제30848호.

2005년 11월 21일 릴리사는 피신청인 1 중 신풍제약의 염산 젬시타빈 수입·판매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6년 3월 20일 신풍제약의 염산 젬시타빈 수입 및 국내 판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1 중 광동제약은 닥터레디스로부터 수입한 염산 젬시타빈을 전량 반품하였다.

16) ‘2’, 2’-디플루오로뉴클레오사이드 및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제 117181호 등 9건.

2006년 4월 27일 릴리사는 특허 3<sup>17)</sup>에 대한 침해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에 유한양행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하 ‘피신청인 2’라 함)의 염산 젬시타빈에 대한 불공정무역

17) ‘입체 선택적 글리코실화 방법’에 관한 특허 제252452호 등 2건

행위의 조사를 신청하였고, 2006년 5월 10일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2) 조치 개요

### (1) 잠정조치 판단

무역위원회는 신풍제약과 신청인의 예상 거래금액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한 보증보험증권(5억 1천만 원 지급보증)이 적정하다고 보아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 2의 제조방법 이외에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제조방법이 당시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침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신풍제약이 본 조사건 염산 켈시타빈을 수입하고 이를 사용한 항암제 제로암의 제조·판매행위를 계속할 경우, 신청인의 시장을 잠식하고 신청인 제품의 판매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조치

무역위원회는 신풍제약에 대하여 최종판정에 따른 조치 시까지 염산 켈시타빈의 수입 및 이를 사용한 항암제 제로암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의결하였다.

### (3) 최종 판단

#### 〈구제 4-1-2005-6〉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특허 1의 특허권 존속기간 내에 염산 켈시타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동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만, 해당 특허권은 2005년 12월 3일자로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시정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신청인 1 중 신풍제약에 대하여 취한 잠정조치는 해지하였다. 한편, 양 당사자 모두 조사대상물품의 제조방법이 신청인의 특허 2에 따른 방법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구제 4-1-2006-1〉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은 피신청인 2측이 염산 켈시타빈을 제조하기 위하여 자사 특허 3의 제법인 SN2 반응 제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가 사용한 제법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염산 젤시타빈 제조를 위하여 SN1 반응 제법을 사용하였다는 피신청인 2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SN1 반응 제법을 사용하였다고 증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염산 젤시타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특허 3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주요 쟁점

### 무역위원회의 재량 범위

신청인은 2006년 10월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의결한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판정(구제 4-1-2005-6, 구제 4-1-2006-1)이 사실오인·판단누락·조사방법상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07구합825, 2007구합832).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에서 무역위원회 기능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피해자 구조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가 원고 릴리사의 신청범위 내에서 조사단 구성, 기술 설명회 개최, 감정 및 자문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판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 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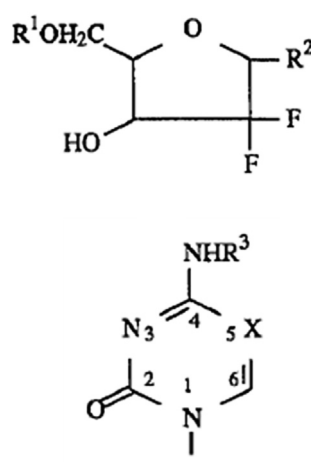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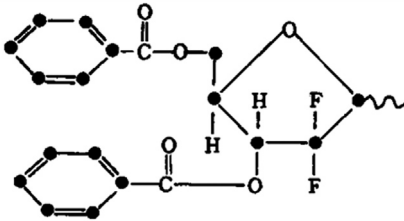
## 3. 시사점

원고 릴리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승소한 것은 당시까지 제네릭 위주의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에 특허분쟁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컸으며, 의약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의약품 분야의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의약분야 지재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사와 판결을 계

기로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관련 분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이었다.

2편

무역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등록특허 (제30848호)	등록특허 (제117181호)
	

## 5절 에스보드 특허권침해 조사

### 특허심판 계류 중 독자적인 판정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신청인 (주)테코리는 방향성 캐스터를 구비한 스케이트보드(특허 제394848호)의 특허권자이다. 신청인의 특허발명은 그 기술혁신이 인정되어 2003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2004년 발명신제품 전시회(INPEX 2004)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전 미주지역 최고 발명상, 스포츠 부문 금상, 레크리에이션 금상, 완구 및 게임 부문 금상 등 5관왕에 올랐으며, 신청인의 특허발명이 구현된 에스보드 제품은 한국 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2004 SUCCESS DESIGN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신청인의 특허발명이 구현된 에스보드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경쟁업체들은 신청인의 에스보드 제품과 유사한 스케이트 보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3개 업체는 신청인의 에스보드 제품과 유사한 스케이트 보드 제품을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제조, 수입하여 신청인의 에스보드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시키고 있었다.

신청인은 이들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감소를 경험하면서 조속한 대처를 위해 2006년 7월 6일 무역위원회에 피신청인 에스보드 제품의 수입 및 판매의 금지 등을 구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다.

##### 2) 조치 개요

###### (1) 잠정조치 판단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신속히 나오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신청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생략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잠정조치 신청 시 제공한 담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2) 최종 판단 및 조치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 주장과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2006년 10월 23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한 행위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였고,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당해 재고 물품을 폐기할 것을 명하였다.

### (3) 이의신청 판단

무역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등록무효 주장과 비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나아가 특허심판원에 관련 특허무효사건 및 권리범위확인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사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2. 주요 쟁점

### 1) 특허심판 계류 중 무역위원회 조사의 중지 여부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제기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심판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 및 효과가 상이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진행함이 원칙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조사결과 침해여부의 결정이 곤란하거나 특허심결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이고 특허심판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조사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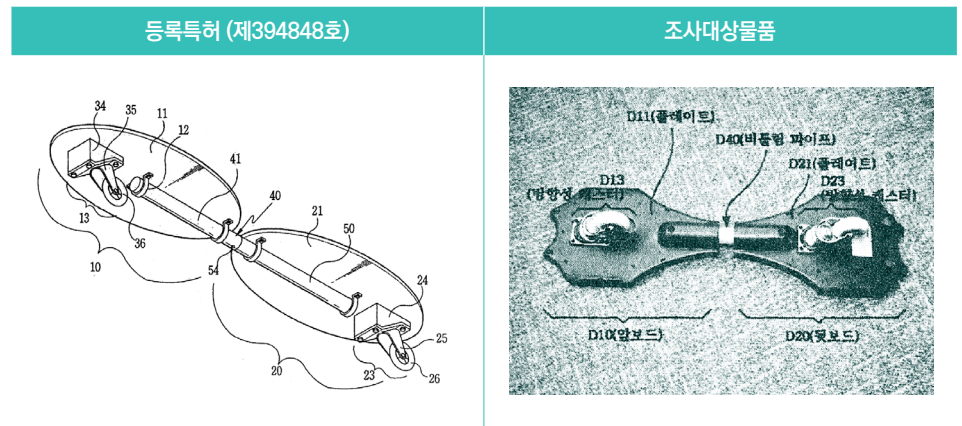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지적한 차이점에 관하여 신청인 특허의 청구항 제1항에서 탄성체를 특정 재질이나 형성 또는 구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탄성체의 재질 및 구조의 차이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바퀴의 고정형태에 대해서도 신청인 특허의 청구항 제1항에서 방향성 캐스터가 저면에 부착되는 구성만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착 방식이 고정식인지 또는 이동구멍을 이용한 이동식인지에 관계없이 특허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무역위원회의 동 조사건 판정은 스케이트 보드가 유행성 제품이라는 점, 중국산 침해제품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산업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당시 통상적인 조사기간(약 8개월)의 절반 이내(4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는 점, 이러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련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기다리지 않고 특허침해 여부에 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약 5개월 후 나온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 6절 가구류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

### 원산지표시 위반 직권조사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2007년 3월 서울시는 서울본부세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 및 경기지역의 9개 업체가 중국 등으로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가구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것을 적발하여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서울시의 통보를 받은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9개 업체가 의자, 소파, 침대 등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인 가구를 중국, 동남아 등으로부터 원산지 미표시 등의 상태로 수입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동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9개 업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2) 조치 개요

##### (1) 판단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 9개 업체가 중국·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이탈리아·포르투갈·독일·영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으로부터 1,107회에 걸쳐 188억 원의 가구류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무역위원회가 파악한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표시가 손으로 쉽게 지워지도록 한 것(A사, D사),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A사, B사, D사, G사, H사, I사),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로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성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C사), 물품의 원산지를 물품하단에 표시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 것(E사), 테이블 부품의 접합부분에 흰색 잉크 도장으로 MADE IN CHINA 표시를 하였으나 테이블을 조립하면 원산지 표시가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F사) 등이 있었다.

## (2) 조치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처음 조사받는 점을 감안하여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위자에게 위반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행정제재 및 부당이득의 회수 차원에서 조사 기간 중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명령하였다.

[표 2-6-①] 위반물품 현황

회사명	위반물품	수량	수입액 (천원)	과징금 (천원)	시정조치
A사	소파, 티테이블, 침대, 의자, 장롱, 거울	204	158,126	15,81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 물품에 원산지표시 명령
B사	침대, 식탁, 침실용 목재가구, 기타 목재가구, 거울, 의자	148	109,512	10,951	
C사	식탁	707	68,828	6,883	
D사	식탁의자	1,276	46,087	4,609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 물품에 원산지표시 및 원상복구 명령
E사	의자, 소파, 침대, 옷장	886	51,722	5,17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물품에 원산지표시 명령
F사	테이블	37	3,091	309	
G사	의자	720	23,597	2,360	
H사	소파	112	36,796	3,680	
I사	테이블, 소파	210	29,076	2,908	

## 2. 주요 쟁점

## 원료 수입 후 국내 가공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 문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가공과정을 거친 완성품인 경우,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지고 총 제조원가 중 51% 이상이 국내에서 투입되거나,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 국내에서 투입되면 국산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본 조사건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의자류(HS 940169)와 테이블 반제품(HS 940340)은 국내 가공 후 HS 6단위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테이블의 경우 가공단계에서 폐파작업, 칠작업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만 가해져 85% 이상 원가투입이 인정되지 않았다.

가구류를 수입한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6-2-5조에 따라 수입업자가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사건 중 C사의 테이블의 경우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 미 표시 물품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된다.

### 3. 시사점

당시 국내 가구업계는 값싼 중국산 수입가구에 밀려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였으며, 동시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또한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왔었다. 이러한 관행은 수입 업체들이 1년에 단 한두 차례 정도 수입통관화물에 대한 샘플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만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되어도 관세법 제230조 상 보완조치 후 통관절차를 거치면 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는 신속한 화물 통관이 불가피한 세관의 업무 특성을 악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가격경쟁을 왜곡시켜 국내 가구생산업계를 붕괴시키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사건이었다.

## 7절 낚시대 케이스 디자인권침해 조사 기(既)판정물품확인제도 도입 후 최초 적용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무역위원회는 2010년 1월 20일 백조상사의 낚시대 케이스 수입 및 판매행위가 낚시대 케이스를 제조·판매하는 (주)시마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백조상사에게 동 물품(이하 ‘기판정물품’이라 한다)의 수입·판매 중지 및 재고물품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조사번호: 구제 4-1-2009-6).

한편, 무역위원회는 2008년 3월 21일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개정하여,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물품과 조사신청된 조사대상물품간 제조자 및 기능·용도 등 주요 특성이 같고, 그 디자인이 유사하여 양 물품이 ‘동일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물품을 수입 및 판매한 행위는 동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불공정무역행위로 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청인 (주)시마노는 2010년 3월 19일 피신청인 김○○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 조사대상물품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지재권침해물품과 ‘동일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 2) 조치내용

##### (1) 판단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조사대상물품이 무역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과 동일 물품에 해당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2) 조치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당해 디자인권이 소멸될 때까지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월간 낚시잡지 3곳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하였다.

## 2. 주요 쟁점

### 기(既)판정물품과 조사대상물품의 동일성 여부

기(既)판정물품의 제조회사는 중국 제조회사 'SE MONG PRODUCTS TRADING CO.'이고, 기판정 조사건의 피신청인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기(既)판정물품에는 'RVX'라는 마크가 부착되었다. 조사대상물품의 제조회사는 중국 제조회사 'Qing Dao RVS Sport Co.,Ltd'이고, '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조사대상물품에는 'RVX'라는 마크가 부착되었다.

조사대상물품의 제조회사 'Qing Dao RVS Sport Co.,Ltd'는 기(既)판정물품의 제조회사 'SE MONG PRODUCTS TRADING CO.'와 다르지만 양 물품 모두 '이○○'라는 사람을 통해 공급되었고, '이○○'의 전용 상호인 'RVX' 마크가 부착된 점 등을 볼 때, 양 물품의 제조 모두 '이○○'라는 사람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기(既)판정물품확인제도 도입 전에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에 의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당해 판정을 받은 '당해 행위자'로 한정되어 있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당해 물품이 수출입 거래선을 변경하여 계속 거래되는 경우, 다시 조사·판정 절차를 거쳐야만 제재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된 물품과 동종 물품이 행위자만을 변경하여 재차 수출입되는 경우 신청 또는 무역위원회 직권으로 당해 동종 물품이 원 판정에 해당하는 지재권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2008년 9월 신설하였다.

동 조사건은 기판정물품확인제도 도입 후 최초 적용 사례로, 조사대상물품과 기

(既)판정물품 간 동일성 여부 및 당해 행위자의 정당한 권원 취득 여부만을 기초로 확인절차가 이루어져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게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 사례이다.

등록디자인 (제327826호)	기판정물품	조사(확인) 대상물품
		

## 8절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상표권침해·품질 등의 거짓표시 조사

영업비밀침해·상표권침해·품질 등의 거짓표시의 복합사건 조사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신청인 서영전자산업(주)는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앰프(음향증폭기)를 제조·수출하는 업체로서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FET소자를 활용한 부품배치도, PCB인서트 도면, 파트리스트, 와이어리스트가 적용된 제품을 1998년부터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피신청인 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음향증폭기 제조 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개발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음향증폭기 전자회로 설계, 마이크 입력신호, 음악신호, 음향효과를 혼합하는 프리앰프 기술, 파워 앰프 기술 개발을 총괄하였고, 퇴직 이후 신청인 영업비밀 침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년 11월 1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본 조사건의 신청 당시 형 집행 중에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처벌대상이 되어 형사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제품의 모델명만을 변경한 채, 계속해서 위법하게 취득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 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등록 상표인 JARGUAR (쟈가)를 물품 2종에 도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조사신청을 2013년 1월 4일에 하였다. 더불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품질 등을 거짓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다는 추가 조사신청을 2014년 1월 7일 하기에 이르렀다.



## 2) 조치 개요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모든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영업비밀 침해

- (시정조치)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을 3년간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 징 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161,293,717원의 30/100에 해당하는 48,388,115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 (2) 상표권 침해

- (시정조치)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출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 징 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52,900,598원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2 경감하여 7,935,090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 (3) 품질 등의 거짓표시

- (시정조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안전인증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의 수출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 징 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129,969,095원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2 경감하여 19,495,364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 2. 주요 쟁점


### 영업비밀 침해 중지명령 기간의 기산점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제조행위의 중지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을 함에 따라 우월적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제조행위의 중지 기간은 그러한 중지명령이 시작되는 시점인 판정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동 조사건은 불공정무역행위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이 상호 공조해 조사한 사례로서,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 상표권 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며, 고의적인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2편  
 무역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등록특허 (제0105469호)	조사 대상물품
	

## 9절 동박 특허권침해 조사

당사자간 특허권 실시계약 체결로 최종판정 이전에  
조사종결된 사례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동박을 제조하는 신청인 LS 엠트론(주)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동박)을 해외제조사 창춘 페트로케미칼(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국내기업 비에프케미칼(주)(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가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에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특허 제1117370호(특허 1) 및 특허 제1381932호(특허 2)에 대해 2015년 3월과 8월에 각각 조사를 신청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동박(전지박)은 미래형 고효율 에너지 변환·저장장치인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집전체용 핵심소재로,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얇은 박의 형태이다. 현재 리튬 이차전지는 주로 휴대폰 등 모바일 IT 기기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용량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21세기 에너지 혁명의 핵심인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중추적인 역할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 2) 조치 개요

##### (1) 판단

무역위원회는 특허 1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물품 중 CBF-H모델은 국내 수입 중 단과 국내 소진으로 물품 확보가 곤란하고 별건 민사소송에서 채취한 CBF-H모델에 대한 침해여부 확인절차가 임박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CBF-H3 모델에 대해서는 시료를 당사자 입회하에 무역위원

회 조사단이 직접 채취하고 공신력 있는 특성측정 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센터)에서 특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조사철회 신청 및 조치

신청인은 특허 2에 대한 조사 진행 중 피신청인과의 특허 실시권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하면서 특허 1에 대한 조사중지 건과 이후 추가로 신청한 특허 2에 대한 조사건 모두에 대해 2015년 12월 17일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 철회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6년 1월 28일 제350차 본회의에서 조사종결을 의결하였다.

## 2. 주요 쟁점

### 조사철회 신청 및 조사종결의 타당성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철회 신청이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철회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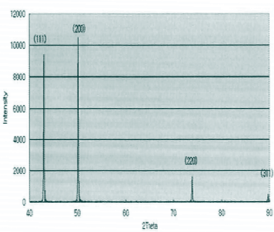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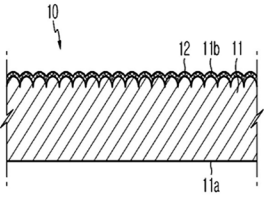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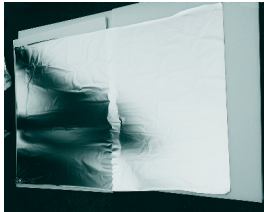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 간의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및 신청인의 조사제도 남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도 없으며, 철회서 제출도 조사절차진행을 심히 저해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어 관계 법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었으나 신청인 본인이 스스로 조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종결로 인해 공익이 침해되는 등 여타 사회적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사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동 조사건에서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술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허권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신청인이 조사 신청을 철회한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기업간 조속한 합의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지재권자인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 사례이다.

또한, 신청인이 특허권 침해로부터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되었고, 우리 특허기술을 수출함과 동시에 양사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마무리되어, 최종 판정에 이르지 않고 종결된 조사일지라도 조사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관심 유발 효과를 확산시킴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방지라는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등록특허 (제1117370호)	등록특허 (제1381932호)	조사 대상물품
		

# 10절 자석완구 디자인권침해 조사

## 해외공급자에 대한 조사·판정 사례

2편

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 1. 조사 및 조치개요

#### 1) 조사개요

자석완구 생산 및 각종 완구를 수입하는 신청인 (주)짐월드는 2016년 8월 17일 통상케보토이즈(피신청인 2, 중국 저장성 자싱시 통샹 충푸타운 징웨이스트리트 519번지)가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중국)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박○○(피신청인 1, 멜팅코리아 대표)가 이를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은 자석완구이며, 같은 모양이나 다른 모양의 자석완구와 결합을 시켜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창작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완구제품이다.

#### 2) 조치내용

##### (1) 판단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수입·판매하고 피신청인 2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수입·판매 및 국내공급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2) 조치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1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및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피신청인 2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배제를 명하였다. 해외공급자에 대해 반입배제를 명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아울러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조사대

상품품 거래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2. 주요 쟁점

### 조사대상물품 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판례에 따르면, 조사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 즉 조사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일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① 조사대상디자인들은 부채꼴과 아치형으로 공지디자인(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전체적으로 볼 때 부채꼴과 삼각형은 각도의 차이와 곡선요소에 의해 상이한 미감을 주고, 입체성을 지닌 아치형과 평면인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곡선요소 및 입체성에 의해 비유사하고 상이한 미감을 주므로 조사대상디자인들은 공지디자인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디자인권 출원 전에 신청인 제품 중 곡선 형태의 자석완구가 없었고, 그 외 기존 자석완구 시장에서 곡선 형태의 자석완구 제품이 실시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자석완구에 곡선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또는 공지디자인과 국내 주지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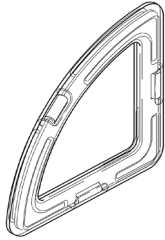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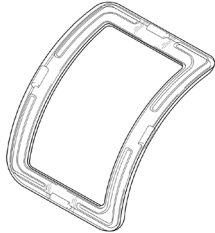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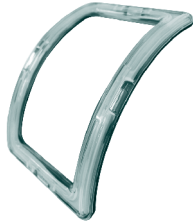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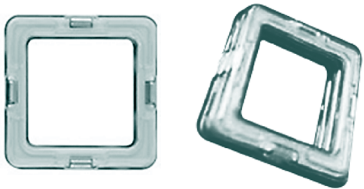
## 3. 시사점

개정 전 불공정무역조사법 수입자 및 국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만 규제함으로써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꾸어 국내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신속히 규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0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무역행

위의 유형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행위가 추가되었다.

동 조사건은 해외공급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한 사례로, 수입자의 조사대상 물품 수입·판매 행위와 더불어 해외 공급자의 조사대상물품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2편 무역무역위원회 조사·판정 대표사례 30선

등록디자인 1 (제0662016호)	조사대상디자인 1	공지디자인 1
		
등록디자인 2 (제0662017호)	조사대상디자인 2	공지디자인 2, 3
		







부록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1987년~2017년 6월)

KOREA TRADE  
COMMISSION  
30-YEAR HISTORY



1. 무역구제제도 운용 총괄 .....	277
2.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 .....	291
3. 세이프가드제도 운용 .....	313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운용 .....	323
5. 무역피해조사제도(무역조정지원) 운용 .....	341
6. 무역위원회 운용현황 .....	351
7. 무역위원회 주관 행사 .....	439
8. 무역위원회 발간 간행물 목록 .....	473
9. 무역위원회 위원 .....	501



1

무역구제제도  
운용 총괄





# 1. 무역구제제도 운용 총괄

## 1-1. 연도별 조사신청 현황

(단위: 건)

구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6	계	
반덤핑	국가별	-	3	3	2	-	5	6	8	5	17	18	8	9	17	6	18	15	5	7	15	18	4	14	7	15	14	8	16	5	9	12	289
	품목별	-	2	1	1	-	3	4	2	3	10	11	4	6	8	6	11	7	5	4	6	8	3	6	6	6	5	5	10	4	5	5	157
세이프가드	1	2	7	5	4	3	-	3	1	3	-	1	1	-	1	1	-	-	-	-	-	-	-	-	-	-	1	-	-	-	-	34	
불공정 무역행위	4	65	61	20	23	4	2	1	5	4	2	9	10	9	13	9	5	5	6	5	4	6	9	12	8	9	8	10	9	12	2	351	
무역피해 조사	-	-	-	-	-	-	-	-	-	-	-	-	-	-	-	-	-	-	-	-	-	3	3	2	-	13	31	28	22	5	-	107	

- 주 1) 재심사 및 재검토 포함  
 2) 반덤핑의 국가별 및 품목별 건수는 당해연도 접수기준

## 1-2. 조사신청 건에 대한 조치 현황

구분	긍정판정		부정판정			조사종	계	
	구제조치 및 건의 <sup>1)</sup>	기타 <sup>2)</sup>	신청철회	무혐의	기타 <sup>3)</sup>			
반덤핑	국가별	181	11	36	38	7	16	289
	품목별	104	7	15	19	5	7	157
세이프가드		22	-	9	2	1	-	34
무역피해 조사		87	-	9	9	2		107

- 주 1) 구제조치 및 건의: 관세부과, 가격약속, 수출증지약속  
 2) 기타(긍정판정): 일부부과 제외  
 3) 기타(부정판정): 재심불가, 기각, 관세부과조치폐지

구분	제재조치				무혐의 처리	관련기관 이첩	조사종결 등 기타	조사 진행중	총계
	무역업정지	시정조치	과징금	시정 & 과징금					
불공정 무역행위	7	80	8	20	101	40	92	3	351

### 1-3. 국가별 조사신청 현황

#### ① 반덤핑 조사

(단위: 건)

연도 국가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6	계
중국				2	1	2	1	3	4		3	3	2	6	3	1	2	4	7	1	4	3	4	4	1	8	2	2	2	75	
일본	1		1	1	2		2	4	1	3	2	2	2	3	3	3	2	1	2		2	1	2	1	3	1	1	1	3	50	
EU	1	3				2	3	4		1	2		3	4					1		1						1	1		28	
프랑스	1	1				1						1	1														1		7		
독일	1							1	2			1	1																6		
스페인														2					1	1			1					1	6		
네덜란드								1				1																	2		
벨기에						1									1														2		
영국	1								1																				2		
불가리아								1																					1		
이탈리아															1														1		
폴란드															1														1		
미국			1		1	1	1	4	3	1	1	1	1	1	2		1	3	1	1	1	1	1	1	1	1		1	29		
대만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인도네시아										1		3	2				1	1	1	1	1	1	1	1					11		
러시아				1	1	2						1			1		1		1			1							8		
싱가폴								1	1	1	1	1	1				2	1				1			1				9		
인도				1								1		2				2	2	2	2	1	2	3	2				16		
말레이시아									1	1	1	1					1		1	1	2	1	1	2	1	1	1	1	15		
태국				1						1	2								1	1	1	1	1	1	1			2	12		
캐나다														1			1	1		1	1	1	1						6		
브라질									1									1											2		
아르헨티나									1										1										2		
스위스								1																					1		
뉴질랜드																		1											1		
베트남															1													1	2		
파키스탄												1																	1		
카자흐스탄					1																								1		
리히텐슈타인									1																				1		
우즈베키스탄					1																								1		
우크라이나																												1	1		
아랍에미리트																													1		
핀란드																													1		
계	3	3	2	0	5	6	8	5	17	18	8	9	17	6	18	15	5	7	15	18	4	14	7	15	14	8	16	5	9	12	289



## ② 무역조정지원(무역피해 조사)

(단위: 건)

업종 FTA 국가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EFTA		1	2			1		1			5
칠레		2	1	1				3			7
아세안				1		1	10	12	8		32
EU						11	19	12	10	4	56
미국							1		4		5
인도										1	1
싱가폴							1				1
계	0	3	3	2	0	13	31	28	22	5	107

### 1-4. 업종별 조사신청 현황

#### ① 반덤핑 조사

(단위: 건)

구분	화학	기계 전자	종이 목재	섬유	제철 금속	유리 도자	1차 산품	기타	계
중 국	31	9	13	6	4	8	0	4	75
일 본	16	12	2	4	9	0	0	7	50
미 국	14	4	5	4	0	0	2	0	29
대 만	4	0	0	9	1	0	0	1	15
E U	11	4	6	0	5	1	0	1	28
프랑스	4	2	0	0	0	1	0	0	7
독 일	3	1	2	0	0	0	0	0	6
스페인	0	0	1	0	5	0	0	0	6
네덜란드	0	1	0	0	0	0	0	1	2
벨기에	1	0	1	0	0	0	0	0	2
영 국	1	0	1	0	0	0	0	0	2
불가리아	1	0	0	0	0	0	0	0	1
이탈리아	0	0	1	0	0	0	0	0	1
폴란드	1	0	0	0	0	0	0	0	1
기타국	25	8	30	9	14	0	4	2	92
인 니	1	0	8	1	0	0	0	1	11
러시아	2	0	2	0	4	0	0	0	8
싱가폴	4	5	0	0	0	0	0	0	9
인 도	8	0	0	2	6	0	0	0	16
말 련	2	0	9	4	0	0	0	0	15
태 국	4	1	6	1	0	0	0	0	12
캐나다	3	0	3	0	0	0	0	0	6
브라질	0	0	0	0	0	0	2	0	2
아르헨티나	0	0	0	0	0	0	2	0	2
스위스	0	1	0	0	0	0	0	0	1
뉴질랜드	0	0	1	0	0	0	0	0	1
베트남	0	0	0	0	1	0	0	1	2
파키스탄	0	0	0	1	0	0	0	0	1
카자흐스탄	0	0	0	0	1	0	0	0	1
리히텐슈타인	0	1	0	0	0	0	0	0	1
우즈벡	0	0	0	0	1	0	0	0	1
우크라이나	0	0	0	0	1	0	0	0	1
아랍에미레이트	1	0	0	0	0	0	0	0	1
핀란드	0	0	1	0	0	0	0	0	1
계	101	37	56	32	33	9	6	15	289

## ② 무역조정지원(무역피해 조사)

(단위: 건)

FTA 국가 \ 업종	일반 제조업	농수산물 가공업	서비스업	계
EFTA	4	1	-	5
칠레	1	6	-	7
아세안	32	-	-	32
EU	32	21	-	53
미국	4	1	-	5
인도	5			5
싱가폴	1	-	-	1
계	78	29	-	107

## 1-5. 기업별 조사신청 현황

### ① 반덤핑 조사신청

연 번	신 청 일	신 청 인	품 목
1	1988. 6. 3	대화정밀화학(주)	디쿠밀퍼록사이드(재)
2	1988. 8.29	(주)유니온	알루미나시멘트
3	1989.10. 6	이양화학(주)	폴리아크릴아미드
4	1990. 5. 8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폴리아세탈수지
5	1992. 6.29	풍국정유공업(주)	H-산
6	1992. 7. 3	정밀화학공업진흥회	정제인산
7	1992. 7. 6	한국정밀(주)	볼베어링
8	1993. 1.29	동양화학공업(주)	소다회
9	1993. 3.12	렉스트산업(주)	PS 인쇄판
10	1993. 8. 9	한국베트로텍스(주)	유리장섬유
11	1993.10.14	한국특수사료(주)	소성인산석회
12	1994. 4. 6	소다공업협회	액체가성소다
13	1994.11.24	고려아연(주)	아연괴
14	1995. 6. 8	(주)덕산금속	동박
15	1995. 8. 8	동부브레용(주)	정제인산(재)
16	1995. 9.18	한국오리베스트(주)	유리장섬유(재)
17	1996. 1.12	한국포리올(주)	에탄올아민
18	1996. 2. 7	(주)테크라프	리튬1차전지
19	1996. 2.13	(주)한국화이바	유리장섬유(재)
20	1996. 3. 4	코린화학(주)	염화코린
21	1996. 4. 3	(주)우일신상	PS 인쇄판(재)
22	1996. 6.14	(주)우림전자	전기면도기
23	1996. 6.28	동양화학공업(주)	소다회(재)
24	1996. 7.22	서번산업(주)	산업용공기조절기
25	1996. 8. 7	동양화학공업(주)	소다회
26	1996.10.26	강원산업(주)	H 형강
27	1997. 1. 3	서번산업(주)	산업용공기조절기
28	1997. 2. 4	라이타공업협동조합	일회용포켓형라이터
29	1997. 2.10	태영화학(주)	EVA
30	1997. 4. 4	삼성정밀화학(주)	푸르푸릴알콜

연 번	신 청 일	신 청 인	품 목
31	1997. 4. 4	한솔포렘(주)외4	중질섬유판
32	1997. 5.16	한솔파텍(주)외2	셀프복사지
33	1997. 5.16	삼성정밀화학(주)	H-메틸셀룰로스
34	1997. 9.25	코발트전기공업(주)외1	전기다리미
35	1997.10.14	동부건설(주)외2	페로실리코망간
36	1997.10.16	동양화학공업(주)	폴리비닐알콜
37	1997.12. 8	대두가공협회	대두유
38	1998. 4.25	산요전기	리튬1차전지(재)
39	1998. 5. 7	한국아그파산업(주)	PS인쇄판(재)
40	1998. 9.30	한솔포렘(주)	파티클보드
41	1998.10.10	한국베트로텍스	유리장섬유(재)
42	1999. 2.12	공영화학	복합호제
43	1999. 3.20	라이타공업협동조합	일회용라이터
44	1999. 3.29	한국아그파산업	PS 인쇄판
45	1999. 8.31	대한제강공협	알루미늄공관및뚜껑
46	1999. 9.13	(주)서통외1	알칼리망간건전지
47	1999.11.15	동양화학공업(주)	소다회
48	2000. 5.26	에이에스잉크	PS 인쇄판(재)
49	2000. 6. 2	자전거공업협회	일반용자전거및동부품
50	2000. 6.19	합판보드협회	중질섬유판
51	2000. 7.14	합판보드협회	중질섬유판(재)
52	2000. 9. 8	한솔파텍외1	셀프복사지
53	2000.11. 1	부방테크론	전기다리미
54	2000.12.28	대한방직협회	코우머사
55	2000.12.29	한솔파텍외1	셀프복사지
56	2001. 5.31	SKC(주)	CD-R
57	2001. 6.16	(주)유럽그래픽	PS 인쇄판
58	2001. 7. 3	한국아그파산업(주)	PS 인쇄판
59	2001. 7. 4	신하이사	일회용라이터
60	2001.10.12	INI Steel(주)	H형강
61	2001.12. 6	유니온	백시멘트
62	2002. 1. 8	지원상사	소다회
63	2002. 2. 4	한국에어프러덕트	EVA
64	2002. 4.26	중국 에너지저장차이나	알칼리망간건전지

연 번	신 청 일	신 청 인	품 목
65	2002. 5. 2	라이터공업협동조합	일회용포켓형라이터
66	2002. 6.27	한국화학(주)	수산화알루미늄
67	2002. 6.29	엘지화학, 한국석유화학	2-에틸헥실알콜
68	2002. 8.27	라이터공업협동조합	일회용포켓형라이터
69	2002. 9.30	신호제지, 한솔제지	정보용지 및 백상지
70	2002.10. 8	동양한농	페로실리코망간
71	2002.10. 8	동양제철화학	폴리비닐알콜
72	2002.10.12	서통, 로케트건전지	알카리망간건전지
73	2003. 4.30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파티클보드
74	2003. 5.12	금강공업(주)외 4	스테인레스스틸바
75	2003. 5.14	로디아실리카코리아	규산나트륨
76	2003. 6. 9	한솔케미언스, 부흥산업사	차야황산소다
77	2003. 7. 7	현대중공업	6축다관절산업용로봇
78	2003. 7.16	(주)비츠로셀	리튬1차전지
79	2003.10.31	코파벤스페셜	염화콜린
80	2004. 3. 9	코스모화학(주)	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
81	2004. 4. 6	크라운(주)	PVC Plate
82	2004. 7.15	한국아그파산업(주)	PS 인쇄판
83	2004. 8.19	현대중공업(주)	산업용로봇
84	2004.12.30	INI스틸	H형강
85	2005. 4.29	(주)대동산업외 3	도자기질 타일
86	2005. 5.16	(주)비츠로셀	리튬1차전지
87	2005. 9.12	동국무역주식회사 주식회사 HK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연신가공사
88	2005.12.29	세호로보트산업주식회사	자동가이드출판칭기
89	2006. 1.17	동양제철화학	폴리비닐알콜
90	2006. 5. 4	한국제지, 한솔제지, 동아제지, 이엔페이퍼	정보용지 및 백상지
91	2006. 6. 7	(주)로케트전기, 벅셀	알칼리망간건전지
92	2006. 8.28	CJ(주), 삼양유지(주), (주)신동방	대두유
93	2006.12. 1	아세아제지(주), 아세아페이퍼텍(주)	골판지
94	2006.12.20	(주)한솔케미칼	차야황산소다
95	2007.3.7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플로트판유리
96	2007.4.9	(주)한솔케미칼	과산화벤조일
97	2007.4.20	(주)디케이씨에스	스테인레스스틸바
98	2007.7.18	한국알콜산업(주), 국제에스터(주)	초산에틸

연 번	신 청 일	신 청 인	품 목
99	2007.8.30	코스모화학(주)	이산화티타늄
100	2007.9.5	(주)코오롱	PET필름
101	2007.9.19	(주)이엔페이터, 쌍용제지(주)	크라프트지
102	2007.12.10	(주)동국무역, (주)성안합섬	폴리에스터 장섬유부분연신사
103	2008.3.10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파티클보드
104	2008.4.29	(주)케이티세라믹	도자기질타일
105	2008.10.14	로디아폴리아마이드(주)	아디프산
106	2009.1.28	포스코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스테인레스스틸바
107	2009.4.16	(주)코파벤스페셜, (주)코린화학	염화콜린
108	2009.4.20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
109	2009.7.29	(주)한솔케미칼	차아황산소다
110	09.11.30	한국제지(주), 흥원제지(주)	백상지
111	09.12.23	SKC(주)	프로필렌옥사이드
112	2010.2.1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113	2010.3.3	DKC(주)	스테인레스스틸 후판
114	2010.4.27	(주)KCC, 한국유리공업(주)	플로트판유리
115	2010.6.18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도자기질 타일
116	2010.8.31	코스모화학(주)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117	2010.10.18	(사)한국합판보드협회(동창, 경성, 한샘등)	파티클보드
118	2011.2.23	한국알콜산업(주)	초산에틸
119	2011.4.22	(주)도레이첨담소재, (주)코오롱인더스트, (주)화성인더스트리, (주)효성	PET필름
120	2011.4.22	쌍용제지(주), 케이지피(주)	크라프트지
121	2011.7.19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폴리에스테르장섬유부분연신사(POY)
122	2011.10.21	한국합판보드협회	파티클 보드
123	11.12.19	(주)테크팩솔루션	알루미늄 보틀캔
124	2012.7.27	(주)코파벤스페셜, (주)코린화학	염화콜린
125	2012.8.22	세아특수강(주), 동일제강(주), 동부특수강(주), 동방금속공업(주)	스테인리스 스틸바
126	2012.10.8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127	2012.11.16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가공사(DTY)
128	2012.11.22	(주)화성인더스트리, 필맥스, 삼영화학	폴리프로필렌연신(OPP)필름
129	2013.7.31	선창산업(주), 이견산업(주), 성창기업(주)	합판

연 번	신 청 일	신 청 인	품 목
130	2013.9.24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두꺼운 PET 필름
131	2013.11.13	KPX그린케미칼(주)	에탄올아민
132	2013.11.22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플로트판유리
133	2013.12.23	(주)TPC메카트로닉스, (주)케이시시정공	공기압밸브
134	2014.1.9	대동산업(주),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도자기질 타일
135	2014.1.9	웨이강 동하이(신규 공급자 조사)	합판
136	2014.1.9	웨이강 웨이추양(신규 공급자 조사)	합판
137	2014.1.9	허저 성화(신규 공급자 조사)	합판
138	2014.1.24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POY
139	2014.4.18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POY
140	2014.5.30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H(구조형)형강
141	2014.9.25	한국알콜산업(주)	초산에틸
142	2014.9.26	한국알콜산업(주)	초산에틸
143	2014.11.24	도레이첨단소재(주), (주)효성코오롱인더스트리, (주)화승인더스트리	PET 필름
144	2015.1.30	한국합판보드협회	침엽수합판
145	2015.10.6	(주)디케이씨	스테인리스스틸후판
146	2015.11.18	롯데케미칼(주)	부틸 글리콜에테르
147	2015.12.8	코스모화학(주)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148	2016.3.3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중국산)
149	2016.3.3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말련산)
150	2016.3.29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주), 동일제강(주)	스테인리스 스틸바
151	2016.8.5	제일씨앤피(주)	인쇄제판용 평면오양 사진플레이트
152	2016.11.18	동부메탈, 심팩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	페로실리코망간
153	2017.2.22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효성, 화승	PET 필름
154	2017.6.8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흥원제지(주)	도공(coated) 인쇄용지
155	2017.6.26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국선재, 한일스틸	아연도금철선
156	2017.6.28	KPX그린케미칼(주)	에탄올아민
157	2017.6.29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두꺼운 PET 필름



## ② 세이프가드 조사

연 번	신 청 일	신 청 인	품 목
1	1987.11.24	서형산업(주)	세라믹압전착화소자
2	1988.3.31	한국양토협동조합	앙고라토끼털
3	1988.7. 1	수협중앙회	새우젓
4	1989.5.18	농협중앙회	고추가공제품
5	1989.7.24	한국육가공협회	돼지고기통조림
6	1989. 8. 8	대한마이카(주)	집성운모절연제품
7	1989.8.26	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스테아린산
8	1989.8.31	한국알콜산업(주)	초산에틸
9	1989.9.27	강원산업(주)	압연기용롤
10	1989.11. 1	(주)크린랩	L-LDPE필름
11	1990.2.20	한국단미사료협회	우모분
12	1990.3. 6	한국유가공협회	코코아분유
13	1990.5.11	한국목할저류공협	목할저
14	1990.8.25	대한광업회	활석분
15	1990.11.16	농협중앙회	팝콘 옥수수
16	1991.3.22	한국면류공협	당면
17	1991.10.28	전자공업진흥회	컴퓨터주기관
18	1991.12.19	한국목환봉협회	이썬시개및기타목제품
19	1991.12.23	한국양산공협	우산 및 우산틀
20	1992.1.11	한국정밀(주)	볼베어링
21	1992.7.21	담양축세공예협	식물성매트류
22	1992.11. 7	완도군 수협	미역
23	1994.3.17	한국대두가공협회	대두박
24	1994.3.17	한국대두가공협회	대두유
25	1994.11.22	서귀포 수협외3	냉동옥돔
26	1995.8. 1	한국대두가공협회	대두유
27	1996.5. 2	축협중앙회	유제품
28	1996.7.22	자전거공업협회	일반용자전거및동부품
29	1996.8.26	한국대두가공협회	대두박(재검토)
30	1998.10.30	(중간직권 조사)	유제품(재검토)
31	1998.9.10	농협중앙회	마늘
32	1901.2.10	(중간직권 조사)	마늘(재검토)
33	1902.6.28	농협중앙회	마늘(연장재검토)
34	1913.3.21	(사)대한한돈협회	돼지고기



# 2

##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





## 2.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

### 2-1. 운용실적 총괄

구분		품목수	품목	2016~2017.6. 공고
신청철회 및 기각 (원심,재심)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산 • 동박 • 산업용 공기조절기 • 푸르푸릴알콜</li> <li>• 대두유 • 리튬1차전지(재심)</li> <li>• 파티클보드(인니, 말련, 태국) • 일반용자전거 및 동부품</li> <li>• 전기다리미(재심) • 코우머사(CM) • 셀프복사지</li> <li>• 파티클보드(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 규산나트륨</li> <li>• 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봇 • 알칼리망간건전지(재심)</li> <li>• 대두유 • 파티클보드(상항변동재심) • 파티클보드(재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 (원심)</li> </ul>
판정	관세 부과 (원심)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아세탈수지 • 정제인산 • 볼베어링 • PS인쇄판</li> <li>• 리튬1차전지 • 염화콜린 • 소다회</li> <li>• 일회용포켓형라이터(중국) • 중질섬유판 • 전기다리미</li> <li>• 폴리비닐알콜 • CD-R • 일회용포켓형라이터(인도네시아)</li> <li>• 정보용지 및 백상지 • 차야황산소다 • 리튬1차전지</li> <li>• 염화콜린 •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li> <li>• 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봇 • 도자기질 타일</li> <li>•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DTY)</li> <li>• 자동가이드홀펀칭기 • 폴리비닐알콜</li> <li>• 초산에틸(중국, 싱가포르, 일본) • 크라프트지</li> <li>• PET 필름 • 폴리에스테르장섬유부분연신사(POY)</li> <li>• 파티클보드(태국, 말련) • 합판(말련)</li> <li>• 스테인리스후판 • 알루미늄보틀캔 • 합판(중국)</li> <li>• OPP 필름 • 두꺼운 PET 필름 • 에탄올아민</li> <li>• 공기압밸브(일본) • 초산에틸(인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엽수합판(중국)</li> <li>• 부틸글리콜에테르 (미국, 프랑스)</li> </ul>
	가격 약속 (원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루미늄시멘트(프랑스)</li> <li>•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에멀전 타입(대만)</li> <li>• 방적사용복합호제(일본) • PS인쇄판(네덜란드)</li> </ul>	
	관세 부과 및 가격 약속 (원심)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다회 • 유리장섬유 • 에탄올아민 • 전기면도기</li> <li>• H형강(러시아) • 셀프복사지 • 페로실리코망간</li> <li>• 알칼리망간건전지 • 수산화알루미늄</li> <li>• 스테인리스스틸바(일본, 인도, 스페인) • PVC플레이트</li> <li>• 플로트판유리 • 과산화벤조일 • H형강(중국)</li> </ul>	
	물량 약속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공기조절기(수출중지약속)</li> </ul>	

구 분		품목수	품 목	2016~2017.6. 공고
판정	관세부과, 가격약속, 일부품목 제외(재심)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P ● 정제인산 ● 유리장섬유('95) ● 유리장섬유('96)</li> <li>● PS인쇄판('96) ● 소다회('96) ● PS인쇄판('98)</li> <li>● 유리장섬유('98 ● 일회용포켓형라이터('99)</li> <li>● 소다회('99) ● PS인쇄판('00) ● 셀프복사지('00)</li> <li>● PS인쇄판('01, 상황재심) ● PS인쇄판('01, 종료재심)</li> <li>● 일회용포켓형라이터('01) ● H형강(러시아) ● 소다회('02)</li> <li>● EVA ● 알칼리망간건전지(신규공급자재심)</li> <li>● 일회용포켓형라이터('02)</li> <li>● 페로실리코망간 ● 폴리비닐알콜 ● 알칼리망간건전지</li> <li>● 정보용지 및 백상지 ● 차아황산소다('06)</li> <li>● 스테인리스스틸바('07) ● 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li> <li>● 도자기질타일('08) ● 스테인리스스틸바('09)</li> <li>● 염화콜린 ●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li> <li>● 차아황산소다('09) ● 플로트판유리 ● 도자기질타일('10)</li> <li>● 초산에틸('11) ● PET필름('11) ● 크라프트지</li> <li>● 폴리에스테르장섬유부분연신사('11) ● 염화콜린</li> <li>● 스테인리스스틸바('12) ● 플로트판유리</li> <li>●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12) ● 합판(말련)</li> <li>● 침엽수 합판(신규공급자재심, 3건) ● 도자기질타일(중국)</li> <li>● 초산에틸(중, 일, 싱) ● PET필름(중국, 인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일본)</li> <li>● 합판(중국산)</li> <li>● 합판(말련산)</li> <li>● 스테인리스스틸바</li> </ul>
	관세부과 조치폐지 (재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튬1차전지(생산기업 화재로 전소)</li> </ul>	
	피해부정 판정 (원심, 재심)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아크릴아미드 ● 소성인산석회 ● 액체가성소다</li> <li>● 아연괴 ● H-메틸셀룰로스 ● 알루미늄 공관 및 뚜껑</li> <li>● 중질섬유판(태국, 인니) ● 중질섬유판(재심, 말련)</li> <li>● 백시멘트 ● 2-에틸헥실알콜 ● PS 인쇄판(재심, 일본)</li> <li>● H형강(재심, 러시아) ● 라이너지(미국, 캐나다, 뉴질랜드)</li> <li>● 아디프산 ● 백상지(재심) ● 프로필렌옥사이드</li> <li>● 아타타제형 이산화티타늄(재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Y (재심, 대만, 중국)</li> <li>● POY(원심, 말련, 태국, 인도)</li> </ul>
조사 중 (원심, 재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옅색인쇄판('16, 원심) ● 페로실리코망간('16, 원심) ● PET 필름('17, 원심)</li> <li>● 도공 인쇄용지('17, 원심) ● 아연도금철선('17, 원심) ● 에타올아민('17, 재심)</li> <li>● 두꺼운 PET 필름('17, 재심)</li> </ul>		
합 계	157			



## 2-2. 연도별 신청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신청		소계	긍정판정				소계	부정판정			조사중
	품목	국가		관세 부과	가격 인상 약속	관세/ 가격 약속	기타		무혐의	신청 철회	기타	
1988	2	3	3	-	3	-	-	-	-	-	-	-
1989	1	3	-	-	-	-	-	3	3	-	-	-
1990	1	2	2	2	-	-	-	-	-	-	-	-
1991	-	-	-	-	-	-	-	-	-	-	-	-
1992	3	5	2	2	-	-	-	3	-	3	-	-
1993	4	6	5	1	-	4	-	1	1	-	-	-
1994	2	8	-	-	-	-	-	8	8	-	-	-
1995	3	5	4	1	-	-	3 <sup>①</sup>	1	-	1	-	-
1996	10	17	16	8	-	7	1 <sup>①</sup>	1	-	1	-	-
1997	11	18	12	7	1	3	1 <sup>②</sup>	6	2	4	-	-
1998	4	8	4	1	-	3	-	4	-	3	1 <sup>③</sup>	-
1999	6	9	8	1	2	5	-	1	1	-	-	-
2000	8	17	2	-	-	1	1 <sup>①</sup>	15	3	11	1 <sup>④</sup>	-
2001	6	6	5	4	-	-	1 <sup>①</sup>	1	1	-	-	-
2002	11	18	14	10	1	2	1 <sup>①</sup>	4	4	-	-	-
2003	7	15	10	7	-	3	-	5	-	4	1 <sup>④</sup>	-
2004	5	5	3	2	-	1	-	2	2	-	-	-
2005	4	7	5	5	-	-	-	2	-	-	2 <sup>⑤</sup>	-
2006	6	15	6	4	-	2	-	9	3	6	-	-
2007	8	18	18	13	-	2	3	-	-	-	-	-
2008	3	4	3	2	-	-	1 <sup>①</sup>	1	1	-	-	-
2009	6	14	11	5	-	6	-	3	3	-	-	-
2010	6	7	4	3	-	1	-	3	1	-	2 <sup>②</sup>	-
2011	6	15	13	13	-	-	-	2	-	2	-	-
2012	5	14	14	14	-	-	-	-	-	-	-	-
2013	5	8	8	7	-	1	-	-	-	-	-	-
2014	10	16	11	10	-	1	-	5	5	-	-	-
2015	4	5	4	4	-	-	-	1	-	1	-	-
2016	5	9	5	5	-	-	-	-	-	-	-	4
2017.6.	5	12	-									12
계	157	289	192	131	7	42	12	81	38	36	7	16

주 1) 판정내용은 국가별 기준

2) ① 일부부과제외, ② 수출증지약속, ③ 재심불가, ④ 기각, ⑤ 관세부과조치폐지

### 2-3.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품목

연 번	품 목	대상국	조치내용	
			관세율(%)	부과기간
1	스테인레스스틸바 <sup>1)</sup> (재심)	일본	15.39	2013.10.01~2016.09.30 (3년)
2		인도	2.76~15.39	
3		스페인	15.39	
4	합판 <sup>1) 2)</sup>	중국	2.42~27.21	2013.10.18~2018.10.17 (3년)
	신규공급자		4.46	
	신규공급자		4.54	2014.2.28~2016.10.17
	신규공급자		17.48	
5	OPP필름	중국	3.89~25.04	2013.12.20~2018.12.19 (5년)
6		인도네시아	4.43~5.98	
7		태국	3.48~10.55	
8	합판	말레이시아	3.08~38.10	2014.9.5~2016.9.4 (2년)
9	두꺼운 PET 필름	일본	5.95	2014.12.30~2017.12.29 (3년)
10	에탄올 아민	미국	4.36~21.79	2014.12.30~2017.12.29 (3년)
11		말레이시아	4.36~21.79	
12		태국	4.36~21.79	
13		일본	4.36~21.79	
14	플로트판유리(재심)	중국	12.04~36.01	2015.01.07~2018.01.06 (3년)
15	도자기질타일(재심)	중국	9.07~29.41	2015.02.25~2018.02.24 (3년)
16	H형강	중국	28.23~32.71	2015.7.30~2020.7.29 (5년)
17	공기압 전송용 밸브	일본	11.66~22.77	2015.8.19~2020.8.18 (5년)
18	초산에틸	인도	8.56~19.84	2015.11.19~2018.11.18 (3년)
19	초산에틸	중국	4.64~17.76	2015.11.19~2018.11.18 (3년)
20		일본	17.76	
21		싱가폴	17.76	
22	PET필름(재심)	중국	7.42~12.92	2016.1.13~2019.1.12 (3년)
23		인도	14.63~25.32	
24	침엽수합판	일본	4.22~7.15	2016.3.11~2020.3.10 (4년)
25	부틸글리콜에테르	미국	23.06~25.00	2016.12.6~2021.12.5 (5년)
26		프랑스	20.10	
27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재심)	일본	13.17	2016.12.6~2019.12.5 (3년)

27개 국가, 16개 품목

주 1)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기간 중 조치효력은 계속됨(관세법시행령 제70조)



## 2-4. 덩핑방지관세 부과종료 품목

연 번	대 상 국	품 목	조치내용	
			관세율(%)	부과기간
1	일본, 대만	D.C.P	가격약속	1989.1.1~1989.12.31 (1년)
2	프랑스	알루미늄시멘트	가격약속	1989.9.1~1991.8.30 (2년)
3	미국, 일본	폴리아세탈수지	4.0	1991.9.30~1993.8.30 (2년)
4	중국	정제인산	40.46~54.28	1993.2.20~1996.2.19 (3년)
		(1차재심)	18.66~57.55	1996.2.20~1998.2.19 (2년)
5	태국	볼베어링	6.27	1993.1.28~98.1.27 (5년) *관세청 덩핑률 재심사
6	미국, 일본	리튬1차전지	5.25~49.69	1996.9.2~1999.9.1 (3년)
7	러시아, 불가리아	소다회	15.69~18.75	1997.1.24~2000.1.23 (3년)
8	리히텐슈타인	산업용공기조절기	수출증지약속	1997.7.21~2000.7.20 (3년)
9	미국, 일본, 대만	유리장섬유	10.3~58.7	1994.4.12~1999.4.11 (5년)
		(1차 재심)	10.3~58.7	1996.2.19~1999.4.11 (3년) *재심결과 일부품목 제외
	미국, 일본	(2차 재심)	10.3~58.7	1996.2.19~1999.4.11 (3년)
		(3차 재심)	10.3~58.7	1999.4.12~2001.4.11 (2년)
10	미국	에탄올아민	20.07~33.84	1996.7.10~2001.7.9 (5년)
11	미국, 중국	염화코린	33.83~49.6	1996.9.2~2001.9.1 (5년)
12	네덜란드, 독일, 중국, 일본	전기면도기	23.14~45.68	1996.12.20~2001.12.19 (5년)
13	말레이시아	중질섬유판	19.31~39.54	1998.1.17~2001.1.16 (3년)
14	싱가폴, 중국, 프랑스	전기다리미	10.43~43.77	1998.4.6~01.4.5 (3년)
15	중국	소다회	66.11	1993.12.31~96.12.30 (3년)
		(1차 재심)	23.43	1997.5.17~2000.5.16 (3년)
		(2차 재심)	가격약속	2000.12.4~02.12.3 (2년)
16	독일, 영국	셀프복사지	14.82 ~15.38	1998.3.10~2001.3.9 (3년)
	독일	(1차 재심)		2001.8.21~2004.8.20 (3년)
17	일본	복합호제	가격약속	2000.1.18~2005.1.17 (5년)
18	네덜란드	PS인쇄판	가격약속	2000.1.18~2005.1.17 (5년)
19	일본	PS인쇄판	24.51~38.16	1993.11.8~1998.1.7 (5년)
		(1차 재심)	24.51~38.16	1996.12.3~1998.11.7
		(2차 재심)	24.51~38.16	1999.1.7~2002.1.6 (3년)
		(3차 재심)	일부품목제외	1999.1.7~2002.1.6 (3년)
		(4차 재심)	24.51~38.16	2002.1.6~2005.1.7 (3년)

연 번	대 상 국	품 목	조치내용	
			관세율(%)	부과기간
20	러시아	H형강	15.13~15.18	1997.4.15~05.4.14 (5년)
		(1차 재심)	15.95	2002.7.3~05.7.2 (3년)
21	중국	일회용포켓형라이터	32.84	1997.11.8~2002.11.7 (5년)
		(1차 재심)	덤핑률조정	1999.12.1~2002.11.7 (3년)
		(2차 재심)	덤핑률조정	2002.3.14~2002.11.7 (3년)
		(3차 재심)	36.42~63.51	2003.5.23~2006.5.22 (3년)
22	일본	폴리비닐알콜	27.0~37.75	1998.4.10~2003.4.9 (5년)
		(1차재심)	17.6	2003.12.3~2006.12.2 (3년)
23	중국	페로실리코망간	17.95~24.68	1998.4.10~2003.4.9 (5년)
		(1차 재심)	15.66(가격약속)	2003.12.3~2008.12.2 (5년)
24	대만	EVA(에틸렌초산비닐)	(가격약속)	1997.8.5~2002.8.4 (5년)
		(1차 재심)	가격약속 (내용변경 및 기간연장)	2003.1.15~2006.1.14 (3년)
25	인니	일회용포켓형라이터	54.17~86.36	2003.9.9~2006.9.8 (3년)
26	싱가폴, 중국, 일본	알칼리망간건전지	26.7	2000.4.15~2003.4.14 (3년)
		(1차 재심)	8.76~24.97(가격약속)	2003.12.3~2006.12.2 (3년)
27	대만	CD-R	51.72	2002.1.21~2007.1.20 (5년)
28	일본, 미국	리튬1차전지	18.19	2004.7.30~2007.7.29 (3년)
29	일본	수산화알루미늄	40.33	2003.7.18~2008.7.17 (5년)
30	일본	염화비닐중합체 후판(PVC-plate)	27.91~29.70 (가격약속)	2004.12.20~2009.12.19 (5년)
31	일본	자동가이드롤 펀칭기	4.92	2006.11.23~2009.11.22 (3년)
32	중국, 싱가포르, 미국	폴리비닐 알코올	11.11~35.17	2006.12.12~2009.12.11 (3년)
33	중국, 인니	정보용지 및 백상지	중) 5.50~8.99 (인) 2.80~8.22	2003.11.7~2006.11.6 (3년)
		(1차 재심)	(중) 2.22~7.39 (인) 7.72	2007.6.1~2010.5.31 (3년)
34	일본	산업용로봇	4.51~10.00	2005.4.18~2010.4.17 (5년)
35	중국	이산화티타늄	4.82~23.08	2005.3.2~2008.3.1 (3년)
		(1차 재심)	4.86~23.08	2008.8.25~2011.3.1 (3년)
36	중국	과산화벤조일	7.72, 가격 상승	2008.5.16~2011.5.15 (3년)
37	중국	차아황산소다	11.78~21.07	2004.6.23~2007.6.22 (3년)
		(1차 재심)	12.11~36.18	2008.1.31~2010.1.30 (2년)
		(2차 재심)	12.25~36.18	2010.8.6~2012.8.5 (2년)
38	태국, 말레이시아	파티클보드	7.67	2009.4.24~2012.4.23 (3년)

연 번	대 상 국	품 목	조치내용	
			관세율(%)	부과기간
39	대만, 중국	POY	6.26	2012.7.25~2014.7.24(2년)
40	러시아,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크라프트지	4.03~10.79	2008.10.27~2011.10.26(3년)
		(1차 재심)	4.03~10.79	2012.4.10~2015.4.9(3년)
41	일본	알루미늄 보틀캔	4.59	2013.1.3~2016.1.2(3년)
42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염화콜린	10.28~27.55	2004.10.20~v09.10.19(5년)
		(2차 재심)	10.28~27.55	2010.1.29~2013.1.29(3년)
		(3차 재심)	22.19~27.32	2013.8.22~2016.8.21(3년)
43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2.60~8.69	2006.10.20~2009.10.20(3년)
		(1차재심)	2.37~8.69(가격약속)	2010.5.18~2013.5.17(3년)
		(2차 재심)	2.22~8.69	2013.12.20~2016.12.19(3년)

73개 국가 43개 품목

## 2-5. 조사건별 조치내역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 고
1988.6.3	디쿠밀퍼록 사이드 (재심)	대화정밀화학(주)	일본, 대만	1988.12 가격약속 연장 - CIF US\$3,500/MT -1989.1. 1~1989.12.31	
1988.8.29	알루미나 시멘트 (원심)	(주)유니온	프랑스	1989.7 가격약속 -1989.9.1~1991.8.30(2년) 1989.7 신청철회	
1989.10.6	폴리아크릴 아미드 (원심)	이양화학(주)	영국, 독일 프랑스	1990.11.19 피해부정판정	
1990.5.8	폴리아세탈 수지 (원심)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미국, 일본	1991.9.14 AD관세 부과 - 4% -1991.9.30부터 2년	
1992.6.29	H-산 (원심)	풍국정유공업(주)	중국, 인도 일본	1992.12.15 신청철회	
1992.7.3	정제인산 (원심)	한국정밀화학 공업진흥회	중국	1993.2.20 AD관세 부과 - 공업용40.96~54.28% 식품용40.46~46.78% - 1993. 2.20부터 3년	재심사 결과 2년 연장
1992.7.6	볼베어링 (원심)	한국정밀(주)	중국	1993.2.20 AD관세 부과 - 공업용40.96~54.28% 식품용40.46~46.78%	재심사 결과 1995.3.4 구제조치종료
1993.1.29	소다회 (원심)	동양화학공업(주)	중국	1993.12.7 수출물량 축소 약속 -1994~95 20,000톤, 96 15,000톤 -1993.12.31부터 3년  1993.12.31 AD관세 부과 - 66.11% -1993.12.31부터 3년	재심사 결과 3년 연장
1993.3.12	PS 인쇄판 (원심)	렉스트산업(주)	일본	1993.12.31 AD관세 부과 - 24.51~38.16% -1993.11. 8부터 5년	재심사결과 일부품목제외
1993.8.9	유리장섬유 (원심)	한국벤토로 텍스(주)	미국, 일본, 대만	1994.6.1 가격약속 - 대만PFG화이버글라스 -1.60~2.03 US\$/Kg -1994. 6. 1부터 5년 1994.8.9 AD관세 부과 -10.3~58.7% -1994.4.12부터 5년	재심사결과 1차 : 일부품목 제외 2차 : 현행 관세율 유지 3차 : 관세부 과 기간 연장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조국	조치내용	비 고
1993.10.14	소성인산석회 (원심)	한국특수사료(주)	러시아	1994. 6.23 피해부정판정	
1994.4.6	액체가성소다 (원심)	한국소다공업협회	미국, 중국, 벨기에, 프랑스	1994.12.9 피해부정판정	
1994.11.24	아연괴(원심)	고려아연(주)	중국, 러시아, 카자흐, 우즈벡	1995.6.23 피해부정판정	
1995.6.8	동박(원심)	(주)덕산금속	일본	1995.10.5 신청철회	
1995.8.8	정제인산(재심)	동부브레용(주)	중국	1996.2.29 AD관세 부과 기간연장 - 18.66~57.55% - 1996.2.20부터 2년	
1995.9.18	유리장섬유 (재심)	한국오리 베스트(주)	미국, 일본, 대만	1996.2.29 일부 품목은 AD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10.3~58.7% - 96.2.29~99.4.11	
1996.1.12	에탄올아민 (원심)	한국포리올(주)	미국	1996.10.31 AD관세 부과 - 20.07~33.84% - 96.7.10부터 5년	
1996.2.7	리튬1차전지 (원심)	(주)테크라프	일본,미국	1996.12.19 AD관세 부과 - 5.25~49.69% - 1996.9.2부터 3년	
1996.2.13	유리장섬 (재심)	(주)한국화이버	미국, 일본	1996.8.26 현행 AD관세 유지결정	
1996.2.13	염화코린(원심)	코린화학(주)	미국, 중국	1996.12.3 AD관세 부과 - 33.83~49.62% - 1996. 9. 2부터 5년	
1996.3.4	PS인쇄판 (재심)	(주)우일신상	일본	1996.12.3 일부 품목은 AD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24.51~38.16% - 1993.12.3~1998.11.7	
1996.6.14	전기면도기 (원심)	(주)우림전자	네덜란드, 독일,일본, 중국	1997.4.30 가격약속 - 마쓰시다전공외 6 - 97.4.30~2001.12.19  1997. 5.17 AD관세 부과 - 23.14~45.68% - 1996.12.20부터 5년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 고
1996.6.28	소다회 (재심)	동양화학공업(주)	중국	1997.4.19 가격약속 - 중국화공건설총공사 외1 - US\$ 185/MT - 1997.4.19 ~ 00.5.16  1997.5.17 AD관세 부과 - 23.43% - 1997.5.17부터 3년	
1996.7.22	산업용공기 조절기(원심)	서번산업(주)	스위스	1996.10.29 신청철회	
1996.8.7	소다회 (원심)	동양화학공업(주)	불가리아, 러시아	1997. 5.17 AD관세 부과 - 15.69~16.94% - 1997.1.24부터 5년	
1996.10.26	H 형강 (원심)	강원산업(주)	러시아	1997.8.2 가격약속 1997.8.2 AD관세 부과 - 15.13~15.18% -1997.4.15부터 5년	
1997.1.3	산업용공기 조절기 (원심)	서번산업(주)	리히텐슈타인	1997.4.30 긍정예비판정 1997.7.21 수출중지약속 수락 -1997.7.21부터 3년	
1997.2.4	일회용포켓형 라이터 (원심)	라이타공업 협동조합	중국	1997.11.8 AD관세 부과 - 32.84% - 1997.11.8부터 5년	
1997.2.1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에멸전 타입 (원심)	태영화학(주)	대만	1997.6.27 잠정조치 건의 - 17.08% - 1997.8.5 가격약속	
1997.4.4	푸르푸릴알콜 (원심)	삼성정밀화학(주)	중국	1997.12.23 AD관세 부과건의 - 17.88~20.93% 98.2.16 신청철회	
1997.4.4	중질섬유판 (원심)	한솔포렘(주) 외 4	미국, 말련	1997.12. 5 AD관세 부과건의 - 1919.31~39.54%(미국제외) 1998.1.17 AD관세 부과 - 7.02~33.11%(미국제외)	
1997.5.16	셀프복사지 (원심)	한솔파텍(주) 외 2	독일, 영국	1998. 1.30 가격약속 - 1,926~3,210 DM/T - 98.1.30~01.3.9 98.3.10 AD관세 부과 - 12.26~15.38% - 1998. 3.10부터 3년	
1997.5.16	H-메틸셀룰로스 (원심)	삼성정밀화학(주)	미국, 독일	1997.10.15 피해부정판정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조국	조치내용	비 고
1997.9.25	전기다리미 (원심)	코발트전기 공업(주) 외	싱가폴, 중국, 프랑스	1998.8.6 AD관세 부과 - 10.43~43.77% - 1998.4.6부터 3년	
1997.10.14	페로실리코망간 (원심)	동부건설 외 2	중국	1998.8.19 가격약속 1998.8.24 AD관세 부과 - 17.95~24.68% - 1998.4.10부터 5년	
1997.10.16	폴리비닐알콜 (원심)	동양화학공업(주)	일본	1998.8.20 AD관세 부과 - 27.0~37.75% - 1998.4.10부터 5년	
1997.12.8	대두유 (원심)	대두가공협회	미국, 아르헨, 브라질	1997.12.19 신청 철회	
1998.4.25	리튬1차전지 (재심)	산요전기(주)	일본	98.5.25 재심사 불개시 결정	
1998.5.7	PS인쇄판 (재심)	한국아그파	일본	1998.11.13 재심사 판정 - 24.51~38.16% - 1999. 1. 7부터 3년	
1998.9.30	파티클보드 (원심)	한솔포렘	인니,말련 태국	1999.1.20 신청철회	
1998.10.12	유리장섬유 (재심)	한국베트로텍스	미국, 일본, 대만	1999.4.21 AD관세부과 - 10.30~58.70% - 1999. 4.12~01. 4.11	
1999.2.18	복합호제 (원심)	공영화학 외 1	일본	1999.11.10 약속판정 - 현행 가격의 15.38%~ 17.24% 인상 2000.1.18부터 5년	
1999.3.20	일회용포켓형 라이터 (재심)	한국라이터 공업협동조합	중국	1999.10.11 재심사 판정 - 38.84%→72.41~100.1% - 1999.11.8~02.11.7	
1999.3.29	PS인쇄판 (원심)	한국아그파	네델란드	1999.11.10 약속판정 - 최저가격 4,011\$/m <sup>2</sup> 2000.1.18부터 5년	
1999.8.31	알루미늄공관 및뚜껑(원심)	대한제강공업 협동조합	대만	2000.3.8 피해부정판정	
1999.9.13	알칼리망간 건전지 (원심)	서통 외 1	싱가폴, 중국, 일본, 미국	2000.4.15 AD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 중국, 일본 26.7% - 싱가포르 가격약속 2000.4.15부터 3년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 고
1999.11.15	소다회(재심)	동양화학	중국	2000.12.4 - 가격약속(일부) - 25.61~26.47%	
2000.5.26	PS인쇄판(재심)	에이에스잉크	일본	2000.6.28 재심사 불개시 건의 - 일부품목 제외	
2000.6.2	일반용자전거및 동부품(원심)	자전거공업협회	중국	2000.9.27 신청기각	
2000.6.19	중질섬유판(원심)	합판보드협회	태국, 인니	2001.4.18 피해부정판정	
2000.7.14	중질섬유판(재심)	합판보드협회	말레이시아	01.6.8 피해부정판정(종결)	
2000.9.8	셀프복사지(재심)	한솔파텍,계성제지	독일	2001.8.13 가격약속(일부) 2001.8.21 AD관세 부과 - 14.83~15.38%(3년)	
2000.11.1	전기다리미(재심)	부방테크론	싱가폴, 프랑스, 중국	2000.12.8 신청철회	
2000.12.28	코우머사(원심)	대한방직협회	인도, 인니, 파키스탄	2001.6.22 신청철회	
2000.12.29	셀프복사지(원심)	한솔파텍,계성제지	일본,중국,인니, 태국, 미국	2001.5.14 신청철회	
2001.5.30	CD-R(원심)	SKC	대만	2002.4.25 AD관세 부과 - 51.72% 2002.1.21부터 5년	
2001.6.16	PS 인쇄판(재심)	(주)유럽그래픽	일본	2001.8.13 AD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2001.6.16	PS 인쇄판(재심)	한국아그파(주)	일본	2002.2.7 AD관세 부과 - 24.51%~38.16% 2002.1.6부터 3년	
2001.7.4	일회용포켓형 라이터(상황변동)	신하이사	중국	2002.2.7 덤핑률변동 - 72.41%→36.42%	
2001.10.12	H 형강(재심)	INI Steel	러시아	2002.7.3 AD관세부과 -15.95%(3년)	
2001.12.6	백시멘트(원심)	유니온	중국	2002.10.24 피해부정판정(종결)	
2002.1.8	소다회(상황변동)	지원상사	중국	2002.3.7 품목 제외	
2002.2.4	EVA(재심)	한국에어프러덕트	대만	2002.12.5 가격약속(790\$/톤) 2003.1.15부터 3년	
2002.4.26	알카리망간건전지(상황변동)	에너지이저차이나	중국	02.10.24 신규 공급자 덤핑 부과 26.7%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 고
2002.5.2	일회용포켓형 라이터 (재심)	라이터공업 협동조합	중국	2003.5.23 AD관세 부과 - 36.42~65.31%(3년)	
2002.6.27	수산화알루미늄 (원심)	한국화학	일본	2003.7.18 AD관세 부과 일부가격 약속 - \$144~159/톤(5년)	
2002.6.29	2-에틸헥실알콜 (원심)	엘지화학, 한국석유화학	미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	2003.1.22. 피해부정판정	
2002.8.27	일회용포켓형 라이터 (원심)	라이터공업 협동조합	인도네시아, 베트남	2003.7.16 베트남산 조사종결 2003.9.9 인니산 AD관세 부과 - 54.17~86.36%(3년)	
2002.9.30	정보용지및백상 지 (원심)	신호제지, 한솔제지	인도네시아, 중국	2003.11.7 AD관세 부과 - 2.80 ~ 8.99%(3년)	
2002.10.8	페로실리코망간 (재심)	동양한농	중국	2003.12.3 AD관세 부과 (15.66%) 가격약속(\$540/톤)	
2002.10.8	폴리비닐알콜 (재심)	동양제철화학	일본	2003.12.3 AD관세 부과 - 17.6%(3년)	
2002.10.12	알카리망간 건전지 (재심)	서통, 로케트 건전지	중국, 일본, 싱가폴	2003.12.3 AD관세 부과 - 8.76~24.97%(3년) - 일부가격약속	
2003.4.30	파티클보드 (원심)	(사)한국합판 보드협회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2004.5.12 조사종결 (신청철회)	
2003.5.12	스테인레스 스틸바 (원심)	금강공업(주) 동방산업(주) (주)배명금속 세아특수강 창위특수강	일본, 인도 스페인	2004.5.19 가격약속 수락 건의 결정(일본산요) 2004.7.30 AD관세 부과 및가격약속 시행 -15.39% -일부가격약속	
2003.5.14	규산나트륨	(주)로디, 아실리카코리아	중국	2003.11.19 기각판정	
2003.6.9	차아황산소다	한솔케미언스, 부흥산업사	중국	2004.6.30 AD관세 부과 - 11.78~21.07%	
2003.7.7	6축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현대중공업(주)	일본	2004.1.14 조사종결 (신청철회)	
2003.7.16	리튬1차전지	비츠로셀	일본, 미국	2004.7.30 AD관세 부과 - 18.19%	
2003.10.31	염화콜린	코파벤스, 페셀, 코린화학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2004.7.30 AD관세 부과 - 10.28~27.55%(5년)	2004.5.20 잠정관세부과 12.97~ 58.16%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 고
2004.3.9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코스모화학(주)	중국	2005.3.2 AD관세 부과 - 4.82~23.08%(3년)	2004.10.2 잠정관세부과 4.98~23.08%
2004.4.6	PVC Plate	크라운(주)	일본	2004.12.20 AD관세 부과 - 27.91~29.70% 일부 가격 약속 2004.12.20부터 5년	2004.12.20 잠정관세부과 35.23~40.20%
2004.7.15	PS인쇄판	한국아그파산업	일본	2005.1.26 부정판정	
2004.8.19	산업용로봇	현대중공업(주)	일본	2005.9.17 AD관세 부과 - 4.51~10.00% 2005.4.18부터 5년	2005.4.18 잠정관세부과 8.76~19.48%
2004.12.30	H형강	INI스틸	러시아	2005.12.26 부정판정	
2005.4.29	도자기질타일		중국	2006.5.30 AD관세 부과 - 2.76~29.41%(5년)	
2005.5.16	리튬1차전지		미국, 일본	2005.6.15 관세부과 철회결정	재경부직권조사
2005.9.12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연신가공사	동국무역(주) (주)HK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2006.10.20 AD관세 부과 - 2.60~8.69%(3년)	
2005.12.29	자동가이드휠 편칭기	세호로보트 산업주식회사	일본	2006.11.23 AD관세 부과 - 4.92%(3년)	
2006.1.17	폴리비닐알콜	동양제철화학	미국, 중국, 싱가포르	2006.12.11 AD관세 부과 - 11.11~35.17%(3년)	
2006.5.4	정보용지및 백상지	한국제지, 이앤페이퍼, 한솔제지, 동아제지	중국, 인도네시아	2007.6.1. AD관세 부과 - 2.22~7.72%(3년)	
2006.6.7	알칼리망간 건전지	로케트전기, 백셀	싱가폴, 중국, 일본	2007.4.12. 철회(종결)	
2006.8.28	대두유	CJ, 신동방, 삼양유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2007.7.27. 철회(종결)	
2006.12.1	라이너지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2007.5.17. 예비부정판정 (종결)	
2006.12.20	차아황산소다	한솔케미칼	중국	2008.1.31. AD관세 부과 - 12.11~36.18%(2년)	
2007.3.7	플로트판유리	(주)케이씨씨, 한국유리	중국	2008.4.17. AD관세 부과 - 12.73~36.01%(3년)	
2007.4.9	과산화벤조일	(주)한국케미칼	중국	2008.5.16. AD관세 부과 - 9.72%(3년)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 고
2007.4.20	스테인레스 스틸바	(주)디케이씨에스	일본, 인도, 스페인	2007.9.17. 상향변동재심 - ㄱ형강 부과제외	
2007.7.18	초산에틸	한국알콜산업(주)	중국, 일본, 싱가포르	2008.8.25. AD관세 부과 - 5.81~14.17%(3년)	
2007.8.30	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	코스모화학(주)	중국	2008.8.25. AD관세 부과 - 4.86~23.08% (2008.8.25~11.3.1. 3년)	
2007.9.5	PET필름	(주)코오롱	중국, 인도	2008.10.27. AD관세 부과 - 5.67~25.32%(3년)	
2007.9.19	크라프트지	(주)이엔페이퍼 (주)쌍용제지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2008.10.27. AD관세 부과 - 4.03~10.79%(3년)	
2007.12.10	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	동국무역(주) 성안합섬(주)	중국, 대만	2009.1.21 AD관세 부과 - 2.97~6.26%(3년)	
2008.3.11	파티클보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말레이시아, 태국	2009.4.24. AD관세 부과 - 7.67%(3년)	
2008.4.20	도자기질타일	(주)케이티세라믹	중국	2010.5.18 AD관세 부과 - 2.37~8.69% 가격약속(3년)	
2008.10.14	아디프산	로리아폴리아마이드(주)	미국	2009.3.25 예비판정(부정)	
2009.1.28	스테인레스 스틸바	포스코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일본, 인도, 스페인	2010.2.24. AD관세 부과 - 3.33~15.39 가격약속(3년)	
2009.4.20	염화콜린	(주)코파벤스페셜, (주)코린화학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2010.2.24. AD관세 부과 - 3.33~15.39 가격약속(3년)	
2009.4.20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2010.5.18 AD관세 부과 - 2.37~8.69% 가격약속(3년)	
2009.7.29	차아황산소다	(주)한솔케미칼	중국	2010.8.6 AD관세 부과 - 12.25~36.18%(2년)	
2009.11.27	백상지	한국제지, 흥원제지	중국, 인니	2010.10.20 부정판정	
2009.12.23	프로필렌옥사이드	SKC	일본	2010.6.16. 예비부정판정(종결)	
2010.2.1	합판	한국합판보드협회	말레이시아	2010.12.15 AD관세 부과 - 5.12~38.10%(3년)	
2010.3.3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DKC(주)	일본	2011.4.21 AD관세 부과 - 11.4.21~16.4.20%(5년)	
2010.4.27	플로트판유리	(주)KCC, 한국유리공업(주)	중국	2011.5.24 AD관세 부과 - 12.04~36.01%(3년)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조국	조치내용	비 고
2010.6.18	도자기질타일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중국	2011.7.20 AD관세 부과 - 9.14~29.41%(3년)	
2010.8.31	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	코스모화학(주)	중국	2011.7.20 부정판정	
2010.10.18	파티클보드	한국가구산업협회	태국, 말레이시아	200.11.24 조사불개시결정	
2011.2.23	초산에틸	한국알콜산업(주)	중국, 싱가포르, 일본	2012.3.27 AD관세 부과 - 3.14~14.17%(3년)	
2011.4.22	크라프트지	쌍용제지(주), 케이지피(주)	인니,캐나다, 미국,중국, 러시아	2012.4.10 AD관세 부과 - 4.03~10.79%(3년)	
2011.4.22	PET필름	(주)도레이첨단 소재, (주)코오롱 인더스트리, (주)화성인더 스트리, (주)효성	중국, 인도	2012.5.25 AD관세 부과 - 5.87~25.32%(3년)	
2011.10.21	파티클보드	(사)한국합판 보드협회	태국, 말련	2012.4.12 신청철회	
2011.7.19	폴리에스터장섬 유 부분연신사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성(주)	대만, 중국	2012.7.25 AD관세 부과 - 6.26%(2년)	
2012.7.27	염화콜린	(주)코파벤스페셜, (주)코린화학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2013.8.22 AD관세 부과 - 22.19~27.32%(3년)	
2012.8.22	스테인리스 스틸바	세아특수강(주), 동일제강(주), 동부특수강(주), 대호피엔씨(주)	일본, 인도, 스페인	2013.10. 1 AD관세 부과 - 2.76~15.39%(3년)	
2012.10.8	합판	(사)한국합판 보드협회	중국	2013.10.18 AD관세부과 - 2.42%~27.21%(3년)	
2012.11.16	DTY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성(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2013.12.20 AD관세 부과 - 2.22~8.69%(3년)	
2012.11.22	OPP 필름	삼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주)화승 인더스트리,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2013.12.20 AD관세 부과 - 3.48~25.04%(5년)	
2013.7.31	합판	선창산업(주), 이건산업(주), 성창기업(주)	말레이시아	2014.9.5 AD관세 부과 3.08~38.10%(2년)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 고
2013.9.24	두꺼운PET필름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일본	2014.12.30 AD관세 부과 5.95%(3년)	
2013.11.13	에탄올아민	KPX그린 케미칼(주)	미국, 태국, 말 레이시아, 일본	2014.12.30 AD관세 부과 4.36~21.79%(3년)	
2013.11.22	플로트판유리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중국	2015.1.7 AD관세 부과 12.04~36.08%(3년)	
2013.12.23	공기압전송용 벨브	(주)TPC메카 트로닉스, (주)케이시시정공	일본	2015.8.19 AD관세 부과 11.66~22.77%(5년)	
2014.1.9	도자기질 타일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중국	2015.2.25 AD관세 부과 9.07~29.41%(3년)	
2014.1.9	합판	웨이강 동하이 (신규공급자조사)	중국	2014.10.27 AD 관세율 개정 4.54%(14.2.28~16.10.17)	
2014.1.9	합판	웨이강 웨이추양 (신규공급자조사)	중국	2014.10.27 AD 관세율 개정 4.46%(14.2.28~16.10.17)	
2014.1.9	합판	허저 성화 (신규공급자조사)	중국	2014.10.27 AD 관세율 개정 17.48%(14.2.28~16.10.17)	
2014.1.24	POY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대만, 중국	2014.12.23 부정판정	
2014.4.18	POY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2014.12.23 부정판정	
2014.5.30	H(구조형)형강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중국	2015.7.30 AD관세 부과 28.23~32.72%(5년)	
2014.9.25	초산에틸	한국알콜산업(주)	중국, 싱가포르, 일본	2015.11.19 AD관세 부과 4.64~17.76%(3년)	
2014.9.26	초산에틸	한국알콜산업(주)	인도	2015.11.19 AD관세 부과 8.56~19.84%(3년)	
2014.11.24	PET필름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화승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중국, 인도	2016.1.13 AD관세 부과 7.42~12.92%(3년)	

신청일	품 목	신청인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 고
2015.1.30	침엽수합판	한국합판 보드협회	중국	2016.3.11 AD관세 부과 4.22~7.15%(4년)	
2015.10.6	스테인리스 스틸후판	(주)디케이씨	일본	2016.12.6 AD관세 부과 13.17%(3년)	
2015.11.18	부틸 글리콜에테르	롯데케미칼(주)	미국, 프랑스	2016.12.6 AD관세 부과 20.10~25.00%	
2015.12.8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코스모화학(주)	중국	2016.7.14 신청철회 16.8.17 조사종결 보고	
2016.3.3	합판	한국합판 보드협회	말레이시아	2017.5.8. AD관세 부과 3.96~38.1%	
2016.3.3	합판	한국합판 보드협회	중국	2017.5.8. AD관세 부과 4.57~27.21%	
2016.3.29	스테인리스 스틸바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주), 동일제강(주)	일본, 인도, 스페인	2017.6.2. AD관세 부과 3.56~15.39%	
2016.8.5	인쇄제판용평면 모양사진플레이트	제일씨앤피(주)	중국	조사중	
2016.11.18	페로실리코망간	동부메탈, 심팩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조사중	
2017.2.22	PET 필름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효성, 화승	대만, 태국, UAE	조사중	
2017.6.8	도공(coated) 인쇄용지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	중국, 일본, 핀란드	조사중	
2017.6.26	아연도금철선	대아선재, 진흥 철강, 한국선재, 한일스틸	중국	조사중	
2017.6.28	에탄올아민	KPX그린 케미칼(주)	미국, 말련, 태 국, 일본	조사중	
2017.6.29	두꺼운 PET 필름	코오롱 인더스트리(주)	일본	조사중	







3

세이프가드제도  
운용





## 3. 세이프가드제도 운용

### 3-1. 운용내역 총괄

구분		품목수	품 목	비 고
신청철회 및 기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라믹압전착화소자</li> <li>압연기용롤</li> <li>우모분</li> <li>코코아분유</li> <li>볼베어링</li> <li>식물성매트류</li> <li>미역</li> <li>대두유</li> <li>마늘(연장재검토)</li> <li>돼지고기</li> </ul>	
판정	관세율 인상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돼지고기 통조림</li> <li>L-LDPE 필름</li> <li>목할저</li> <li>활석분</li> <li>당면</li> <li>컴퓨터 주기판</li> <li>이썬시게 및 기타 목제품</li> <li>우산 및 우산틀</li> <li>대두유</li> <li>일반용자전거 및 동 부품</li> <li>마늘</li> <li>마늘(중간재검토)</li> </ul>	인상건의 포함
	수량제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우젓</li> <li>고추가공제품</li> <li>유제품</li> <li>유제품(중간재검토)</li> </ul>	
	행정지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고라 토끼털</li> <li>집성운모 절연제품</li> <li>스테아린산</li> <li>초산에틸</li> <li>팝콘옥수수</li> <li>대두박</li> </ul>	국산품 우선구매, 수급자율 협의 등
	피해부정 판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냉동옥돔</li> <li>대두박(재검토)</li> </ul>	
조사 중		-		
계		34		

### 3-2. 연도별 조사 신청 및 조치 현황

구분	신청 건수	소계	긍정판정			소계	부정판정		
			관세율 인상	수량 제한	행정 지도		신청철회 기각	피해 부정	
GATT	1987	1				1	1		
	1988	2	2		1	1			
	1989	7	6	2	1	3	1	1	
	1990	5	3	3			2	2	
	1991	4	4	3		1			
	1992	3					3	3	
	1993								
	1994	3	1			1	2	1	1
	소계	25	16	8	2	6	9	8	1
WTO	1995	1	1	1					
	1996	3	2	1	1		1	1	
	1997								
	1998	1	1		1				
	1999	1	1	1					
	2000								
	2001	1	1	1					
	2002	1					1	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1	1	
	2014								
2015									
2016									
2017.6.									
소계	9	6	4	2	0	3	2	1	
계	34	22	12	4	6	12	10	2	

내부

## 3-3. 조치종료 내역

연 번	품 목	대상국	조 치 내 용	비 고
1	앙고라 토끼털	중국, 칠레	국산 토끼털 우선구매	1990.1~1990.12.31
2	새우젓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니	수입추천제	1989.4~1996.12.31
3	돼지고기 통조림	미국, 네덜란드	관세율 인상 (30 → 50%)	1990.5~1993.6.30
4	집성운모 절연제품	일본, 벨기에	국산품 우선구매	1990.2~1992.12.31
5	스테아린산	말련, 인니	수입자제 권고	1990.2~1992.12.31
6	초산에틸	미국, 영국	수입자제 권고	1990.2~1992.12.31
7	L-LDPE필름	미국, 대만	관세율 인상 (13 → 25%)	1990.5~1992.9.30
8	목할저	중국	관세율 인상 (13 → 53%)	1990.12~1994.12.31
9	활석분	중국, 미국	관세율 인상 (10 → 30%)	1991.4~1993.6.30
10	팝콘옥수수	미국	국산품 우선구매	1991.7~1993.1.28
11	당 면	중국	관세율 인상 (13 → 60%)	1991.9~1994.12.31
12	컴퓨터주기판	대만, 홍콩	관세율 인상 (11 → 25%)	1992.5~1994.12.31
13	이쑤시개 및 기타 목제품	중국	관세율 인상: 단판(9 → 51%) 바스틱(51 → 77%)	1992.6~1994.12.31
14	우산및우산틀	대만, 중국	관세율 인상	1992.6~1994.12.31
15	대두박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수급 자율협의 유도	1994.9~1996.12.31
16	대두유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관세율 인상 건의 (8 → 25%)	시행포기(한미협상)
17	일반용자전거 및 동 부품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태리 등 12	긴급관세 인상 건의(21.7%)에 대해 재경부 조정관세 부과	1996.2~1998.12.31
18	고추가공제품	홍콩, 스페인	수입수량제한 (주무장관수입추천)	1989.9~1999.12.31
19	유제품	EU, 호주, 뉴질랜드	수입수량제한 (쿼터)	1997.3~2000. 5.20
20	마늘	중국, 미국, 일본 등	관세율 쿼터*: 간마늘(60% 인상) 냉동마늘 및 초산 조제마늘(285% 인상) * 쿼터설정 저율관세(30%) 적용	2000.6.1~2002.12.31

### 3-4. 조사건별 조치내역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제소국	조 치 내 용	비 고
1987.11.24	세라믹압전 착화소자	서형산업(주)	일본	1988.10.20 신청철회	
1988. 3.31	앙고라 토끼털	한국양모 협동조합	중국, 칠레	수요업체에서 89년산 국산토끼털 우선구매 -1회 연례검토	1990.12.31 종료
1988. 7. 1	새 우 젖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중국, 싱가폴, 필리핀, 인니	1991년말까지 수산청장 수입추천제 실시 -5회 연례검토를 통해 1996년말까지 연장	1996.12.31 종료
1989. 5.18	고추가공 제품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홍콩, 스페인	1992년말까지 보사부장관 수입추천제 실시 -5회 연례검토를 통해 1999년말까지 연장	1999.12.31 종료
1989. 7.24	돼지고기 통조림	한국육가공 협회	미국, 네덜란드	관세율인상(30→50%) -3회 연례검토를 통해 관세율조정(50→40%) 및 1993.6.30까지 연장	1993. 6.30 종료
1989. 8. 8	집성운모 절연제품	대한마이카(주)	일본, 벨기에	국산품우선구매 권고 -2회 연례검토를 통해 1992년말까지 연장	1992.12.31 종료
1989. 8.26	스테아린산	비누세제공업 협동조합	말련, 인니	수입자제 권고(내수의13%내) -2회 연례검토를 통해 1992년말까지 연장	1992.12.31 종료
1989. 8.31	초산에틸	한국알콜 산업(주)	미국, 영국	수입자제 권고(내수의 20%내) -2회 연례검토를 통해 1992년말까지 연장	1992.12.31 종료
1989. 9.27	압연기용롤	강원산업(주)	일본, 미국	1989.12. 7 신청철회	
1989.11. 1	L-LDPE 필름	(주)크린랩	미국, 대만	1990.10. 1부터 2년간 긴급 관세 적용(13→25%) -1회 연례검토	1992. 9.30 종료
1990. 2.20	우 모 분	한국단미 사료협회	미국, 캐나다	1990. 6. 8 신청철회	
1990. 3.6	코코아분유	한국유가공 협회	네덜란드, 싱가폴	1990.10.15 신청철회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제소국	조 치 내 용	비 고
1990. 5.11	목 할 지	한국목할 저류공업 협동조합	중국	1991.4.10부터 2년간 조정관세적용(13→53%) -2회 연례검토	1990.12.31 종료
1990. 8.25	활 석 분	대한광업회	중국, 미국	관세율인상(10→30%) -2회 연례검토	1993. 6.30 종료
1990.11.16	팝콘 옥수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미국	국산품 우선구매 및 1992년산에 대한 차액 보상 실시	차액보상후 종료 (1993.1.28)
1991. 3.22	당 면	한국면류공업 협동조합	미 국	1992.1.1부터 2년간 조정관세적용(13→60%) -3회 연례검토를 통해 94년말까지 연장	1999.12.31 종료
1991.10.28	컴퓨터주기판	한국전자공업 진흥회	대만, 홍콩	1993.12.31까지 조정관세 적용(11→25%) -2회 연례검토를 통해 관세율조정(25→15~20%) 및 94년말까지 연장	1994.12.31 종료
1991.12.19	이쑤시개 및 기타 목제품	한국목환봉 협회	중국	1993.12.31까지 조정관세 적용(단판은 9→51%, 바스틱은 51→77%, 이쑤시개·환봉은 51%) -1회 연례검토를 통해단판· 바스틱은 종료, 이쑤시개· 환봉은 50%로 조정	1992.12.31 종료
1991.12.23	우산 및우산틀	한국양산공업 협동조합	대만, 중국	3년간 관세율 인상 (11→72%) -2회 연례검토	1994.12.31 종료
1992. 1.11	볼베어링	한국정밀(주)	태국	1992.1.18 신청철회	
1992. 7.21	식물성매트류	담양죽세공예 협동조합	대만, 중국	1992.11.19 신청철회	
1992.11. 7	미역	완도군수협	태국	농림수산부의 생산자· 수요자간 수급자율 협의 유도	1992. 9.30 종료
1994. 3.17	대두박	한국대두 가공협회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의 생산자· 수요자간 수급자율 협의 유도	1996.12.31 종료
1994. 3.17	대두유	한국대두 가공협회	브라질, 말련, 인니	94.4.12 신청기각	
1994.11.22	냉동옥돔	서귀포수협 외 3	중국, 베트남	1995.4.14 피해부정판정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제소국	조 치 내 용	비 고
1995. 8.1	대두유	한국대두 가공협회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1996. 1.26 관세율인상 건의 (8→25.08%이내) -한미협상을 근거로 시행포기	
1996. 5. 2	유제품 (모조분유)	축협중앙회	EU(화란, 프랑스, 벨기에 등 13), 호주, 뉴질랜드	1997. 3. 7 수량제한 -1차년도 20,521톤,매년 5.7% 증가 - 4년간	
1996. 7.22	일반용 자전거및 등 부품	한국자전거 공업협회	중국, 대만, 싱가폴, 일본, 이태리 등 12	1997.2.27 긴급관세부과건의 - 1차년도 21.7% 매년 2%인하 4년간 - 자전거 및 차체·포오크 1997.12.31 조정관세 부과 - 15~16% - 1998.1.1부터 1년	1998.12.31 종료
1996. 8.26	대두박 (재검토)	한국대두 가공협회	중국, 인도, 미국	1996.11.15 피해부정판정	
1998.10.30	유제품 (모조분유) (재검토)	중간 직권조사		1999. 2.12 중간재검토 결과 기존 조치 유지 1997.3.7~2000.5.20 WTO패널 패소	2000. 5.20 종료
1999. 9.30	마 늘	농협 중앙회	중국, 미국, 일본 등	2000. 5.31 -관세율 인상(60~285%, 2000.6.1~03.5.31) -농림부장관의 구조조정 촉진 2000. 8. 2 -조치내용 변경2만톤 가량의 T/Q 도입 및 기간단축 (2000. 6.1~2002.12.31)	
2001. 2.10	마 늘	중간 직권조사	중국, 미국, 일본 등	2001. 6. 8 -현행 관세율 유지 (2000. 6. 1~2002.12.31) -농림부장관 구조조정 촉진 -한·중 합의결과 반영을 위한 미소진 물량문제 발생시를 대비,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소요 재정 확보	
2002. 6.28	마 늘 (연장 재검토)	농협중앙회	중국, 미국, 일본 등	2002. 7.29 신청기각 -관계부처에 마늘산업 종합대책에 농민단체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확실한 이행을 권고	
2013. 3.21	돼지고기	대한 한돈협회	미국, EU 등 전세계	2013.5.7. 신청철회 - (사)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계절적 요인에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철회	







# 4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운용





##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운용

### 4-1. 운용실적 총괄

(단위: 건)

구 분	제재조치				무혐의 처리	관련기관 이첩	조사종결 등 기타	조사 진행중	총계
	무역업정지	시정조치	과징금	시정 & 과징금					
불공정 무역행위	7	80	8	20	101	40	92	3	351

### 4-2. 연도별 신청 및 조치현황

(단위: 건)

연도 유형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6	계
	지식 재산권	3	50	25	14	8	1	2	1	1	2	-	-	3	3	2	4	5	4	6	4	3	3	6	10	5	8	7	7	9	12	2
상표권	2	36	23	12	8	1	2	1	-	1	-	-	1	1	-	1	-	-	4	-	1	-	1	3	1	3	4	1	-	2	1	110
특허권	-	2	-	-	-	-	-	-	-	1	-	-	-	1	1	2	4	3	1	4	1	1	2	5	3	5	1	4	9	8	1	59
실용 신안권	-	-	-	-	-	-	-	-	-	-	-	-	-	-	-	-	-	-	-	-	-	1	1	1	1	-	-	-	-	-	-	4
디자인권 표의장권	1	2	2	-	-	-	-	-	1	-	-	-	-	-	1	-	1	1	-	1	1	2	1	-	-	-	2	-	1	-	17	
특허권	-	10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영업비밀	-	-	-	-	-	-	-	-	-	-	-	-	2	1	-	1	1	-	-	-	-	-	-	-	-	-	2	-	-	1	-	8
원산지 표시위반	1	10	9	5	10	-	-	-	4	2	-	1	3	3	6	4	-	1	-	-	1	2	3	2	3	1	-	3	-	-	74	
허의과장 표시	-	-	-	-	-	-	-	-	-	-	-	-	-	-	-	-	-	-	-	-	-	1	-	-	-	-	1	-	-	-	-	2
수출입 질서저해	-	5	27	1	5	3	-	-	-	-	2	8	4	3	5	1	-	-	-	1	-	-	-	-	-	-	-	-	-	-	-	65
계(건)	4	65	61	20	23	4	2	1	5	4	2	9	10	9	13	9	5	5	6	5	4	6	9	12	8	9	8	10	9	12	2	351

### 4-3. 불공정무역행위 처리내용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1987.7.31	가방	주미대사관	(주)클래식	상표권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1987.9.12 (무역업정지)
1987.8.3	핸드백(Louis vuitton)	주미대사관	경동기업(주)	상표권침해	1987.9.12 (무역업정지)
1987.8.6	줄자	직권조사	(주)한국도량	의장권침해	1987.12.29 (무혐의)
1987.9.9	카세트테이프	주미대사관	(주)선경	원산지표시위반	1987.11.5 (무혐의)
1988.1.8	운동화(Foot-Joy)	관세청	(주)고려무역	상표권침해	1988.9.15 (무혐의)
1988.2.9	신발	KOTRA	우진상역	상표권침해	1988.9.15 (특허청이첩)
1988.11.30	벨트(Louis vuitton)	특허청	(주)KB상사	상표권침해	1989.5.17 (무역업정지)
1988.11.30	컴퓨터통신장치(IBM)	특허청	(주)콤텍시스템	상표권침해	1989.6.26 (시정권고)
1988.11.30	IBM PC/XT(주기판)	특허청	동양나이론(주)	저작권침해	1989.6.26 (시정권고)
1988.11.30	IBM PC/AT(주기판)	특허청	(주)금성사	저작권침해	1989.8.7 (무혐의)
1988.11.30	PC	특허청	(주)현대종합상사	저작권침해	1989.6.27 (시정권고)
1988.11.30	PC	상역국	현대전자산업(주)	저작권침해	1990.7.13 (무혐의)
1988.11.30	신발	특허청	(주)삼호	의장권침해	1989.6.26 (시정권고)
1988.11.30	신발	통상협력관실	D.K.무역	상표권침해	1990.9.28 (무혐의)
1988.11.30	가방(Louis vuitton)	특허청	(주)고려무역	상표권침해	1990.6.26 (시정권고)
1988.11.30	핸드백(Louis vuitton)	특허청	(주)선경	상표권침해	1990.6.26 (시정권고)
1988.11.30	핸드백(Louis vuitton)	특허청	레녹스무역상사	상표권침해	1989.6.15 (무혐의)
1988.11.30	핸드백(MCM)	특허청	(주)I.M.A.	상표권침해	1989.10 (시정권고)
1988.11.30	핸드백	특허청	(주)카스톰실업	원산지허위표시	1989.8. (시정권고)
1988.11.30	가방	특허청	(주)선경	원산지허위표시	1990.8.30 (무혐의)
1988.11.30	장난감	특허청	영한실업	특허권침해	1989.6.27 (시정권고)
1988.11.30	장난감	특허청	(주)원광통상	안전도위반	1990.7.20 (무혐의)
1988.11.30	장난감	상역국	오리엔트머천다이징	안전도위반	1990.7.16 (무혐의)
1988.11.30	전화기(3건)	특허청	현대종합상사	상표권침해	1990.9.14 (무혐의)
1988.11.30	전화기	특허청	벨금속공업(주)	상표권침해	1990.9.14 (무혐의)
1988.11.30	전화기(Cobra)	특허청	대윤전자	상표권침해	1990.7 (무혐의)
1988.11.30	피아노(3건)	특허청	대우(주)	원산지표시위반	1990.8.14 (무혐의)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1988.11.30	직물	특허청	삼정에너지	원산지표시위반	1990.7.16 (무혐의)
1988.11.30	의류	특허청	삼서교역(주)	원산지미표시	1990.7.16 (무역업정지)
1988.11.30	의류	특허청	동부산업(주)	상표권침해	1990.7.16. (무혐의)
1988.11.30	모자	특허청	(주)두산상사	상표권침해	1989.6.26 (시정권고)
1988.11.30	가족자켓	특허청	(주)화양상사	원산지표시위반	1990.7.20 (무혐의)
1988.11.30	장신구	특허청	(주)정무역	원산지표시위반	1990.7.20 (무혐의)
1988.11.30	비행기연료측정기	특허청	두영물산(주)	원산지표시위반	1990.7.20 (무혐의)
1988.11.30	손톱깎이	특허청	지이아이양행	특허권침해	1990.6.27 (무혐의)
1988.12.12	SALAD SNACK	(주)농심	금양무역상사(주)	공정한 상관습위반	1989.5.17 (무역업정지)
1989.1.30	테이블 (Louis vuitton)	주미대사관	곽문호	상표권침해	1989.3.29 (특허청이첩)
1989.1.30	테이블 (Louis vuitton)	주미대사관	오을순	상표권침해	1989.3.29 (조사불능, 피신청인 소재불명)
1989.1.30	테이블 (Louis vuitton)	주미대사관	장동곤	상표권침해	1989.3.29 (조사불능, 피신청인 소재불명)
1989.1.30	테이블 (Louis vuitton)	주미대사관	권정옥	상표권침해	1989.3.29 (조사불능, 피신청인 소재불명)
1989.1.30	테이블	주미대사관	소성춘	원산지표시위반	1989.3.29 (조사불능, 피신청인 소재불명)
1989.1.30	구찌	주미대사관	김형석	상표권침해	1989.3.29 (시정권고)
1989.1.30	구찌	주미대사관	한금숙	상표권침해	1989.3.29 (시정권고)
1989.1.30	가방	주미대사관	김해영	상표권침해	1989.3.29 (조사불능, 피신청인 소재불명)
1989.1.30	가방	주미대사관	안숙화	상표권침해	1989.3.29 (조사불능, 피신청인 소재불명)
1989.1.30	핸드백	주미대사관	양국모	상표권침해	1989.3.29 (조사불능, 피신청인 소재불명)
1989.1.30	장갑 (Louis vuitton)	주미대사관	이용	상표권침해	1989.3.29 (조사불능, 피신청인 소재불명)
1989.1.30	리복	주미대사관	한종숙	상표권침해	1989.3.29 (시정권고)
1989.2.4	벽걸이	주미대사관	삼미실업	비자위반	1989.3.23 (상역국이첩)
1989.2.4	자켓	주미대사관	서림기업	비자위반	1989.3.23 (상역국이첩)
1989.2.4	가방	주미대사관	현대종합상사	비자위반	1989.3.23 (상역국이첩)
1989.2.4	코트	통상협력관실	진도패션(주)	원산지표시위반	1989.6.27 (시정권고)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1989.3.21	라이터 (American express)	상역국	(주)코스타	상표권침해	1989.6 (시정권고)
1989.3.21	라이터(Elvis)	상역국	해성공업사	상표권침해	1989.6 (시정권고)
1989.3.21	완구	상역국	(주)크라운완구	의장권침해	1989.8 (시정권고)
1989.3.21	가방(Louis vuitton)	상역국	평화진흥상사	상표권침해	1989.8 (시정권고)
1989.3.21	장난감(Goodyear)	상역국	서전기업(주)	상표권침해	1989.8 (무혐의)
1989.3.21	의류(Transam)	상역국	(주)삼전교역	상표권침해	1989.10 (시정권고)
1989.5.10	가방(Louis vuitton)	상역국	효성물산(주)	상표권침해	1989.10 (무혐의)
1989.5.10	코트	상역국	(주)삼선양행	원산지표시위반	1989.10 (무혐의)
1989.9.19	머리장신구	소비자제보	무등실업	의장권침해	1990.2.27 (시정권고)
1989.10.16	전구	상역국	(주)한국토미	상표권침해	1990.2.27 (시정권고)
1989.12.14	의류	상역국	장미통상	공정한 상관습 위반	1990.8.23 (상역국이첩)
1989.12.14	의류	상역국	한일합섬(주)	원산지표시위반	1990.2 (무혐의)
1989.12.14	의류	상역국	(주)진나물산	원산지미표시	1990.8.28 (조사불능)
1989.12.14	장신구	상역국	광신통상(주)	원산지표시위반	1990.3 (무혐의)
1989.12.14	장신구	상역국	신라공예(주)	원산지미표시	1990.9.22 (시정권고)
1989.12.14	트랜스포오머	상역국	(주)임산업	원산지표시위반	1990.4 (무혐의)
1989.12.14	안경테	상역국	뉴스타상사	원산지표시위반	1990.7.14 (무혐의)
1989.12.14	장난감	상역국	오로라무역상사	원산지표시위반	1990.9.22 (시정권고)
1989.12.14	가죽지갑	상역국	호산상사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1990.1 (무혐의)
1989.12.14	가방	상역국	루방사	상표권침해	1990.7.30 (특허청이첩)
1989.12.29	직물(Reebok)	상역국	(주)선경	상표권침해	1990.10.16 (시정권고)
1989.12.29	지갑	상역국	대보교역	상표권침해	1990.11.13 (시정권고)
1989.12.29	운동화(Reebok)	상역국	(주)고려무역	상표권침해	1990.10.16 (시정권고)
1990.2.27	운동화(Reebok)	통상협력관실	효성물산(주)	상표권침해	1990.10 (조사불능)
1990.7.12	운동화(Reebok)	상역국	D.K.무역	상표권침해	1990.11.13 (시정권고)
1990.7.12	신발(Reebok)	상역국	Keoung Do Ind. Co.	상표권침해	1990.9.14 (조사불능)
1990.7.12	신발	상역국	East West ExPress Co.	상표권침해	1990.9.14 (조사불능)
1990.7.12	신발	통상협력관실	(주)쌍용	상표권침해	1990.10.18 (무혐의)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1990.7.12	핸드백	상역국	East West VanLines	상표권침해	1990.7.13 (조사불능)
1990.7.12	천조각	상역국	(주)로알무역상사	상표권침해	1990.10 (무혐의)
1990.7.12	천조각	상역국	Jae Man Co., Ltd.	상표권침해	1990.10 (조사불능)
1990.7.12	원격조정장난감 (Goodyear)	상역국	Kran Kcombue	상표권침해	1990.7.14 (조사불능)
1990.7.12	핸드백	상역국	Seorin TradingCo., Ltd.	상표권침해	1990.9.14 (조사불능)
1990.7.12	비디오게임판	상역국	고봉실업(주)	저작권침해	1990.7.28 (조사불능)
1990.7.12	컴팩트디스크	상역국	(주)SKC	저작권침해	1990.10 (무혐의)
1990.7.12	기타	상역국	(주)삼익악기	원산지표시위반	1990.11.13 (시정권고)
1990.7.12	벨브	상역국	(주)선경	원산지허위표시	1990.11.13 (시정권고)
1990.7.12	인삼차	통상협력관실	한국인삼진흥(주)	원산지표시위반	1990.10.18 (무혐의)
1990.7.12	가방	상역국	(주)베델	상품표시위반	1990.10 (무혐의)
1990.8.3	장화	상역국	(주)삼화	원산지허위표시	1990.11.13 (시정권고)
1991.1.30	신발	상역국	제일무역상사	상표권침해	1991.4 (무혐의)
1991.1.30	신발	상역국	(주)영풍산업	상표권침해	1991.9.11(무혐의)
1991.1.30	운동화	상역국	Jae-Sung Tradeand Express	상표권침해	1991.3 (조사불능)
1991.1.30	라이터	상역국	불티나종합상사	상표권침해	1991.4 (무혐의)
1991.1.30	매니큐어세트	상역국	대성금속공업(주)	상표권침해	1991.9.11 (무혐의)
1991.1.30	매니큐어세트	상역국	디에취앤써스무역	상표권침해	1991.9.11 (무혐의)
1991.1.30	카스테레오	상역국	한국Roadstar Car Stereo	원산지허위표시	1991.3 (조사불능)
1991.1.30	카스테레오	상역국	(주)대경	원산지미표시	1991.4 (무혐의)
1991.1.30	오렌지쥬스	상역국	롯데칠성음료(주)	원산지미표시	1991.4 (무혐의)
1991.1.30	장신구(귀걸이)	상역국	Imperial Jewelry	원산지표시위반	1991.9.11 (무혐의)
1991.1.30	가방	상역국	(주)태진상역	공정한 상관습 위반	1991.4 (무혐의)
1991.1.30	가방	상역국	D.H.M.	공정한 상관습 위반	1991.4 (무혐의)
1991.1.30	완구	상역국	삼우공업사	안전도위반	1991.9.11 (무혐의)
1991.7.21	의료용백	통상협력관실	녹십자의료공업(주)	원산지허위표시	1991.12.23 (시정권고)
1991.7.23	목재가구	통상협력관실	원진물산(주)	원산지허위표시	1991.12.23 (시정권고)
1991.7.23	변환기	통상협력관실	(주)보우코프레이션	원산지허위표시	1991.12.23 (시정권고)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1991.12.24	섬유직물	상역국	우애산업(주)	미선적	1992.5.19 (상역국이첩)
1991.12.24	폴리에스테일 직물	상역국	삼일섬유	불량품선적	1992.10.5 (조사불능)
1992.1.28	가죽제품	상역국	가우실업	불량품선적	1992.5.19 (조사불능)
1992.3.28	아크릴공예품	상역국	금양무역(주)	Agent계약 위반	1992.5.19 (무혐의)
1992.4.15	타포린	상역국	한국타포린(주)	Agent계약 위반	1992.5.19 (무혐의)
1992.8.24	지갑, 핸드백	임재호	(주)제일무역상사	상표권침해	1993.8.4 (시정권고)
1993.4.28	신발	관세청	(주)한미무역공사	상표권침해	1993.7.2 (무혐의)
1993.11.19	신발	사상세관	한라산업	의장권침해 상표권침해	1995.12.2 (조사신청철회)
1994.11.1	캔디류	성남경찰서	미대무역상사(주)	상표권침해	1995.5.11(무역업정지)
1995.10.13	넥타이	서울세관	상호무역	의장권침해	1995.12.20 (시정권고)
1995.12.31	수공구	(주)세신	한일종합상사	원산지허위표시	1996.2.29 (과징금건의)
1995.12.31	수공구	(주)세신	케이케이상사	원산지허위표시	1996.2.29 (과징금건의)
1995.12.31	수공구	(주)세신	일기무역(주)	원산지허위표시	1996.2.29 (무역업정지)
1995.12.31	수공구	(주)세신	ELKEY CO.	원산지허위표시	1996.2.29 (과징금건의)
1996.4.3	카세트테이프용시트	(주)성신전자	동국전자(주)	특허권침해	1997.5.9 (조사신청철회)
1996.7.10	굴삭기용롤러	진성산업(주)	정우통상(주), 메이컴(주)	상표권침해	1997.12.5 (과징금건의)
1996.9.23	문구류	부평세관	대방기업	원산지미표시	1997.2.27 (시정권고)
1996.9.23	문구류	부평세관	유엘데코	원산지미표시	1997.2.27 (시정권고)
1997.4.7	방직의실내차양	대한상사중재원	신성교역	수입대금 결제 미이행	1997.10.20 (조사불개시)
-					
1997.4.3	전구	대한상사중재원	(주)피닉스	선수금 수취후 선적이행 지체	1998.12.29 (시정조치)
1997.8.12					
1998.4.20	직물	(주)창진	(주)대일아이엔서	선하증권 허위발행	1998.12.31(조사불개시)
1998.5.28					
1998.5.7	중고자동차	(주)근도	(주)케이비모터스	중고차 차대번호 변조수출	1998.6.30 (조사불능, 피신청인 폐업)
1998.5.29					
1998.5.16	전구	가나 snappighana	(주)피닉스	선수금 수취후 선적 불이행	1998.12.29 (시정조치)
1998.8.15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1998.5.20 -	식물원단	(주)대림	(주)삼양사	수입식물원단에 대한크래임 제기후 보상요구 관련업체 이의제기	1998.10.28 (조사불개시)
1998.7.24 1998.8.25	사진첩	독일Rheita Krautkramer	알핀포토스	사진첩 대신 신문휴지 선적	1998.9.28 (조사불능, 피신청인 폐업)
1998.8.18 1998.9.16	타이어 금형	(주)J·W	신우금형	해외거래선 침해	1999.3.8 (조사신청철회)
1998.10.22 1998.10.31	일회용라이터	한국라이타 공업협동조합	(주)미강산업 등 3개업체	원산지허위표시	1999.2.12 (제도개선)
1998.12.23 1999.3.29	폴리카보네이트 (화학제품)	충청은행	(주)두산상사	자기계열사와 공모	1999.9.27 (과징금건외)
1998.12.28 1999.1.6	중고오토바이	Judai Int (나이지리아 외 3개국)	탐상사	대금 수취후 선적 불이행	1999.3.22 (조사불능, 피신청인 폐업)
1999.3.3 -	태권도복	한국태권도 용품 제조연합회	국제스포츠상사	원산지표시위반	1999.3.11 (조사신청철회)
1999.4.14 1999.4.20	냉·온수기	Hollywood (필리핀)	삼보(주)	대금 수취후 선적 불이행	1999.11.29 (조사신청철회)
1999.5.4 1999.8.19	치과용품 포인트	Precise Dental Ltd.	(주)슈텐교역 메타치재산업사	원산지표시위반	1999.8.17 (무혐의)
1999.5.8 1999.5.17	커피추출기	(주)우도상역	(주)고원종합유통	원산지표시위반	1999.9.4 (무혐의)
1999.6.17 1999.6.22	Spandex	Benteks (터키)	경기코포레이션	대금 선취후 선적 불이행	1999.7.26 (조사신청철회)
1999.6.30 1999.7.2	쇠고기	Moonfort Korea Beef	(주)한국식육유통	상표권침해	1999.8.19 (무효확인 심판으로 조사중지)
1999.7.23 1999.7.28	직 물	한도실업	PIKO산업(주)	선하증권 위조	1999.11.8 (검찰조사로 조사중지)
1999.11.27 -	기 계 (PE-FOAM)	스페인 Bandesur	중보화학(주)	수출대금 선취후 선적 미이행	2000.12.29 (무혐의)
1999.12.4 1999.12.6	타이어 금형	(주)J·W	씨제이컴파니	영업비밀자료 무단활용	2000.3.8 (무혐의)
1999.12.6 -	흡습제	(주)세남소재	(주)다진	영업비밀자료 무단활용	1999.12.20 (종결, 자료보완불응)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00.3.24	요실금치료기구	팜콘코리아	보도코리아	상표권침해 원산지 허위표시	2001.9.26 (무혐의)
2000.3.28					2001.2.14 (시정권고)
2000.4.10	흡습제	(주)새남소재	(주)다진	특허권침해 영업비밀침해	2000.6.28
2000.4.19					(무혐의)
2000.5.23	신호용기기 (Signal Strobo)	진명전자	한승전광	원산지표시 위반	2000.6.28
2000.5.29					(시정권고)
2000.6.7	일회용가스 라이타	한양전공	남성성냥, 원앤원 프린스광학	특허권침해	2000.11.24
2000.6.9					(종결, 신청인 폐업)
2000.6.7	공업용 연필	대한상사 중재원	케이피엘통상	수입대금 결제 미이행	2000.12.22
2000.6.13					(종결, 대금송금)
2000.6.7	연필, 지우개 등 문방구	대한상사 중재원	케이피엘통상	수입대금 결제 미이행	2000.11.17
2000.6.13					(종결, 대금송금)
2000.6.7	V-belt	대한상사 중재원	가나코퍼레이션	수입대금 결제 미이행	2000.9.16
2000.6.13					(종결, 대금송금)
2000.8.25	베어링	한국베어링공업 협회	광림실업, 서울무역	원산지미표시	2001.3.5
2000.8.29					(종결, 자료보완불응)
2000.9.21	구동장치	골드라인테크	버커트컨트로 매틱코리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2000.12.29
2000.9.29					(시정권고)
2001.1.13	손전등	(주)영진라이트	(주)영라이트, 세영	의장권침해	2001.8.22
2001.2.24					(시정조치)
2001.2.1	망치, 곡괭이	부성공구	삼화사, 건흥무역, 보경사	원산지 허위표시	2001.6.8
2001.2.5					(시정권고)
2001.3.6	약세서리	대한상사 중재원	풍산무역	선수금 수취후 선적 불이행	2001.5.16
2001.3.6					(종결, 피신청인 소재불명)
2001.2.1	Polyester 직물	MIK KFT (Hungary)	도선무역	불량품 수출 및 수량부족	2001.9.14
2001.2.5					(종결, 합의)
2001.3.6	Spandex 직물	MIK KFT (Hungary)	KC plus Corp.	불량품 수출	2001.8.16
2001.3.6					(종결, 자료제출불응)
2001.6.18	A/W/P 직물원단	ABEL Corp.	(주)대진섬유	계약과 다른 물품 선적	2001.10.5
2001.6.19					(종결, 증거자료미비)
2001.6.23	안경테	수입과	나래통상	원산지 오인표시	2001.9.19
2001.7.10					(무혐의)
2001.7.12	가방	영라인	태형무역, 송화무역	원산지미표시	2001.10.17
2001.7.18					(종결, 피신청인 폐업)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파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01.7.21	라미네이팅 필름	주 타이베이 대표부	(주)코엘	선수금 수취후 선적 불이행	2001.12.28 (종결, 파신청인 폐업)
2001.7.25					
2001.11.2	컴퓨터 메인보드	지계	(주)빅빔	원산지 허위표시	2002.2.9 (시정조치)
2001.11.9					
2001.12.11	여성속옷 (brassiere)	소비자 제보	(주)인클라인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2002.3.7 (시정조치)
2001.12.21					
2001.12.4	휴대용 손전등	맥 인스트 루먼트	에이텍, 세진전자	특허권침해 상표권침해	2003.7.16 (조사신청철회)
2001.12.26					
2001.12.15	마사 및 마직물	수출과 (EU집행위 조사요청)	(주)남원무역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2002.3.28 (과징금건의)/ (시정, 과징금건의)
2002.1.9					
2002.1.19	만보계	코리아스포츠	(주)아이심스인터 내셔널, (주)그레이 스인터내셔널	원산지허위표시	2002.6.27 (시정조치)
2002.2.4					
2002.2.1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빛소프트	(주)비엔티, 뉴잉튼 인터랙티브	상표권침해	2002.6.27 (시정조치)
2002.3.2					
2002.3.6	H-BEAM	(주)동명종합 산업개발	(주)동진철강	원산지표시손상	2002.4.4 (충남도청이첩)
-					
2002.3.27	아마사	수출과 (이태리당국)	(주)우신트레이딩	원산지증명서허위발급	2002.10.24 (시정, 과징금건의)
2002.4.23					
2002.4.1	Thrust ball bearing	한국베어링 공업협회	성진주공	원산지표시	2002.4.24 (경기도청이첩)
-					
2002.4.11	휴대용 손전등	맥 인스트 루먼트	오케이산업	특허권침해 상표권침해	2003.7.16 (조사신청철회)
2002.5.13					
2002.7.15	살충제 및 살서제	국보제약	태극무역, 한세약품, 청신제약	영업비밀침해	2003.1.22 (시정, 과징금건의)
2002.8.10					
2002.7.19	라이터	라이타공업 협동조합	(주)대안무역	원산지허위표시	2002.8.17 (조사불개시)
-					
2002.10.2	두부, 두유제조기	(주)이온맥	(주)대진팬코리아, (주)J통상, (주)SK글로벌	특허권침해	2002.12.5 (시정, 과징금건의)
2002.10.17					
2003.2.5	건강매트	나일전자	(주)일월산업 외 3개업체	특허권침해	2003.11.19 (무혐의)
2003.2.19					
2003.2.25	휴대용 목걸이줄	해룡상사	포스콤 외 4개업체	특허권침해	2005.2.2 (무혐의)
2003.3.19					
2003.4.7	욕매트	나일전자	한빛무역 외 3개업체	특허권침해	2003.11.19 (시정권고)
2003.4.23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03.6.16 -	가방 등 피혁제품	바우통상	함영신	영업비밀침해	2003.6.30 (조사신청철회)
2003.8.4 2003.9.10	윈터치텐트 및 텐트가방	(주)솔베이 아엔씨	(주)이씨산업 외 7개업체	특허권침해	2005.2.2 (무혐의)
2004.3.4 -	반도체도금 세척장비	MECO (네덜란드)	(주)젯텍	특허권침해	2004.4.7 (조사불개시)
2004.4.22 2004.6.30	엔진발전기	HONDA (일본)	거농기계(주), 유한회사 KNC	의장권침해	2004.12.15 (시정조치)
2004.8.27 -	냉동참치	김대원	사조씨에스(주)	원산지표시위반	2004.9.20 (조사신청철회)
2004.9.6 -	플라즈마화학 기상증착장치	주성엔지 니어링(주)	에스엘시디(주) 삼성전자(주) 삼성물산(주)	특허권침해	2004.10.8 (조사신청철회)
2004.11.2 2004.11.4	PDP방식 디스플레이장치	엘지전자(주)	파낙소닉 코리아(주)	특허권침해	2005.4.13 (조사신청철회)
2005.5.20 2005.6.15	자전거부품 및정비공구	고재설	(주)제논스포츠 인터내셔널	상표권침해	2005.12.26 (무혐의)
2005.5.20 2005.6.15	자전거변속기 부품	이흥목	(주)오디바이크	상표권침해	2005.12.26 (무혐의)
2005.5.20 2005.6.15	자전거프레임 및연결부재	아나사지스포츠 코리아(주)	(주)오디바이크	상표권침해	2005.12.26 (무혐의)
2005.6.15 2005.7.6	브랜디술병 (Hennessy)	쏘시에떼자에 네씨에공파니 (프랑스)	(주)티에프유	상표권침해 디자인권침해	2005.11.23 (시정조치)
2005.7.4 2005.7.20	선캡	(주)아이티어	조아기프트(주) 김인영, 전정호, 김승현	디자인권침해 실용신안권침해	2006.1.6 (시정조치)
2005.10.17 2005.11.11	염산 젼시타빈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광동제약(주), 신평제약(주)	특허권침해	2006.10.23 (무혐의)
2006.4.27 2006.5.10	염산 젼시타빈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주)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특허권침해	2006.10.23 (무혐의)
2006.7.3 2006.7.18	FM 송신기	(주)크레젠	두고테크(주) 외 7개업체	특허권침해	2007.12.26 (무혐의)
2006.7.6 2006.7.18	에스보드	(주)데코리	(주)두발테크, (주)스포기, 신본통상(주)	특허권침해	2006.10.23 (시정조치)
2006.9.29 2006.10.23	원단(Textile)	부산해경 이첩	(주)유캔글로벌	원산지 증명서 허위발급	2007.2.26 (시정, 과징금건의)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06.11.27	FM 송신기	(주)크레젠	(주)비케이엠, 디지아나(주), (주)구봉정보기술	특허권침해	2007.12.26 (무혐의)
2006.12.20					
2007.5.4	추잉껌류	(주)초코사이버	(주)이맥스무역 등 3개 업체	상표권침해	2007.10.24 (시정조치)
2007.5.31					
2007.5.8	코인티슈	(주)코스코 인터내셔널	(주)지지사상사 등 11개 업체	디자인권침해 실용신안권침해	2007.11.28 (무혐의)
2006.6.7					
-	가구류	직권조사	9개 가구업체	원산지표시위반	2007.10.24 (시정, 과징금건의)
2007.6.15					
2007.12.7	난연성 알루미늄 판넬 제조장치	(주)유엘	(주)화신택	특허권침해	2008.7.23 (무혐의)
2008.1.15					
2008.1.8	스테인리스 플랜 지	제인공업사 등 10개사	원일산업 등 6개 업체	품질허위표시	2008.5.28 (시정조치)
2008.1.30					
2008.1.21	차대동력계	신성환경 기술(주)	(주)자스텍	원산지표시위반	2008.4.23 (무혐의)
2008.2.12					
2008.2.4	팔목시계	시계공업 협동조합	캐릭터코리아 (주)가마시계	원산지표시위반	2008.5.28 (시정, 과징금건의)
2008.2.11					
2008.3.3	적외선 리모컨 수신기용반도체칩	실리콤텍	에이디텍	특허권침해	2008.7.23 (조사신청철회)
2008.3.31					
2008.3.3	음료자동판매기	전자산업 진흥회	대일전자, 로알세라텍	실용신안권침해	2008.12.17 (시정조치)
2008.3.18					
2008.6.4	냇식대케이스	시마노(日)	시선21	디자인권침해	2008.11.26 (시정조치)
2008.7.23					
2009.1.2	베어링	기계산업 진흥회	나산정공(주)	원산지표시위반	2009.6.4 (시정, 과징금)
2009.1.5					
2009.4.7	부스바 가공기	이종성 (대하특허)	우진정공	특허권침해	2009.9.23 (무혐의)
2009.4.13					
2009.5.22	오토바이 부품	대림자동차(주)	한숨바이크(주)	디자인권침해	2009.11.25 (무혐의)
2009.6.4					
2009.8.28	플라이어 및 클램프	어원 인터스트 리얼툴 컴퍼니	새론기업	상표권침해	2010.2.24 (시정조치)
2009.9.11					
2009.9.28	이동형 샤워의자	(주)동해상사	바른아이엔씨	특허권침해 서비스표권침해	2010.3.31 (조사신청철회)
2009.9.29					
2009.10.6	냇식대 케이스	(주)시마노	백조상사	디자인권침해	2010.1.20 (시정조치)
2009.10.8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파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09.10.29	팔목시계	시계공업 협동조합	유진인터내셔널	원산지표시위반	2010.2.24 (시정, 과징금)
2009.11.5					
2009.12.11	팔목시계	시계공업 협동조합	만영상사	원산지표시위반	2010.5.26 (과징금)
2009.12.18					
2009.12.31	면생리대	아이에코	로한 외 3개업체	실용신안권침해	2010.5.26 (조사신청철회)
2010.1.13					
2010.3.19	낙숫대 케이스	(주)시마노	KD조구	디자인권침해 (기판정물품확인)	2010.7.14 (시정조치)
2010.4.8					
2010.4.9	스타킹	한국의류 산업협회	지마인드	상표권침해	2010.8.25 (무혐의)
2010.4.15					
2010.4.9	모자	한국의류 산업협회	제이케이 코리아	상표권침해	2010.8.25 (종결, 파신청인 소재불명)
2010.4.15					
2010.4.15	가방	한국의류 산업협회	릭스365	상표권침해	2010.8.25 (무혐의)
2010.5.20					
2010.5.11	팔목시계	시계산업 협동조합	(주)스타릭스	원산지표시위반	2010.8.25 (시정, 과징금)
2010.5.27					
2010.5.17	감광드럼	(주)캐논	(주)파켄OPC 등 5건	특허권침해	2011.9.21 (무혐의)
2010.6.1					
2010.5.26	운동기구	은성헬스빌	대한스포츠	실용신안권침해	2010.7.14 (조사신청철회)
2010.6.8					
2010.7.6	팔목시계	시계산업 협동조합	(주)원동토탈 솔루션	원산지미표시	2010.11.24 (시정, 과징금)
2010.7.22					
2010.10.12	풍선카데티 (척추수술용)	키폰SARL(키폰 에스에이알엘)	(주)태연메디칼, 최길운	특허권침해	2011.8.24 (무혐의)
2010.10.15					
2010.11.17	핵산추출 시스템	프레시전시스템 사이언스(주)	(주)바이오니아	특허권침해	2011.5.25 (무혐의)
2010.12.1					
2011.2.16	가정용 두유 두부 제조기	(주)로닉, 김홍배	(주)독도	실용신안권침해	2011.8.24 (무혐의)
2011.3.7					
2011.4.12	안경테 및 선글라스	직권조사	도네스아이웨어 등 3개업체	원산지표시위반	2011.9.21 2011.11.23 (시정, 과징금)
2011.4.12					
2011.5.26	안경테	조준형	사필로코리아(유)	원산지표시위반	2011.7.20 (조사불개시)
-					
2011.6.29	접속이온 빔장치	히다치 하이테크놀러지즈	(美)FEI Company, (韓)AP Tech.	특허권침해	2012.2.22 (무혐의)
2011.7.11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11.7.7 2011.8.11	LED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	LG전자, LG이노텍	오스람코리아 등 3개 업체	특허권침해	2012.5.23 (무혐의)
2011.7.28 2011.9.2	LED패키지	오스람, 오스람옵토	LG이노텍	특허권침해	2012.4.25 (무혐의)
2011.12.13 2011.12.27	팔목시계	임영석	김용수, 안근태, 박진우	상표권침해	2012.5.23 (무혐의)
2011.11.23 2012.2.1	모피의류	의류산업협회 (직권조사)	(주)초아산업	원산지표시위반	2012.7.25 (시정,과징금)
2012.2.16 2012.3.29	LCD모니터	(주)리토닉스	벤큐코리아, 피씨팝컴퍼니 한국휴렛팩커드, 델인터내셔널	특허권침해	2012.8.22 (조사신청철회) 2012.9.26 (조사신청철회)
2012.5.8 2012.6.26	지갑 및 가방	직권조사	김영호 (위즈컴퍼니)	원산지표시위반	2012.11.21 (시정,과징금)
2012.9.20 2012.10.25	DB암호화 솔루션	(주)케이사인	(주)필리아아이티	특허권침해	2013.3.20 (무혐의)
2012.11.28 2012.12.31	손목시계 (3건)	파슬코리아 유한회사	가온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	상표권침해	2013.6.30 (시정조치)
2013.1.21 -	위장질환치료 제용 쑥추출물	동아제약(주)	풍림무약(주)	특허권침해	2013.2.16 (조사신청철회)
2013.1.4 2013.1.15	음향증폭기 (3건)	서영전자산업 (주)	강형권 (퍼스텍전자)	상표권침해	2013.8.21 (시정,과징금)
2013.4.30 2013.5.15	등산복	(주)넬슨스포츠	곽일열 (알바트로스)	상표권침해	2013.8.21 (시정조치)
2013.3.27 2013.4.17	뉴젠 코팅장갑	ATG Gloves Pvt. Ltd., (스리랑카)	(주)신성메이저글러브스 (주)지와이씨 (주)다몬맥스	영업비밀침해	2013.10.17 (조사신청철회)
2013.11.18 2013.12.19	손목시계 (2건)	파슬코리아	김태웅(티더블유), 엄선용(시은)	상표권침해	2014.5.22 (시정조치)
2014.1.27 2014.2.3	레깅스	이재희,허영란	(주)뉴데이팜	상표권침해	2014.7.24 (시정조치)
2014.3.21 2014.4.8	유아용침낭	(주)쁘띠엘린	보니도	디자인권침해	2014.4.9 (조사신청철회)
2014.4.8 -	토너카트리지 (3건)	(사)한국프린터& 카트리지제조 협회	(주)삼일OA테크 (주)비앤씨전산 (주)토넷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신청철회)
2014.5.13 2014.6.13	자동차LED 램프(2건)	(주)지맥스	(주)씨맥스 차주은,손원	특허권침해 디자인권침해	2014.12.23 (신청철회요청에 따른종결)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14.7.16	초미립자 분무기	(주)에쓰엠부레	(주)브라운와이코리아 대호그린	특허권침해	2015.2.25 (신청철회에따른 종결)
2014.8.18					
2014.10.13	유효성첨가제 (2건)	인피니움코리아 (주)	(주)컴텍인터내셔널 한국바이오에너지	특허권침해	과징금 부과(2건)
2014.10.15					
2015.3.9	동박(전지박) (특허권제1117370호)	엘에스엠트론	창춘페트로케미칼	특허권침해	무혐의
2015.3.25					
2015.3.9	근육강화용실 삽입기(5건)	(주)동방메디칼	(주)메트로코리아 (주)동원메디칼,반석메디칼 (주)필팻코리아 (주)드림시스	특허권침해	무혐의
2015.3.31					
2015.7.15	프린터열전사 염료시트	일리노이즈툴 워크스	(주)디지털프린팅솔루션	특허권침해	무혐의
2015.8.3					
2015.8.28	동박(전지박) (특허권제1381932호)	엘에스엠트론	창춘페트로케미칼 비에프케미칼	특허권침해	2016.1.28 (조사 종결)
2015.9.16					
2015.9.11	자동공기 주입장치	한국물자조달 (주)	(주)씨울프마린	특허권침해	2016.3.24 (무혐의)
2015.9.30					
2016.4.14	방전용 전극선	오펙메이드(주)	에드마(주)	상표권침해	2016.10.26 (무혐의)
2016.4.29					
2016.6.9	유아동용 전동차	(주)헤네스	(주)파파야나인	특허권침해	2017.1.20. (신청철회에 따른 종결)
2016.6.23					
2016.6.9	유아동용 전동차	(주)헤네스	(주)파파야나인	특허권침해	2017.1.20. (신청철회에 따른 종결)
2016.6.23					
2016.6.9	유아동용 전동차	(주)헤네스	(주)파파야나인	특허권침해	2016.11.24 (신청철회에 따른 종결)
2016.6.23					
2016.6.9	유아동용 전동차	(주)헤네스	하나토이즈	특허권침해	무혐의
2016.6.23					
2016.6.9	유아동용 전동차	(주)헤네스	착한장난감	특허권침해	무혐의
2016.6.23					
2016.7.8	냉매관 절단장치	LS전선(주)	비알에스(주)	특허권침해	무혐의
2016.7.27					
2016.8.17	자석완구	(주)짐월드	이든베베(주)	상표권 침해	2017.3.21 (시정, 과징금)
2016.9.6					
2016.8.17	자석완구	(주)짐월드	멜팅코리아 Tonxiang Kebo Toys	디자인권 침해	2017.3.21 (시정, 과징금)
2016.9.6					
2016.8.25	레이더 디렉터	(주)디제이피	(주)제너럴웨이브	특허권 침해	무혐의
2016.9.7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피신청인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16.8.25 2016.10.4	교환렌즈	(주)삼양옵틱스	(주)테크홀딩스	영업비밀 침해	2017.7.17 (시정조치)
2016.9.8 2016.9.28	다중연결 블루투스 마우스	이형태	(유)로지텍코리아 오진상사(주) 로지텍아시아태평양	특허권 침해	무혐의
2017.3.3 2017.3.23	인조네일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	엘케이통상(주), 더블유플러스(주)	특허권 침해	조사중
2017.3.16 2017.4.4	스마트폰충전기	맥스전자(주)	박은식 (셀코리아)	상표권 침해	조사중



# 5

## 무역피해조사제도 (무역조정지원) 운용





## 5. 무역피해조사제도(무역조정지원) 운용

### 5-1. 운용실적 총괄

(단위: 건)

구분	신 청				조사종	판 정		
	계	일반 제조업	농수산물 가공업	서비스업		무역피해 있음	무역피해 없음	기 타
계	107	79	28	-	-	87	9	11

### 5-2. 연도별 신청 및 조치현황

(단위: 건)

구분	일반제조업				농수산물가공업				서비스업				계			
	신 청	판 정			신 청	판 정			신 청	판 정			신 청	판 정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2007	-	-	-	-	-	-	-	-	-	-	-	-	-	-	-	-
2008	1	-	1	-	2	2	-	-	-	-	-	-	3	2	1	-
2009	1	1	-	-	2	2	-	-	-	-	-	-	3	3	-	-
2010	1	1	-	-	1	1	-	-	-	-	-	-	2	2	-	-
2011	-	-	-	-	-	-	-	-	-	-	-	-	-	-	-	-
2012	8	5	1	2	5	3	1	1	-	-	-	-	13	8	2	3
2013	18	11	4	3	13	13	-	-	-	-	-	-	31	24	4	3
2014	25	22	1	2	3	3	-	-	-	-	-	-	28	26	1	1
2015	20	16	1	3	2	1		1					22	17	1	4
2016	5	5											5	5	-	-
계	79	61	8	10	28	25	1	2	0	0	0	0	107	87	9	11

### 5-3. 국가별 신청 및 조치현황

(단위: 건)

구분	일반제조업				농수산물가공업				서비스업				계			
	신청	판정			신청	판정			신청	판정			신청	판정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피해 있음	피해 없음	기타
EFTA	4	2	1	1	1	1	-	-	-	-	-	-	5	3	1	1
칠레	1	1	-	-	6	6	-	-	-	-	-	-	7	7	-	-
아세안	32	22	4	6	-	-	-	-	-	-	-	-	32	23	4	5
EU	35	29	3	3	21	18	1	2	-	-	-	-	56	47	4	5
미국	4	4	-	-	1	1	-	-	-	-	-	-	5	5	-	-
싱가폴	1	1	-	-	-	-	-	-					1	1	-	-
인도	1	1											1	1		
계	78	60	8	10	29	26	1	2	0	0	0	0	107	87	9	11

### 5-4. 무역피해조사 처리내용

신청일	품목	신청자	관련 FTA	신청 내용	종료일(판정내용)
2008.7.14	수전금류	삼원금속(주)	EFTA(스위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08. 8.27 (무역피해 있음)
2008.8.26	산머루와인	(주)두레마을	칠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08.10.22 (무역피해 있음)
2008.10.7	돈육 포장육	(주)거인식품	칠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08.11.26 (무역피해 있음)
2009.2.25	손목시계	(주)좋은시계	EFTA(스위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09.3.25 (무역피해 있음)
2009.4.10	돈육포장육	(주)제주돈누리포크	칠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09.5.27 (무역피해 있음)
2009.9.10	안동간고등어	(주)안동간고등어	EFTA (노르웨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09.10.28 (무역피해 있음)
2010.9.17	복분자주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	칠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0.11.24 (무역피해 있음)
2010.9.17	골프웨어	(주)너트클럽	아세안(베트남)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0.11.24 (무역피해 있음)
2012.7.30	지육	번영식품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8.22 (무역피해 있음)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관련 FTA	신청 내용	종료일(판정내용)
2012.7.30	도로경화제	(주)리트머스화학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9.26 (무역피해 있음)
2012.7.30	복분자주	순창복분자 영농조합법인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9.26 (무역피해 있음)
2012.7.30	밸브	(주)영동에이스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9.26 (취하, 조사종결)
2012.7.30	지육	금호실업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8.30 (반송)
2012.9.5	티셔츠	(주)에프엔아이 코리아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9.26 (무역피해 있음)
2012.9.5	탈모방지 샴푸	(주)한방명가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9.26 (무역피해 있음)
2012.9.5	초코릿	카카오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10.31 (무역피해 있음)
2012.10.18	팔목시계	(주)에스더블유씨	EFTA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11.21 (취하, 조사종결)
2012.10.18	에어필터	(주)세광필터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11.21 (무역피해 없음)
2012.10.18	핸드백	(주)이건만 에이에앤에프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11.21 (무역피해 있음)
2012.10.18	핸드백	(주)유레카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11.21 (무역피해 있음)
2012.10.18	돈육가공	(주)청솔 육가공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2.11.21 (무역피해 있음)
2013.3.27	돈육가공	명일축산영농조합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4.24 (무역피해 있음)
2013.3.27	방적기계용 베어링	에스씨스핀들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4.24 (무역피해 있음)
2013.3.27	와인	(주)한국와인	미국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4.24 (무역피해 있음)
2013.6.3	돈육가공	(주)신선나라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6.26 (무역피해 있음)
2013.6.3	냉장고 부품	보스텍(주)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6.26 (무역피해 있음)
2013.7.5	등산화	산야로제화상사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7.24 (무역피해 없음)
2013.7.5	스포츠용신발	(주)보스산업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7.24 (무역피해 있음)
2013.7.5	스포츠용신발	피지산업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7.24 (무역피해 없음)
2013.7.5	에어컨 부품	(주)나우텍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7.24 (무역피해 있음)
2013.7.5	돈육가공	(주)한국물산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8.21 (무역피해 있음)
2013.8.21	돈육가공	(주) 신화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27 (무역피해 있음)
2013.8.21	돈육가공	한국푸드시스템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13 (무역피해 있음)
2013.8.21	석유화학	케미칼네트웍스	싱가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13 (무역피해 있음)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관련 FTA	신청 내용	종료일(판정내용)
2013.8.21	석유화학	케미칼네트웍스	싱가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13 (무역피해 있음)
2013.9.3	염모제	광덕신약(주)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27 (무역피해 있음)
2013.9.3	페인트	(주)월드 인더스트리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27 (무역피해 있음)
2013.9.3	돈육가공	(주)제주푸름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27 (무역피해 있음)
2013.9.3	돈육가공	(주)일품원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27 (무역피해 있음)
2013.9.3	판유리	호산지엔디(주)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27 (무역피해 없음)
2013.9.3	돈육가공	제이원FNC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9.27 (무역피해 있음)
2013.10.1	돈육가공	두원식품(주)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0.29 (무역피해 있음)
2013.10.1	돈육가공	(주)동명축산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0.29 (무역피해 있음)
2013.10.1	돈육가공	(주)남부미트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0.29 (무역피해 있음)
2013.10.1	운동화	(주)엔에스트 레이딩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0.29 (취하, 종결보고)
2013.10.30	배전반&CTTS	리젠코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1.13 (취하, 종결보고)
2013.10.30	돈육가공	태성 에프앤에프(주)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1.22 (무역피해 있음)
2013.10.30	기초용화장품	(주)뷰티화장품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1.22 (무역피해 있음)
2013.10.30	드레스화	렉스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1.22 (무역피해 있음)
2013.10.30	골프웨어	백민G.F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1.22 (무역피해 있음)
2013.11.26	의류	덕수상사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2.30 (취하, 조사종결)
2013.11.26	스프링	디.에스 스프링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2.20 (무역피해 있음)
2013.11.26	여성의류	(주)그림통상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3.12.20 (무역피해 있음)
2014.4.1	냉동오징어	(주)동보수산무역	한-칠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4.24 (무역피해 없음)
2014.4.1	소나무재재목	세원목재(주)	한-칠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4.24 (무역피해 없음)
2014.4.30	면티셔츠	(주)대원스포츠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5.22 (무역피해 있음)
2014.7.1	냉동연어	양양셀문푸드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7.24 (무역피해 있음)
2014.7.31	기초화장품	미진화장품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8.28 (무역피해 있음)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관련 FTA	신청 내용	종료일(판정내용)
2014.8.5	열교환기	(주)중원JHE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8.28 (무역피해 있음)
2014.8.5	클렌징비누	(주)셀라네쥬얼 코스메틱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8.28 (무역피해 있음)
2014.8.31	면제티셔츠	(주)한별이엔티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9.25 (무역피해 있음)
2014.9.2	장갑	영진글러브(주)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9.25 (무역피해 있음)
2014.9.2	남성바지	문창기업(주)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9.25 (무역피해 있음)
2014.9.2	안경테	아이벨광학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9.25 (무역피해 있음)
2014.9.2	점토기와	(주)대동요업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0.23 (무역피해 있음)
2014.10.1	골프화	(주)그린윙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0.13 (무역피해 있음)
2014.10.1	LED 조명기구	(주)성안조명	EFTA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0.23 (무역피해 있음)
2014.10.1	목재펠리트	(주)유니바이오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0.23 (무역피해 있음)
2014.10.1	장갑	서진장갑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0.23 (무역피해 있음)
2014.10.1	동축케이블	알엔케이(주)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0.23 (철회, 종결보고)
2014.10.20	염모제	(주)기린화장품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1.13 (무역피해 있음)
2014.10.20	돈육	(주)대한미트컴퍼니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1.13 (무역피해 있음)
2014.10.20	가방	(주)레인보우코리아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1.13 (무역피해 있음)
2014.10.20	헤어제품	(주)새롬코스메틱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1.13 (무역피해 있음)
2014.10.20	티셔츠	세일통상(주)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1.13 (무역피해 있음)
2014.10.20	산업용 펌프	(주)아룩전기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1.13 (무역피해 없음)
2014.10.20	양말	(주)지이엠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1.13 (무역피해 있음)
2014.10.20	자동제어반, 배전반	(주)화인테크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1.13 (무역피해 있음)
2014.12.1	티셔츠	(주)모텍스	한-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2.23 (무역피해 있음)
2014.12.1	선글라스	한별광학	한-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4.12.23 (무역피해 있음)
2015.4.27	볼트	(주)태정기공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5.28 (무역피해 있음)
2015.6.3	방한화	(주)원우상사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6.15 (신청철회)

신청일	품 목	신 청 자	관련 FTA	신청 내용	종료일(조치내용)
2015.6.3	베크라이트	(주)디알하이텍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6.9 (신청철회)
2015.7.3	암면	한국유알미디어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 7.21 (무역피해 있음)
2015.10.1	알루미늄 소재 부품	(주)동일메탈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무역피해 있음)
2015.10.1	자동차 카펫 약세사리	거원산업(주)	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무역피해 있음)
2015.10.1	산업용포장재	(주)엠시피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무역피해 있음)
2015.10.1	치즈	(유)승일푸드 시스템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신청철회)
2015.10.1	PP 재생원료	(주)용산화학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6 (심의요청 반송)
2015.10.1	LED 조명기구	(주)필립인텍스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무역피해 있음)
2015.10.1	유압실린더	세일유압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무역피해 있음)
2015.10.1	압축공기에어, 드라이어 등	(주)금성하이텍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무역피해 있음)
2015.10.1	스웨터	썬니트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무역피해 있음)
2015.10.1	포장기계	대원포장기계	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0.22 (무역피해 있음)
2015.11.1	PP 재생원료	(주)용산화학	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1.26 (무역피해 있음)
2015.11.1	한방발효차	영농조합법인 이도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1.26 (무역피해 있음)
2015.11.1	스피커	(주)광주전자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1.26 (무역피해 있음)
2015.11.1	타월	동경타월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1.26 (무역피해 있음)
2015.11.1	LED 컨버터	(주)파워인	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1.26 (무역피해 있음)
2015.11.26	자전거보관대	서형산업(주)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2.21 (무역피해 있음)
2015.11.26	플라스틱필름 및 쉬트	(주)지엠케이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2.21 (무역피해 없음)
2015.11.26	황동봉	후덕한금속(주)	아세안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5.12.21 (무역피해 있음)
2016.2.4	LED 조명 기구	에스지디지털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6. 2.25 (무역피해 있음)
2016.3.4	돈육	(주)거인식품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6.3.24 (무역피해 있음)
2016.3.4	합성직물	(주)인네이처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6.3.24 (무역피해 있음)
2016.5.6	폴리에스터 가연사	한미화섬(주)	인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6.5.26 (무역피해 있음)
2016.6.8	돈육	(주)모닝포크	EU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2016.6.24 (무역피해 있음)





6

무역위원회  
운용현황







## 6. 무역위원회 운용현황

### 6-1. 연도별 개최 현황

(단위: 건)

구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6	계
위원회	4	7	15	19	12	9	11	13	7	15	16	6	13	12	8	16	14	16	14	11	12	12	11	12	12	13	13	14	12	12	5	366
공청회	-	3	6	5	5	5	2	3	3	5	7	4	3	3	1	5	6	5	4	5	3	7	3	4	5	4	5	8	5	5	2	131
계	4	10	21	24	17	14	13	16	10	20	23	10	16	15	9	21	20	21	18	16	15	19	14	16	17	17	18	22	17	17	7	497

### 6-2. 2016~2017.6월 무역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사항				의결사항					총계
정기보고 (회의록)	개시 보고	기타	소개	덤핑	불공정	무역 조정	기타	소개	
17	17	15	49	11	21	5	2	39	88

### 6-3. 2016~2017.6월 공청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품목명	대상국가	비고
반덤핑	2016. 4. 28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일본	재심
"	2016. 6. 24	부틸글리콜에테르	미국, 프랑스	원심
"	2016. 10. 26	합판	말레이시아	재심
"	2016. 10. 26	합판	중국	재심
"	2016. 11. 24	스테인리스스틸바	일본, 인도, 스페인	재심
"	2017. 3. 17	옵셋인쇄판	중국	원심
"	2017. 6. 16	페로실리코망간	베트남, 인도, 우쿠라이나	원심

### 6-4. 무역위원회 회의안건 내역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차	1987.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7 산업피해구제업무의 운용계획</li> <li>-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경비지급규정</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 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의결 제87-1호)</li> <li>-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의결 제87-2호)</li> </ul> </li> </ul>	
2차	198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설명회 개최 등 홍보계획</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보고서[(주)클래식 대미 불공정수출 (위조상품) 행위에 관한 건] (의결 제87-3호)</li> <li>- 조사결과보고서[경동기업(주) 대미 불공정수출 (위조상품)행위에 관한 건] (의결 제87-4호)</li> </ul> </li> </ul>	
3차	1987.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외국 산업피해구제사례의 편집·발간계획</li> </ul> </li> <li>● 특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비고무화 수입규제제소에 관한 대응사례 (보고자 : 한국신발수출조합 부이사장 김낙경)</li> <li>- 슬라이드(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구제) 상영 등 홍보자료</li> </ul> </li> </ul>	
4차	1987.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세라믹압전착화소자에 대한 산업영향 조사 신청 보고</li> <li>- 최근의 수입동향 분석</li> </ul> </li> <li>● 특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ITC 및 캐나다CITT 방문결과 보고</li> <li>-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제소에 관한 대응사례</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의결 제87-5호)</li> <li>- 수입금지 또는 과다품목에 대한 산업동향분석 추진계획(안) (의결 제87-6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5차	1988.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라믹압전착화소자에 대한 산업영향 조사 계획(안) (조사번호 : 대무 32-87-1) (의결 제88-1호)</li> </ul> </li> </ul>	
6차	1988.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무역위원회 구성의 평가와 88 기구개편(안)</li> <li>- 미 종합무역법안에 대한 KTC의 대응방안</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고라토끼털에 대한 산업영향 조사 계획(안) (의결 제88-2호)</li> </ul> </li> <li>● 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고려무역의 대일 불공정수출행위에 관한 건</li> </ul> </li> </ul>	
7차	1988.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우젓 산업피해 조사 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구제조치 (잠정조치안) (의결 제88-3호)</li> </ul> </li> </ul>	
8차	1988.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세라믹압전착화소자 산업영향 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건</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고려무역의 대일 불공정수출 (위조상품) 행위에 관한 건 (의결 제88-4호)</li> <li>- 새우젓 산업영향 조사 계획(안) (의결 제88-5호)</li> </ul> </li> <li>●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고라토끼털 산업피해 조사 공청회</li> </ul> </li> </ul>	
9차	1988.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세라믹압전착화소자 산업영향 조사 종결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고라토끼털 산업피해 조사 결과 (의결 제88-6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0차	1988.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고라토끼털 (조사번호 : 대무 32-88-1) 산업피해구제조치검토(안) (의결 제88-7호)</li> <li>- 새우젓 (조사번호 : 대무 32-88-2) 산업피해 조사 결과 (의결 제88-8호)</li> </ul> </li> </ul>	
11차	1988.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고라토끼털 산업피해구제조치 검토(안) (의결 제88-9호)</li> </ul> </li> </ul>	서면의결
12차	1989.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 1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우젓(조사번호 : 대무 32-88-2) 산업피해구제조치 검토(안) (의결 제89-1호)</li> <li>- 알루미늄시멘트 산업피해 조사 계획 (의결 제89-2호)</li> </ul> </li> </ul>	
13차	1989.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양무역상사(주)의 대 사우디 불공정수출 행위 및 무역업 제재여부 (의결 제89-3호)</li> </ul> </li> </ul>	서면의결
14차	198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선경 등 6개 업체의 불공정 수출행위 및 무역업 제재 여부 (의결 제89-4호)</li> </ul> </li> </ul>	서면의결
15차	1989.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 13, 1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고추가공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조사개시 보고</li> <li>- 개방품목에 대한 수입영향 조사</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가공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조사 계획(안) (의결 제89-5호)</li> </ul> </li> </ul>	서면의결
16차	1989.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고추관련제품의 수입동향 보고</li> <li>- 알루미늄시멘트 산업피해 조사 중간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불공정수출행위 조사 결과 보고 (주)현대종합상사, (주)크라운완구, 영한실업, 지아이양행, (주)현대전자, 동양나이론(주), (주)금성사, (주)KB상사, 진도패션(주) (의결 제89-6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7차	198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돼지고기통조림 산업피해구제 신청</li> <li>- 집성운모절연판 및 절연테이프 산업피해구제 신청</li> <li>- 불공정수출행위 방지를 위한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수출행위 조사 결과 : 삼선양행 (의결 제89-18호) (주)카스툼실업 (의결 제89-19호)(주)코스타 (의결 제89-20호)해성공업사 (의결 제89-21호)</li> </ul> </li> </ul>	서면의결
18차	1989.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루미늄시멘트 산업피해 조사 종료 (의결 제89-22호)</li> </ul> </li> </ul>	서면의결
19차	198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 1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돼지고기 통조림 산업영향 조사개시 공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 통조림 산업영향 조사 계획 (의결 제89-23호)</li> </ul> </li> <li>●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장 산업영향 조사</li> </ul> </li> </ul>	
20차	1989.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집성운모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 조사개시 공고</li> <li>- 초산에틸 산업피해구제 신청</li> <li>- 스테아린산 산업피해구제 신청</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성운모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 조사 계획(안) (의결 제89-24호)</li> </ul> </li> </ul>	서면의결
21차	1989.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가공제품 산업영향 조사 결과 및 구제조치 (의결 제89-25호)</li> </ul> </li> </ul>	
22차	1989.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 2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li>- 스테아린산 산업영향 조사개시 공고</li> <li>- 초산에틸 산업영향 조사개시 공고</li> <li>- 압연기용로울 산업피해 조사 신청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아린산 산업영향 조사 계획 (의결 제89-26호)</li> </ul> </li> </ul>	서면의결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산에틸 산업영향 조사 계획 (의결 제89-27호)</li> <li>- (주)아이·엠·에이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89-28호)</li> <li>- (주)삼전교역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89-29호)</li> <li>- 효성물산(주)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89-30호)</li> </ul>	
23차	1989.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용 L-LDPE Stretch 필름 산업영향 조사개시 공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연기용로울 산업영향 조사 종결(의결 제89-31호)</li> <li>- 포장용 L-LDPE Stretch 필름 산업영향 조사 계획 (의결 제89-32호)</li> </ul> </li> </ul>	서면의결
24차	1989.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피해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통조림, 초산에틸, 스테아린산, 집성운모절연제품</li> </ul> </li> </ul> </li> </ul>	
25차	1989.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 23, 2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통조림 산업영향 조사 결과 (의결 제89-35호)</li> <li>- 폴리아크릴아미드 덤핑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예비 조사 결과 (의결 제89-36호)</li> </ul> </li> </ul>	
26차	1989.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성운모 절연제품 산업영향 조사 결과 (의결 제89-37호)</li> <li>- 스테아린산 산업영향 조사 결과 (의결 제89-38호)</li> <li>- 초산에틸 산업영향 조사 결과 (의결 제89-39호)</li> </ul> </li> </ul>	
27차	1990.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 2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국토미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90-1호)</li> <li>- 무등실업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90-2호)</li> </ul> </li> </ul>	
28차	1990.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피해구제조치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통조림 (의결 제90-3호)</li> <li>◦ 집성운모절연제품 (의결 제90-4호)</li> <li>◦ 스테아린산 (의결 제90-5호)</li> <li>◦ 초산에틸 (의결 제90-6호)</li> </ul> </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9차	1990.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 2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아크릴아미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계획 (의결 제90-7호)</li> </ul> </li> </ul>	
30차	199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용 L-LDPE 필름 산업피해유무 판정 (의결 제90-8호)</li> </ul> </li> </ul>	
31차	1990.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모분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9호)</li> </ul> </li> </ul>	
32차	199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의결 제90-10호)</li> <li>-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 운영·절차 등에관한 규정(안) (의결 제90-11호)</li> <li>- 무역위원회 사무분장규정(안) (의결 제90-12호)</li> <li>-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안) (의결 제90-13호)</li> <li>-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여비지급규정(안) (의결 제90-14호)</li> <li>-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여비지급규정(안) (의결 제90-15호)</li> </ul> </li> </ul>	서면의결
33차	199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코아분유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16호)</li> </ul> </li> </ul>	
34차	1990.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 32, 3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용 L-LDPE 필름 산업피해구제조치 건의 (의결 제90-17호)</li> </ul> </li> </ul>	
35차	1990.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0-1호)</li> <li>- 앙고라토끼털 구제조치 연례검토결과 보고 (보고 제90-1호)</li> <li>- 폴리아세탈수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 보고 (보고 제90-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할저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판정 (의결 제90-18호)</li> <li>- 우모분 산업피해 조사 종결여부 결정 (의결 제90-19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36차	199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0-2호)</li> <li>- 폴리아세탈수지 덩핑 조사개시여부에 관한 의견 (보고 제90-3호)</li> <li>- 불공정수출입 예비검토 결과 보고 (보고 제90-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코아분유 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건 (의결 제90-20호)</li> <li>-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21호)</li> <li>-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처리지침 (의결 제90-22호)</li> </ul> </li> </ul>	
37차	1990.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0-3호)</li> <li>- 새우젓 구제조치 연례검토결과 보고 (보고 제90-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코아분유 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23호)</li> </ul> </li> </ul>	
38차	1990.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코아분유 산업피해 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건 (의결 제90-24호)</li> </ul> </li> </ul>	서면의결
39차	199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0-4호)</li> <li>- 폴리아세탈수지 덩핑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 계획 보고 (보고 제90-6호)</li> <li>- 폴리아크릴아미드 조사 결과 쟁점사항 보고 (보고 제90-7호)</li> <li>- 불공정수출행위 예비검토결과 보고 (보고 제90-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석분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25호)</li> <li>- 목할저 산업피해 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건 (의결 제90-26호)</li> <li>- (주)고려무역의 불공정수출행위에 관한 건 (의결 제90-27호)</li> <li>- (주)선경의 불공정수출행위에 관한 건 (의결 제90-28호)</li> <li>- 신라공예(주)의 불공정수출행위에 관한 건 (의결 제90-29호)</li> <li>- 오로라무역(주)의 불공정수출행위에 관한 건 (의결 제90-30호)</li> <li>-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31호)</li> </ul> </li> </ul>	
40차	199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아크릴아미드 산업피해 조사 공청회 속기록 (보고 제90-9호)</li> <li>- 목할저 산업피해 조사 공청회 속기록 (보고 제90-10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41차	1990.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9, 4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0-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할저 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32호)</li> <li>- 코코아분유 산업피해 조사 종결에 관한 건 (의결 제90-33호)</li> <li>- DK무역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34호)</li> <li>- (주)삼화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35호)</li> <li>- (주)삼익약기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36호)</li> </ul> </li> </ul>	
42차	1990.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0-6호)</li> <li>- 불공정수출혐의 예비검토 결과 (보고 제90-11호)</li> <li>- 포장용 L-LDPE필름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조사 결과 (보고 제90-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아크릴아미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37호)</li> <li>- 대보교역(주)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제재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0-38호)</li> <li>- DK무역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제재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0-39호)</li> <li>- (주)선경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제재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0-40호)</li> <li>- (주)삼익약기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제재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0-41호)</li> <li>- (주)삼화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제재 건의에관한 건 (의결 제90-42호)</li> </ul> </li> </ul>	
43차	1990.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팝콘 산업피해 조사 신청 보고 (보고 제90-13호)</li> <li>- 농산물수입과 관련한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건의에 대한 보고 (보고 제90-1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아크릴아미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0-43호)</li> </ul> </li> </ul>	
44차	1990.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 4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0-7호)</li> <li>- 폴리아세탈수지 조사 추진동향 보고(보고 제90-15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콘옥수수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에 관한 건(의결 제90-44호)</li> <li>- 목할저 산업피해구제방안 건의에 관한 건(의결 제90-45호)</li> </ul> </li> </ul>	
45차	199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석분” 산업피해 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건(의결 제90-46호)</li> </ul> </li> </ul>	서면의결
46차	199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1-1호)</li> <li>- 고추가공제품 산업피해구제조치의 연례검토(보고 제9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석분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호)</li> </ul> </li> </ul>	의결유보
47차	1991.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석분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호)</li> </ul> </li> </ul>	
48차	199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6, 4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콘옥수수 산업피해 유무 판정 (의결 제91-3호)</li> <li>- 활석분 산업피해구제조치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1-4호)</li> <li>- 당면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5호)</li> </ul> </li> </ul>	기간연장 (1개월)
49차	1991.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아세탈수지 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6호)</li> </ul> </li> </ul>	
50차	199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콘옥수수 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7호)</li> </ul> </li> </ul>	
51차	1991.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통조림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8호)</li> </ul> </li> </ul>	연례검토
52차	1991.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산에틸 산업피해구제조치 변경 및 해제 등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9호)</li> <li>- 스테아린산 산업피해구제조치 변경 및 해제 등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0호)</li> <li>- 집성운모절연제품 산업피해구제조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1호)</li> </ul> </li> </ul>	서면의결 연례검토 연례검토 연례검토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53차	199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0, 5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1-4호)</li> <li>- 제49, 5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콘옥수수생산업 피해구제조치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1-12호)</li> </ul> </li> </ul>	
54차	199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면 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3호)</li> <li>- 새우젓 산업피해구제 조치기간의 연장·변경 및 해제 등의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4호)</li> </ul> </li> </ul>	연례검토
55차	199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3, 5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1-6호)</li> <li>- 삼우공업사 등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조사 종결에 관한 건 (불공정수출행위, 예비검토결과) (보고 제9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면산업피해 구제조치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1-15호)</li> <li>- 원진물산(주)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6호)</li> <li>- 녹십자의료공업(주)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7호)</li> <li>- (주)보우코프레이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8호)</li> </ul> </li> </ul>	
56차	1991.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1-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용주기판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19호)</li> </ul> </li> </ul>	
57차	1991.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1-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처리지침중 개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20호)</li> <li>- 고추가공제품 산업피해구제 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1-21호)</li> <li>- 원진물산(주)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한 건 (의결 제91-22호)</li> <li>- 녹십자의료공업(주)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한 건 (의결 제91-23호)</li> <li>- (주)보우코프레이션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한 건 (의결 제91-2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58차	1992.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2-1호)</li> <li>-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처리지침증 개정(안) 보고 (보고 제92-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쑤시개 등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2-1호)</li> <li>- 포장용 L-LDPE 필름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2호)</li> <li>- 우산 및 우산틀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에관한 건 (의결 제92-3호)</li> </ul> </li> </ul>	연례검토
59차	1992.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2-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용 주기판 산업피해의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4호)</li> </ul> </li> </ul>	
60차	1992.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2-3호)</li> <li>- 우애산업(주)등 4개업체의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 종결에 관한 건 (보고 제92-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성운모절연제품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5호)</li> <li>- 스테아린산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6호)</li> <li>- 초산에틸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7호)</li> <li>- PC용주기판 산업피해구제조치의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2-8호)</li> <li>- 우산(양산) 및 우산틀 산업피해 유무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9호)</li> <li>- 이쑤시개 등 산업피해유무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10호)</li> <li>-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규정 개정·고시(안)에 관한 건 (의결 제92-11호)</li> </ul> </li> </ul>	연례검토  연례검토  연례검토
61차	1992.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2-4호)</li> <li>- 산업피해구제법 제정(안) (보고 제92-3호)</li> <li>- 무역위원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 (보고 제92-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산(양산) 및 우산틀 산업피해구제조치의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2-12호)</li> <li>- 이쑤시개 등 산업피해구제조치의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2-13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62차	1992.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2-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우젓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14호)</li> <li>- 목할저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15호)</li> </ul> </li> </ul>	연례검토 연례검토
63차	1992.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2-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자리 등 식물성 매트류 산업피해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16호)</li> </ul> </li> </ul>	
64차	1992.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2-7호)</li> <li>- 삼일섬유 불공정수출행위에 관한 건 (보고 제92-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통조림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17호)</li> <li>- 활석분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제92-18호)</li> <li>- 볼베어링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19호)</li> <li>- 정제인산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20호)</li> <li>- H산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21호)</li> </ul> </li> </ul>	연례검토 (차기로 연기)  심의연기
65차	1992.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2-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통조림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17호)</li> <li>- 활석분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18호)</li> <li>- H산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21호)</li> <li>- 고추가공제품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2-22호)</li> </ul> </li> </ul>	연례검토  연례검토  연례검토
66차	1992.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자리 등 식물성 매트류 산업피해 조사종결에 관한 건 (의결 제92-23호)</li> </ul> </li> </ul>	서면의결
67차	1993.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베어링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호)</li> <li>- 정제인산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할저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3호)</li> <li>- 팜콘옥수수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4호)</li> </ul>	연례검토 연례검토
68차	1993.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다회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5호)</li> </ul> </li> </ul>	
69차	1993.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통조림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6호)</li> <li>- 활석분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7호)</li> <li>- 당면 산업피해구제 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8호)</li> </ul> </li> </ul>	연례검토  연례검토 연례검토
70차	199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PS 인쇄판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9호)</li> </ul> </li> </ul>	
71차	1993.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다회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0호)</li> </ul> </li> </ul>	
72차	199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우젓 산업피해구제조치의 연장 또는 변경 및 해제 등 결의에 관한 건 (의결 제93-11호)</li> <li>- (주)제일무역상사의 불공정수출행위여부 결정 및 제재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2호)</li> </ul> </li> </ul>	서면의결
73차	1993.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 인쇄판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예비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3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74차	199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장섬유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건(의결 제93-14호)</li> </ul> </li> </ul>	
75차	1993.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유무 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5호)</li> </ul> </li> </ul>	
76차	1993.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6호)</li> <li>- 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 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7호)</li> <li>- 당면 산업피해구제조치의 연장 또는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8호)</li> <li>- 이쑤시개 등 산업피해구제조치의 연장 또는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19호)</li> <li>- PC용 주기판 산업피해구제조치의 연장 또는 변경 및 해제 등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20호)</li> </ul> </li> </ul>	연례검토 서면결의 연례검토 서면결의 연례검토 서면결의
77차	1993.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3-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소다회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유무 판정에 관한 건 (의결 제93-21호)</li> </ul> </li> </ul>	
78차	1994.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 덤핑수입으로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의 건 (의결 제94-1호)</li> <li>- 고추가공제품 산업피해구제조치기간의 연장또는 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4-2호)</li> </ul> </li> </ul>	연례검토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79차	199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 덩핑수입으로 인한산업피해 예비판정 (의결 제94-3호)</li> <li>- 우산 및 우산틀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조치의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 및 해제 등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4-4호)</li> <li>- 산업피해 조사와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의 운영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의결 제94-5호)</li> </ul> </li> </ul>	1개월연장 연례검토
80차	1994.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의 건 (의결 제94-6호)</li> </ul> </li> </ul>	
81차	1994.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일본 및 대만 유리장섬유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최종판정 (의결 제94-7호)</li> <li>- 대두박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4-8호)</li> <li>- 대두유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4-9호)</li> <li>- 무역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 규정(안) (의결 제94-10호)</li> <li>- 무역위원회 심의·의결절차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결 제94-11호)</li> </ul> </li> </ul>	
82차	1994.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중국·벨기에 및 프랑스산 액체가성소다 덩핑 조사개시여부 결정의 건 (의결 제94-12호)</li> </ul> </li> </ul>	
83차	199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소성인산석회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최종판정의 건 (의결 제94-13호)</li> <li>- 미국·중국·벨기에 및 프랑스산 액체가성소다 덩핑 조사 대상품목 변경에 관한 건 (의결 제94-1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84차	1994.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소성인산석회 덩핑수입으로 인한산업피해 최종판정의 건 (의결 제94-15호)</li> </ul> </li> </ul>	
85차	199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박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판정의 건(의결 제94-16호)</li> </ul> </li> </ul>	
86차	199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박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건의에 관한 건(의결 제94-17호)</li> <li>- 미국, 중국, 벨기에 및 프랑스산 액체 가성소다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의 건(의결 제94-18호)</li> </ul> </li> </ul>	
87차	1994.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제이썬시개, 목환봉 산업피해구제조치기간의연장 또는 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4-19호)</li> </ul> </li> </ul>	연례검토
88차	1994.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용 주기판 산업피해구제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4-20호)</li> <li>- 우산 및 우산틀 산업피해구제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4-21호)</li> <li>- 새우젓 산업피해구제 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4-22호)</li> <li>- 당면 산업피해구제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구제 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 건의에 관한 건(의결 제94-23호)</li> </ul> </li> </ul>	연례검토 연례검토 연례검토 연례검토
89차	1994.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4-12호)</li> <li>- (주)미대무역상사의 2개업체의 상표법 위반에 따른 불공정수출행위 조사개시 결정(일반 제94-1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중국·벨기에 및 프랑스산 액체가성소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최종판정의 건 (의결 제94-24호)</li> </ul> </li> </ul>	
90차	1994.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5-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육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4-25호)</li> <li>-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산 아연과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4-26호)</li> </ul> </li> </ul>	
91차	1995.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5-1호)</li> <li>- 태국산 볼베어링 덤핑방지관세 부과종결 (일반 제95-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산아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예비판정 (의결 제95-1호)</li> </ul> </li> </ul>	
92차	1995.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5-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육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판정(의결 제95-2호)</li> <li>- (주)미대무역상사의 3개 업체의 불공정수출행위(상표권침해) 제재 건의 (의결 제95-3호)</li> </ul> </li> </ul>	
93차	1995.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5-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동박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의결 제95-4호)</li> <li>-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아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5-5호)</li> </ul> </li> </ul>	
94차	1995.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5-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유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5-6호)</li> </ul> </li> </ul>	
95차	1995.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5-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장 산업피해 구제조치기간 연장 건의 (의결 제95-7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96차	1995.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5-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유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판정(의결 제95-8호)</li> <li>- 상호무역의 불공정수출행위 제재 건의(의결 제95-9호)</li> </ul> </li> </ul>	
97차	199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결 제95-10호)</li> </ul> </li> </ul>	서면의결
98차	1996.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에탄올아민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의결 제96-1호)</li> <li>- 일본산 유리장섬유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에 따른 산업피해 유무 판정 (의결 제96-2호)</li> <li>- 중국산 정제인산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에 따른 산업피해 유무 판정 (의결 제96-3호)</li> <li>- 대두유 산업피해 구제조치 건의 (의결 제96-4호)</li> </ul> </li> </ul>	
99차	1996.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지 덤핑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의결 제96-5호)</li> <li>- 수공구관련 불공정수입행위(원산지 허위 표시) 제재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6-6호)</li> </ul> </li> </ul>	
100차	1996.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3호)</li> <li>- 미국 및 일본산 유리장섬유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96-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및 중국산 염화코린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6-7호)</li> </ul> </li> </ul>	
101차	1996. 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4호)</li> <li>- PS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96-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제품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의결 제96-8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02차	199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에탄올아민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6-9호)</li> </ul> </li> </ul>	
103차	1996.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독일·일본·중국산 전기면도기덤핑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의결 제96-10호)</li> <li>- 염화코린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예비판정 (의결 제96-11호)</li> <li>- 리튬1차전지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예비판정 (의결 제96-12호)</li> </ul> </li> </ul>	
104차	1996.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7호)</li> <li>- 소다회 덤프방지관세 부과 재심사개시 결정보고 (일반 제96-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자전거 및 동 부품의 수입증가로 인한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6-13호)</li> <li>- 산업용 냉·난방 공기조절기 덤프 조사개시 여부결정 (의결 제96-14호)</li> </ul> </li> </ul>	
105차	199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에탄올아민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6-15호)</li> <li>- 동구권 소다회 덤프 조사개시여부 결정(의결 제96-16호)</li> </ul> </li> </ul>	
106차	1996.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제품 산업피해 조사기간 연장 결정 (의결 제96-17호)</li> </ul> </li> </ul>	서면결의
107차	1996.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의결 제96-18호)</li> <li>- 미국 및 중국산 염화코린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6-19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08차	1996.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6-21호)</li> <li>- 유제품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판정 (의결 제96-20호)</li> </ul> </li> </ul>	
109차	1996.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96-11호)</li> <li>- 스위스산 산업용 공기조절기 덤핑 조사 종결 보고 (일반 제96-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박 산업피해 구제조치에 관한 재검토(의결 제96-22호)</li> <li>- 러시아산 H형강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의결 제96-23호)</li> <li>- 전기면도기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6-24호)</li> </ul> </li> </ul>	의결유보
110차	1996.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박 산업피해 구제조치에 관한 재검토(의결 제96-25호)</li> </ul> </li> </ul>	
111차	1996.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12호)</li> <li>- 제11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6-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제품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조치 건의 (의결 제96-26호)</li> </ul> </li> </ul>	
112차	1996.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자전거 및 동 부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기간 연장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6-27호)</li> </ul> </li> </ul>	서면결의
113차	199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7-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리아 및 러시아산 소다회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7-1호)</li> </ul> </li> </ul>	
114차	1997.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공기조절기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 2호)</li> <li>- 일반용 자전거 및 동 부품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판정 (의결 제97- 3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15차	1997.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자전거 및 동 부품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조치 건의 (의결 제97- 4호)</li> <li>-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 5호)</li> <li>- 대만산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 6호)</li> <li>- (주)태방기업 및 유엘테크코리아의 불공정 수입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건 (의결 제97- 7호)</li> <li>-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의결 제97- 8호)</li> </ul> </li> </ul>	
116차	1997.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H형강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7- 9호)</li> <li>- 네덜란드·독일·일본·중국산 전기면도기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의결 제97- 10호)</li> </ul> </li> </ul>	
117차	199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소다회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재심사 (의결 제97-11호)</li> <li>- 러시아·불가리아산 소다회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7-12호)</li> </ul> </li> </ul>	
118차	1997.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히텐슈타인산 산업용공기조절기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7-13호)</li> <li>-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14호)</li> <li>- 미국 및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15호)</li> </ul> </li> </ul>	
119차	1997.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7호)</li> <li>- 불공정수출행위 조사(특허권 침해행위) 종결보고 (일반 제97-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7-16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20차	1997.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17호)</li> <li>- 미국 및 독일산 H-메탈셀룰로스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18호)</li> <li>- 러시아산 H형강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유무 판정 (의결 제97-19호)</li> </ul> </li> </ul>	
121차	1997.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산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에멀전타입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7-20호)</li> </ul> </li> </ul>	
122차	1997.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7-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덤핑 조사 대상물품 범위 변경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7-21호)</li> </ul> </li> </ul>	
123차	1997.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7-11호)</li> <li>- 산업피해구제업무 현황 (일반 제97-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7-22호)</li> <li>- 미국 및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7-23호)</li> </ul> </li> </ul>	
124차	1997.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7-12호)</li> <li>- 최근의 산업피해 조사신청 동향과 향후 전망 (일반 제97-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판정 (의결 97-24호)</li> </ul> </li> </ul>	
125차	1997.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7-13호)</li> <li>- 비상임위원 전담보좌관제 시행 (일반 제97-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전기다리미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97-25호)</li> <li>-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97-26호)</li> <li>- 미국 및 독일산 히드록시프로필·히드록시메틸 메틸셀룰로스 (평균 점도 3,800~40,000 cps 품목중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용 제외)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97-27호)</li> </ul> </li> </ul>	
126차	1997.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7-14호)</li> <li>- WTO 반덤핑회의 참가결과 보고 (일반 제97-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28호)</li> <li>- 일본산 폴리비닐알콜 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7-29호)</li> </ul> </li> </ul>	
127차	1997.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제97-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7-30호)</li> <li>- 정우통상 및 (주)메이캠의 불공정수출행위(상표권 침해) 제재 건의 (의결 제97-31호)</li> </ul> </li> </ul>	
128차	1997.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7-1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7-32호)</li> </ul> </li> </ul>	
129차	1998.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8-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8-1호)</li> </ul> </li> </ul>	
130차	1998.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8-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중국 및 프랑스산 전기다리미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 (의결 제98-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31차	1998.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98-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8-3호)</li> <li>- 일본산 폴리비닐알콜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98-4호)</li> </ul> </li> </ul>	
132차	1998.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8-4호)</li> <li>-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PS인쇄판) 덩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 제98-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중국 및 프랑스산 전기다리미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 (의결 제98-5호)</li> </ul> </li> </ul>	
133차	1998.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8-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8-6호)</li> <li>- 일본산 폴리비닐알콜 덩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98-7호)</li> </ul> </li> </ul>	
134차	1998.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8-6호)</li> <li>- 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 덩핑방지 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98-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의구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결 제98-8호)</li> <li>-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PS인쇄판) 덩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의결 제98-9호)</li> <li>- 말련, 인니, 태국산 파티클보드 덩핑 조사개시 여부 결정 (의결 제98-10호)</li> </ul> </li> </ul>	
135차	1998.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피닉스의 불공정수출입행위(수출계약 불이행)제재 건의 (의결 제98-11호)</li> </ul> </li> </ul>	서면의결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36차	1999.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1호)</li> <li>-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 제99-1호)</li> <li>- 말련·인니 및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종결 보고 (일반 제99-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제품 산업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재검토 (의결 제99-1호)</li> <li>- 북한산 일회용라이터 불공정수입행위(원산지 허위표시) 제재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9-2호)</li> </ul> </li> </ul>	
137차	1999.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2호)</li> <li>- 무역위원회 조사관 직무수행강령(안) 보고 (일반 제99-3호)</li> <li>-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추진계획(안) (일반제99-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9-3호)</li> </ul> </li> </ul>	
138차	1999.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3호)</li> <li>- 한·칠레 FTA 산업피해구제분야 협상 대응방향 보고 (일반 제99-5호)</li> <li>-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용에 있어 공익개념에 관한 검토 (일반 제99-6호)</li> <li>-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제3과제 선정 보고 (일반 제99-7호)</li> <li>-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률 재심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99-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델란드산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플레이트(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9-4호)</li> <li>- 미국·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 덤핑방지 관세 부과 재심사 (의결 제99-5호)</li> </ul> </li> </ul>	
139차	1999.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4호)</li> <li>- 99년도 무역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일반 제99-9호)</li> <li>- 산업피해판정유형 분석 보고 (일반 제99-10호)</li> <li>- WTO/유제품 세이프가드 패널 결과 (일반 제99-11호)</li> <li>-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추진현황 보고 (일반 제99-12호)</li> </ul> </li> </ul>	
140차	1999.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5호)</li> <li>- 산업피해구제서비스현장 제정 보고 (일반 제99-13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칠레 FTA 산업피해구제분야 진행현황 보고 (일반 제99-14호)</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 덤핑 및 산업 피해 여부 예비판정 (의결 제 99-6호)</li> </ul> </li> </ul>	
141차	1999.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6호)</li> <li>- 중국과의 산업피해구제분야 협력증진 양해각서(MOU) 체결 보고 (일반 제99-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델란드산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 예비판정 (의결 제99-7호)</li> </ul> </li> </ul>	
142차	1999.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두산상사의 불공정수출입행위(선적서류 허위발행) 제재 건의에 관한 건 (의결 99-8호)</li> </ul> </li> </ul>	서면결의
143차	1999.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산 알루미늄 공관 및 뚜껑 산업피해 조사 관련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9-9호)</li> <li>- (주)두산상사의 불공정수출입행위(선적서류 허위발행) 제재 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9-11호)</li> <li>- 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의구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 (의결 제99-10호)</li> </ul> </li> </ul>	
144차	1999.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99-8호)</li> <li>- 일본산 방적사용복합호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기간 연장조치 보고 (일반 제99-1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덤핑방지관세율 상향조정 건의 (의결 제99-12호)</li> <li>- 마늘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9-13호)</li> </ul> </li> </ul>	
145차	1999.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중국, 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의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9-1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잠정구제 조치 건의여부 결정에 관한 건 (의결 제99-15호)	
146차	1999.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중국, 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의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9-16호)</li> <li>- 대만산 알루미늄 공관 및 뚜껑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의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99-17호)</li> <li>- 일본, 미조바타사의 방적사용복합호제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관련 수출가격 인상 수락건의에 관한 건 (의결 제99-18호)</li> </ul> </li> </ul>	
147차	1999.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99-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소다회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재심사 개시여부 건의 결정 (의결 제99-19호)</li> <li>- 네델란드산 PS인쇄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관련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수락여부 건의 (의결 제99-20호)</li> </ul> </li> </ul>	
148차	2000.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1호)</li> <li>-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 제00-1호)</li> <li>- 산업경쟁력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 (일반 제00-2~4호)</li> <li>·머시닝센터·CM사·대형칼라 TV</li> <li>- 싱가포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 조사기간 연장조치 보고 (일반 제00-5호)</li> <li>- 대만산 알루미늄 공관 및 뚜껑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 조사기간 연장조치 보고 (일반 제00-6호)</li> <li>- 유제품 셰이프가드 WTO 분쟁결과 보고 (일반 제00-7호)</li> </ul> </li> </ul>	
149차	200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 판정 (의결 제00-1호)</li> </ul> </li> </ul>	
150차	2000.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50차	2000.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J Company의 수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여부 판정 (의결 제00-2호)</li> <li>- 대만산 알루미늄 공관 및 뚜껍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의 예비판정 (의결 제00-3호)</li> </ul> </li> </ul>	
151차	2000.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0-4호)</li> <li>-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조치 건의 (의결 제00-5호)</li> </ul> </li> </ul>	
152차	2000.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일반용자전거 및 동 부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개시 여부 결정 (의결 제00-6호)</li> <li>-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 덤핑 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개시여부 건의 결정 (의결 제00-7호)</li> <li>- (주)다진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수출행위 여부 심의 (의결 제00-8호)</li> <li>- 한승전광 대표 박한규의 산업디자인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입·제재 여부 심의 (의결 제00-9호)</li> </ul> </li> </ul>	
153차	2000.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개시여부 건의 결정 (의결 제00-10호)</li> </ul> </li> </ul>	
154차	2000.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중질섬유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의결 제00-11호)</li> <li>- 싱가포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관련 에너지저장 장치 싱가포르의 수출 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여부 건의 결정 (의결 제00-12호)</li> </ul> </li> </ul>	
155차	200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8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의 최종판정 (의결 제00-13호)</li> </ul> </li> </ul>	
156차	2000.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9호)</li> <li>- 싱가포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관련 중국 가격약속제의 진행현황 보고 (일반 제00-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일반용자전거 및 동 부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0-6호)</li> </ul> </li> </ul>	
157차	200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산 셀프복사지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 개시여부의 결정 (의결 제00-15호)</li> </ul> </li> </ul>	
158차	2000.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우려 유무에 대한 판정 (의결 제00-14호)</li> </ul> </li> </ul>	
159차	200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0-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벨브구동장치) 수입 (의결 제00-16호)</li> <li>-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볼베어링) 수입 (의결 제00-17호)</li> <li>- (주)중보화학의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의결 제00-18호)</li> </ul> </li> </ul>	
160차	200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보도코리아의 요실금치료기 원산지 허위표시 및 상표권침해 여부 (의결 제01-1호)</li> <li>- 인도·파키스탄 및 인도네시아산 코우머사(絲)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의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1-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61차	2001.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1-2호)</li> <li>- 산업경쟁력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전기법술, 판유리, 휴대용PC) (일반 제01-1호, 2호, 3호)</li> <li>- 2001년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계획(안) (일반 제01-4호)</li> </ul> </li> </ul>	
162차	200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1-3호)</li> <li>- 2001년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선정(안) (일반 제0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중질섬유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예비판정 (의결 제01-3호)</li> </ul> </li> </ul>	
163차	2000.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1-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화유통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망치 및 곡괭이) 수입여부 심의 (의결 제01-4호)</li> <li>- 마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재검토 (의결 제01-5호)</li> <li>-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우려 유무에 대한 판정 (의결 제01-6호)</li> </ul> </li> </ul>	
164차	2000.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1-5호)</li> <li>- 인도·파키스탄·인도네시아산 코우머(CM)絲의 덤핑수입에 대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절차 종결 보고 (일반 제01-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유무의 조사개시여부 결정(의결 제01-7호)</li> <li>-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자진플레이트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여부 건의 결정 (의결 제01-8호)</li> <li>- 독일산 셸프복사지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 우려 유무에 대한 판정 및 가격약속 수락여부 건의 결정 (의결 제01-9호)</li> </ul> </li> </ul>	
165차	2001.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1-6호)</li> <li>-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01-7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 덤핑 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여부 (의결 제01-10호)</li> <li>- 세영무역 등 4개 업체의 손전등 의장권 침해여부 (의결 제01-11호)</li> </ul> </li> </ul>	
166차	2001.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1-7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안 종결처리 결과 보고 (일반 제01-8호)</li> <li>- 2001년도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추진상황 중간보고 (일반 제01-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 약속 재심사 개시여부 (의결 제01-12호)</li> </ul> </li> </ul>	
167차	2001.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1-8호)</li> <li>-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보고 (일반 제01-10호)</li> <li>-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추진계획 보고 (일반 제01-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예비판정 (의결 제01-13호)</li> </ul> </li> </ul>	
168차	2002.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2-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빅빔의 원산지 허위표시여부(컴퓨터메인보드) (의결 02-1호)</li> <li>- 중국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2호)</li> </ul> </li> </ul>	
169차	200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2-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PS인쇄판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우려 유무에 대한 판정 (의결 제02-3호)</li> <li>- 중국산 일회용라이터 덤핑방지관세율 조정 건의 (의결 제02-4호)</li> </ul> </li> </ul>	
170차	2001.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2-3호)</li> <li>- 산업경쟁력 조사 추진 중간보고 (일반 제02-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시약급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여부 결정 (의결 제02-5호)</li> <li>- (주)남원무역의 불공정수출행위 건 (의결 제02-6호)</li> <li>- (주)인클라인의 불공정수입행위 건 (의결 제02-7호)</li> </ul> </li> </ul>	
171차	2002.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2-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산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에멀전타입 가격인상약속 종료 재심사 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8호)</li> <li>- (주)남원무역의 불공정수출행위 건 (의결 제02-9호)</li> </ul> </li> </ul>	
172차	200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2-6호)</li> <li>-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수입의 상표권침해여부 조사 중간보고 (일반 제02-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10호)</li> </ul> </li> </ul>	
173차	2002.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2-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 인상약속 종료재심사 (의결 제02-11호)</li> <li>- 중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12호)</li> </ul> </li> </ul>	
174차	2002.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2-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타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13호)</li> </ul> </li> </ul>	
175차	2002.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2-10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백시멘트의 덩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2-14호)</li> <li>-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수입의 상표전용사용권 침해여부 (의결 제02-15호)</li> <li>- (주)아이십스인터내셔널 및 (주)그레이스인터내셔널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만보계) 수입 행위건 (의결 제02-16호)</li> </ul> </li> </ul>	
176차	2002.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2-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백시멘트수입으로 인한 덩핑률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에 따른 미소마진덤핑률업체의 조사 종결여부판정 (의결 제02-17호)</li> <li>-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18호)</li> </ul> </li> </ul>	
177차	2002.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2-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독일·폴란드 및 프랑스산 2-에틸헥실알콜 덩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19호)</li> <li>-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덩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20호)</li> <li>- 중국산 백시멘트수입으로 인한 덩핑률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예비판정에 따른 미소 마진 덩핑률업체의 조사 종결여부 판정 (의결 제02-21호)</li> </ul> </li> </ul>	
178차	2002.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2-13호)</li> <li>- 2002년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중간보고 (일반 제02-1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우신트레이딩의 수출입질서저해행위 여부 결정 (의결 제02-22호)</li> </ul> </li> </ul>	
179차	2002.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2-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덩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23호)</li> </ul> </li> </ul>	
180차	2001.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2-16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신규공급자 재심 최종판정 (의결 제02-24호)</li> <li>- 중국산 백시멘트 덩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의결 제02-25호)</li> <li>- (주)우신트레이딩의 수출입질서저해행위여부 결정 (의결 제02-26호)</li> </ul> </li> </ul>	
181차	2002.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정기 제02-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 조사개시 여부 결정 (의결 제02-27호)</li> <li>- 일본산 폴리비닐알콜 재심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28호)</li> <li>-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 재심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29호)</li> <li>- 휴대용손전등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결정 (의결 제02-30호)</li> </ul> </li> </ul>	
182차	200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2-18호)</li> <li>- 2002년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최종보고 (일반 제02-1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재심사 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2-31호)</li> <li>- 대만산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에멀전타입 종료재심사 결정 (의결 제02-32호)</li> <li>- 두부·두유제조기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결정 (의결 제02-33호)</li> </ul> </li> </ul>	
183차	2002.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2-2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덩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2-34호)</li> </ul> </li> </ul>	
184차	2003.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3-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독·폴·프 2-에틸헥실알콜의 덩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3-1호)</li> <li>- 살서제 및 살충제의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 제03-2호)</li> </ul> </li> </ul>	
185차	2003.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및 인니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3-3호)</li> <li>- 건강매트 제조방법관련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3-4호)</li> </ul> </li> </ul>	
186차	2003.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니케이, 쇼와덴코, 스미토모사의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여부 결정 (의결 제03-5호)</li> <li>- 휴대폰용 목걸이줄 제조방법관련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3-6호)</li> <li>- 휴대용 손전등 수출관련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결정 (의결 제03-7호)</li> </ul> </li> </ul>	
187차	2003.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3-8호)</li> <li>-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의 덤프방지관세부과 종료시 재발가능성유무 판정 (의결 제03-9호)</li> <li>- 옥매트 제조방법관련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3-10호)</li> </ul> </li> </ul>	
188차	2003.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3-11호)</li> <li>- 벨기에·스페인 및 이태리산 파티클보드의덤프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3-12호)</li> </ul> </li> </ul>	
189차	2003.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규산나트륨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여부 결정 (의결 제03-13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3-14호)	
190차	2003.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타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 종결여부 결정 (의결 제03-15호)</li> <li>- 휴대용 손전등 수출관련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결정 (의결 제03-16호)</li> </ul> </li> </ul>	
191차	2003.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3-17호)</li> <li>- 중국산 차야황산소다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3-18호)</li> </ul> </li> </ul>	
192차	200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3-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6축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 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결정 (의결 제03-19호)</li> <li>-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여부 결정 (의결 제03-20호)</li> <li>- 원터치텐트 및 텐트가방의 수출입관련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결정 (의결 제03-21호)</li> </ul> </li> </ul>	
193차	2003.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3-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3-22)</li> </ul> </li> </ul>	
194차	2003.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3-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유무에 대한 판정 (의결 제03-23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의 덤프방지관세부와 종료시 덤프수입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유무에 대한 판정(의결 제03-24호)</li> <li>- 싱가포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의 덤프방지관세부와 및 가격약속 종료시 덤프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유무에 대한 판정 (의결 제03-25호)</li> </ul>	
195차	2003.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규산나트륨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3-26호)</li> <li>- 옥매트 제조방법관련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 제03-27호)</li> </ul> </li> </ul>	
196차	2003.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3-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3-28)</li> <li>-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칼린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li> </ul> </li> </ul>	
197차	2003.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3-1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3-23호)</li> </ul> </li> </ul>	
198차	2004.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4-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6축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유무 조사 종결 여부결정 (의결 제04-1호)</li> <li>- 벨기에·스페인 및 이태리산 파티클보드의 덤프 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4-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199차	2004.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지의 덤핑수입사실 및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4-3호)</li> </ul> </li> </ul>	
200차	2004.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도금 및 세척장비 수출관련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여부 결정 (의결 제04-4호)</li> </ul> </li> </ul>	
201차	2004.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수입사실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4-5호)</li> <li>-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4-6호)</li> </ul> </li> </ul>	
202차	2004.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4-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스페인 및 이태리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 종결여부 결정 (의결 제04-7호)</li> <li>-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4-8호)</li> </ul> </li> </ul>	
203차	2004.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PVC Plate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4-9호)</li> <li>- 일본「산요」사의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 수락여부 건의 결정(의결 제04-10호)</li> </ul> </li> </ul>	
204차	2003.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4-11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05차	2004.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4-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진발전기의 지적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4-12호)</li> <li>-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4-13호)</li> <li>-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4-14호)</li> </ul> </li> </ul>	
206차	2004.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4-15호)</li> </ul> </li> </ul>	
207차	2004.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여부 결정 (의결 제04-16호)</li> </ul> </li> </ul>	
208차	2004.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6축수직다관절 산업용로봇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4-17호)</li> <li>-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4-18호)</li> </ul> </li> </ul>	
209차	2004.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PVC Plate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4-19호)</li> </ul> </li> </ul>	
210차	2004.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PVC Plate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4-20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11차	2004.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1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방식 디스플레이 장치의 지재권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 여부 결정 (의결 제04-21호)</li> </ul> </li> </ul>	
212차	2004.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방식 디스플레이 장치의 지재권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잠정조치 시행여부 결정 (의결 제04-22호)</li> </ul> </li> </ul>	
213차	2004.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4-16호)</li> <li>-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 덤핑방지관세부와 관련 WTO 패널제소 및 행정소송 동향 보고 (일반 제04-1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진발전기의 지적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판정 (의결 제04-23호)</li> </ul> </li> </ul>	
214차	2005.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타타늄 최종판정 (의결 제05-1호)</li> <li>- PS인쇄판 최종판정 (의결 제05-2호)</li> </ul> </li> </ul>	
215차	200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터치 텐트 및 텐트가방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판정 (의결 제05-3호)</li> <li>- 휴대폰 목걸이줄 제조방법 관련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판정 (의결 제05-4호)</li> </ul> </li> </ul>	
216차	2005.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 재심사 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5-5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17차	2005.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PVC Plate 덤핑수입사실 및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유보) (의결 제05-6호)</li> <li>- 일본산 6축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5-7호)</li> </ul> </li> </ul>	
218차	2004.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PVC Plate 덤핑수입사실 및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5-6호)</li> </ul> </li> </ul>	
219차	2005.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PDP)방식 디스플레이 장치 지재권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종결 및 잠정조치 해제여부 판정 (의결 제05-8호)</li> </ul> </li> </ul>	
220차	2005.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7호)</li> <li>- 인니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 덤핑방지관세부와 관련 WTO패널제소 및 행정소송동향보고 (일반 제05-1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관련 검토사항 보고 (일반 제05-2호)</li> <li>- 2005년도 서울무역구제 국제세미나 준비현황보고 (일반 제05-3호)</li> </ul> </li> <li>● 의결안건 없음</li> </ul>	
221차	2005.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미국산 리튬 1차전지 덤핑방지관세부와 조치에 대한 상황변동 재심 (의결 제05-9호)</li> <li>- 자전거부품 및 정비공구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결정 (의결 제05-10호)</li> <li>- 자전거 변속기 부품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5-11호)</li> <li>- 자전거 프레임 및 연결부재 부품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5-1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22차	2005.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도자기질타일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5-13호)</li> </ul> </li> </ul>	
223차	200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주병 의장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5-14호)</li> </ul> </li> </ul>	
224차	2005.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섀넵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5-15호)</li> <li>- 일본산 6축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사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05-16호)</li> </ul> </li> </ul>	
225차	2005.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 덤프수입 사실 및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5-17호)</li> <li>- 염산젠택타빈(항암제의약품)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의결 제05-18호)</li> </ul> </li> </ul>	
226차	2005.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5-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프수입사실 및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05-19호)</li> <li>- 브랜드 술병 의장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 제05-20호)</li> </ul> </li> </ul>	
227차	2005.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5-1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프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 제05-21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부품 및 정비공구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판정 (의결 제05-22호)</li> <li>- 자전거 변속기 부품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판정 (의결 제05-23호)</li> <li>- 자전거 프레임 및 연결부재 부품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판정 (의결 제05-24호)</li> </ul>	
228차	200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1호)</li> <li>- 『무역위원회 예규 덤핑률 조사 실무지침』 개정보고 (일반 제06-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썬캡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제2006-1호)</li> </ul> </li> </ul>	
229차	2006.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자동차가이드출판청기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6-2호)</li> <li>- 미국·중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6-3호)</li> </ul> </li> </ul>	
230차	2006.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산젼시타빈(항암제 원료) 및 관련약품에 관한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조치 시행여부 결정 (제2006-4호)</li> </ul> </li> </ul>	
231차	2006.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6-5호)</li> <li>-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 덤핑수입사실 및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제2006-6호)</li> </ul> </li> </ul>	
232차	2006.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자동차가이드출판청기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제2006-7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 유한양행등의 염산젼시타빈(항암제의약품)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여부 결정 (제2006-8호)	
233차	2006.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중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제2006-9호)</li> <li>-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6-10호)</li> <li>-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WTO패널 이행보고서(안) (제2006-11호)</li> </ul> </li> </ul>	
234차	2006.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 건전지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결정 (제2006-12호)</li> <li>- FM 트랜스미터(송신기) 관련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6-13호)</li> <li>- 에스보드(Ess-Board) 특허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제2006-14호)</li> </ul> </li> </ul>	
235차	2006.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6-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TY최종판정(제2006-15호)</li> </ul> </li> </ul>	
236차	2006.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자동가이드휠펀칭기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6-16호)</li> <li>-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결정 (제2006-17호)</li> <li>- 신평제약등의 염산젼시타빈 특허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최종판정 (제2006-18호)</li> <li>- 유한양행등의 염산젼시타빈 특허권침해에 대한불공정무역행위여부 최종판정 (제2006-19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s-board 특허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최종판정 (제2006-20호)</li> <li>- (주)유켄글로벌의 수출입질서저해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6-21호)</li> </ul>	
237차	2006.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06-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중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제2006-22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절차 간소화 방안(제2006-23호)</li> </ul> </li> </ul>	
238차	2006.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06-11호)</li> <li>- WTO규범위반사건 조사제도 운영방향 (일반 제06-2호)</li> <li>-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백상지에 대한 WTO 패널 이행결과보고 (일반 제06-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 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 개정(안) 및 덤핑률 실무지침 개정(안) (제2006-24호)</li> <li>- 에스보드(Ess-Board)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구제4-1-2006-3호) 관련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006-25호)</li> </ul> </li> </ul>	
239차	2007.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1호-정기)</li> <li>- FM 트랜스미터(송신기) 관련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제2007-1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캐나다·뉴질랜드산 라이너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7-1호)</li> <li>-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결정 (제2007-2호)</li> <li>- (주)유켄글로벌의 수출입질서저해등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결정 (제2007-3호)</li> </ul> </li> </ul>	
240차	2007.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2호-정기)</li> <li>- 대두유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전 쟁점사항보고 (제2007-2호-일반)</li> <li>- FM트랜스미터 특허권침해 조사중지 (제2007-3호-일반)</li> <li>- 무역위원회 20주년 행사계획(제2007-4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켄글로벌의 수출입질서저해행위 여부 판정(제2007-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41차	2007.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3호-정기)</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제2007-5호)</li> </ul> </li> </ul>	
242차	2007.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4호-정기)</li> <li>-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제정보고 (제2007-5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플로트(Float)판유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여부 결정(제2007-6호)</li> <li>- 싱가포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재심사 조사 종결여부 결정 (제2007-7호)</li> <li>-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제2007-8호)</li> <li>- "(주)유켄글로벌의 수출입질서저해행위" 관련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007-9호)</li> </ul> </li> </ul>	
243차	2007.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5호-정기)</li> <li>- 무역위의 지재권침해 조사기능 확대방안 보고 (제2007-6호-일반)</li> <li>- 무역위의 지재권침해 조사기능 확대방안 보고 (제2007-7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제2007-10호)</li> <li>- 미국·캐나다·뉴질랜드산 라이너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제2007-11호)</li> </ul> </li> </ul>	
244차	2007.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6호-정기)</li> <li>- 추잉껌류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제2007-8호-일반)</li> <li>- 코인티슈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제2007-9호-일반)</li> <li>- 가구류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제2007-10호-일반)</li> <li>-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정 보고 (제2007-11호-일반)</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보고 (제2007-12호-일반)</li> <li>- 불공정무역행위감시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보고 (제2007-13호-일반)</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245차	2007.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7호-정기)</li> <li>- 불공정무역행위감시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보고 (제2007-14호-일반)</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중 주심위원제 도입관련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 및 미국산 대두유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7-12호) (신청인 철회요청이 의해 철회)</li> </ul> </li> </ul>	
246차	2007.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8호-정기)</li> <li>- 산업피해구제법개정정보 (제2007-15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플로트(Float)판유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제2007-13호)</li> <li>-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텐레스스틸바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제외여부 결정 (제2007-14호)</li> <li>-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의 덤핑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7-15호)</li> </ul> </li> </ul>	
247차	2007.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9호-정기)</li> <li>- 무역조정기업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 실무 지침 제정보고 (제2007-16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과산화벤조일 반덤핑예비판정(제2007-16호)</li> <li>-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여부 결정(제2007-17호)</li> <li>- 러시아, 미국, 캐나다, 중국 및 인니산 크라프트지의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제2007-18호)</li> <li>-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결정 (제2007-19호)</li> <li>- 추잉껌류 상표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결정 (제2007-20호)</li> <li>- 가구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결정 (제2007-21호)</li> </ul> </li> </ul>	
248차	2007.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10호-정기)</li> <li>- 무역조정기업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 실무지침 제정 보고 (제2007-16호-일반)</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실무지침 일부개정안” (제2007-17호-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에 대한 질문서-</li> <li>* 인니산 백상지 WTO패널 이행관련 동향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제2007-22호)</li> <li>- 코인티슈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결정 (제2007-23호)</li> </ul> </li> </ul>	
249차	2007.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종료재심사 최종판정(산동, 기타덤핑) (제2007-24호)</li> </ul> </li> </ul>	서면결의
250차	2007.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7-11호-정기)</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등에관한규정및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개정 보고 (제2007-18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M송수신기 특허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결정(제2007- 25호)</li> </ul> </li> </ul>	
251차	2008.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1호-정기)</li> <li>- 난연성 알루미늄판넬 제조장치 특허권 침해 조사개시 보고 (제2008-1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8-1호)</li> <li>-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덩핑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제2008-2호)</li> <li>-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WTO패널 이행 조사 보고서(안) (제2008-3호)</li> </ul> </li> </ul>	
252차	2008.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2호-정기)</li> <li>- 스테인레스 강제용접식 플랜지 수출입 질서 저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 보고(제2008-2호-일반)</li> <li>- 차대동력계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보고 (제2008-3호-일반)</li> <li>- 팔목시계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보고 (제2008-4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덩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8-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53차	2008.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제2008-3호-정기)</li> <li>- 음료자동판매기 실용신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보고 (제2008-5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산화벤조일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8-5호)</li> <li>- PET필름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예비판정 (제2008-6호)</li> <li>- 크라프트지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예비판정 (제2008-7호)</li> </ul> </li> </ul>	
254차	2008.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4호-정기)</li> <li>- 적외선 리모컨 수신기용 반도체칩 관련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보고 (제2008-6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및 말레이시아 파티클보드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 개시 결정 (제2008-8호)</li> <li>- 차대동력계의 원산지표시위반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제2008-9호)</li> </ul> </li> </ul>	
255차	2008.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5호-정기)</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결정주체 등에 관한 검토 (제2008-7호-일반)</li> <li>- 중국산타일 상황변동 재심사 조사개시 결정 보고 (제2008-8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목시계의 원산지표시위반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제2008-10호)</li> <li>- 플랜지의 수출입질서저해행위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제2008-11호)</li> </ul> </li> </ul>	
256차	2008.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6호-정기)</li> <li>- 무역위원 워크숍 후속조치 계획 (제2008-9호-일반)</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계획 (제2008-10호-일반)</li> <li>- 조사신청서 간소화 (제2008-11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제2008-12호)</li> <li>-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프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8-13호)</li> <li>-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제2008-1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WTO이행패널 결정이행보고서(안) (제2008-15호)</li> <li>- 남연성 알루미늄 판넬 제조장치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 판정시한 연장 (제2008-16호)</li> </ul>	
257차	2008.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제2008-7-정기)</li> <li>- 지재권침해조사에 있어서 주심위원회 시범운영방안 보고 (제2008-12호-일반)</li> <li>- 뉴싯대케이스 디자인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보고 (제2008-13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연성 알루미늄 판넬 제조장치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판정 (제2008-17호)</li> <li>-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용 반도체칩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종결 여부결정 (제2008-18호)</li> <li>-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WTO패널 이행조사 보고서(안) (제2008-3호)</li> </ul> </li> </ul>	
258차	2008.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8호-정기)</li> <li>- 기 체결된 FTA상 최소부과원칙의 이행관련 보고 (제2008-14호-일반)</li> <li>-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구제수준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제2008-15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8-19호)</li> <li>- 중국·인도산 PET필름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8-20호)</li> <li>- 삼원금속(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결정 (제2008-21호)</li> <li>- 음료자동판매기 실용신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시한 연장 (제2008-22호)</li> </ul> </li> </ul>	
259차	2008.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9호-정기)</li> <li>- 신청철회에 대한 검토보고 (제2008-16호-일반)</li> <li>-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개정보고 (제2008-17호-일반)</li> <li>-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보고 (제2008-18호-일반)</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보고 (제2008-19-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및 말레이시아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예비판정 (제2008-23호) - 두레마을(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제2008-24호)	
260차	2008.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10호-정기)</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레마을(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제2008-24호)</li> <li>-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상황변동재심사 최종판정(제2008-25호)</li> </ul> </li> </ul>	재심의
261차	2008.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11호-정기)</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제2008-26호)</li> <li>- 미국산 아디프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결정 (제2008-27호)</li> <li>- 뉴싯대케이스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판정 (제2008-28호)</li> <li>- 거인식품(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결정 (제2008-29호)</li> </ul> </li> </ul>	
262차	2008.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8-12호-정기)</li> <li>- 무역위원회 소관 규정 및 지침 개정계획 (제2008-20호-일반)</li> <li>-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실무지침 전면개정보고 (제2008-21호-일반)</li> <li>- 덤핑 조사 실무지침 전면개정 보고 (제2008-22호-일반)</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개정 (제2008-23호-일반)</li> <li>- 환율이 무역구제에 미치는 영향보고 (제2008-24호-일반)</li> <li>-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심의규정 개정 (제2008-25호-일반)</li> <li>-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실무 지침개정 (제2008-26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자동판매기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판정 (제2008-30호)</li> </ul> </li> </ul>	
263차	2009.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9-1호-정기)</li> <li>- 무역위원회 소관 규정 및 지침 2차 개정계획 보고 (제2009-1호-일반)</li> <li>- 무역구제조치후 산업경쟁력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2009-2호-일반)</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 베어링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여부 검토보고서 (제2009-3호-일반)	
264차	2009.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9-2호-정기)</li> <li>- 산업피해구제수준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 (제2009-4호-일반)</li> <li>-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및 지재권 보호 강화방안 보고 (제2009-5호-일반)</li> <li>- 서울국제포럼 개최계획 (제2009-6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제2009-1호)</li> </ul> </li> </ul>	
265차	2009.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제2009-3호-정기)</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제2009-2호)</li> <li>-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의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종료 재심사 개시여부 의견 결정(제2009-3호)</li> <li>- (주)좋은시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제2009-4호)</li> </ul> </li> </ul>	
266차	2009.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9-4호-정기)</li> <li>- 부스바 가공장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보고 (제2009-7호-일반)</li> <li>- 보조금 관련 무역조사실 조사역량 강화계획 (제2009-8호-일반)</li> <li>-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협의 요청시 처리방안 (제2009-9호-일반)</li> </ul> </li> </ul>	
267차	2009.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9-5호-정기)</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칼린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제2009-5호)</li> <li>-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개시 여부 의견 결정 (제2009-6호)</li> <li>- (주)제주돈누리포크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관련 무역피해여부결정 (제2009-7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68차	2009.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9-6호-정기)</li> <li>- 오토바이 부품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보고 (제2009-10호-일반)</li> <li>- 200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계획 보고 (제2009-11호-일반)</li> <li>-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시 검토 기준 (제2009-12호-일반)</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어링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제2009-8호)</li> </ul> </li> </ul>	
269차	2009.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제2009-7호-정기)</li> <li>- 2009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결과보고 (보고-제2009-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개시 여부 의견 결정 (의결-제2009-9호)</li> </ul> </li> </ul>	
270차	2009.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09-8호)</li> <li>- 로킹 플레이어 및 로킹-C 클램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보고 (보고-제2009-14호)</li> <li>-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여부 검토 (보고-제2009-15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침해 조사 관련 사전 의견청취 및 출석 제도 운영에 대한 보고 (보고-제2009-1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스바 가공장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09-10호)</li> </ul> </li> </ul>	
271차	2009.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09-9호)</li> <li>- 이동형 샤워의자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보고 (일반-제2009-17호)</li> <li>- 낚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보고 (일반-제2009-18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주심위원 수당지급 및 관련규정 개정(안) 보고 (일반-제2009-1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동간고등어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09-11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72차	2009.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09-10호)</li> <li>- 팔묵시계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보고 (일반-제2009-20호)</li> <li>- 한·인도 CEPA 이행을 위한 산업피해구제법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 (일반-제2009-2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칼린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09-12호)</li> <li>- 오토바이부품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제2009-13호)</li> </ul> </li> </ul>	
273차	2009.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09-11호)</li> <li>- 제6차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 결과보고 (일반-제2009-2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의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09-14호)</li> <li>-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09-15호)</li> </ul> </li> </ul>	
274차	201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1호)</li> <li>- 면생리대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0-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낚시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0-1호)</li> </ul> </li> </ul>	
275차	20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2호)</li> <li>- 산업피해구제수준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보고 (일반-제2010-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0-3호)</li> <li>- 로킹 플라이어 및 로킹 C-클램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0-4호)</li> <li>- 팔묵시계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제2010-5호)</li> </ul> </li> </ul>	
276차	2010.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3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형 사위 의사 특허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0-6호)</li> <li>-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가공사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0-7호)</li> </ul> </li> </ul>	
277차	2010.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4호)</li> <li>- 낚시대 케이스 디자인권침해물품 확인 조사개시보고 (일반-제2010-4호)</li> <li>- 스타킹, 모자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0-5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보고 (일반-제2010-6호)</li> <li>- 제1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결과 보고 (일반-제2010-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목시계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0-8호)</li> <li>-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여부 결정 (의결-제2010-9호)</li> </ul> </li> </ul>	
278차	2010.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개시 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0-10호)</li> <li>- 면 생리대 실용신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여부 결정 (의결-제2010-11호)</li> <li>- “로킹 플라이어 및 로킹 C-클램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의결-제2010-12호)</li> </ul> </li> </ul>	
279차	2010.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6호)</li> <li>- 가방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0-8호)</li> <li>- 레이저 프린터감광드럼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0-9호)</li> <li>- 팔목시계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0-10호)</li> <li>- 척추교정용 운동기구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0-11호)</li> <li>- 2010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결과 보고 (일반-제2010-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차야황산소다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0-13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제2010-14호)	
280차	2010.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제2010-15호)</li> <li>-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조사개시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0-16호)</li> <li>- 뉴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물품 확인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제2010-17호)</li> <li>- 척추교정용 운동기구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종결여부 결정 (의결-제2010-18호)</li> </ul> </li> </ul>	
281차	2010.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8호)</li> <li>- 팔목시계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0-13호)</li> <li>- 반덤핑 피해유형 중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관련 무역위 실무지침 개정보고 (일반-제2010-14호)</li> <li>- 반덤핑 조치에 대한 종료재심시 검토기준 보고 (일반-제2010-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킹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0-19호)</li> <li>- 가방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0-20호)</li> <li>- 팔목시계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0-21호)</li> <li>- 모자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종결여부 결정 (의결-제2010-22호)</li> </ul> </li> </ul>	
282차	201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9호)</li> <li>- 무역위원회 의결서 서명시스템 구축추진 보고 (일반-제2010-16)</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제2010-23)</li> </ul> </li> </ul>	
283차	2010.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10호)</li> <li>- 척추후굴 복원술용 풍선카테터 특허권침해 조사개시 결정보고 (일반-제2010-17호)</li> <li>-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일반-제2010-18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결정 (의결-제2010-24호)</li> <li>- 인도네시아·중국 백상지의 덤핑 방지관세 및 약속의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0-25호)</li> </ul> </li> </ul>	
284차	2010.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11호)</li> <li>- 제11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결과보고 (일반-제2010-1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상황변동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0-26호)</li> <li>- 태국산 파티클보드 상황변동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0-27호)</li> <li>- 팔목시계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제2010-28호)</li> <li>- 레이저 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여부 결정 (의결-제2010-29호)</li> <li>-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0-30호)</li> <li>- (주)너트클럽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0-31호)</li> </ul> </li> </ul>	
285차	2010.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0-12호)</li> <li>- 핵산추출시스템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0-20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제재조치 운영지침(안) 제정 보고 (일반-제2010-2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제2010-32호)</li> </ul> </li> </ul>	
286차	201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1호)</li> <li>-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중지 보고 (일반-제2011-1호)</li> <li>- 덤핑율 및 산업피해율 산정방법 보고 (일반-제2011-2호)</li> <li>- 2011년도 무역조사실 업무계획 보고 (일반-제2011-3호)</li> </ul> </li> </ul>	
287차	201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제2011-1호)</li> </ul> </li> </ul>	
288차	2011.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1-2호)</li> <li>- 중국·싱가폴 및 일본산 초산에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1-3호)</li> <li>-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 (의결-제2011-4호)</li> </ul> </li> </ul>	
289차	201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4호)</li> <li>- 안경태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직권조사 결정 보고 (일반-제2011-5호)</li> <li>- 미 월풀사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동향 보고 (일반-제2011-6호)</li> </ul> </li> </ul>	
290차	2011.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1-5호)</li> <li>-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106호)</li> <li>-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의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1-7호)</li> <li>-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1-8호)</li> <li>- 핵산추출시스템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1-9호)</li> </ul> </li> </ul>	
291차	2011.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6호)</li> <li>- 2011년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결과 보고 (일반-제2011-7호)</li> <li>- 산업피해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보고 (일반-제2011-8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292차	201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7호)</li> <li>- 집속이온빔장치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1-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1-10호)</li> <li>- 안경테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에 대한 조사불개시 결정 (의결-제2011-11호)</li> </ul> </li> </ul>	
293차	2011.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8호)</li> <li>-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2011-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의결-제2011-12호)</li> <li>- 가정용 두유두부제조기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1-13호)</li> <li>-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무역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의결-제2011-14호)</li> </ul> </li> </ul>	
294차	2011.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9호)</li> <li>-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1-11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보고(일반-제2011-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이저 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제2011-15호)</li> <li>- 안경테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제2011-16호)</li> </ul> </li> </ul>	
295차	2011.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10호)</li> <li>- 중소기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개선방안 보고 (일반-제2011-13호)</li> <li>- 한-EU FTA 발효이후 수출입 모니터링 결과 보고 (일반-제2011-1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296차	2011.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11호)</li> <li>-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원'관련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 보고 (일반-제2011-1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의결-제2011-17호)</li> <li>- 안경테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1-18호)</li> </ul> </li> </ul>	
297차	2011.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1-12호)</li> <li>- 반덤핑 조사개시 절차 개선방안 보고 (일반-제2011-1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속이온빔장치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여부 결정 (의결-제2011-19호)</li> </ul> </li> </ul>	
298차	2012.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1호)</li> <li>- 팔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2-1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 관련 신청 및 조사 관련 비용의 부과에 관한 검토 보고 (일반-제201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2-1호)</li> <li>-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여부 결정(의결-제2012-2호)</li> <li>-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여부 결정 (의결-제2012-3호)</li> <li>- 반덤핑 조사개시 절차 개선방안(의결-제2012-4호)</li> </ul> </li> </ul>	
299차	2012.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2호)</li> <li>- 모피의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2-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캐나다산 크라프트지의 덤핑방지관세 종료 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2-5호)</li> <li>- 집속이온빔장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2-6호)</li> <li>-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여부 결정 (의결-제2012-7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300차	2012.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와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2-8호)</li> <li>- LED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여부 결정 (의결-제2012-9호)</li> </ul> </li> </ul>	
301차	2012.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부와 종료재심사 종결여부 결정 (의결-제2012-10호)</li> </ul> </li> </ul>	
302차	201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4호)</li> <li>- LCD모니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보고 (일반-제2012-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결정 (의결-제2012-11호)</li> </ul> </li> </ul>	
303차	2012.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의 덤핑방지관세 종료 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2-12호)</li> <li>-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2-13호)</li> <li>- 팔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2-14호)</li> </ul> </li> </ul>	
304차	2012.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6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2-15호)</li> <li>-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제2012-16호)</li> </ul> </li> </ul>	
305차	2012.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7호)</li> <li>- 지갑 및 가방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2-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피의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2-17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306차	2012.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제2012-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번영식품농축산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18호)</li> <li>- LCD모니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일부 종결여부 결정 (의결-제2012-19호)</li> </ul> </li> </ul>	
307차	2012.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9호)</li> <li>-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칼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2-6호)</li> <li>-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덤핑방지조치의 종료 재심사 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2-7호)</li> <li>- (주)영동에이스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조사종결 보고 (일반-제2012-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창북분자영농조합법인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0호)</li> <li>- 리트머스화학(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1호)</li> </ul> </li> </ul> <p>[ 9월 신규 신청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에프엔아이코리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2호)</li> <li>- (주)한방명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3호)</li> <li>- LCD모니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구제 4-1-2012 -1,2) 종결여부 결정 (의결-제2012-24호)</li> </ul>	
308차	2012.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10호)</li> <li>- DB암호화솔루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2-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플레르드카카오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4호)</li> <li>-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판정 (의결-제2012-25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309차	2012.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11호)</li> <li>-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2-10호)</li> <li>- (주)에스더블유씨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조사종결 보고 (일반-제2012-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세광필터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6호)</li> <li>- (주)이건만에이에앤에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7호)</li> <li>- (주)유레카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8호)</li> <li>- (주)청솔육가공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2-29호)</li> <li>- 지갑 및 가방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2-30호)</li> </ul> </li> </ul>	
310차	2012.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2-12호)</li> <li>-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의 종료 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2-12호)</li> </ul> </li> </ul>	
311차	2013.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1호)</li> <li>-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 덤핑방지관세 조사개시 결정보고 (일반-제2013-1호)</li> <li>-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3-2호)</li> <li>-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3-3호)</li> <li>- 음향증폭기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3-4호)</li> <li>- 음향증폭기 품질 등의 거짓표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3-5호)</li> </ul> </li> </ul>	
312차	2013.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2호)</li> <li>- 반덤핑 조사기법의 실효성 강화방안 보고 (일반-제2013-6호)</li> </ul> </li> </ul>	
313차	2013.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제2013-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제2013-1호)</li> <li>- DB암호와 솔루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3-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314차	2013.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4호)</li> <li>- 코팅장갑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3-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호)</li> <li>- 방적기계용 베어링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4호)</li> <li>- 와인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5호)</li> </ul> </li> </ul>	
315차	2013.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5호)</li> <li>- 등산복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3-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화콜린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제2013-6)</li> <li>- OPP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제2013-7호)</li> </ul> </li> </ul>	
316차	2013.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6호)</li> <li>- 코팅장갑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중지 보고 (일반-제2013-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 여부 결정 (의결-제2013-9호)</li> <li>- 음향증폭기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 여부 결정 (의결-제2013-10호)</li> <li>- 음향증폭기 품질 등의 거짓표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 여부 결정 (의결-제2013-11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12호)</li> <li>- 냉장고부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13호)</li> </ul> </li> </ul>	
317차	2013.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7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개정 (일반-제2013-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컨부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1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산화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15호)</li> <li>- 스포츠용신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16호)</li> <li>- 스포츠용신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17호)</li> <li>-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3-18호)</li> </ul>	
318차	2013.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8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일부 개정 (일반-제2013-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19호)</li> <li>- 등산복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제2013-20호)</li> <li>-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3-21호)</li> <li>- 음향증폭기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3-22호)</li> <li>- 음향증폭기 품질 등의 거짓표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제2013-23호)</li> <li>- 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제2013-24호)</li> </ul> </li> </ul>	
319차	2013.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9호)</li> <li>-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3-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25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26호)</li> <li>- 석유화학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27호)</li> <li>- 코팅장갑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종결여부 결정 (의결-제2013-28호)</li> </ul> </li> </ul>	
320차	2013.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10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모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29호)</li> <li>- 페인트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0호)</li> <li>- 판유리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1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2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3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4호)</li> </ul> </li> </ul>	
321차	2013.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제2013-35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6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7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38호)</li> <li>- 등산복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의결-제2013-39호)</li> <li>- OPP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제2013-40호)</li> <li>- DTY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 판정 (의결-제2013-41호)</li> </ul> </li> </ul>	
322차	2013.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12호)</li> <li>-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3-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산복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의결-제2013-42호)</li> <li>- 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43호)</li> <li>- 기초용화장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44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레스화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45호)</li> <li>- 골프웨어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46호)</li> </ul>	
323차	2013.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3-13호)</li> <li>-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보고(일반-제2013-1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프링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47호)</li> <li>- 여성의류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3-48호)</li> </ul> </li> </ul>	
324차	2014.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1호)</li> <li>-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4-1호)</li> <li>-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재심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4-2호)</li> <li>- 무역위원회 2013년 개최 실적 및 2014년 계획</li> </ul> </li> </ul>	
325차	2014.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2호)</li> <li>- 레깅스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4-3호)</li> <li>-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4-4호)</li> <li>- 중국산 합판의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4-5호)</li> <li>- 중국산 도자기질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4-6호)</li> <li>-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4-7호)</li> <li>-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li> </ul> </li> </ul>	
326차	2014.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3호)</li> <li>- 무역위원회 정책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li> <li>-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참석 결과 보고</li> <li>- 제325차 무역위원회 결정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진행상황 보고</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327차	2014.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4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원목재(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1호)</li> <li>- (주)동보수산무역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2호)</li> <li>- 일본산 두꺼운 PET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판정 (의결 제2014-3호)</li> <li>- 미국·말련·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판정 (의결 제2014-4호)</li> </ul> </li> </ul>	
328차	2014.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5호)</li> <li>- 말련·태국·인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2014-8호)</li> <li>-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행사 계획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대원스포츠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5호)</li> <li>-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 제2014-6호)</li> <li>-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 제2014-7호)</li> </ul> </li> </ul>	
329차	2014.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6호)</li> <li>- 자동차용 LED 조명램프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2014-9호)</li> <li>- 자동차용 LED 조명램프 디자인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2014-10호)</li> <li>-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행사 결과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깅스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의결 제2014-8호)</li> <li>- 일본산 공기압밸브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판정 (의결 제2014-9호)</li> </ul> </li> </ul>	
330차	2014.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7호)</li> <li>-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2014-11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후속조치 계획보고</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연어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10호)</li> <li>- 레깅스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 제2014-11호)</li> <li>-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 최종판정 (의결 제2014-12호)</li> </ul> </li> </ul>	
331차	2014.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8호)</li> <li>- 초미립자분무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2014-12호)</li> <li>- 레이저 프린터 감광드럼 관련 행정소송 결과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교환기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13호)</li> <li>- 클렌징비누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14호)</li> <li>- 마스크팩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15호)</li> <li>-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의결 제2014-16호)</li> <li>-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 제2014-17호)</li> <li>- 일본산 두꺼운 PET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 제2014-18호)</li> </ul> </li> </ul>	
332차	201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두꺼운 PET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 제2014-19호)</li> </ul> </li> </ul>	
333차	2014.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10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밸브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20호)</li> <li>- 안경테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21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22호)</li> <li>- 장갑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23호)</li> <li>- 남성바지 생산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24호)</li> <li>-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재판정 (의결 제2014-25호)</li> <li>- 말련·태국 및 인도산 POY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 판정 (의결 제2014-26호)</li> <li>- 미국·말련·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 제2014-27호)</li> </ul>	
334차	2014.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11호)</li> <li>- 윤활성첨가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4-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대동요업(점토기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28호)</li> <li>- (주)그린윙(골프화)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29호)</li> <li>- (주)성안조명(조명기구)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0호)</li> <li>- (주)유니바이오(목재펠리트)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1호)</li> <li>- 서진장갑(장갑)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2호)</li> </ul> </li> </ul>	
335차	2014.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제2014-1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린화장품(염모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3호)</li> <li>- (주)대한미트컴퍼니(돈육가공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4호)</li> <li>- (주)레인보우코리아(가방)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5호)</li> <li>- (주)새롬코스메틱(헤어제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6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일통상(주) (티셔츠)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7호)</li> <li>- (주)아룩전기(산업용펌프)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8호)</li> <li>- (주)지이엠(양말)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39호)</li> <li>- (주)화인테크(배전반 및 자동제어반)의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4-40호)</li> </ul>	
336차	2014.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13호)</li> <li>-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재심사 개시 결정 보고 (일반-제2014-15호)</li> <li>-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제2014-16호)</li> </ul> </li> </ul>	
337차	2014.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제2014-14호)</li> <li>- 초미립자 분무기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 보고 (일반-제2014-17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셔츠 생산기업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4-41호)</li> <li>- 선글라스 생산기업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제2014-42호)</li> <li>- 손목시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의결-제2014-43호)</li> <li>- 자동차용 LED 조명램프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종결 여부 결정 (의결-제2014-44호)</li> <li>-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판정 (의결-제2014-45호)</li> <li>- 중국산 도자기질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4-46호)</li> <li>- 대만·중국산 POY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제2014-47호)</li> <li>- 말련·태국 및 인도산 POY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제2014-48호)</li> </ul> </li> </ul>	
338차	2015.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1호)</li> <li>-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결정보고 (일반 2015-1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2015-1호)</li> </ul> </li> </ul>	
339차	2015.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2호)</li> <li>-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보고 (일반 2015-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미립자 분무기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종결여부 결정 (의결 제2015-2호)</li> </ul> </li> </ul>	
340차	2015.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3호)</li> <li>- 윤활성첨가제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보고 (일반 2015-3호)</li> <li>- 동박(전지박)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2015-4호)</li> <li>-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제2015-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2015-3호)</li> </ul> </li> </ul>	
341차	2015.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4호)</li> <li>- 근육강화용 실삼입기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2015-6호)</li> <li>- 제1차 무역구제 진흥 기본계획(일반 2015-7호)</li> <li>-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결과 보고</li> <li>-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계획 보고</li> <li>- 무역위원회 위원장 해외 무역구제기관 방문결과 보고</li> </ul> </li> </ul>	
342차	2015.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 약속제의 수락여부 건의 결정 (의결 제2015-4호)</li> </ul> </li> </ul>	
343차	2015.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6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태정기공(볼트)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5호)</li> <li>-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2015-6호)</li> </ul> </li> </ul>	
344차	2015.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7호)</li> </ul> </li> <li>● 의결안건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유알미디어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7호)</li> <li>- 율활성첨가제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중지여부 판정 (의결 제2015-8호)</li> <li>-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 제2015-9호)</li> </ul> </li> </ul>	
345차	2015.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8호)</li> <li>- 프린터 열 전사 염료시트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2015-8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 판정 (의결 제2015-10호)</li> <li>-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 제2015-11호)</li> </ul> </li> </ul>	
346차	2015.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9호)</li> <li>- 동박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2015-9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 제2015-12호)</li> <li>- 율활성첨가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중지 연장여부 결정 (의결 제2015-13호)</li> <li>- 동박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일부판정 및 일부 조사중지 (의결 제2015-14호)</li> </ul> </li> </ul>	
347차	2015.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10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공기주입장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2015-10호)</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메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15호)</li> <li>- 거원산업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16호)</li> <li>- 엠시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17호)</li> <li>- 필립인텍스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18호)</li> <li>- 세일유압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19호)</li> <li>- 금성하이텍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0호)</li> <li>- 썬니트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1호)</li> <li>- 대원포장기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2호)</li> </ul> </li> </ul>	
348차	2015.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11호)</li> <li>-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2015-11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용산화학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3호)</li> <li>- 영농조합법인 이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4호)</li> <li>- (주)광주전자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5호)</li> <li>- 동경타월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6호)</li> <li>- 주식회사 파워인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7호)</li> </ul> </li> </ul>	
349차	2015.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5-12호)</li> <li>-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개시 (원심) 결정 보고 (일반 제2015-12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목시계 조사건 행정소송 1심 결과보고</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형산업(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8호)</li> <li>- (주)지엠케이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29호)</li> <li>- 후덕한금속(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5-30호)</li> <li>-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 제2015-31호)</li> </ul> </li> </ul>	
350차	2016.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1호)</li> <li>-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보고 (일반 제2016-1호)</li> <li>-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조사 출장결과보고</li> <li>- 한-미 무역구제 테크니컬 미팅 결과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 제2016-1호)</li> <li>- 프린터 열 전사 염료시트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 제2016-2호)</li> <li>- 동박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종결여부 결정(의결 제2016-3호)</li> <li>- 손목시계 조사건 관련 행정소송 후속조치 결정 (의결 제2016-4호)</li> </ul> </li> </ul>	
351차	2016.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2호)</li> <li>-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효과 분석 결과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디디지털(주)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6-5호)</li> </ul> </li> </ul>	
352차	2016.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공기주입장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 제2016-6호)</li> <li>- (주)거인식품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6-7호)</li> <li>- (주)인네이처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6-8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353차	2016.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4호)</li> <li>-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조치(2차 재심)의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 제2016-2호)</li> <li>-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재심)의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 제2016-3호)</li> <li>- 2016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계획</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 (의결 제2016-9호)</li> </ul> </li> </ul>	
354차	2015.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5호)</li> <li>-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보고 (일반 제2016-3호)</li> <li>- 방전가공용 전극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보고 (일반 제2016-4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기능 강화 방안 보고</li> <li>-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결과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 (의결 제2016-10호)</li> <li>- 한미화섬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6-11호)</li> </ul> </li> </ul>	
355차	2016.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6호)</li> <li>-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보고 (일반 제2016-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 제2016-12호)</li> <li>- (주)모닝포크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의결 제2016-13호)</li> </ul> </li> </ul>	
356차	2016.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7호)</li> <li>- 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보고 (일반 제2016-6호)</li> <li>-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에 대한 검토 보고</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여부의 결정 (의결 제2016-14호)</li> <li>-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 제2016-15호)</li> </ul> </li> </ul>	
357차	2016.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6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2016-8호)</li> <li>-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보고 (일반 제2016-7호)</li> <li>- 자석완구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보고 (일반 제2016-8호)</li> <li>- 자석완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보고 (일반 제2016-9호)</li> </ul> </li> </ul>	
358차	2016.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7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2016-9호)</li> <li>- 레이더 디텍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보고 (일반 제2016-11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li> <li>- 미국 무역구제기관 방문 결과보고</li> </ul> </li> </ul>	
359차	2016.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8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10호)</li> <li>- 다중연결 블루투스 마우스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보고 (일반 제2016-12호)</li> <li>- 교환렌즈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보고 (일반 제2016-1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전가공용 전극선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의결 제2016-16호)</li> <li>-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 소위원회 운영 및 구성 (의결 제2016-17호)</li> </ul> </li> </ul>	
360차	2016.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9차 무역위원회 회의록 (정기 제2016-11호)</li> <li>- 손목시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동용 전동차량 특허권 침해 조사종결여부 결정 (의결 제2016-18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건명	비고
361차	2016.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0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2016-12호)</li> <li>- 프린터 열 전자 염료시트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 취소소송 결과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보고(일반 제2016-14호)</li> <li>-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 보고(일반 제2016-15호)</li> </ul> </li> </ul>	
362차	2017.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1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2017-1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개정안 보고(일반 제2017-1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보고(일반 제2017-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 제2017-1호)</li> <li>-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의결 제2017-2호)</li> <li>-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구제 4-1-2016-2, 3, 5, 6) 종결여부 결정(의결 제2017-3호)</li> </ul> </li> </ul>	
363차	2017.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2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2017-2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개정안(일반 제2017-1호)</li> <l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일반 제2017-2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재심 최종판정(의결 제2017-4호)</li> <li>- 중국산 합판 반덤핑 재심 최종판정(의결 제2017-5호)</li> <li>-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의결 제2017-6호)</li> <li>- 자석완구 상표권·서비스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의결 제2017-7호)</li> <li>- 자석완구 디자인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의결 제2017-8호)</li> <li>- 레이더디텍터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의결 제2017-9호)</li> </ul> </li> </ul>	
364차	2017.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3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2017-3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부와 종료재심사 최종판정(의결 제2017-8호)</li> </ul> </li> </ul>	

회차	연·월·일	안 건 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석완구 상표권·서비스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 제2017-9호)</li> <li>- 자석완구 디자인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의결 제2017-10호)</li> <li>- 다중연결 블루투스 마우스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의결 제2017-11호)</li> <li>- 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의결 제2017-12호)</li> </ul>	
365차	2017.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4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2017-4호)</li> <li>- 대만, 태국, UAE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보고(일반 제2017-3호)</li> <li>- 인조네일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보고(일반 제2017-4호)</li> <li>-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보고 (일반 제2017-5호)</li> <li>-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개선방안 검토 보고</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관세부과 예비판정 (의결 제2017-13호)</li> <li>-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결 제2017-14호)</li> </ul> </li> </ul>	
366차	2017.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5차 무역위원회 회의록(정기 제2017-5호)</li> </ul> </li> <li>●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의결 제2017-15호)</li> </ul> </li> </ul>	





## 6-5. 공청회 내역

## ① 반덤핑품목

연번	개최일자	품 목 명	참석국가	비고
1	1989. 5.25	알루미늄시멘트	프랑스	
2	1990.8.30	폴리아크릴아미드	영국, 프랑스, 독일	
3	1991.1.18	폴리아세탈수지(1차)	미국, 일본	
4	1991.2.27	폴리아세탈수지(2차)	미국, 일본	
5	1992.12. 2	볼베어링	태국	
6	1992.12.10	정제인산		
7	1993.7.20	소다회	중국	
8	1993.10.18	PS인쇄판	일본	
9	1994.3.14	유리장섬유	미국, 일본, 대만	
10	1994.11. 1	액체가성소다	중국, 벨기에	
11	1995.5.23	아연괴	중국	
12	1996.8.13	에탄올아민	미국	
13	1996.9. 4	리튬1차전지	일본, 미국	
14	1996.9.23	염화코린		
15	1997.1.28	전기면도기	일본, 독일, 네덜란드, 중국	
16	1997.2.20	소다회	러시아	
17	1997.5.12	H형강	러시아	
18	1997.8.26	일회용포켓형라이터		
19	1997.11. 3	푸르푸릴알콜	중국	
20	1997.11. 7	중질섬유판	말레이시아	
21	1997.12.17	셀프복사지	독일, 영국	
22	1998.5.20	전기다리미	싱가폴, 프랑스	
23	1998.6.11	페로실리코망간	중국	
24	1998.6.15	P.V.A		
25	1998.9.25	PS인쇄판	일본	
26	1999.3.11	유리장섬유	일본	
27	1999.9.15	복합호제		
28	1999.11.10	PS인쇄판	네덜란드	
29	2000.5.17	알칼리망간건전지	중국, 싱가포르	
30	2000.6.14	소다회	중국	

연번	개최일자	품 목 명	참석국가	비고
31	2001.5.23	중질섬유판	말레이시아	
32	2002.2. 4	CD-R	대만	
33	2002.5 .9	H- 형강	러시아	
34	2002.9.26	알칼리망간건전지	중국	
35	2002.10.10	백시멘트	중국	
36	2002.10.24	EVA		
37	2003.2.19	수산화알루미늄	일본	
38	2003.4. 2	일회용포켓형라이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재심
39	2003.6.25	폴리비닐알코올	일본	재심
40	2003.8. 6	페로실리코망간	중국	재심
41	2003.8.27	정보용지 및 백상지	인도네시아, 중국	
42	2003.9.24	알칼리망간건전지	싱가폴, 중국, 일본	재심
43	2004.3.24	차야황산소다	중국	
44	2004.4. 7	스테인레스스틸바	일본	
45	2004.5.12	리튬1차전지		
46	2004.7.14	염화콜린		
47	2004.12.22	이산화티타늄	중국	
48	2005.1. 5	PVC Plate	일 본	
49	2005.1.12	PS인쇄판		재심
50	2005.6.22	산업용로봇	일본	
51	2005.11.23	H형강	러시아	재심
52	2006.3.20	도자기질타일	중국	원심
53	2006.6.26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기공사	말레이시아	원심
54	2006.8.28	자동가이드출판칭기	일본	원심
55	2006.9.18	폴리비닐알콜		원심
56	2006.12.18	정보용지 및 백상지	인도네시아	재심
57	2007.3.12	알칼리망간건전지	싱가폴, 중국, 일본	
58	2007.7. 2	대두유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59	2007.7.27	차야황산소다	중국	
60	2008.1.25	플로트판유리	중국	원심
61	2008.2.27	과산화벤조일		원심
62	2008.4.23	초산에틸	중국, 싱가포르	원심
63	2008.5.28	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	중국	재심

연번	개최일자	품 목 명	참석국가	비고
64	2008.7.9	PET필름	인도	원심
65	2008.7.23	크라프트지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러시아	원심
66	2008.10.22	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		원심
67	2009.1.21	파티클 보드		원심
68	2009.10.28	염화콜린	미국	재심
69	2009.11.4	스테인레스 스틸바	일본, 인도, 스페인	재심
70	2010.1.20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재심
71	2010.5.26	차아황산소다	중국	재심
72	2010.9.15	백상지	인도네시아, 중국	재심
73	2010.11.24	합판	말레이시아	원심
74	2011.1.26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일본	원심
75	2011.2.23	플로트판유리	중국	재심
76	2011.4.20	도자기질 타일	중국	재심
77	2011.6.22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중국	재심
78	2011.12.21	초산에틸	중국, 싱가포르, 일본	재심
79	2012.1.18	크라프트지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러시아	재심
80	2012.2.2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필름	중국,인도	재심
81	2012.4.25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대만,중국	재심
82	2012.9.26	알루미늄 보틀캔	일본	원심
83	2013.4.24	염화콜린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재심
84	2013.6.26	스테인리스스틸바	일본, 인도, 스페인	재심
85	2013.7.24	합판	중국	원심
86	2013.9.13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 (DTY)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재심
87	2013.9.27	폴리프로필렌연신(OPP)필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원심
88	2014.4.24	합판	말레이시아	재심
89	2014.5.22	플로트 판유리		재심
90	2014.7.24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PET) 필름	일본	원심
91	2014.8.28	에탄올 아민	미국	원심
92	2014.10.23	도자기질 타일	중국	재심

연번	개최일자	품 목 명	참석국가	비고
93	2014.10.23	공기압 전송용 밸브	일본	원심
94	2014.11.27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태국, 인도	원심
95	2014.11.27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재심
96	2015.2.28	H형강	중국	원심
97	2015.5.28	초산에틸		재심
98	2015.5.28	초산에틸	인도	원심
99	2015.6.25	PET필름	중국, 인도	재심
100	2015.10.22	침엽수 합판		원심
101	2016.4.28	스테인리스후판	일본	재심
102	2016.6.24	부틸글리콜에테르	미국	원심
103	2016.10.26	합판(말레이시아산)		재심
104	2016.10.26	합판(중국산)		재심
105	2016.11.24	스테인리스스틸바	일본	재심
106	2017.3.17	인쇄옵셋판(중국산)		원심
107	2017.6.16	페로실리코망간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원심

## ② 세이프가드품목

연번	개최일자	품 목 명	참석국가(불참국가)	비고
1	88. 9. 2	세라믹압전착화소자	-	
2	88. 9. 2	앙고라토끼털	-	
3	88.11.14	새우젓	-	
4	89. 9. 4	고추가공제품	-	
5	89.10.20	돼지고기통조림	-	
6	89.10.27	집성운모절연제품	-	
7	89.11. 3	스테아린산	-	
8	89.11.10	초산에틸	-	
9	90. 1.30	L-LDPE 필름	-	
10	90. 6.26	코코아분유	-	
11	90. 9.11	목활저	-	
12	90.12.21	활석분	-	
13	91. 1.11	활석분	-	
14	91. 3.18	팝콘옥수수	-	
15	91. 6.17	당면	-	
16	92. 2.12	PC용 주기판	-	
17	92. 4.23	이썬시개 및 기타 목제품	-	
18	92. 4.28	우산 및 우산틀	-	
19	94. 7. 8	대두박	-	
20	95. 3.13	냉동옥돔	-	
21	95.11.28	대두유	-	
22	96. 8.20	유제품	-	
23	96.12. 2	자전거 및 동 부품	대만, 일본	
24	00. 1.12	마늘	중국	



# 7

## 무역위원회 주관 행사







## 7. 무역위원회 주관 행사

### 7-1. 무역구제 세미나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토론자
1	1989.7.3 14:00~17:30 무역회관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ITC의 산업피해 판정 및 구제 기준</li> <li>미국 ITC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및 조사절차</li> <li>수입개방과 무역위원회 기능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lfred E. Eckes(USITC 위원)</li> <li>William L. Feather (USITC 조사국장)</li> <li>신국환(KTC 상임위원)</li> </ul> -사회 : 김진현 (동아일보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수(KIET 무역정책실장)</li> <li>안충영(중앙대교수)</li> <li>엄영석(외국어대교수)</li> <li>이재욱(KREI국제무역실장)</li> <li>최세영(KFTA이사)</li> <li>홍원탁(서울대 교수)</li> </ul>
2	1990.7.3 14:00~17:50 KOEX 4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위원회 역할과 위상</li> <li>미국의 반덤핑관세제도</li> <li>국내산업의 수입피해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완순(KTC위원장)</li> <li>이제창 (미국 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정갑영(연세대 교수)</li> </ul> - 사회 : 김수동 (KTC 산업조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장)</li> <li>김광두(서강대 교수)</li> <li>이영세(KIET무역연구부장)</li> <li>최세형(KFTA 상무이사)</li> <li>유득환(KTC 무역조사실장)</li> <li>홍원탁(서울대 교수)</li> <li>허신행 (KREI 원장)</li> </ul>
3	1991.7.2 14:00~15:40 KOEX 국제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R협상과 산업피해 구제제도 발전방향</li> <li>반덤핑제도와 산업 피해의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영세(KIET 선임연구원)</li> </ul> - 사회 : 허신행(KREI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lan F. Holmer (미국 Sidely &amp; Austin 소속 변호사)</li> </ul> - 사회 :조경근 (극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세형(KFTA 상무이사)</li> <li>정갑영(연세대 교수)</li> <li>김정수 (KIEP 선임연구위원)</li> <li>채재역(KTC 무역조사실장)</li> <li>이 풍(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li> <li>남종현(고려대 교수)</li> <li>신영무(세종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li> <li>전계목(KTC 상임위원)</li> </ul>
4	1992.7.2 15:00~18:30 KOEX 국제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C의 산업피해판정기준 및 대한민국 덤핑 제소의 현황과 전망</li> <li>우리나라 반덤핑 제도의 발전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win Vermulst (Akin &amp; Gump 소속 벨지움 변호사)</li> </ul> - 사회 : 1부 조경근 (극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희진(미국 변호사)</li> </ul> - 사회 : 2부 허신행 (농촌경제연구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영각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박노형(고려대 교수)</li> <li>이우종(전자공업진흥회이사)</li> <li>박인구(EC주재 상무관)</li> <li>김두식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채 옥(KIET박사)</li> <li>양수길(한국개발원박사)</li> <li>김종환(재무부관세국장)</li> <li>최홍건(KTC산업조사관)</li> </ul>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토론자
5	<b>1993.7.1</b> 15:00~18:3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반덤핑관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전망</li> <li>•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hröder (전 GATT사무국 관세국장)</li> <li>- 사회 : 1부 조경근 (극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li> <li>• 이재욱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무역실장)</li> <li>- 사회 : 2부 김희진(미국변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영세(산업연구원 부원장)</li> <li>• 조남홍(무역협회 전무)</li> <li>• 이기성(KTC 무역조사실장)</li> <li>• 변 형(재무부 관세국장)</li> <li>• 박노형 (고려대 교수)</li> <li>• 원철희(농협 조사부이사)</li> <li>• 김원배(중앙대 교수)</li> <li>• 최홍건(상역국장)</li> </ul>
6	<b>1994.6.28</b> 15:00~18:0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이후의 미국 반덤핑 제도 개편동향</li> <li>•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판정기준 변화 동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nald B. Cameron (미국 Morrison &amp; Foerster 변호사)</li> <li>• Richard D. Boltuck (전미국ITCEconomist, 현 미국Trade Resources Company 연구위원)</li> <li>-사회 : 조대연 (김&amp;장법률사무소 변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경태 (산업연구원)</li> <li>• 김치락(반도체산업협회)</li> <li>• 김희진(충청합동법률사무소)</li> <li>• 최홍건(산업정책국장)</li> <li>• 신유균(관세청과장)</li> </ul>
7	<b>1994.12.6</b> 14:00~17:0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과 UR이후의 반덤핑제도 운용전망</li> <li>• UR이후 캐나다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변화 동향과 조사·판정기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ynn Featherston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조사국장)</li> <li>• 엄인호박사 (캐나다국제무역위원회 선임연구원)</li> <li>- 사회 : 조대연 (김&amp;장법률사무소 변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낙균(산업연구원)</li> <li>• 백우석(동양화학상무)</li> <li>• 서동우 (태평양합동법률 사무소 변호사)</li> <li>• 김희진(충청합동법률사무소)</li> <li>• 한영수(통상산업부국장)</li> <li>• 신유균(관세청과장)</li> </ul>
8	<b>1995.7.7</b> 14:00~17:0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의 산업피해구제 제도 현황과 운용사례</li> <li>• 우리나라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외국제도와 비교연구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ean-Francois Bells (벨지움 변호사)</li> <li>• 박노형 교수(고려대학교)</li> <li>- 사회 : 이경태 (산업연구원부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병선(서울대학교)</li> <li>• 채 욱(KIEP 선임연구원)</li> <li>• 최근식(삼성전자 이사)</li> <li>• 문인곤(섬유산업연합회)</li> <li>• 성효제(무역협회 상무)</li> <li>• 김종희(통상산업부)</li> </ul>
9	<b>1996.7.4</b> 15:00~18:0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현황과 운용사례</li> <li>• WTO체제하에서의 한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발전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n Erdmann (CITT 조사국장)</li> <li>• 장승화 서울대학교수</li> <li>- 사회 : 이경태 (산업연구원부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수(중앙일보 전문위원)</li> <li>• 조대연(김&amp;장변호사)</li> <li>• 채 욱(KIEP 연구위원)</li> <li>• 김동민 (농촌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li> <li>• 성효제(무역협회 상무)</li> <li>• 김종희(통상산업부)</li> </ul>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토론자
10	1997.7.1 15:00~18:0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의 산업피해구제 제도 및 한·EU 협력방안</li> <li>우리나라 반덤핑제도 발전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Neumann (EU집행위 반덤핑국장)</li> <li>김두식변호사</li> <li>- 사회 : 이경태 (산업연구원부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승화(서울대교수)</li> <li>김정수(중앙일보 전문위원)</li> <li>최낙균(산업연구원연구위원)</li> <li>김진희(미국 변호사)</li> <li>박양기(무역협회 이사)</li> <li>김종갑(통상산업부)</li> </ul>
11	1998.7.13 14:00~17:0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일몰재심에 관한 규정과 정책</li> <li>우리 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li> <li>IMF체제하에서의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 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eith Hall (미국 ITC 국제경제과장)</li> <li>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li> <li>채 옥 박사(KIEP 연구위원)</li> <li>- 사회 : 이경태 (산업연구원부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노형(고려대 법대교수)</li> <li>박시룡(매경 논설위원)</li> <li>이상열(삼성경제연구소 고문)</li> <li>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li> <li>신유균(관세청 서울세관)</li> </ul>
12	1998.12.4 14:00~17:0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반덤핑제도 소개 및 운용현황</li> <li>EU 반덤핑제도 및 운용동향</li> <li>WTO협정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반덤핑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Zhang yuqing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조약법률사 사장)</li> <li>Pedro velasco martins (EU집행위 대외관계총국 조사관)</li> <li>박노형(고려대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대연(김&amp;장 변호사)</li> <li>강용선(매경 논설위원)</li> <li>민완기(상공회의소 상무)</li> <li>하명근(산업자원부)</li> </ul>
13	1999.7.1 14:00~17:30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피해구제제도와 경쟁정책과의 조화방안</li> <li>서비스분야 산업피해 구제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승화 교수(서울대 법대 교수)</li> <li>고준성 박사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li> <li>- 사회 : 이영세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 센터 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극제(경희대 교수)</li> <li>박시룡(매경 논설위원)</li> <li>조승제(무역협회 이사)</li> <li>채 옥(KIEP 연구위원)</li> <li>조대연(김&amp;장 변호사)</li> <li>이성재(산업자원부)</li> </ul>
14	2011.7.1 14:00~19:00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 3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해당품목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li> <li>개별피해마진 적용을 위한 조사기법 및 분석 방법연구</li> <li>한중 FTA 에 따른 우리 업계의 피해구제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li> <li>반덤핑 협정상 피해의 누적평가요건의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상철 교수(단국대 무역학과)</li> <li>이장완 회계사 (Lee International)</li> <li>최창환 교수(단국대 무역학과)</li> <li>이재형 교수(고려대 법학대학원)</li> <li>- 사회 : 이환규 교수 (영남대 법학대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세열 회계사(법무법인 태평양)</li> <li>강준하 교수(홍익대 법과대학)</li> <li>최승환 교수(경희대 법학대학원)</li> <li>조영진 교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li> </ul>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토론자
15	2011.12.5 13:30~19: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소적격성 등을 위한 국내산업 범위결정 및 국내외 사례연구</li> <li>• FTA대비 불공정무역 조사법 개정방안</li> <li>•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분석</li> <li>• 공정무역 아이템의 국제마케팅 방안 모색</li> <li>•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기윤 교수(인천대)</li> <li>• 이재민 교수(한양대)</li> <li>• 최창환 교수(단국대), 왕봉안박사과정(단국대)</li> <li>•곽수영 박사(동국대), 유승균 박사(동국대)</li> <li>• 김한성 교수(아주대)</li> <li>- 사회 : 강준하 교수(홍익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훈 사무관(무역위)</li> <li>• 윤성욱 교수(동아대)</li> <li>• 강준하 교수(홍익대)</li> <li>• 이환규 교수(영남대)</li> <li>• 김용대 박사(조세연)</li> <li>• 유예리 박사(법제연)</li> <li>• 박현희 박사(세계농정연구원)</li> <li>• 이서영 박사(백석대)</li> <li>• 윤상철 교수(단국대)</li> <li>• 마재신 교수(이화여대)</li> </ul>
16	2012.6.8 14:30~20:00 (코엑스 3층 Ha홀 E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보조금과 반보조금 현황 및 시사점</li> <li>• FTA 무역구제 조사개시전 사전 협의 규정 대응방향</li> <li>• 인코텀즈 2010의 DAP 규칙에 관한 연구</li> <li>• FTA시대 온라인 저작권 인식과 불법다운로드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li> <li>• 한-중FTA 공산품 관세철폐협상 관련 민감품목 및 관심품목 추정에 관한 연구</li> <li>• 인도의 거시경제변수가 반덤핑 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송자 교수(경남대학교 중국학부)</li> <li>•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li> <li>• 전순환 교수(중부대학교 중국통상학과)</li> <li>- 사회 : 이재형 교수(고려대 법학대학원)</li> <li>• 조원길 교수(남서울대 국제통상학과)</li> <li>• 박윤환 팀장(무역협회)</li> <li>• 김재우 과장(KOTRA)</li> <li>- 사회 : 곽노성 교수(동국대 경제통상학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순자 팀장(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장)</li> <li>• 유희진 교수(안양대학교 국제관계학과)</li> <li>• 정재승 교수(단국대 무역학과)</li> <li>• 조성재 교수(청주대 무역학과)</li> <li>• 전성희 교수(순천대)</li> <li>• 최창환 교수(단국대 무역학과)</li> </ul>
17	2012.11.9 14:00~17:4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li> <li>• 중국이 체결한 FTA 무역구제제도 비교를 통한 한-중 FTA에의 시사점</li> <li>• 반덤핑의 거시경제 결정요인: 중국과 인도 비교</li> <li>- 사회 : 최낙균 부원장(KIEP)</li> <li>• 중소기업 친화적 무역구제제도 운용전략</li> <li>• 로스쿨 출신 인력의 무역구제 전문인력 활용방안</li> <li>•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li> <li>-사회 : 한정택(인하대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원 교수(서울대)</li> <li>• 최송자 교수(경남대)</li> <li>• 최창환 교수(단국대)</li> <li>• 이학노 교수(동국대)</li> <li>• 성재호 교수(성균관대)</li> <li>• 이재형 교수(고려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li> <li>• 신정훈 변호사(김앤장)</li> <li>• 조원길 교수(남서울대)</li> <li>• 김홍원 교수(협성대),</li> <li>• 강준하 교수(홍익대),</li> <li>• 조영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li> </ul>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토론자
18	2013.6.10 13:30~17: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이프가드 조치동향과 주요 쟁점</li> <li>WTO 서비스세이프가드 논의 분석</li> <li>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국내법제와 조화</li> <li>'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제안</li> <li>지재권 침해 물품교역의 국제 규율 : 현황 및 주요 쟁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민호 박사(고려대)</li> <li>손기윤 교수(인천대) - 사회: 광노성 교수(동국대)</li> <li>박덕영 교수(연세대)</li> <li>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li> <li>윤미경 교수(가톨릭대) - 사회: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KIE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문성 교수(고려대)</li> <li>이로리 교수(계명대)</li> <li>강준하 교수(홍익대)</li> <li>조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li> </ul>
19	2013.12.6 14:00~18:00 (서울대학교 국제 대학원 국제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조정지원제도의 법적 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li> <li>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제적 효용과 한계</li> <li>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전과 시사점</li> <li>특히 침해와 국경조치 문제 - 삼성전자 사례와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준하 교수(홍익대)</li> <li>허윤 교수(서강대)</li> <li>이로리 교수(계명대) - 사회: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KIEP)</li> <li>강윤희 변호사 (삼성전자 IP법무팀)</li> <li>황성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li> <li>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li> <li>김성기 변호사 (리인터내셔널) - 사회: 이인실 무역위원회 위원 (청운국제특허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시욱(명지대)</li> <li>이재형(고려대)</li> <li>강윤희 변호사 (삼성전자 IP법무팀)</li> <li>황성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li> <li>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li> <li>김성기 변호사 (리인터내셔널)</li> </ul>
20	2014.5.26 14:00~18:00 (서울대학교 국제 대학원 국제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FTA와 무역구제 (세이프가드규정)</li> <li>FTA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현황 및 쟁점</li> <li>우리나라 FTA 반덤핑규정의 비교분석</li> <li>FTA체제의 무역구제제도 진단과 발전 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기윤 교수(인천대) (세이프가드규정)</li> <li>이효영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li> <li>안민호 박사(고려대)</li> <li>광노성 교수(동국대)</li> <li>유기석 회계사 (삼성KPMG부대표)</li> <li>이병우 상무이사 (한국철강협회)</li> <li>조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사회: 온기운 교수 (송실대, 무역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노성 교수(동국대)</li> <li>유기석 회계사 (삼성KPMG부대표)</li> <li>이병우 상무이사 (한국철강협회)</li> <li>조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li> </ul>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토론자
21	2014.11.21 14:00~18:00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반덤핑 실무의 제도적 쟁점</li> <li>WTO 체제에서의 상계관세조치</li> <li>지식재산권 보호와 국경조치</li> <li>무역구제 실무의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임스 K. 록켓 (중국 화웨이 부사장) - 사회: 아시프 큐레시 교수 (고려대)</li> <li>양광화 교수 (대만 국립정치대학) - 사회: 김준기 교수(연세대)</li> <li>조희경 교수(홍익대) - 사회: 곽노성 교수(동국대)</li> <li>홍영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 사회: 강준하 교수(홍익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진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li> <li>마이클 P. 하우스 변호사 (퍼킨스 코이 로펌)</li> <li>안덕근 교수(서울대, 무역위원)</li> <li>이재민 교수(서울대)</li> <li>토모히코 코바야시 교수 (일본 오타루 대학)</li> <li>유희진 교수(안양대)</li> <li>김성기 변리사(리 인터내셔널)</li> <li>아시프 큐레시 교수(고려대) (법무법인 광장) - 사회: 온기운 교수(송실대, 무역위원)</li> <li>조영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li> <li>제임스 K. 록켓(중국 화웨이 부사장)</li> <li>마이클 P. 하우스 변호사 (퍼킨스 코이 로펌)</li> </ul>
22	2015.6.5 14:00~18:30 (은행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무역구제 시스템의 현재 이슈와 도전</li> <li>WTO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행에 대한 시스템 적인 이슈</li> <li>WTO 시스템에서의 세이프가드 이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한 휴먼(WTO 규범국 국장) - 사회: 박태호 (서울대)</li> <li>이재민 교수(서울대)</li> <li>코니 쿠앙화 양 교수 (국립정치대학, 대만) - 사회: 최낙균 위원 (무역위원회)</li> <li>브라이언 머큐리오 교수 (홍콩중문대학교)</li> <li>안덕근 교수(서울대) - 사회: 허정 교수 (서강대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카 후쿠나가 교수 (와세대, 일본)</li> <li>조영진 교수(이화여자대학교)</li> <li>요카 후쿠나가 교수 (와세대, 일본)</li> <li>서정민 교수(송실대)</li> </ul>
23	2015.11.20 09:00~12:00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이프가드 최신분쟁 사례분석</li> <li>서비스 세이프가드 제도의 필요성 분석 및 전망</li> <li>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동향 및 쟁점 분석</li> <li>미국의 NME에 대한 반덤핑조사시 NV 계산 사례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곽동철 연구원 (서울대 국제대학원)</li> <li>허난이 박사 (고려대 통상법연구센터) - 사회: 안민호 박사 (미래와 세계)</li> <li>이장완 회계사 (김&amp;장 법률사무소)</li> <li>박문구 회계사(삼정 KPM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영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li> <li>선주연 교수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li> </ul>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토론자
24	2016.5.20. 14:00~18:30 (대한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이 무역 구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li> <li>메가FTA 대두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li> <li>뉴노멀 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운용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li> <li>유희진 교수 (안양대)</li> <li>이효영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선영 교수 (숭실대)</li> <li>강문성 교수 (고려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덤핑 조사에서의 에너지비용조정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르조도 사딕호드자예브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li> </ul>	
25	2016.11.11. 09:00~13:00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방향 :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li> <li>최근 해외 무역구제조치 동향과 대응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장완 회계사 (김&amp;장 법률사무소)</li> <li>정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li> <li>진성백 회계사 (법무법인 광장)</li> <li>박문구 회계사 (삼정 KPMG)</li> <li>제현정 박사 (한국무역협회)</li> <li>주현수 변호사 (김&amp;장 법률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기운 교수 (숭실대)</li> </ul>

## 7-2. 서울국제포럼

### ① 200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01.5.24~5.25, 무역센터 대회의실

주 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 운용의 최근 추세와 주요 이슈 (William J. Davey, Illinois대 교수)</li> </ul>	사회 : 박태호(서울대 교수) • 장승화(서울대 교수) • 안덕근(KDI 교수) • 한내희(포스코연구위원) • 조대연(김&장 변호사) • 박노형(고려대 교수) • 김성태(삼정 회계사) • 최 수(현대전자 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과제 (박노형, 고려대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상소기구의 산업피해구제사례 주요이슈 분석 (Debra Steger, WTO Appellate Body, Directo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 산업피해구제기관의 역할 (Jennifer A. Hillman, USITC Commissioner)</li> </ul>	

### ② 200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03.5.22. 10:00~17:00, COEX 그랜드 볼룸
- 주제 : 무역구제의 동향과 전망

주 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역구제 제도의 현황과 향후 발전 (김 열,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li> </ul>	사회 : 박태호(서울대 교수) 사회 : 박노형(고려대 교수) • 장승화(서울대 교수) • 한내희(포스코 연구위원) • 이건호(태평양회계법인) • 안덕근(KDI 교수) • 김무한(한국무역협회 팀장) • 이진환(김&장 법률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의 무역구제제도 (Thinam Jakob, EU집행위통상총국 담당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에 초점을 둔 인도의 무역구제 제도 개요 (M.S.Rao, 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 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체제하에서의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Yong Han, 중국 상무부 부처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무역구제 :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운용 경험 (Diane Mazur, 미 ITC 선임조사관) (Richard Herring, 미 상무성 담당관)</li> </ul>	



## ③ 200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04.5.20(목) 10:00~17:30, COEX 그랜드 볼룸
- 주제 : 무역구제, 각국의 경험과 향후 방향의 모색

주 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현황 (권영수,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노형(고려대 교수)</li> <li>• 이진환 (김&amp;장 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 김성태(삼정회계법인 회계사)</li> <li>• 최원목(이대 교수)</li> <li>• 안덕근(KDI정책대학원 교수)</li> <li>• 표인수(태평양 변호사)</li> <li>• 김상준(충정 회계사)</li> <li>• 김성우(철강협회 부장)</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무역구제제도와 국제적 함의 : 최근 발전동향 (Wolfgang Mueller, EU집행위 무역구제국 부과장)</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 : 멕시코의 입장에서 (Alejandro N. Gomez Strozzi, 멕시코 경제부 무역조사단장)</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의 무역구제제도 (Luis Henrique Oliveira, 브라질 상공개발부 산업피해구제국 연구관)</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 :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제도 운영현황 (Lyn Marie Schlitt, USITC 대외협력국장)</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제도: 실행관련 고려사항들 (Aditi Das Rout, 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 과장)</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무역구제제도개관 (Lou Jin,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처장)</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무역구제제도 관련 현황 (Johann Human, WTO 규범분과 참사관)</li> </ul>	

④ 200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05.6.2 10:00~18:00, COEX conference center #330
- 주제 : 일몰재심

주 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재심관련 한국의 경험 (임동춘, 무역위원회 가격 조사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노형 (고려대 교수, 무역위원)</li> <li>• 김상준 (충정 회계사)</li> <li>• 김성우 (철강협회 통상팀장)</li> <li>• 조윤선 (김&amp;장 변호사)</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재심 : 중국의 법, 경험 및 견해 (Shichun Wang,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장)</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일몰재심 조사 (Andrea Casson, USITC 법률담당관)</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재심관련 브라질의 견해 (Rodrigo Faria, 브라질 상공개발부 산업피해구제국 과장)</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재심관련 인도의 경험 (A.K. Gautam, 인도 상무부 반덤핑위원회 과장)</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의 일몰재심 (Reagan Walke, 캐나다 CITT 법률담당관)</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재심 : 호주의 경험 (Greg Weppner, 호주 관세청 반덤핑과장)</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반덤핑관세법상의 가격약속 (Richard Herring,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회덤핑에 관한 멕시코의 견해 (Jose Vargas, 멕시코 경제부 국제법률통상 담당관)</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세계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위조 및 표절에 대한 EU의 대응전략 (Anne Verron, EU 통상총국 H국 행정관)</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제도의 최근동향 및 발전 (Jasper Wauters, WTO 사무국 규범분과 법률담당관)</li> </ul>	

## ⑤ 200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06.6.2(금) 10:0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
- 주제 :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주 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무역구제제도에서 FTA의 영향과 미래방향 (심동섭 조사총괄과장)</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시대에서의 무역구제제도 (Susan. M. Hainsworth, WTO 자문관)</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에서 무역구제의 경험과 사례 : 인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Prashant Kumar Mahabatra, 인도 상공부 국장)</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적용 (Andrew John Rice, 호주관세청 반덤핑국장)</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TT의 새로운 제도 (Rose Ritcey, CITT 연구과장)</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협정 : 멕시코의 경험 (Jose Karlo Fercelledo Oliver, UPCI 과장)</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와 FTA에 대한 중국의 견해 (Chegn Yong Ru, 중국 수출입공평무역국 과장)</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에서 무역구제에 관한 분쟁해결 (Dimitrios Vardakis, EU집행위 무역구제국 과장)</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시대의 무역구제제도 : MERCOSUR에서의 브라질 경험 (Ana Carolina Meneghetti Peres, 상공개발부 무역구제국 과장)</li> </ul>	

⑥ 200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07.6.27(수) 10:00~18:00, COEX conference center #320
- 주제 :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

주 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에 대한 USITC의 견해 (Daniel R. PEARSON, 미국 ITC 위원장)</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National Experiences in Managing Trade Remedy Systems)</li> </ul>	사회 :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문수(인하대 교수, 전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 조대연(김&amp;장, 변호사)</li> <li>• 김성태(The International Trade Consulting 대표)</li> </ul>
	① 무역구제제도 현황(Johann HUMAN, WTO 참사관) ② WTO 통상협상과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의 무역구제 문제 (Mitsuo MATSUSHITA, 동경대 명예교수, 전WTO 항소기구 재판관, 일본) ③ 캐나다 무역구제기관 운영 (Serge FRÉCHETTE, 캐나다 CITT 부위원장)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현황 (Current Efforts to Reform Trade Remedy Rules)</li> </ul>	사회 : 김철수 (ITI 상임고문, 전 WTO 사무차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ugh CORBET (Cordell Hull Institute 소장)</li> <li>• 장승화(서울대 법대 교수)</li> <li>• 안호영(외교통상부 국제학부 겸임교수)</li> </ul>
	① 무역구제규칙의 재발견 (Patrick MESSERLIN,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교수, 프랑스) ② 글로벌 경제를 반영한 무역구제 개선방향 (David SPOONER, 미국 DOC 차관보) ③ 무역구제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현황 (K. T. CHACKO, 인도 대외무역대학장, 전 대외무역청장)	
3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무역구제제도의 방향 The Future of Trade Remedy Systems</li> </ul>	사회 : Hugh CORBET (Cordell Hull Institute 소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li> <li>•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li> <li>• 김지홍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li> </ul>
	① 향후 무역구제제도의 방향 (Richard O. CUNNINGHAM, Steptoe & Johnson LLP 국제변호사, 미국) ② EU 무역구제제도의 미래 (Fritz-Harald WENIG, EU집행위 통상총국 무역구제국장) ③ 무역구제제도의 미래 (Ling LI, 중국 수출입공평무역국장)	

## ⑦ 200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09.7.3(금) 09:30~17:30, COEX Intercontinental Hotel B1 다이아몬드홀
- 주제 : 세계 금융 위기와 무역구제

주 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축사(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li> <li>환영사(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li> </ul>	
기 조 연 설	① 미국 무역위원회의 최근 경험 : 조사동향 및 경제위기의 영향 (Shara L. ARANOFF, 미국 ITC 위원장)	
	② 세계 경제 위기와 국제무역(Harsha V. SINGH, WTO 사무차장)	
1 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금융 위기와 무역체제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s implications on the world trading system)</li> </ul>	사회 :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① 경제위기시의 무역구제 (Stefaan DEYPERE,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 원장)</li> </ul>
	② 신보호주의의 도전과 각국의 대응 (이태호,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③ 세계 경제위기, 보호주의 그리고 국제무역체제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상한 (무역위원회 위원)</li> </ul>
2 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 동향 (Recent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measures)</li> </ul>	사회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① 반덤핑 조치의 최근 동향 (Benlin YU,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 ② DDA 반덤핑협상의 가이드라인 (조영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 박은영(김&amp;장 변호사)</li> </ul>
3 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계관세 대응 (How to deal with countervailing duty cases in the future)</li> </ul>	사회 :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 상계관세 대응(Richard O. CUNNINGHAM, Steptoe & Johnson LLP 국제변호사, 미국) ② 상계관세 대응(손기윤,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 윤주환 (리인터내셔널 회계사)</li> </ul>

⑧ 2010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10.6.4(금) 10:00~17:30, COEX Conference Center #317
- 주제 :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주 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 축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EU, 중국,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y Systems of U.S., EU, China and Korea)</li> </ul>	사회 :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에 기여하기 위한 미국 ITC의 역할 (Deanna Tanner Okun, 미국 ITC 위원)</li> <li>②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 경제위기를 통한 교훈과 향후 나아가야 할 길 (Stefaan Depypere,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li> <li>③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Gu Chunfang,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li> <li>④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이승재,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두식 (세종 법무법인 대표변호사)</li> <li>•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li> </ul>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인도, 베트남의 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y Systems of Canada, India and Vietnam)</li> </ul>	사회 : 박노형 (고려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 캐나다측 견해 (Serge Fréchette, 캐나다 CITT 부위원장)</li> <li>② 인도의 반덤핑 제도 (S.K. Sharma, 인도 상공부 반덤핑국 과장)</li> <li>③ 베트남의 무역구제제도와 비시장경제 이슈 (Vu Ba Phu,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국 부국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곽노성 (동국대 교수)</li> <li>• 이재민 (한양대 교수)</li> </ul>
3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의 미래 (Future of Trade Remedy Systems)</li> </ul>	사회 : 정문수 (인하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무역구제제도의 미래 (Johann Human, WTO 규범국장)</li> <li>②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향하여 (Edwin Vermulst, 벨기에 VVGB 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③ 무역구제제도의 미래 (안덕근, 서울대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낙균 (무역위원회 위원, KIEP 선임연구위원)</li> <li>• 조영재 (세종 법무법인 변호사)</li> </ul>

## ⑨ 201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11.6.8(수) 10:00~16:40, COEX Grand Ballroom 105
- 주제 :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축사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ies in the FTAs, including how they differ from FTA to FTA)</li> </ul>	
발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R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li> <li>② FTA시대의 무역구제제도 : 도전과 전망 (이재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Ms. Charlotte Lane (美 ITC 위원)</li> <li>② Paul Piquado (美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 임명)</li> <li>③ Serge Frechette (加 CITT 부위원장)</li> <li>④ Wolfgang Muller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과장)</li> <li>⑤ Yu Ben Lin (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li> <li>⑥ Neil Mann (호주 관세청 부청장)</li> <li>⑦ Joko Wiyono (인니 반덤핑위원회 부위원장)</li> <li>⑧ Richard Cunningham (Steptoe&amp;Johnson LLP 대표변호사)</li> <li>⑨ 임승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li> </ul>	사회 :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관련 이슈들 (Issue related to reviews, including the likelihood test)</li> </ul>	
발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국의 일몰 재심 (임승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li> <li>② 무역구제제도 재심 절차의 현재 이슈 (Richard Cunningham, Steptoe&amp;Johnson LLP 대표변호사)</li> </ul>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li> <li>② Ms. Charlotte Lane (美 ITC 위원)</li> <li>③ Paul Piquado (美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 임명)</li> <li>④ Serge Frechette (加 CITT 부위원장)</li> <li>⑤ Wolfgang Muller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과장)</li> <li>⑥ Yu Ben Lin (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li> <li>⑦ Neil Mann (호주 관세청 부청장)</li> <li>⑧ Joko Wiyono (인니 반덤핑위원회 부위원장)</li> </ul>	사회 :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⑩ 201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12. 6. 21(목) 10:00~19:30, COEX 컨퍼런스룸(남) 318호
- 주제 :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축사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프가드제도의 현황 및 재설계</li> </ul>	
발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Jens Schaps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li> <li>② Richard O. Cunningham (Steptoe&amp;Johnson LLP 대표변호사)</li> <li>②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사회 : Daniel R. Pearson (美 ITC 위원)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박노형 (고려대 교수)</li> <li>②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② 이진환 (김앤장 변호사)</li> </ul>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li> </ul>	
발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Daniel R. Pearson (美 ITC 위원)</li> <li>②Paul Piquado (美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li> <li>③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li> <li>④Mehmet Azgin (터키 경제부 수입국 부국장)</li> <li>⑤Yu Ben Lin (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부국장)</li> <li>⑥Mrs. Sharon Anne Nyakuengama (호주 관세청 수석자문관)</li> <li>⑦임승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li> </ul>	사회 :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곽노성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li> <li>②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li> <li>③ 강준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li> </ul>	



## ⑪ 201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13. 6. 18(화) 10:00~19:30, COEX 컨퍼런스룸(남) 318호
- 주제 :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축사 (김재홍, 지식경제부 제1차관)</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전망</li> </ul>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li> <li>② Irving A. Williamson (美 ITC 위원장)</li> <li>③ Shri J S Deepak (인도 상공부 차관보)</li> <li>④ Ahmet Erkan Cetinkayis (터키 경제부 부국장)</li> <li>⑤ 임승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li> </ol>	사회 :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 국장)
토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손기윤(인천대 무역학부 교수)</li> <li>② 이학노(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li> <li>③ 이재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ol>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계관세 제도 운영동향과 향후방향</li> </ul>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Paul Piquado (美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li> <li>② Wolfgang Muller (EU 집행위 무역구제과장)</li> <li>③ Felipe Hees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국장)</li> <li>④ Victor Manuel Aguilar Pérez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li> <li>⑤ Mitsuo Matsushita, (일본 前동경대 교수)</li> <li>⑥ Richard O. Cunningham (Steptoe&amp;Johnson LLP 대표변호사)</li> </ol>	사회 :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무역위원회 위원)</li> <li>② 이재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③ 김성태(The International Trade Consulting 대표)</li> </ol>	

⑫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14. 6. 18(수) 10:00~20:00, COEX 컨퍼런스룸(남) 318호 등
- 주제 :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VIP 축사 대독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 경제권 FTA와 무역구제제도</li> </ul>	
발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li> <li>② Jan Bohanes (WTO 변호사)</li> <li>③ Paul Piquado (미국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li> <li>④ Zhou Xiao Yan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li> <li>⑤ Jens Schaps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국장)</li> <li>⑥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li> </ul>	사회 : 김철수 (前 WTO 사무차장)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션 1 발표자</li> <li>② 박노형 (고려대 교수)</li> <li>③ 강용승 (연세대 교수)</li> </ul>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li> </ul>	
발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Dean A. Pinkert (미국 ITC 부위원장)</li> <li>② Victor Manuel Aguilar Pérez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li> <li>③ Marco C. Saraiva Fonsec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국장)</li> <li>④ Andrey V. Zakharov (유라시아경제위 무역부 국장)</li> <li>⑤ Ahmet E. ÇETİNKAYIŞ (터키 경제부 수입국 부국장)</li> <li>⑥ Dale Seymour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li> <li>⑦ 박진규 (무역조사실장)</li> </ul>	사회 :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 국장)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션 2 발표자</li> <li>②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무역위원회 위원)</li> <li>③ 노소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무역위원회 위원)</li> <li>④ 이진환 (김&amp;장 법률사무소 변호사)</li> </ul>	

\* 포럼 종료 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 ⑬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15. 6. 3(수) 10:00~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B2F)
- 주제 : WTO 20주년: 무역구제 체제의 성과와 도전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VIP 축하 동영상 메세지</li> <li>축사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무역구제시스템의 평가와 주요 발전과제</li> </ul>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박태호 (前 WTO 사무차장)</li> <li>② Johann Human(WTO 무역규범국장)</li> <li>③ Paul Piquado(美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li> <li>④ Wolfgang Mueller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국장대리)</li> <li>⑤ Zhou Xiao Yan(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li> <li>⑥ Marco Cesar Saraiva Fonseca(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 국장)</li> <li>⑦ Stephen Leach(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li> <li>⑧ J.K. Dadoo(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 국장)</li> </ol>	사회 : 박태호 (서울대 교수)
토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션 1 발표자</li> <li>② 조영재 (광장 변호사)</li> </ol>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li> </ul>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David Johanson(美 ITC 위원)</li> <li>② Victor Manuel Aguilar Pérez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li> <li>③ Dale Seymour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li> <li>④ To Thai NinhTo Thai Ninh(베트남 경쟁관리청 국장대리)</li> <li>⑤ Talagavathi R. Karapayah(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국장)</li> <li>⑥ Wanchai Varavithya(태국 상무성 해외무역국 국장)</li> <li>⑦ Ernesto L. Albano(필리핀 관세위원회 상임위원)</li> </ol>	사회 : 박노형 (고려대 교수)
토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션 2 발표자</li> <li>② 이로리 (계명대학교 교수)</li> <li>③ 정동원 (화우 변호사)</li> </ol>	
3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프가드 조치</li> </ul>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② 홍콩, ③ EEC, ④ 인도네시아</li> <li>⑤ 박진규 조사실장</li> </ol>	사회 : 안덕근 (서울대 교수)
토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션 3 발표자 ② 신승남(이화여자대학교 교수)</li> <li>③ 이재민(서울대학교 교수)</li> </ol>	

⑭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16. 5. 19(목) 10:00~16:1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B2F)
- 주제 :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VIP 축하 동영상 메시지</li> <li>축사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li> </ul>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Jean Bédard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대리)</li> <li>② Wang Hejun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li> <li>③ Ajay Kumar Bhalla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 총국장)</li> <li>④ Victor Manuel Aguilar Pérez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li> <li>⑤ F. Scott Kieff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li> </ol>	사회 : 안덕근 (서울대 교수)
토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션 1 발표자</li> <li>② 이학노 (동국대 교수)</li> </ol>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 재심제도</li> </ul>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Dale Seymour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li> <li>② Marco C. Saraiva Fonsec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국장)</li> <li>③ Gerhard Hannes Welge (EU 집행위원회 청문관)</li> <li>④ Ernawati Soedjono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위원장)</li> <li>⑤ Imran Zia (파키스탄 관세위원회 국장)</li> <li>⑥ Wanchai Varavithya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 부청장)</li> <li>⑦ Kadir Bal (터키 수입국 국장)</li> <li>⑧ Nguyen Huu Truong Hung (베트남 경쟁관리청 조사관)</li> </ol>	사회 : 강용승 (연세대 교수)
토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션 2 발표자</li> <li>② 공수진 (고려대학교 HK연구교수)</li> </ol>	

## ⑮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일시·장소 : 2017. 7. 6.(목) 10:00~16: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B2F)
- 주제 : 법 규범에 맞는 무역구제 조사 절차 : 이행과 도전과제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li> <li>축사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li> </ul>	
1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 조사 절차 : 이행과 도전</li> </ul>	
기조연설	Gerhard Hannes Welge WTO 무역구제 기술그룹분과 의장 (前 EU 통상집행위원 청문관)	사회 : 강용승 (연세대 교수)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Irving A. William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li> <li>② Wang Hejun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li> <li>③ Inder Jit Singh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 총국장</li> <li>④ Andrey Zakharov EEC 경제위원회 부국장</li> <li>⑤ Jean Bédard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li> </ol>	
2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2020 무역구제 : 우선순위와 도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前 무역위원회 위원장)</li> </ul>	
발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Víctor M. A. Pérez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li> <li>② Dale John Seymour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li> <li>③ Marco C. S. D. Fonsec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국장</li> <li>④ Joaquin Fernandez Martin EU 통상총국 제3국 무역구제 과장</li> <li>⑤ Imran Zia Malik 파키스탄 상무부 관세위원회 국장</li> <li>⑥ Mohd Zahid Bin Abdullah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과장</li> <li>⑦ Nguyen Phuong Nam 베트남 경쟁관리청 부국장</li> </ol>	사회 : 안덕근 (서울대 교수)

### 7-3.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회차	일시·장소	발표주제	입상대학
1	2000.11.22 COEX 컨퍼런스룸	산업피해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 분야</li> <li>• 세이프가드 분야</li> </ul>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대 2개팀, 연세대, 중앙대,
2	2001.11.14 무역센터 대회의실	산업피해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 분야</li> <li>• 상계관세 및 보조금분야</li> <li>• 세이프가드 분야</li> </ul>	건국대, 고려대 2개팀, 부경대, 연세대 2개팀
3	2002.11.15 무역센터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농산물수입에 대한 한국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영방안</li> <li>• 미국의 한국관련 반덤핑 일몰제시에 대한 분석</li> <li>• WTO도하 라운드와 우리나라 농산물 구제전략</li> <li>• 미국 반덤핑제도의 실제적 규정과 주요 쟁점</li> <li>• 한국과 EU의 조산업 통상마찰 대응방안</li> <li>• WTO보조금 협정 연구</li> </ul>	건국대대학원 서울대 국제지역원 청주대대학원 전북대대학원 우송대 부경대대학원
4	2003.11.14 무역센터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중국 특별SG제도 분석 및 실효성 고찰</li> <li>• 지재권침해에 대한 미국관세법337조와 한국의 불공정무역 행위 비교분석</li> <li>• RTA하에서의 SG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li> <li>•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구제법규의 개편</li> <li>• 한국반덤핑 제소의 단기적 효과에 관한 분석</li> <li>• WTO체제하에서의 보조금·상계관세에 관한 연구</li> </ul>	국민대 고려대대학원 건국대대학원 한국외대대학원 중앙대대학원 조선대대학원
5	2004.11.26 한국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li> <li>•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li> <li>• 중국의 반덤핑 조치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li> <li>• 미국·캐나다산softwood lumber에 대한 상계관세조치 사례분석</li> <li>• 전자무역시대의 사이버무역구제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li> <li>• 중국의 반덤핑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li> </ul>	이화여대대학원 단국대대학원 한양대대학원 인하대, 숙명여대 광운대대학원 영산대학교

회차	일시·장소	발표주제	입상대학
6	2005.11.17 무역센터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반덤핑협정 피해판정 요소에 대한 연구</li> <li>• 보조금·상계관세제도와 하이닉스 사태의 고찰</li> <li>• 한국 세이프가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li> <li>• WTO/TRIS협정에 따른 지재권 보호강화와 분쟁해결방안</li> <li>• 무역구제제도에 있어서 비시장경제 지위에 미치는 영향</li> <li>• FTA와 역내국간 반덤핑에 대한 연구</li> </ul>	고려대 충남대 부산대 순천대학교 인하대, 일반대학원 공주대
7	2006.11.16 무역협회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협정상 덤핑마진산정에 대한 고찰</li> <li>• WTO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과 농업협정상보조금의 상호관계</li> <li>• 세이프가드조치규범의 RTA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li> <li>• 지적재산권침해구제조치의보완을 통한 효율적 무역구제제도 운영</li> <li>• FTA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대응방안</li> <li>• 사전예방 원칙에 대한 관습국제법화의 가능성</li> </ul>	고려대원 숙명여대원 고려대원 연세대원 외국어대원 부산대원
8	2007.11.12 무역협회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S협정상 GMO의 과학적위험평가에 대한 무역분쟁 연구</li> <li>• WTO/TRIPs협정에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효율적보호방안</li> <li>• 미국의 반덤핑제도의 쟁점사항과 한미FTA를 통한 대응</li> <li>• 화학산업에 있어서의 반덤핑제도 고찰</li> <li>• 한미FTA와 세이프가드제도</li> <li>• 대중국 지식재산권 분쟁의 쟁점사항과 잠재적 분쟁에 관한연구</li> </ul>	부산대원 부산대원 동아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서경대 한국해양대
9	2008.11.20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반덤핑협정의 우회덤핑규제 규정 도입 필요</li> <li>•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 확인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검토</li> <li>•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li> <li>• 한국의 FTA 국내보완대책의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연구</li> <li>• FTA시대 지적재산권 의약품분야 쟁점 연구 - 강제실시권 중심으로</li> <li>• 하이닉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계관세에 관한 연구</li> </ul>	고려대원 서울대원 연세대원 연세대 고려대 한국해양

회차	일시·장소	발표주제	입상대학
10	2009.11.26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일몰재심 판정의 문제와 반덤핑협정 11.3조의 발전방향</li> <li>• WTO 체제하에서의 Zeroing 분쟁 사례를 통한 일몰재심조항의 비판적 분석</li> <li>• WTO 보조금협정상 특정성 규정과 주요국가의 관행에 대한 연구</li> <li>•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의 도입 필요성과 WTO/DDA에서 우리나라의 역할</li> <li>• 주요 선진국 하이브리드카 R&amp;D보조금의 WTO 위배 가능성 검토</li> <li>• 보호무역장치로서의 관세환급제도의 효과 분석 및 대응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li> <li>• 한중일 FTA 체결시 세이프가드 규정방향 연구</li> </ul>	<p>서강대 부산대 고려대 연세대 동서대 성균관대 가톨릭대</p>
11	2010.11.25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TA 당사국간의 무역구제조치 적용가능성 - GATT XXIV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li> <li>• 한-미 FTA 와 한-EU FTA의 무역구제분야 주요 반덤핑조항의 분석 및 법적평가</li> <li>• 한국의 FTA 무역구제에 대한 연구</li> <li>• 반덤핑제도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상관성 분석 - 반덤핑제도의 철폐와 완화를 중심으로 본 경제통합의 과제</li> <li>• 중국의 보조금제도와 한-중 FTA 보조금관련 협상과제</li> <li>• 한국과 일본의 FTA 반덤핑규정 비교분석</li> </ul>	<p>고려대학원 이화여대학원 중앙대학원 고려대(안암) 전북대 동경국제대</p>
12	2011.11.15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로잉 관행의 WTO 반덤핑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li> <li>• 한·중 지식재산권 침해구제조항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중 FTA 대응전략연구</li> <li>• 주요국의 Zeroing 운용을 둘러싼 분쟁사례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li> <li>• 자유무역협정별 반덤핑제도 조화 가능성 연구 및 제언</li> <li>• 향후 한·중 FTA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모델 설계</li> <li>• 한·EU FTA상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GIs)” 관련 분쟁요소 및 대응방안</li> </ul>	<p>고려대학원 연세대학원 경북대학원 연세대 전북대 전북대</p>



회차	일시·장소	발표주제	입상대학
13	2012.11.13 트레이드 타워 5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를 통한 표준특허 위협 구제</li> <li>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성 연구</li> <li>WTO Safeguard 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및 제언</li> <li>중국 내의 한자 상표 분쟁에 관한 연구</li> <li>한·미FTA상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예상 문제점과 대응</li> <li>지식재산권 침해가 한국,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li> </ul>	연세대학원 고려대학원 서울대학원 중앙대 전북대 충남대
14	2013.11.27 트레이드 타워 5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중 FTA 섬유 세이프가드 조항의 설계와 운용방안</li> <li>창조경제와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연구</li> <li>SPS협정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쟁점</li> <li>WTO 보조금 협정상 경제적 혜택의 이전에 관한 고찰</li> <li>WTO 체제 하에서 중국 정부 보조금 정책의 위법성</li> </ul>	전북대 고려대 단국대 고려대학원 서울대학원
15	2014.11.14 트레이드 타워 5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보조금협정과 합치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연구</li> <li>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검토 및 보완점 제시에 관한 연구</li> <li>미국의 對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li> <li>환율변동이 반덤핑 조사과정에 미치는 영향</li> <li>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관세 부과사건의 WTO협정 합치성 판단</li> </ul>	고려대 홍익대·서울여대 단국대 서울대학원 연세대학원
16	2015.11.20 트레이드 타워 5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회덤핑 규정 도입 방안: EU와 미국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li> <li>위안화 평가절하 정책의 WTO규정상 보조금 해당여부 판단 및 관련문제 분석</li> <li>2016년 이후 미국과 EU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가능성에 따른 한국의 대응책</li> <li>개성공단 지원정책의 SCM협정상 보조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li> <li>WTO 보조금 협정상의 공공기관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li> <li>Safeguard조치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li> </ul>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전북대

회차	일시·장소		발표주제	입상대학
17	2016.11.11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 학 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조건과 반덤핑협정: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항에 대한 해석</li> <li>• 미국의 표적덤핑과 제로잉 판정에 대한 고찰</li> <li>• 한·중 반덤핑분쟁의 해소방안</li> </ul>	서울대  서강대 경북대
		대 학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덤핑마진 계산에 있어 제로잉과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US-Washers 사건을 중심으로</li> <li>• 주요국 우회덤핑 판정의 효과 비교</li> <li>• 반덤핑제도의 투명성 제고: 일몰제심(종료제심)의 판정요건을 중심으로</li> </ul>	고려대  단국대 단국대

## 7-4.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회차	일시·장소	참여대학	발표주제	비고
1	2005.12.20 중소기업 중앙회	광운대 단국대 배화여대 영산대 강릉대 부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네시아 백상지 반덤핑</li> <li>중국산 유제품 세이프가드</li> <li>일본산 PDP 반덤핑</li> <li>중국산 도자기질타일 반덤핑</li> <li>대만산 CD-R 반덤핑</li> <li>알칼리망간 건전지 반덤핑</li> </ul>	최우수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우수상 우수상
2	2006.12.20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대 경희대 인천대 배화여대 영산대 한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지적재산권침해분쟁 사례</li> <li>베트남산알칼리망간건전지덤핑피해구제사례</li> <li>인도네시아와 한국산제지 반덤핑분쟁사례</li> <li>유사상품 맥주음료수입으로 인한 피해구제사례</li> <li>베트남산 포켓용라이터 덤핑사례</li> <li>중국산 철강에 대한 덤핑피해 구제사례</li> </ul>	우수상 우수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우수상
3	2007.11.15 중소기업 중앙회	영산대 인천대 계명대 건국대 전북대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델란드산 전기면도기 반덤핑 제소사례</li> <li>싱가폴산 알칼리산 건전지 반덤핑 사례</li> <li>EU,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li> <li>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수입 및 지재권 침해 사례</li> <li>오렌지급증으로 인한 감귤농가피해에 따른 세이프가드</li> <li>EC, etc. vs. US-Offset Act(Byrd Amendment)사건</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4	2008.11.12 중소기업 중앙회	인하대 영산대 경북대 인천대 영남대 창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스보드 관련 특허권 침해</li> <li>중국산 PET필름 반덤핑</li> <li>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및 정보용지의 반덤핑</li> <li>일본산 산업용 로버트 반덤핑 제소</li> <li>한·미 철강판재 반덤핑관세 분쟁</li> <li>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사례</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5	2009.11.20 서울 올림픽 공원내 파크텔	인하대 영산대 인천대 영남대 서원대 전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체인자전거 특허권 침해 분쟁</li> <li>낚시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분쟁</li> <li>DMB 휴대폰에 대한 EU의 상계조치</li> <li>한·EU 소주 위스키 주세분쟁</li> <li>음료자동판매기 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li> <li>삼성 SDI와 일본 후지쯔간의 PDP 관련 특허분쟁</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회차	일시·장소	참여대학	발표주제	비고
6	2010.11.19 서울 올림픽 공원내 파크텔	숙명여대 인천대 경북대 영남대 서원대 전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EC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분쟁</li> <li>● 한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건</li> <li>● 옥매트 개재방법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분쟁</li> <li>●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 재심사</li> <li>●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일회용라이터에 대한 덤핑사례</li> <li>● 서울반도체와 니치아화학공업사간의 LED 특허분쟁</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7	2011.11.17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외대 외 10개교 전북대 인하대 경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의 건</li> <li>● 한·미 철강제품 관련 제로잉 덤핑 산정 분쟁</li> <li>● 보성 녹차막걸리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li> <li>● 중국산 2차전지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 및 상계관세 분쟁</li> </ul>	대상 금상 금상 은상
8	2012.11.15 중소기업 중앙회	동국대 전북대 영남대 인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EU 조선업 분쟁 사건</li> <li>●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전쟁</li> <li>● 한·미 의약품 세이프가드</li> <li>● 한국 SUV 자동차에 대한 EU 덤핑방지관세</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9	2013.11.13 중소기업 중앙회	동국대 전북대 송실대 창원대 청주대 덕성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D램 보조금 분쟁</li> <li>●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 행위 여부 판정</li> <li>● 캐나다 정부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제소</li> <li>● 인도산 PET 필름 덤핑 사건</li> <li>●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사건</li> <li>● 일본과 캐나다 재생에너지 발전분야 분쟁</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장려상
10	2014.11.25 중소기업 중앙회	경희대 동국대 영남대 청주대 평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덤핑 판정</li> <li>●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덤핑방지관세 사례</li> <li>●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 대한 PVA 반덤핑 제소</li> <li>●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OPP필름 반덤핑 부과</li> <li>● 한·일간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점유율로 인한 반덤핑</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회차	일시·장소	참여대학	발표주제	비고
11	2015.10.29 중소기업 중앙회	영남대 평택대 경희대 홍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li> <li>• 한국·중국간의 갑작스러운 마늘 수입급증으로 인한 세이프가드 조치</li> <li>• 한·EU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사례</li> <li>• 중국산 H형강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12	2016.11.17 중소기업 중앙회	영남대 동국대(경주) 청주대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li> <li>•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의 덤핑방지관세</li> <li>•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li> <li>•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li> </ul>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 7-5. 무역구제 지원센터 워크숍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1	2005.4.12~13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발전방안</li> <li>• 신청 조사개선 및 직권 조사 강화방안</li> <li>• 불공정무역판결 사례</li> <li>• WTO체제하의 무역구제 제도</li> <li>• 무역구제성공사례 소개</li> </ul>	심동섭(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 이광민(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박노형(무역위원회 위원) 안덕근(KDI 교수) 강경래(코파벤스페셜 상무)
2	2005.7.12 14:00~18:00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발전방안</li> <li>• 신청 조사 개선 및 직권 조사 강화방안</li> <li>• 무역구제 이용사례 소개</li> <li>• 반덤핑 조사 신청서 작성요령</li> </ul>	심동섭(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 이광민(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강경래(코파벤스페셜 상무) 산피과, 가격조사과
3	2005.11.15 9:30~17:30 COEX 컨퍼런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제도 개요 및 발전방안</li> <li>• 무역구제 모의재판</li> <li>• 전자무역시대 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와 무역구제제도</li> <li>•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영 및 실제</li> <li>• 산업용 로봇 반덤핑 조사 사례연구</li> <li>• 무효가능성이 있는 특허권에 기초한 잠정조치</li> </ul>	심동섭(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 광운대 심상렬(광운대교수) 김형진(울촌 변호사) 김상준(충정 회계사) 이경란(이지특허 변리사)
4	2006.4.5(수) 14:00~17:30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위원회 홍보영 시연</li> <li>• 무역구제지원센터 발전방안</li> <li>• 센터활동 우수사례 발표</li> <li>• 모의재판 최우수작 동영상 시연</li> <li>• 수출 및 피소기업 지원</li> <li>• 한미FTA추진동향 및 규범분야 대응방안</li> <li>• 무역구제포털사이트 시연회</li> </ul>	동영상 조사총괄팀장 전북전략산업기획단 동영상 조사총괄팀장 방순자 사무관 박암부장(성일정보통신)
5	2006.10.12(목) 14:00~18:00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구제체험수기 시상식</li> <li>• 무역구제체험수기사례발표</li> <li>• 한미FTA에서의 무역구제협상경과 및 주요쟁점</li> <li>•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대책</li> </ul>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등 창원특수강, 현대중공업, 로케트전기 조사총괄팀장 한국무역협회 조학희차장

회차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6	2007.5.23(수) 14:30~18:00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기업의 수입피해 구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통상환경(FTA)과 무역구제</li> <li>- 사례를 통해 본 덤핑방지관세제도</li> <li>- FTA체결국의 수입급증시 무역조정지원 활용</li> </ul> </li> <li>수출기업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규제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 수입규제현황 및 대응 필요성</li> <li>- 사례를 통해 본 수입규제 대응방안</li> <li>- 한미 FTA 무역구제 타결결과 및 기대 효과</li> </ul> </li> </ul>	조사총괄팀장 김영민 사무관 김은경 사무관 한국무역협회 회계법인 방순자 사무관
7	2007.10.12(금) 14:30~18:20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위원회의 20년성과와발전방향</li> <li>FTA시대에서의 무역구제제도</li> <li>수출입관련 지재권분쟁 대응전략</li> </ul>	박성수 (무역조사실장) 전정기 (영남대학교수) 강경래 (코파벤스페셜 부사장) 이운호(무역구제정책팀장) 김성태 (The ITC) 전영달 (중소기업진흥공단) 장금영 (불공정무역조사팀장) 나종갑 (연세대학교수) 최정권 (LG전자 특허센터)
8	2008.3.4(화) 15:30~17:50 중소기업 중앙회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구제지원센터 확대 운영방안</li> <li>FTA시대에서의 한국의 무역구제</li> <li>무역위 무역구제제소관련업무소개</li> </ul>	중소기업중앙회(국제통상실) 조사총괄팀장 류대규(산업피해조사팀) 한상덕(덤핑조사팀) 박근오(불공정무역조사팀)
9	2008.10.20(월) 15:00~17:50 COEX 컨퍼런스센터 320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구제유공자 포상</li> <li>산업피해 및 덤핑의 이해</li> <li>지재권 침해행위관련 무역위의역할</li> <li>원산지규정위반 및 무역조정지원판단의 이해</li> <li>무역구제지원센터요원과의 간담회</li> </ul>	장관표창 5명 김정두 사무관 박태완 사무관 전성규 사무관





8

무역위원회  
발간 간행물 목록





## 8. 무역위원회 발간 간행물 목록

### 8-1. 조사보고서 목록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1	1988. 7	● 세라믹압전착화소자의 産業被害調査 結果	대무 32-87-1
2	1988. 12	● 産業影響調査結果 - 앙고라드끼털	대무 32-88-1
3	1989. 2	● 産業影響調査結果 - 새우젓	대무 32-88-2
4	1989. 12	● 産業影響調査結果 - 고추加工製品	대무 32-89-1
5	1990.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돼지고기통조림	대무 32-89-2
6	1990. 12	● 不正輸出輸入行爲調査結果 - 對外貿易法 第44條 關聯 調	대무 44-90-1-9
7	1990.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包裝用 L-LDPE 필름	대무 32-89-6
8	1990.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아크릴아미드	대무 40-6-90-1
9	1991.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목할저	대무 32-1-90-3
10	1991. 7	● 年例檢討結果 - 돼지고기통조림	대무 32-89-2
11	1991. 8	● 産業被害調査結果 - 滑石粉	대무 32-1-90-4
12	1991.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플리아세탈수지』	대무 40-6-90-2
13	1991. 10	● 年例檢討結果 - 새우젓	대무 32-88-2
14	1991.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팝콘옥수수	대무 32-1-90-5
15	1992.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당면	대무 32-1-91-1
16	1992.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PC용 주기판	대무 32-1-91-2
17	1992. 8	● 産業被害調査結果 - 이쑤시개, 환봉, 단판, 바스틱	대무 32-1-91-3
18	1992. 8	● 産業被害調査結果 - 우산(양산) 및 우산틀	대무 32-1-91-4
19	1993.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정제인산	대무 40-6-92-2
20	1993.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VTR 헤드드럼용 볼베어링	대무 40-6-92-3
21	1994.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소 다 회	자료 94-19
22	1994.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인쇄제판용 평면사진 플레이트	자료 94-20
23	1994.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유리장섬유	자료 94-23
24	1994.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소성인산석회	자료 94-25
25	1994.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대 두 박	자료 94-26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26	1995.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액체가성소다	자료 95-2
27	1995.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냉동육통	자료 95-10
28	1995.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아 연 괴	자료 95-14
29	1996.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일본산 유리장섬유	자료 96-7
30	1996.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대 두 유	자료 96-8
31	1996.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리튬 1次電池(日本, 美國産)	자료 96-12
32	1996.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乳製品-	자료 96-13
33	1996.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에탄올아민-	자료 96-14
34	1997.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염화코린	자료 97-3
35	1997.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국산 정제인산 재심사	자료 97-4
36	1997.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소다회(불가리아, 러시아産)	자료 97-5
37	1997.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H형강(러시아産)-	자료 97-6
38	1997.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전기면도기	자료 97-7
39	1997.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일회용포켓형라이터(中國産)	자료 97-8
39	1997.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일회용포켓형라이터(中國産)	자료 97-8
40	1998.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셀프복사지(獨逸·英國産)	자료 98-2
41	1998.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가정용 전기다리미(싱가폴, 中國, 프랑스産)	자료 98-3
42	1998.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페로실리코망간	자료 98-4
43	1998.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비닐 알콜	자료 98-7
44	1999.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질섬유판(미국, 말레이시아산)	자료 99-7
45	1999.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유리장섬유 재심사(미, 일, 대만산)	자료 99-11
46	2000.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PS 인쇄판(일본산)	자료 00-2
47	2000.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복합호제(일본산)	자료 00-3
48	2000.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PS 인쇄판(네델란드산)	자료 00-4
49	2000.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알루미늄 공관 및 뚜껑(대만산)	자료 00-5
50	2000.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마늘(중국산)	자료 00-6
51	2000.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알칼리랑간 건전지	자료 00-10
52	2000.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소다회(중국산)	자료 00-11
53	2001.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질섬유판(태국, 인도네시아산)	자료 01-4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54	2001.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질섬유판 재심(말레이시아산)	자료 01-5
55	2001.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셀프복사지 재심(독일산)	자료 01-9
56	2002. 4	● 最終判定報告書- CD-R(대만산)	자료 02-1
57	2002.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PS인쇄판 재심(일본산)	자료 02-2
58	2002.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H-형강 재심(러시아산)	자료 02-3
59	2003. 2	● 産業被害調査結果 -알카리망간건전지 재심(중국산)	자료 03-1
60	2003. 3	● 價格約束結果 - 에틸렌초사비닐공중합체에멀전타입 (EVA) 재심(대만산)	자료 03-3
61	2003.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포켓형 라이터	자료 03-7
62	2003.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CD-R	자료 03-9
63	2003.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라이터(중국산)	자료 03-10
64	2003. 7	● 不正輸出輸入行爲調査結果 - 휴대용손전등	자료 03-11
65	2003. 7	● 不正輸出輸入行爲調査結果 - 살서제.상충제	자료 03-12
66	2003. 7	● 不正輸出輸入行爲調査結果 - 두부.두유 제조기	자료 03-13
67	2003. 8	● 産業被害調査結果 - 수산화알루미늄	자료 03-14
68	2003.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라이터(베트남, 인니산)	자료 03-17
69	2003.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정보용지및백상지(중국, 인니산)	자료 03-18
70	2003.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페로실리코망간	자료 03-19
71	2003.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규산나트륨	자료 03-20
72	2004. 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비닐알콜	자료 04-2
73	2004. 2	● 産業被害調査結果 - 2-헥실알코올(미국, 독일, 폴란드, 프랑스)	자료 04-4
74	2004.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알칼리망간건전지(싱가폴, 중국, 일본)	자료 04-6
75	2004.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차야황산소다(중국산)	자료 04-9
76	2004.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리튬1차전지(일본, 미국산)	자료 04-12
77	2004.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스테인레스스틸바(일본, 인도, 스페인)	자료 04-13
78	2004.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염화콜린(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산)	자료 04-14
79	2005.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중국)	자료 05-4
80	2005.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PVC Plate(일본)	자료 05-5
81	2006.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형 로봇	자료 06-5
82	2006.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비닐알콜(미국, 중국, 싱가포르)	자료 06-6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83	2007. 4	● 産業被害調査結果 - PS인쇄판	자료 07-3
84	2007. 5	● 産業被害調査結果 - 도자기질 타일	자료 07-4
85	2007.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연신기공사	자료 07-5
86	2007.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알칼리망간 건전지	자료 07-6
87	2007. 9	● 産業被害調査結果 - 자동가이드홀 펀칭기	자료 07-7
88	2007. 9	● 産業被害調査結果 - 정보용지 및 백상지	자료 07-8
89	2007. 9	● 産業被害調査結果 - 라이너지	자료 07-9
90	2007.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대두유	자료 07-10
91	2008.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차아황산소다	자료 08-3
92	2008. 5	● 産業被害調査結果 - 플로트판유리	자료 08-4
93	2008.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과산화벤조일	자료 08-5
94	2008. 9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자료 08-6
95	2008. 9	● 産業被害調査結果 - 초산에틸	자료 08-7
96	2008.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PET필름	자료 08-8
97	2008. 11	● 産業被害調査結果 - 크라프트지	자료 08-9
98	2009.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자료 09-2
99	2009.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파티클 보드	자료 09-3
100	2009.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아디프산	자료 09-4
101	2010.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염화클린	자료 2010-1
102	2010.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스테인리스스틸바	자료 2010-4
103	2010.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기공사(DTY)	자료 2010-5
104	2010. 8	● 産業被害調査結果 - 차아황산소다	자료 2010-6
105	2010. 8	● 産業被害調査結果 - 프로필렌옥사이드	자료 2010-7
106	2011.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백상지	자료 2011-3
107	2011. 3	● 産業被害調査結果 - 합판	자료 2011-4
108	2011. 9	● 産業被害調査結果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자료 2011-5
109	2011. 9	● 産業被害調査結果 - 플로트판유리	자료 2011-6
110	2012. 5	● 産業被害調査結果 - 도자기질타일	자료 2012-2
111	2012. 5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자료 2012-3

연번	발간일	제 목	비 고
112	2012. 8	● 産業被害調査結果 - 초산에틸-	자료 2012-4
113	2012. 8	● 産業被害調査結果 - 크라프트지	자료 2012-5
114	2012.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	자료 2012-6
115	2012.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자료 2012-7
116	2013. 6	● 産業被害調査結果 - 알루미늄 보틀캔	자료 2013-2
117	2013.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염화콜린	자료 2013-4
118	2013.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스테인레스 스틸바	자료 2013-5
119	2013. 12	● 産業被害調査結果 - 합판	자료 2013-6
120	2014.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	자료 2014-2
121	2014. 1	● 産業被害調査結果 -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자료 2014-3
122	2015. 5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국산 합판(신규공급자 조사)	자료 2015-5
123	2015.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말려산 합판	자료 2015-6
124	2015.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두꺼운 PET 필름	자료 2015-7
125	2015.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에탄올아민	자료 2015-8
126	2015.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도자기질 타일	자료 2015-9
127	2015.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플로트판유리	자료 2015-10
128	2015.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대만,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자료 2015-11
129	2015. 7	● 産業被害調査結果 - 말려, 태국, 인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자료 2015-12
130	2016.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일본산 공기압밸브	자료 2016-6
131	2016.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국산 에이치형강	자료 2016-7
132	2016.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인도산 초산에틸	자료 2016-8
133	2016.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	자료 2016-9
134	2016.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국산 PET 필름	자료 2016-10
135	2016. 10	● 産業被害調査結果 - 중국산 침엽수 합판	자료 2016-11

## 8-2. 발간 보고서 목록

연번	발간일	제 목	비 고
1	1987. 9	● 貿易委員會와 産業被害救濟	자료 87-1
2	1987. 12	● 産業被害救濟事例(美國編- I) - 비고무화('84)	사례발간 87-1
3	1987. 12	● 産業被害救濟事例(美國編- II) - 비고무화('85)	자료 87-2
4	1988. 2	● 外國 産業被害救濟機關의 年例報告書-美國 ITC, 캐나다 CITT	자료 88-1
5	1988. 4	● 産業被害救濟事例(美國編- I 附錄) - 비고무화 公聽會 速記錄('84)	사례발간 88-1
6	1988. 5	● 輸入開放化 時代와 産業被害救濟制度	연구자료 88-1
7	1988. 5	● 濠洲의 産業被害救濟制度	제도연구 88-2
8	1988. 8	● 美國 ITC 運營節次規定	자료 88-3
9	1989. 7	● 輸入開放과 産業被害救濟	심포지움
10	1989. 7	● 輸入開放과 産業被害救濟 심포지움에 關한 報告	
11	1988. 9	● 産業被害救濟事例(美國編-III) - 덤핑 : 갈라TV 브라운관('87)	사례발간 89-1
12	1989. 7	● 美國 및 캐나다의 貿易委員會法 - USITC, CITT	제도연구 89-1
13	1990. 1	● 外國의 産業被害救濟制度 - USITC, CITT, EC執行委, IAC 視察報告書	내부자료
14	1990. 4	● 濠洲 IAC 産業政策諮問報告書 - 사과와 배産業에 대한 輸出保險	
15	1990. 4	● 美國 USITC의 産業競爭力調査事 - 自動車部品('87)	사례발간 90-1
16	1990. 4	● 캐나다 CITT 年例報告書(1989)	
17	1990. 7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 貿易委員會 機能을 中心으로	敎育 및 弘報用, 자료 90-1
18	1990. 7	● 美國 ITC 反덤핑法 運營事例	對內 敎育用자료 90-2
19	1990. 7	● 産業被害救濟制度 發展	創立紀念 세미나자료 90-3
20	1990. 7	● 産業被害救濟制度 發展에 關한 세미나 開催結果 內容	자료 90-4
21	1990. 11	● 産業被害救濟制度 發展에 關한 專門家 協議會 開催結果	자료 90-5(자료없음)
22	1990. 10	● 産業被害救濟關聯 法令集(拔萃)	자료 90-6
23	1990. 12	● 産業被害와 救濟(研究資料集)	政策研究자료 90-7
24	1990. 12	● 美國 덤핑防止關稅 및 相計關稅細部運營節次	制度研究자료 90-8
25	1990. 12	● 美國 商務省 反덤핑價格調整方法研究	制度研究자료 90-9
26	1990. 12	● 美國 國際貿易委員會와 聽聞會	자료 90-10(자료없음)
27	1991. 1	● 貿易委員會 運營實績	內部資料자료 91-1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28	1991. 1	• 主要國의 原產地規定	자료 91-2
29	1991. 1	• 知的財産權關聯 主要國의 國境措置制度 研究	자료 91-3
30	1991. 2	• 産業被害救濟關聯 法令集	法令拔萃자료 91-4
31	1991. 4	• EC의 産業被害救濟制度 研究	制度研究자료 91-5
32	1991. 5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教育 및 弘報用 자료 91-6(자료없음)
33	1991. 5	• 美國, 日本의 通商政策과 關聯 機構	자료 91-7(자료없음)
34	1991. 7	• 産業被害救濟制度 發展에 관한세미나 開催結果	자료 91-8
35	1991. 9	• GATT 反덤핑紛爭 事例法	자료 91-9
36	1991. 9	• 反덤핑關聯 GATT 規定 및 協定	자료 91-10
37	1991. 10	• GATT Analytical Index(6條 및 19條 部分)	자료 91-11
38	1991. 12	• USITC의 農畜水産物에 대한 産業被害調査 現況 및 事例	자료 91-12
39	1992. 1	• 貿易委員會 運營實績	자료 92-1
40	1992. 3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자료 92-2(자료없음)
41	1992. 4	• 産業被害救濟關聯 法令集	자료 92-3(자료없음)
42	1992. 6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자료 92-4(자료없음)
43	1992. 9	• 反덤핑調査시 被害判定에 關한 研究	자료 92-5(1)
44	1992. 10	• USITC의 産業被害分析事例(I)	자료 92-5(2)
45	1992. 10	• USITC의 産業被害分析事例(II)	자료 92-5(3)
46	1992. 10	• 産業被害分析事例(III)	자료 92-5(4)
47	1992. 10	• 反덤핑 및 相計關稅制度下의 産業被害判定	자료 92-5(5)
48	1992. 7	• 産業被害救濟制度 發展에 관한세미나 開催結果	자료 92-6
49	1992. 7	• 産業被害救濟業務 便覽	자료 92-7
50	1992. 7	• 産業被害調査業務 處理指針-非工産品-	자료 92-8
51	1993. 1	• 貿易委員會 運營實績(1987-1992)	자료 93-1
52	1993. 1	• 貿易委員會 法令集(産業被害救濟關聯)	자료 93-2
53	1993. 1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貿易委員會 機能 中心으로)	자료 93-3
54	1993. 8	•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 - 한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스페인산 유정용철관의 보조금 및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	자료 93-7(1)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55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일본 및 대만산 전화교환시스템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2)</li> </ul>	자료 93-7(2)
56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이스라엘, 영국 및 서독산 산업용 벨트의 보조금 및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3)</li> </ul>	자료 93-7(3)
57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산 12볼트 오토바이 밧데리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4)</li> </ul>	자료 93-7(4)
58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홍콩 및 대만산 스웨타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5))</li> </ul>	자료 93-7(5)
59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산 전화시스템 및 부속품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6)</li> </ul>	자료 93-7(6)
60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일본산 벤질파라벤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7)</li> </ul>	자료 93-7(7)
61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홍콩, 대만,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볼베어링 보조금 및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8)</li> </ul>	자료 93-7(8)
62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및 일본산 폴리에틸렌 필름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9)</li> </ul>	자료 93-7(9)
63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브라질, 멕시코, 루마니아, 대만, 베네주엘라산 원형비합금 용접강관의 보조금 또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0)</li> </ul>	자료 93-7(10)
64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및 대만산 용접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1)</li> </ul>	자료 93-7(11)
65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멕시코산 철강와이어로프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2)</li> </ul>	자료 93-7(12)
66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산 1메가바이트 DRAMS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3)</li> </ul>	자료 93-7(13)
67	19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브라질, 멕시코, 루마니아, 대만, 베네주엘라산 원형비합금 용접강관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4)</li> </ul>	자료 93-7(14)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68	1993. 8	産業被害救濟制度 書式集	자료 93-8
69	1994. 1	貿易委員會 運營實績(87-93)	자료 94-1
70	1994. 2	美 反덤핑法上 實質的 遲延의 判定基準	자료 94-2
71	1994. 2	産業被害救濟關聯 法令集	자료 94-3
72	1994. 6	産業被害救濟關聯 國際協定	자료 94-4
73	1994. 8	貿易委員會 關聯規程 및 調查實務 要領	자료 94-5
74	199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및 대만산 스테인레스 용접강관 이음쇠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5)</li> </ul>	자료 94-8
75	199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홍콩, 한국 및 대만산 스웨터의 덤프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6)</li> </ul>	자료 94-9
76	199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및 대만산 용접스테인레스 철강, 파이프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7)</li> </ul>	자료 94-10
77	199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산 스테인레스 용접강관 이음쇠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8)</li> </ul>	자료 94-11
78	199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한국 및 멕시코산 철강선 빔줄의 덤프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19)</li> </ul>	자료 94-12
79	199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말레이시아산 용접스테인레스 철강 파이프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20)</li> </ul>	자료 94-13
80	199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뉴질랜드산 키위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21)</li> </ul>	자료 94-14
81	199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産業被害判定事例</li> <li>- 노르웨이산 신선하고 냉장된 애플랜틱 연어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22)</li> </ul>	자료 94-15
82	1994. 10	● 主要國의 産業被害救濟關聯 法規集(1)	자료 94-16
83	1994. 11	● 美國의 反덤핑制度 改編方向에 關한 세미나 開催結果	자료 94-17
84	1994. 6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자료 94-21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85	1994. 6	• Import Injury Relief System In Korea	자료 94-22
86	1994. 12	• UR이후 美國, EU의 反덤핑法 改正 動向	자료 94-24
87	1995. 1	• 貿易委員會 運營實績	자료 95-1
88	1995. 2	• 政策研究會 發表資料	자료 95-3
89	1995. 3	• 産業被害救濟關聯 書式集	자료 95-4
90	1995. 3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弘報冊子)	자료 95-5
91	1995. 3	• 産業被害救濟關聯 法令集	자료 95-6
92	1995. 4	• 農畜産物 輸入制度 및 關稅運用 現況	자료 95-7
93	1995. 4	• 政策研究會資料('93)	자료 95-8
94	1995. 5	• 세이프가드制度 比較解說	자료 95-9
95	1995. 6	• 反덤핑制度 比較解說	자료 95-12
96	1995. 7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判定事例	자료 95-13
97	1995. 9	• 産業被害救濟制度	자료 95-15
98	1996. 1	• 貿易委員會 運營實績('87~'95)	자료 96-1
99	1996. 1	• 産業被害救濟關聯 法規集	자료 96-2
100	1996. 1	•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자료 96-3
101	1996. 1	• 덤핑防止關稅 調査 實務指針	자료 96-4
102	1996. 2	• 農畜産物 輸入制度 및 關稅運用 現況('96)	자료 96-5
103	1996. 3	• 덤핑防止關稅 關係法規(關稅法, 施行令, 施行規則)	자료 96-6
104	1996. 7	• 産業被害救濟關聯 法規集	자료 96-9
105	1996. 8	• 덤핑防止關稅 關係法規(關稅法, 施行令, 施行規則)	자료 96-10
106	1997. 1	• 덤핑防止關稅 關係法規(關稅法, 施行令, 施行規則)	자료 97-1
107	1997. 4	• 덤핑率 調査 實務指針	자료 97-2
108	1997. 6	• 國內産業被害 調査 判定 實務指針	자료 97-3-2
109	1998. 5	• 1997 貿易委員會 연보	자료 98-1
110	1998. 11	• 産業被害救濟制度 (講義資料)	자료 98-5
111	1998. 11	• 産業被害救濟制度 發展에 관한 세미나 主題發表文 모음집	자료 98-6
112	1999. 3	• 貿易委員會 業務·統計資料	자료 99-2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113	1999. 3	• 主要國의 세이프가드法規	자료 99-3
114	1999. 3	• 캐나다의 反덤핑·相計關稅 法規	자료 99-4
115	1999. 3	• EU·호주·日本의 反덤핑·相計關稅 法規	자료 99-5
116	1999. 3	• 美國의 反덤핑·相計關稅 法規	자료 99-6
117	1999. 3	• 貿易委員會 規程	자료 99-8
118	1999. 6	• 1999年 貿易委員會 年報	자료 99-10
119	1999. 12	• EU·캐나다 産業被害救濟制度 調査 出張結果	자료 99-11
120	2000. 1	• 貿易委員會 業務關聯 統計資料	자료 00-1
121	2000. 6	• WTO 反덤핑協定 實務運營上 問題點 및 解決方案	자료 00-7
122	2000. 6	• 貿易委員會 年報	자료 00-8
123	2000. 9	• 덤핑防止關稅賦課 및 約束 關聯 規程	자료 00-9
124	2001. 1	• 反덤핑關聯 法規集	자료 01-10
125	2001. 1	• 中南美國家의 産業被害救濟制度 現況 및 反덤핑·補助金 調査事例 分析	자료 01-1
126	2001. 1	• 貿易救濟制度 運用資料集	자료 01-2
127	2001. 3	• USITC의 機能과 役割	자료 01-12
128	2001. 5	• USITC의 調査節次	자료 01-13
129	2001. 5	• 不公正貿易行爲調査및産業被害 救濟에관한法律및施行領	자료 01-14
130	2001. 7	• 貿易委員會 年報	자료 01-3
131	2001. 7	• 産業被害救濟關聯 規程集	자료 01-6
132	2001. 7	• 덤핑輸入으로 인한 國內産業被害 調査 實務指針	자료 01-15
133	2001. 8	• 産業被害救濟關聯 法規集	자료 01-7
134	2001. 9	• 産業被害救濟法令 英文集	자료 01-8
135	2001. 1	• 季刊 貿易救濟(제1호) 창간호	자료 01-9
136	2001. 4	• 季刊 貿易救濟(제2호) 봄호	자료 01-10
137	2001. 7	• 季刊 貿易救濟(제3호) 여름호	자료 01-11
138	2001. 10	• 季刊 貿易救濟(제4호) 가을호	자료 01-12
139	2002. 1	•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자료 02-1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140	2002. 1	• 季刊 貿易救濟(제5호) 겨울호	자료 02-2
141	2002. 4	• 季刊 貿易救濟(제6호) 봄호	자료 02-3
142	2002. 7	• 季刊 貿易救濟(제7호) 여름호	자료 02-4
143	2002. 10	• 季刊 貿易救濟(제8호) 가을호	자료 02-5
144	2002. 5	• 貿易救濟制度 概觀	자료 02-6
145	2002. 10	• 최근 덤핑수입으로 인한 國內産業被害 有無 調査 · 判定 例	자료 02-7
146	2002. 11	• 1次 生産品の 반덤핑 調査方法에 대한 研究	자료 02-8
147	2002. 11	• 貿易救濟制度 大學生 세미나 資料集	자료 02-9
148	2002. 12	• 덤핑輸入 또는 補助金を 받은 物品의 輸入으로 인한 國內産業被害有無調査實務指針	자료 02-10
149	2002. 12	• 貿易委員會 發展 方案集	자료 02-11
150	2003. 2	•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자료 03-4
151	2003. 3	• 덤핑방지관세부과및약속관련 규정집	자료 03-5
152	2003. 3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관련법규.서식집	자료 03-6
153	2003. 9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참고자료	자료 03-15
154	2003. 1	• 季刊 貿易救濟(제9호) 겨울호	자료 03-1
155	2003. 4	• 季刊 貿易救濟(제10호) 봄호	자료 03-6
156	2003. 7	• 季刊 貿易救濟(제11호) 여름호	자료 03-8
157	2003. 10	• 季刊 貿易救濟(제12호) 가을호	자료 03-10
158	2004. 1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관련 규정집	자료 04-1
159	2004. 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집	자료 04-3
160	2004. 3	• 세이프가드 관련 참고자료집	자료 04-5
161	2004. 10	• 한-칠레 FTA세이프가드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자료 04-11
162	2004. 11	• 제5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세미나	자료 04-15
163	2004. 12	• EU주최 무역구제세미나 참석 결과보고서	자료 04-16
164	2004. 1	• 季刊 貿易救濟(제13호) 겨울호	자료 04-1
165	2004. 4	• 季刊 貿易救濟(제14호) 봄호	자료 04-7
166	2004. 7	• 季刊 貿易救濟(제15호) 여름호	자료 04-8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167	2004. 10	• 季刊 貿易救濟(제16호) 가을호	자료 04-10
168	2004. 12	•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관련규정집	자료 04-11
169	2005. 1	• 산업피해구제관련 법규집	자료 05-1
170	2005. 2	•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자료 05-2
171	2005. 3	• 산업피해구제관련 규정집	자료 05-3
172	2005. 7	•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실무지침(원심)	자료 05-8
173	2005. 8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실무지침	자료 05-6
174	2005. 1	• 季刊 貿易救濟(제17호) 겨울호	자료 05-8
175	2005. 4	• 季刊 貿易救濟(제18호) 봄호	자료 05-10
176	2005. 7	• 季刊 貿易救濟(제19호) 여름호	자료 05-11
177	2005. 10	• 季刊 貿易救濟(제20호) 가을호	자료 05-12
178	2005. 12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관련 규정집	자료 05-7
179	2006. 1	•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자료 06-1
180	2006. 1	• 季刊 貿易救濟(제21호) 겨울호	자료 06-2
181	2006. 2	• 덤핑률 조사 실무지침	자료 06-3
182	2006. 3	• 산업피해구제법령집	자료 06-4
183	2006. 4	• 季刊 貿易救濟(제22호) 봄호	자료 06-7
184	2006. 7	• 季刊 貿易救濟(제23호) 여름호	자료 06-8
185	2006. 10	• 季刊 貿易救濟(제24호) 가을호	자료 06-9
186	2007. 1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관련 규정집	자료 07-1
187	2007. 1	• 2007년도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자료 07-2
188	2007. 10	• 반덤핑 조사 관련 WTO분쟁사례 분석	자료 07-11
189	2007. 10	• 덤핑률 산정시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 07-12
190	2007. 1	• Trade Remedy Review(제25호) 겨울호	자료 07-13
191	2007. 4	• Trade Remedy Review(제26호) 봄호	자료 07-14
192	2007. 7	• Trade Remedy Review(제27호) 여름호	자료 07-15
193	2007. 10	• Trade Remedy Review(제28호) 가을호	자료 07-16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194	2008. 1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관련 규정집	자료 08-1
195	2008. 1	• Trade Remedy Review(제29호) 겨울호	자료 08-2
196	2008. 4	• Trade Remedy Review(제30호) 봄호	자료 08-3
197	2008. 7	• Trade Remedy Review(제31호) 여름호	자료 08-4
198	2008. 9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무역피해판정 요건 등 연구	자료 08-5
199	2008. 10	• Trade Remedy Review(제32호) 가을호	자료 08-6
200	2008. 12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자료 08-7
201	2008. 12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실무지침	자료 08-8
202	2008. 12	• 반덤핑 제소 수요 조사를 위한 연구	자료 08-9
203	2008. 12	• 덤핑 조사 영문 안내서 및 표준서한 연구	자료 08-10
204	2009. 1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관련 규정집	자료 09-1
205	2009. 1	• Trade Remedy Review(제33호) 겨울호	자료 09-2
206	2009. 4	• Trade Remedy Review(제34호) 봄호	자료 09-3
207	2009. 7	• Trade Remedy Review(제35호) 여름호	자료 09-4
208	2009. 10	• 무역구제지(제36호) 가을호	자료 09-5
209	2010. 1	• 무역구제지(제37호) 겨울호	자료 10-1
210	2010. 3	•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관련 규정집	자료 10-2
211	2010. 5	•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자료 10-3
212	2010. 5	• 무역구제지(제38호) 봄호	자료 10-4
213	2010. 7	• 무역구제지(제39호) 여름호	자료 10-5
214	2010. 11	• 무역구제지(제40호) 가을호	자료 10-6
215	2011. 2	• 덤핑방지관세 부과 약속관련 규정집(10년)	자료 11-1
216	2011. 2	•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자료 11-2
217	2011. 6	• 공정무역연구(제41호)	자료 11-3
218	2011. 12	• 공정무역연구(제42호)	자료 11-4
219	2011. 12	• 덤핑방지관세 부과 약속관련 규정집(11년)	자료 11-5
220	2012. 2	• 무역구제제도 운용 자료집	자료 12-1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221	2012. 2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자료 12-2
222	2012. 6	• 공정무역연구(제43호)	자료 12-3
223	2012. 12	• 공정무역연구(제44호)	자료 12-4
224	2013. 1	• 무역구제제도 운용 자료집	자료 13-0
225	2013. 1	• 덤핑방지관세 부과 약속관련 규정집(12년)	자료 13-1
226	2013. 6	• 공정무역연구(제45호)	자료 13-2
227	2013. 12	• 공정무역연구(제46호)	자료 13-3
228	2014. 1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관련 규정집(13년)	자료 14-1
229	2014. 2	• 무역구제제도 운용 자료집	자료 14-4
230	2014. 6	• 무역구제지(제47호) 여름호	자료 14-5
231	2014. 9	• 무역구제지(제48호) 가을호	자료 14-6
232	2014. 12	• 무역구제지(제49호) 겨울호	자료 14-7
233	2015. 1	• 무역구제 관련 법규집	자료 15-1
234	2015. 3	• 무역구제제도 운용 자료집	자료 15-2
235	2015. 3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관련 규정집(14년)	자료 15-3
236	2016. 3	• 무역구제지(제50호) 봄호	자료 16-1
237	2016. 3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관련 규정집(14년)	자료 16-2
238	2016. 5	• 무역구제제도 운용 자료집	자료 16-3
239	2016. 6	• 무역구제지(제51호) 여름호	자료 16-4
240	2016. 9	• 무역구제지(제52호) 가을호	자료 16-5
241	2016. 12	• 무역구제지(제53호) 겨울호	자료 16-12

### 8-3. 무역구제제도 연구보고서 목록

#### ① 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1	2002. 10	자동차변속기 산업경쟁력 조사	
2	2002. 10	인쇄회로기판(PCB) 산업경쟁력 조사	
3	2002. 10	연삭기 산업경쟁력 조사	
4	2002. 10	신변장식용품 산업경쟁력 조사	
5	2003. 10	전동기 산업경쟁력 조사	
6	2003. 10	조명기기 산업경쟁력 조사	
7	2003. 10	안경테 산업경쟁력 조사	
8	2003. 10	스피커 산업경쟁력 조사	
9	2003. 10	컴퓨터기기 및 부품 산업경쟁력 조사	
10	2004. 10	가구 산업경쟁력 조사	
11	2004. 10	타일 산업경쟁력 조사	
12	2004. 10	파스너 산업경쟁력 조사	
13	2004. 10	금형 산업경쟁력 조사	
14	2004. 10	폴리올레핀 산업경쟁력 조사	
15	2004. 10	전자계측기 산업경쟁력 조사	
16	2004. 10	콘덴서 산업경쟁력 조사	
17	2005. 10	발광다이오드(LED) 산업경쟁력 조사	
18	2005. 10	가방 산업경쟁력 조사	
19	2005. 10	제지 산업경쟁력 조사	
20	2005. 10	의류(니트)산업 경쟁력 조사	
21	2005. 10	산업용로봇 산업경쟁력 조사	
22	2005. 10	시멘트 산업경쟁력 조사	
23	2005. 10	센서 산업경쟁력 조사	
24	2005. 10	합섬직물 산업경쟁력 조사	
25	2006. 10	MP3 Player 산업경쟁력 조사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26	2006. 10	위생도기 산업경쟁력 조사	
27	2006. 10	철강제품 산업경쟁력 조사	
28	2006. 10	구두(피혁제신발) 산업경쟁력 조사	
29	2006. 10	철삭공구 산업경쟁력 조사	
30	2006. 10	전자세라믹 산업경쟁력 조사	
31	2007. 11	비디오레코더 산업경쟁력 조사	
32	2007. 11	여성복 산업경쟁력 조사	
33	2007. 11	완구 산업경쟁력 조사	
34	2007. 11	헤드폰&이어폰 산업경쟁력 조사	
35	2007. 12	휴대용컴퓨터 산업경쟁력 조사	
36	2007. 12	폴리에스터장섬유 산업경쟁력 조사	
37	2007. 12	백판지 산업경쟁력 조사	
38	2007. 12	램프 산업경쟁력 조사	
39	2007. 12	모터사이클 산업경쟁력 조사	
40	2008. 12	판유리산업 경쟁력 조사	
41	2008. 12	접착제산업 경쟁력 조사	
42	2008. 12	베어링산업 경쟁력 조사	
43	2008. 12	메인펌프, 메인컨트롤밸브산업 경쟁력 조사	
44	2008. 12	금형산업 경쟁력 조사	
45	2008. 12	안테나 산업경쟁력 조사	
46	2008. 12	알루미늄 가공산업 경쟁력 조사	
47	2008. 12	자동차용에어필터산업 경쟁력 조사	
48	2008. 12	골프채산업 경쟁력 조사	
49	2008. 12	타포린산업 경쟁력 조사	
50	2009. 12	폴리에스터필름 산업	
51	2009. 12	2차전지 산업	
52	2009. 12	폴리에스터 강력사·FDY 산업	
53	2009. 12	폴리우레탄 산업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54	2009. 12	프레스 산업	
55	2009. 12	도자기 산업	
56	2009. 12	그린 카 산업	
57	2009. 12	바이오 신약 산업	
58	2009. 12	태양광 산업	
59	2010. 12	구조세라믹 산업	
60	2010. 12	시계산업	
61	2010. 12	니트외류 산업	
62	2010. 12	통신네트워크장비 산업	
63	2010. 12	스마트 유리 산업	
64	2010. 12	인쇄용지 산업	
65	2011. 12	OPP필름 산업	
66	2011. 12	건사 및 건직물 산업	
67	2011. 12	양말 산업	
68	2011. 12	골판지원지 산업	
69	2011. 12	리모콘 산업	
70	2011. 12	레이저 산업	
71	2011. 12	우븐외류 산업	
72	2011. 12	의료기기 산업	
73	2011. 12	의약품 산업	
74	2011. 12	화장품 산업	
75	2012. 12	전기식 진단용 기기 산업	
76	2012. 12	계면활성제 산업	
77	2012. 12	광학기기&용품류 산업	
78	2012. 12	PVC 산업	
79	2012. 12	섬유기계류 산업	
80	2012. 12	변압기&변환기류 산업	
81	2012. 12	페인트 산업	

연번	발간월	제 목	비 고
82	2013. 12	전 산업 FTA 영향분석	
83	2014. 12	계측기기 산업	
84	2014. 12	열교환기 산업	
85	2014. 12	에어컨 산업	
86	2014. 12	NC컨트롤러 산업	
87	2014. 12	조명기구 산업	
88	2014. 12	남성정장 산업	
89	2015. 12	철강산업 (선재, 봉강, 강관)	
90	2015. 12	폴리에틸렌 산업	
91	2016. 12	기초화장품 산업	
92	2016. 12	의약품 산업	
93	2016. 12	가구 산업	
94	2016. 12	가공식품(분유포함) 산업	
95	2016. 12	의류 산업	

② 무역구제제도 연구

연번	발간년	제 목	수행기관
1	2003	무역위원회 정보화 및 DB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	2003	주요보조금 유형별 혜택 및 판매가치 산정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에 관한 연구	삼정회계법인
3	2003	DDA 반덤핑협상 진전에 따른 Agenda별 대응논리 개발·연구	
	2003	DDA 반덤핑 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 EU 및 중국의 협상입장 분석	고려대
	2003	- DDA 반덤핑 Friends 그룹 제안 이슈의 분석	법무법인 총정
4	2003	수입동향분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LEGC/KOREALLC
5	2003	미국, EU 및 캐나다의 반덤핑 조사 사례분석	경희대
6	2003	한·일 FTA 무역구제규범협상 대응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산업연구원
7	2003	아시아 주요국의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현황과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8	2003	반덤핑 조사시 환율과 관세 제도가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
9	2003	선진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내용 및 유형분석을 통한 우리제도 운영에의 활용방안	서울대
10	2003	각국이 체결한 FTA상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 및 유형분석	고려대
11	2004	한·중산업비교 및 양국간의 반덤핑 조사 증가요인 분석	한국무역학회
12	2004	한·중·일 3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제한에 관한 법제도 연구	이화여대
13	2004	미국·EU 및 캐나다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 사례분석	경희대
14	2004	미국·EU의 덤핑률 산정방법 고찰	삼정ITC
15	2004	반덤핑 답변서 분석 및 현지실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정동회계법인
16	2004	미국 관세법 제337조 및 Special 301조를 통한 미국의 지적권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
17	2004	세이프가드관련 주요국의 실무지침 운영실태 분석	KDI
18	2005	무역구제관련 법령 정비 및 무역구제 제도의 내실화 방안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연번	발간년	제 목	수행기관
19	2005	주요국의 FTA상 무역구제제도 활용사례 연구를 통한 우리 협상전략 방안 연구	KDI
20	2005	반덤핑 조치 우회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일품회계법인
21	2005	반덤핑 조사관련 러시아의 Market Mechanism 분석을 통한 러시아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한 연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국제문제연구소
22	2005	무역관련 국제산업재산권 분쟁 동향과 주요국의 분쟁 해결 및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발명진흥회
23	2006	외국의 WTO 규범 위반 및 무역장벽 현황과 실태 조사	서울대
24	2006	한국 무역조사실의 수입동향분석 체계 선진화방안 연구	삼정회계법인
25	2006	반덤핑 조치 후 기업의 산업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협회
26	2006	덤핑률 조사절차 개선방안 연구	법무법인 총정
27	2006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대물적 수입 배제 명령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아주대
28	2007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리인터내셔널 무역투자연구원
29	2007	덤핑률 산정시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법무법인 태평양
30	2007	산업경쟁력 조사 성과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삼정회계법인
31	2007	산업피해 조사 실사 매뉴얼	세진회계법인
32	2007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 실무지침(매뉴얼) 연구	(주)더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컨설팅
33	2007	덤핑 조사 관련 WTO 분쟁사계 분석	(주)더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컨설팅
34	2007	무역구제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사)한국무역학회
35	2008	산업피해 인과관계분석	서울대산학협력단
36	2008	한중FTA무역구제협상전략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37	2008	반덤핑 제소 수요 조사를 위한 연구	KOTRA
38	2008	덤핑영문안내서 및 표준서한 연구	법무법인 총정
39	2008	무역구제조치 후 수혜품목 경쟁력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인터젠
40	2008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퇴출산업정책 수립연구	중소기업연구원
41	2009	북한산 수입품에 대한 통상법적 문제점 연구	서강대 산학협력단

연번	발간년	제 목	수행기관
42	2009	보조금, 상계관세 사례분석 및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무역투자연구원
43	2009	반덤핑 조사에 있어 재심기능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44	2009	산업피해구제수준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45	2009	수입공산품의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	(사)한국무역상무협회
46	2009	원산지표시위반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	무역투자연구원
47	2009	반덤핑협정 관련 DDA 의장 수정제안(안) 분석	법무법인 총정
48	2009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동국대 산학협력단
49	2009	수입규제 대응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삼일회계법인
50	2009	한국 LCD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단국대 산학협력단
51	2009	반덤핑 조사에 있어 국내산업의 피해우려 및 확립지연에 대한 분석기법 연구	법무법인 세종
52	2010	FTA 확대에 따른 무역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 검토	(주)인터젠
53	2010	FTA 체결(예정)국가의 무역구제제도연구(인도, 중국, EU)	동국대 산학협력단
54	2010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55	2010	전속시장의 피해분석 등 국내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피해 조사기법 연구	법무법인 세종
56	2010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덤핑 조사방법 연구	삼일회계법인
57	20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	연대 산학협력단
58	2010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유통방지 대책 연구	한남대 산학협력단
59	2011	주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연구	KOTRA
60	2011	산업피해요소와 기타요인 분석 및 조사대상물품 제외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한국국제경제 법학회
61	2011	산업피해의 계량 분석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62	2011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 조사시 제기된 이슈분석 및 시사점 연구	삼성KPMG컨설팅
63	2011	덤핑방지관세 관련 현행 관세법령/시행규칙의 WTO협정 비교분석 연구	법무법인 세종
64	2011	미국 ITC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연구	법무법인 광장



연번	발간년	제 목	수행기관
65	20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66	2012	한·베트남, 한-인니 FTA 무역구제 협상전략 심층연구	미래와 세계
67	2012	FTA체결국의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대응전략	공정무역학회
68	2012	FTA시대에 대비한 중소기업 친화적 무역구제 운용전략 연구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69	2012	한·중FTA협상과 관련 중국의 반덤핑 제도에 관한 연구	공정무역학회
70	2012	무역구제제도 전략적 홍보방안	피알원
71	2012	반덤핑 조사 시스템의 선진화 및 표준화	법무법인 총정
72	2012	덤핑률산정 조사기법 다양화를 위한 연구	삼정KPMG
73	2012	작업공구 품목 불공정무역행위 실태 조사	산업융재협회
74	2013	지재권침해 조사 전문성 확보방안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75	2013	한글 표준질의서 작성에 관한 연구	세진아이티씨
76	2013	덤핑 재조사절차 및 검토기준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총정
77	2013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	법무법인 다래
78	2013	해외 세이프가드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관련 제도 정비	법무법인 광장
79	2013	무역구제분야 FTA 규정검토 및 향후 추진전략	리인터내셔널
80	2013	2013 산업경쟁력 조사 (산업일반)	산업연구원
81	2013	무역구제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김&장 법률연구소
82	2013	무역구제 조사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원앤비컨설팅
83	2013	2013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4	2013	미국-EU 등 주요 조사국의 심각한 피해판단 사례	리인터내셔널
85	2013	산업경쟁력 조사 운용체계 정립 및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86	2013	2014년 산업경쟁력 조사(공기조절기 등 3개 품목)	나이스신용정보(주)
87	2014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88	2014	다자경제권과의 FTA와 무역구제제도	법무법인 세종
89	2014	미 상무성 개정 반덤핑 매뉴얼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 연구	법무법인 광장
90	2014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무법인 다래
91	2014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번	발간년	제 목	수행기관
92	2014	미국 EU의 직권 세이프가드 조사관련 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93	2014	세계무역구제 조치현황 및 시사점 연구	티플러스
94	2014	WTO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리인터내셔널 무역투자연구원(주)
95	2014	덤핑방지과세 부과대상물품 결정 연구	법무법인 화우
96	2014	대중국 상계조치상 제기되는 주요 보조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97	2014	한중FTA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연구	(사)국제공정무역학회
98	2014	미 상무성 조사보고서 및 유정용강관 쟁점분석 연구용역	세진아이티씨(주)
99	2014	WTO 반덤핑협정의 국내 적용가능성 및 효력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광장
100	2015	각 국의 보조금 분석과 조사활용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화우
101	2015	2015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2	2015	FTA/WTO 세이프가드 제도 비교 및 동등주의 법제 연구	서울대산학협력단
103	2015	주요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에 관한 제도 및 사례 연구	(주)미래와세계
104	2015	EU·브라질·호주·인도 등의 적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규정 및 산정방법 연구	삼정회계법인
105	2015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효과에 관한 연구	인터젠컨설팅(주)
106	2015	보조금 조사 실제기법에 관한 연구	(주)미래와세계
107	2015	산업피해 조사기법 관련 주요국 및 WTO 쟁점사례 분석	삼정회계법인
108	2015	FTA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 연구	연세대산학협력단
109	2015	다자·지역무역자유화와 국내산업피해구제 등에 관한 연구	(사)국제공정무역학회
110	2016	최근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 조사 재심 시 산업피해여부 주요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광장
111	2016	불공정무역행위 유형별 조사절차 표준화 방안 연구	법무법인 다래
112	2016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등에 관한 연구	(사)국제공정무역학회
113	2016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하에서 주요 경쟁품목에 대한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조치 현황 및 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9

무역위원회  
위원





## 9. 무역위원회 위원

### 9-1. 현임 위원 현황

(2017. 9월 기준)

인적사항	사진	소속 및 경력	임기
위원장 申熙澤		<b>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li> <li>• 김&amp;장법률사무소('80~'07년)</li> </ul>	2016.8.12~2019.8.11
상임위원 金榮三		<b>現 무역위원회 상임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li> <li>• 시스템산업정책관, 투자정책관</li> <li>• 주 중국대사관 상무관</li> </ul>	2017.1.31~2020.1.30
비상임위원 崔永錄		<b>現 기재부 세제실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li> <li>• 기재부 조세정책과, 재산소비정책관</li> <li>•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li> </ul>	2016.8.12~2019.8.11
崔洛均		<b>現 KIEP 선임 연구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경제연구학회부회장</li> <li>• KIEP 부원장</li> </ul>	2014.9.25~2017.9.24 (재연임)
李源姬		<b>現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변리사회 부회장</li> <li>• 한국생물공학회 부회장</li> </ul>	2015.2.16~2018.2.15 (연임)
安德根		<b>現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경제법학회 이사</li> <li>• WTO상소기구 법률자문관</li> </ul>	2016.5.3~2019.5.2 (연임)
辛承南		<b>現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법인 중앙 국제특허 변호사</li> <li>• 미국 특허변호사</li> </ul>	2015.2.16~2018.2.15
李恩庚		<b>現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li> <li>•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li> </ul>	2015.8.13~2018.8.12
崔永海		<b>現 동아일보 논설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국제부장</li> <li>• 동아일보 워싱턴특파원 등</li> <li>• 매일경제신문, LG증권 근무</li> </ul>	2016.5.3~2019.5.2

## 9-2. 역대 무역위원 현황

(2017. 9월 기준)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진 념	권혁승	김영무	김광석	허신행	최은희	박노형
한승수 87.7.1	김시형 87. 7. 1	진 념 87. 7. 1	권혁승 87.7.1	김영무 87.7.1	김광석 90. 7. 1	허신행 90. 7. 1	최은희 99.5.13	박노형 04.3.18
박우희 88.5.25	이동훈 88. 3.22	박유광 88. 4.15	권혁승 90.7.1	조경근 90.7.1	김인준 93.8.3	정영일 93.5. 1	이영란 02.5.13	왕상한 07.4.2
김완순 89.11.18	신국환 88.12.29	김인호 89.5.29	권혁승 93. 8. 3	김찬진 93.8.3	정문수 96.8.3	정영일 96.5.1	(8.27 위원장 위촉)	왕상한 10.4.2
김완순 92.11.18	김태준 90.4.10	강봉균 90.5.7	민병문 96.8.3	이상혁 96.5.1	박시룡 98.11.18	박태호 99.5.13	이순우 02.8.18	온기운 13.4.16
김완순 95.11.18	채재억 91.1.19	김태연 93.6.7	민병문 99.8.18	신동천 99.5.13	박시룡 01.11.18	박태호 02.5.13	박보영 05.12.8	최영해 16.5.3
정문수 98.11.18	전계목 91.6.7	안병우 94.11.4	민병문 02.8.18	조동성 02.5.13	박길남 05.2.3	김지홍 04.3.18	이명규 09.1.22	(現)
전성철 01.11.18	박삼규 92.6.12	장승우 95.2.13	김인모 05.12.8	이주태 05.6.28	이인실 08.4.18	박종찬 07.4.2	이명규 12.1.22	
이영란 02.8.27	유득환 92.12.2	윤증현 96.1.18	김종수 09.1.22	최낙균 08.9.3	이인실 11.4.18	강응선 10.4.2	신승남 15.2.24	
송상현 05.12.8	이기성 92.12.31	남궁훈 97.1.27	이원희 12.1.22	최낙균 11.9.3	노소라 14.4.18	안덕근 13.4.16	(現)	
박태호 07.6.22	윤수길 93.6.4	김진표 99.2.2	이원희 15.2.24	최낙균 14.9.25	이은경 15.8.13	안덕근 16.5.3		
현정택 10.6.22	노장우 94.12.31	이용섭 01.5.8	(現)	(現)	(現)	(現)		
홍순직 13.6.22	이원호 97.1.6	최경수 02.3.16						
신희택 16.8.12	노영욱 97.5.17	김영룡 03.5.1						
(現)	서사현 97.11.27	이종규 04.4.2						
	한준호 98.4.4	김용민 05.7.12						
	이희범 98.9.4	허용석 06.8.11						
	이석영 99.6.11	이희수 08.4.14						
	김재현 00.2.10	윤영선 08.9.19						
	유창무. 01.5.2	주영섭 10.4.19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하명근	백운찬						
	02.3.6	11.8.26						
	김상열	김낙회						
	03.4.30	13.5.22						
	허범도	문창용						
	04.8.19	14.9.25						
	정준석	최영록						
	05.8.16	16.8.12						
	신동식	(現)						
	06.3.6							
	이기섭							
	06.6.16							
	홍석우							
	06.10.2							
	김신종							
	07.3.13							
	김호원							
	08.3.14							
	윤수영							
	09.2.24							
	윤상직							
	09.8.11							
	진 흥							
	10.3.23							
	김경수							
	11.6.3							
	정재훈							
	12.1.13							
	권오봉							
	12.5.9							
	이운호							
	13.4.18							
	황규연							
	15.10.8							
	강성천							
	16.3.14							
	이상진							
	16.11.21							
	김영삼							
	17.1.31							
	(現)							



**KTC 30 Years**  
for Global Fair Trade  
한국무역위원회 30년, 글로벌 공평무역의 지킴이

무역위원회 30년사

##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

**발행일** 2017년 9월

**발행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획 및 편집** 30년사 T/F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편집장)

한상덕 산업피해조사과 서기관

박수진 산업피해조사과 사무관

박종희 덤핑조사과 사무관

강석하 덤핑조사과 주무관

김종권 불공정무역조사과 사무관

위민이 무역구제정책과 사무관

김영재 무역구제정책과 주무관

**제 1 편 집필** 30년사 T/F

김민정 무역구제정책과 서기관

김종윤 불공정무역조사과 사무관

공수진 고려대 연구교수

**제 2 편 집필** 30년사 T/F

박성정 산업피해조사과 주무관

김규남 산업피해조사과 주무관

송병철 산업피해조사과 사무관

전성규 산업피해조사과 사무관

조희정 산업피해조사과 사무관

안근영 덤핑조사과 사무관

이선덕 덤핑조사과 주무관

나강운 덤핑조사과 사무관

심상수 덤핑조사과 사무관

권순심 덤핑조사과 사무관

김애선 불공정무역조사과 주무관

**감수** 최형기 무역구제정책과장

채규남 산업피해조사과장

고재강 덤핑조사과장

정병락 불공정무역조사과장

**기획·제작** 주식회사 동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



# KTC 30TH ANNIVERSARY HIGHLIGHTS OF THE THREE DECADES